# 2023~2027
#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Ministry of Justice · Republic of Korea

# 차 례


## 1부 서론 ····· 1

Ⅰ. 의의 및 기대효과 ····· 2
Ⅱ. 수립 배경과 추진 경과 ····· 5
Ⅲ. 주요 과제 개요 ····· 7

## 2부 정책과제 ····· 11

Ⅰ.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 12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 94
Ⅲ.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 230
Ⅳ.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386
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 415
Ⅵ.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 434

## 3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 485

[부록1] 국제인권기구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문 ……489

1-1.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18·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견해 (국문, '19.) …… 490

1-2.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18·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견해 (영문, '19.) …… 503

2-1.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견해 (국문, '19.) …… 511

2-2.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견해 (영문, '19.) …… 536

3-1.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견해 (국문, '22.) …… 553

3-2.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견해 (영문, '22.) …… 569

4-1.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최종 보고서(국문, '23.) …… 585

4-2.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최종 보고서(영문, '23.) …… 623

[부록2] 정책과제별 소관부처 …… 651

# 1 부

# 서 론



# Ⅰ. 의의 및 기대효과

##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실천적 의의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임

  ※ '23년 6월 현재 대한민국 포함 전 세계 79개국이 수립·시행 중

- 제1차 기본계획(2007-2011), 제2차 기본계획(2012-2016),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에 이어 제4차 기본계획(2023-2027) 수립·시행을 통해 범국가적 인권정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2. 수립 근거

- '93년 세계인권회의(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채택된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의 권고

  – 인권과 민주적 제도 강화, 인권의 법적 보호, 인권교육 증진을 목표로 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함

  ※ '세계인권회의는 각국 정부에 대해 국제인권법규에 규정된 기준의 국내법상 구체화와, 인권증진 및 보장 역할을 담당할 국내 사회구조, 제도와 기관 강화를 촉구한다'(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V.1.)

- '01년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권고

– '01년 5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2차 정기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정보제공을 권고함

• '06년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383호, '18. 5. 일부개정)

–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의·조정을 통해 인권업무에 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절차를 통하여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제인권기준 변화 또는 국내 상황에 따른 이행 가능성 변동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규정 제7조)

※ 관계 부처는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함(규정 제8조)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당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종료 연도에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규정 제9조)

## 3. 기본원칙

• 인권 존중의 원칙

– 시민적·정치적 자유는 모든 사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

–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증진은 국가의 의무임

• 평등과 차별 금지의 원칙

– 국가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존중·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추진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특히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분야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국가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며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현 보장과 증진은 국가의 의무임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와 인종 간 이해 증진 정책의 적절한 추진은 국가의 의무임

• 민주적 참여의 원칙

–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참여에 바탕을 두며, 국내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이 필요함

## 4. 정책적 기대효과

•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근본인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구축

• 소극적 성격의 자유권뿐만 아니라 적극적 성격의 사회권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 제도 간 연계성과 정책적 지속성을 확보

• 국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와 민주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

•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권 실현을 통한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

• 인권 실현을 가로막는 제도적 취약성을 점검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권 법제를 개선

•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의 인권 지향성을 강화하고, 인권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

•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활동이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인권 신장에 기여

• 디지털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확대에 기여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준 제시

# Ⅱ. 수립 배경과 추진 경과

## 1.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부 의지와 국가 인권정책방향의 지속적 표명 필요
- 제3차 기본계획 종료에 따라 지속적 정책과제 및 새로운 인권개선 요구를 반영한 신규 과제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 수립 필요
- 국제인권규범의 모범적 실현 국가로서 위상 제고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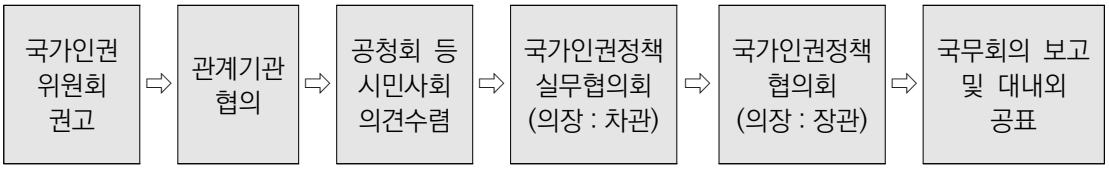
  ※ '23년 1월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권고내용을 정책적으로 검토·반영

- 새 정부의 인권정책 기조 및 인권 관련 국정과제 반영 필요

  ※ 새로운 인권 수요와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참여를 촉진

## 2. 기본계획의 추진 경과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절차 〉



• ('22. 2.~4.)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 인권 관련 학회와 시민사회단체, 관계 부처·기관 핵심 정책과제 의견조회

• ('22. 4.~8.) '제3차 NAP 이행평가 및 제4차 NAP 과제 제시' 연구용역 추진

– 연구용역 결과, 제4차 NAP 초안 반영

• ('22. 8.)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NAP 권고안 제출

• ('22. 8.~9.) 국가인권위원회·국제기구 권고, 시민단체 의견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조회

• ('22. 9.) 정책과제 논의를 위한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 ('22. 9.~10.) 국정과제, 연구용역 제시 과제, 인권정책자문단 의견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조회

• ('22. 12.~'23. 1.) 신규과제(디지털 시대의 인권) 발굴 및 소관부처 의견조회

• ('23. 1.~7.) 제4차 NAP 초안 소관부처 의견조회 및 초안 수정·보완

• ('23. 8.) 제4차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3. 9.~10.) 인권분야별 정부·시민사회단체 1·2차 간담회 개최

• ('23. 11.~12.)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 면담 4회 개최

• ('23. 12.)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24. 1.) 제4차 NAP 초안 전체 강독회 실시 및 초안 최종 수정

• ('24. 2.) 제4차 NAP 초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 ('24. 2.~3.) 국가인권정책협의회 협의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확정

• ('24. 3.)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발표 및 시행

–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내외에 발표

# Ⅲ. 주요 과제 개요

## 1.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 생명권
- 신체의 자유
- 안전권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결사·집회의 자유
- 사생활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인격권
-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 참정권

##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 노동권
-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 평등 증진
- 여성
- 아동·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외국인과 재외동포
- 북한이탈주민

## 4.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디지털 환경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 디지털 정보 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 디지털 이용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 5.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 기업과 인권

## 6.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문화 확산

-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 2 부

# 정책과제

# Ⅰ.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인간의 존엄은 생명존중으로부터 시작되며,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보장은 인권 보호와 증진의 기초임.
사람은 국가 또는 기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며 각자의 신념에 따라 행복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인격적 존재로서의 삶을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음. 기본적 자유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격권을 통해 보장됨.
권익 침해에 대하여는 구제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행정·사법이 정의롭게 실현되도록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음. 민주적 참여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함.

## 1. 생명권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3조
  -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자유권규약 제6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 인간의 고유한 생명권(법률에 의해 보호, 자의적 생명 박탈 금지)
  - 사형은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 법원이 선고한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
  -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
  - 18세 미만 범죄자와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 금지

• 아동권리협약 제6조, 제37조 (가)목

–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

–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보장

–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보장, 사형 또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 금지

• 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

– 생명권,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명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 나. 국내적 기준

• 생명권에 관하여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음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합헌을 결정하면서 생명권은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 권리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결정)

• 현재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으며, '22. 7. 공개변론이 열림(헌법재판소 2019헌바59 헌법소원)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사형제도 개폐 검토**

• '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마지막 집행 후 10년이 지난 '07년 12월 30일부터 국제적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사형제도 존폐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 중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결정,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

○ **자살 예방 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21년 연간 자살사망자는 13,352명(10만 명당 자살률 26명)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등으로 '20년 대비 소폭 증가(1.2%), OECD 국가(평균 11.1.명) 중 최상위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정신건강 악화와 사회·경제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후('25.~'26.)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생명안전망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필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 정신건강 위기학생(자살위험학생 포함)을 선별, 전문기관 연계 상담·치료를 지원 중이나 학생 자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치료 지원 체계 내실화 및 국민적 인식 개선 필요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사형제도 개폐 검토**

- 사형제도 존폐 관련 여론 추이 확인

〈'06년~'22년 사형제도 존폐 관련 여론 추이〉

| | '06년 | '08년 | '09년 | '12년 | '15년 | '17년 | '18년 | '19년 | '21년 | '22년 |
|---|---|---|---|---|---|---|---|---|---|---|
| 존치(%) | 45.1 | 57 | 64 | 85.5 | 63 | 85.4 | 69 | 89.6 | 77.3 | 69.3 |
| 폐지(%) | 33.8 | 22.2 | 13.2 | 5.4 | 27 | 9.6 | 22 | 7.8 | 18.7 | 23 |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리얼미터 | 한국리서치 | 리얼미터 | 한국갤럽 | 리얼미터 | 한국갤럽 | 리얼미터 | 한국갤럽 | 한국갤럽 |

-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된 법령 분석

  – '18년 12월 기준 총 24개 법률의 102개 조문(「형법」 17개, 「군형법」 44개, 특별법 41개)

-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결과 검토

- 사형폐지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참여

-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 찬성 표결('20. 11).

- 유엔 인권이사회 '사형제 문제' 결의안 찬성 표결('21. 10.)

○ **자살 예방 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 추진

–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을 구축하여('19.) 자살사망자 동향 분석자료 관계 부처 제공, 17개 시·도 자살 예방 담당 공무원 대상 활용 교육 실시, 이용자 재등록 및 사용법 안내, 통계 오류 발견 및 검수 요청

• 자살 고위험군 발견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지역 풀뿌리 조직, 위험군과 접점에 있는 직업군 등 전 국민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 생명지킴이 양성('13.~'21. 누적인원 약 730만 명)

•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자살위험 제거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고도화('19. 6.) 및 전국 확대

– 자살 예방 상담전화(1393) 구축·운영('18. 12.~) 및 단계적 인력 확대('18. 26명→'21. 57명→'22. 80명),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한 상담인력 보강('20. 11.~'22. 3. 180명)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방지

–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대상 초기상담 및 정신과적 평가,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13. 25개소→'23. 상반기 85개소),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 확대('22. 7.~ 9개 시·도), 자조 모임 154개소 운영 및 홍보, 동료지원 활동가 34명 양성, 아동·청소년 유족 대상 학자금 및 놀이치료·미술치료·심리치료비 지원 등을 통한 위기 해소, 자살 유족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 조직 내 자살사건 발생 시 자살 사후 대응 현장 개입 서비스 지원(129기관 7,692명, ~'23. 상반기) 및 자살 사후 대응 헬프라인 운영('20. 7.~), 자살 사후 대응 전문 콘텐츠 2종 개발, 자살 사후 대응 전문인력 양성교육 1,499명 대상 23회 운영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 자살 예방 카드뉴스, 브랜드 웹툰, 문화콘텐츠를 SNS* 채널에 게시

* Social Network Service :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 세계 자살 유족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자살 예방에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 대학생 서포터즈를 통해 콘텐츠 제작 및 박람회 등 운영, 웹툰작가와 협업하여 자살 예방 브랜드 웹툰 제작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실시 및 관심군 학생 대상 전문기관 연계·치료지원 지속 실시

※ (전문기관 연계·치료율, %) 관심군 : ('18.) 76.3→('19.) 75.4→('20.) 71.6→('21.) 74.4→('22.) 75 자살위험군 : ('18.) 82.2→('19.) 80.4→('20.) 78.1→('21.) 79.6→('22.) 79.8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사형제도 개폐 검토

•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한 국민 여론과 법 감정 지속적 확인

• 사형제도 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참여

–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 ② 자살 예방 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근거 기반 생애주기별·생활터별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추진

• 자살 고위험군 발견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 확산 방지

• 민관 협력 캠페인, 홍보를 통한 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 조성

## 2. 신체의 자유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3~5조, 제9~11조
  -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노예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할 권리
  -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
  -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할 권리
  -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
  -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하고,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할 권리
- 고문방지협약 제1~4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 고문 :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합법적 제재 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부수되는 고통 제외)
  - 고문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
  -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송환·인도 금지
  - 모든 고문행위(미수, 공모, 가담 포함)의 범죄화 및 형사처벌
  - 고문사례 방지를 위해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을 구금·처리하는 제도와 심문 규칙·지침·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

- 고문에 대한 권한있는 당국의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 보장
- 고문 결과 행해진 것으로 입증된 진술이 모든 소송에서 증거로 원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 (고문 혐의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진술이 행하여졌다는 증거로 원용되는 경우 제외)
- 제1조에 규정된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에 의해 직접 또는 이들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

• 자유권규약 제7~11조, 제14조, 제15조

-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할 권리
- 노예·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할 권리,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할 권리
-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할 권리(법률 및 적법절차에 따른 자유 박탈 금지, 체포이유·피의사실 신속히 통고, 법관에의 신속한 회부, 합리적 기간 내 재판 또는 석방, 불구속 원칙, 구속적부심, 불법적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 미결수는 기결수와 격리,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신속히 재판에 회부, 교도소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처우 포함
-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함
- 재판에 있어서 평등, 법률에 의해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 받을 권리,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지고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권리, 부당하게 지체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 반대신문할 권리,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 미성년자의 경우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과 갱생촉진을 고려
- 유죄판결 받은 경우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
-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사면을 받았을 경우 유죄판결의 결과 법률에 따라 보상
-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

• 아동권리협약 제37조, 제40조 제1호, 제2호 (가)목, (나)목 (1)~(4), (6), (7), 제3호, 제4호

-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보장
-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
-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고, 연령상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의 격리,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 보장
-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 보장
-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해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 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 인정
-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함
-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피의사실을 부모나 후견인을 통해 통지받고,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법률적 지원을 받음.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함.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신문받도록 하며,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 확보, 무료로 통역원 지원, 아동의 사생활 존중
-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 적용될 특별한 법률·절차·기관 및 기구 설립 촉진 노력(형사미성년자 최저연령 설정, 적절한 경우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조치)

– 아동의 복지에 적절하고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함

•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제15조, 제27조 제2호

–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 향유,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자유 박탈 금지,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함

–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

–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자발적인 동의 없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 금지,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

–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니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a)목, (b)목

– 법원 및 기타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 폭행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인간의 안전 및 보호를 받을 권리

•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4조, 제16조 제1호, 제17조 제1호, 제2호, 제21조, 제25조 제1호 (가)목

– 어떤 사람도 강제실종을 당해서는 안됨(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정당화 불가)

– 강제실종 :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

– 강제실종 행위를 수사하고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 강제실종이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강제실종 위험이 있는 다른 국가로 추방, 송환, 인계 또는 인도 금지
- 비밀 구금 금지
- 자유 박탈에 대한 적법절차 보장(자유 박탈을 명할 수 있는 조건 설정 및 권한이 부여된 당국 명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감독되는 장소에만 수용, 가족 및 변호사 접견권, 권한 있는 당국 및 기관이 사법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 있는 장소에 대한 접근 보장, 법원이 자유 박탈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유가 박탈된 사람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자격 보장)
-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 석방 시점에 신체적 완전성 및 자신의 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보장
- 강제실종을 당한 아동, 부모나 보호자의 아동 또는 강제실종을 당한 모(母)가 감금 도중에 출산한 아동을 불법적으로 분리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4항, 제28조
- 헌법재판소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舊「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고(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결정), 국회는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에 군기교육, 감봉 등을 추가하여 영창처분을 대체함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인신구속제도 개선

-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운영 필요
  - 수사 담당자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엄단 및 체포·구속 장소에 대한 철저한 감찰로 인권침해 방지

– 각종 영장처리에 관한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권보호부(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8개 검찰청) 운영을 통해 위법·부당한 인신구속을 차단하고, 운영상황의 수시 점검을 통해 영장 업무의 적정성 제고

### ○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지원 제도 개선 필요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고의에 의한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벌금 수납액의 8%를 기금에 전입)을 재원으로 하여 유족구조금(최대 약 1억 6,227만 원)·장해·중상해(최대 약 1억 3,523만 원) 구조금 지급(부양가족, 피해 정도, 피해자 소득 등 고려, ’22. 9. 이후 피해 발생 기준)

※ 범죄피해구조금 최대 지급액은 대한건설협회 고시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따라 매년 2차례 변동됨

• 범죄피해 보호·지원 및 민간단체 종사자 전문성 강화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화 교육 실시를 통한 전문성 강화 노력 지속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및 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설정을 위해 법무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여 5년 단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벌금 전입비율 상향(6%→8%)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재원을 ’20년도 대비 29% 대폭 확충(824억 원→1,060억 원)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사업 내 간접지원 비율이 높았던 아동 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22년 1월부터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여 기금 중 범죄피해자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직접 지원(치료비, 이전비 등) 비율을 높임

###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권리 확대 및 강화

•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아동 학대·장애인 학대 범죄 매년 증가,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 특히 'n번방 디지털 성착취 사건' 및 '양천구 아동 학대 살인사건' 등 여성·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형사절차 참여 권리 강화를 위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 필요

•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성폭력, 아동 학대, 인신매매 등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 아동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형사절차에서의 의사소통 지원 강화 요구

### ○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 형사절차 초기 단계부터 적법절차가 준수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

•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관이 지켜야 하는 행동기준인 「경찰관 인권행동강령」(경찰청 훈령)을 제정('20. 6.) 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의 기틀을 마련

•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 제1항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관련 규칙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

- ’23년 3월 수사 과정상 인권 보호 내용을 총망라하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경찰청 훈령) 제정

  – 경찰청 인권위원회 및 시민단체·학계 등 논의를 거쳐 차별 금지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명시된 ‘성별’ 및 청소년·외국인·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명문화

  – 수사 등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

  – 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은 추후 실무 매뉴얼로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 필요

- 경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으로 경찰 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이 보장되고 실현되도록 의식과 행동 변화 견인 필요

### ○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 범죄 및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함과 아울러 2차 피해 방지 강화 필요

- 지난 수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강간·강제추행 등 전통적 형태의 성범죄 또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

  ※ (’21. 10.→’22. 10.) 카메라 등 이용촬영 19.1% 증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 155.8% 증가

- ’21년 성범죄 사건 수사 단서의 85.2%가 ‘신고’일 정도로 최근 신고 건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성범죄의 암수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지속적인 신고 활성화 및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 필요

  * ’18년 성폭력 피해신고 실태조사(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경찰에 신고 등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11.8%에 불과함

### ○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시행('21. 1.)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 수사권 남용에 대한 적극 통제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옴부즈만으로서 '06년 12월부터 '22년 12월까지 총 28,348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4,499건을 인용(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 또한, 교통안전시설, 수사 과정상 절차 위반 등과 관련하여 빈발하게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기획조사 및 제도 개선을 실시

  ※ 고소·고발 반려 시 고소인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 고소·고발 처리절차 개선('21.), 고소·고발 사건 수사 지연 방지를 위한 보고 절차 개선('22.)

  –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권한 분리와 상호견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 도입 등과 같이 경찰 권한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구인 외부 개방형 인권정책관 신설 필요('17.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경찰조직의 재편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경찰 인권교육의 필요성 증대

### ○ 구금 · 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 교정시설 수용 비율(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104.3%*이며 전체 54개 교정시설 중 정원을 초과한 시설은 29개로 교정시설 간 편차와 과밀수용 존재

  * 연도별 수용률(%) : ('18.) 114.5 →('19.) 113.8 →('20.) 110.8→('21.) 106.9→('22.) 104.3.

  – '16년 헌법재판소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이후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증·개축을 통해 수용 비율을 낮추고 있음

- 소년원생 인권적 처우 환경 조성을 위해 '13년부터 집단생활실(10~15인 사용)을 4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고 내부에 세면장, 화장실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수용환경 개선

  – '15년~'18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정원대비 약 10~20%를 초과하였으나, '19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수용인원 조절 등으로 일시적 인원 감소

○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 수용자 스스로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 도입 및 다양한 문화·가족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준법정신, 친사회성, 자기통제 등 학습참여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집중인성교육 운영
- 귀휴, 가족만남의 집 이용 등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과 가족접견, 가족사랑캠프 운영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구축 등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려형 접견 실시

○ **보호·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 개선**

- 국민 및 인권단체의 수용기관 소년 인권 보호에 대한 시각의 변화, 수용(보호·위탁)소년의 인권 의식 함양 및 기대 수준 향상으로 수용소년 인권 및 처우 개선 필요

○ **성충동 약물치료 처우 개선**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년 제도 시행 후부터 '22년까지 성폭력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71건 집행
-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시점에 불필요한 치료를 배제할 절차가 없다는 이유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결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17. 12.)한 것과 같은 성충동 약물치료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등 인권 보호 강화**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최우선 정책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자진출국 및 방역 계도 활동에 집중
-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호전됨에 따른 각국의 국경 봉쇄 해제 조치로 신규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속 시 적법절차 준수 강화

○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 운항이 감소하고, 난민 신청, 행정소송, 권리구제, 출국 거부 등의 사유로 보호외국인의 보호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과 보호외국인 인권 강화, 보호의 적법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 장애인 거주시설·정신병원 등 각종 민간 수용시설에 위법 수용된 수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증대
  - 19대 국회부터 수용시설 점검 후 위법 수용 발견 시 구제신청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신보호법」 개정 추진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인신구속제도 개선**

- '검찰시민위원회'가 전국 66개 고·지검, 지청에 설치되어 기소,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고, 지검 시민위원회를 정례화('18. 9., 매월 1회)하는 등 시민참여 활성화
-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권보호부(서울중앙·서울남부·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8개 검찰청)가 설치('21. 7. 기준)되어 합리적인 사법통제 수행
- 인신구속 과정에서의 체포·구속 장소 감찰 실시
  - 구속기간 경과 여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등의 감찰사항 확인
  - 범죄사건부, 긴급체포원부 등 신병 관련 장부의 작성 관리상태 확인
  - 검사가 체포·구속 장소를 직접 점검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 체포·구속 장소 감찰 : ('20.) 2,354회, 불법 구금사례 적발 없음→('21.) 2,104회, 불법 구금사례 적발 없음→('22.) 유선 실시 등

• 사법경찰관 신청 체포·구속영장 엄격 심사

– 체포영장 기각(건, 전체 신청건수 대비) : ('20.) 5,277, 14.3%→('21.) 5,650, 17.75%→('22.) 6,389, 19.4%,

– 구속영장 기각(건, 전체 신청건수 대비) : ('20.) 5,260, 18%→('21.) 6,172, 22.8%→('22.) 6,389, 23.1%

• 수사기관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엄벌

– 기소 건수(건) : ('20.) 4→('21.) 9→('22.) 2

###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성 강화 및 스마일센터 확대

– 강력 범죄 피해자의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의 총괄지원단을 설치하고('18. 1.) 전국 16개 광역 단위로 스마일센터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 지원

〈스마일센터 설치 및 지원 현황〉

(단위 : 개, 건)

|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신규 설치 개수 | 2 | 1 | 1 | 1 | - |
| 설치 지역 | 청주, 울산 | 창원 | 제주 | 목포 | - |
| 누적 개소 수 | 13 | 14 | 15 | 16 | 16 |
| 지원 건수* | 77,001 | 74,556 | 66,993 | 72,398 | 90,992 |

* 심리지원, 사회지원(외부기관 연계 지원), 법률지원, 임시주거지원 등 포함

– '스마일센터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을 통하여 초기 대응부터 법률지원, 입소시설 지원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례관리 가이드라인 수립('21. 12.)

–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범죄피해 유형, 치료 효과 등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21. 12.)

• 범죄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범죄피해자와 가족, 관련종사자 교류를 위해 '다링안심캠페인',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매년 상, 하반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홈페이지 구축을 토대로 한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를 상시 운영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책자 및 리플릿을 격년으로 제작·배부

– 스마일센터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게시, UCC 공모전 개최, 병·의원 키오스크와 KTX·SRT 모니터 및 주요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홍보('21.)

• 주거지원 확대

–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가능한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보복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아동 학대 피해,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 실화 피해까지 확대('18. 3.)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해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20. 5.)

• 범죄피해 보호·지원 제도 개선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해 '구조금 업무편람' 발간 및 지침 개정,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책자 발간('20. 11.)

– 강력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범죄피해자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표준 평가 프로토콜 및 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추진('20. 12.)

– 범죄피해자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및 집행지침」 개정('20. 12., '21. 12.)

•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범위 확대(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20. 11.)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권리 확대 및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증원 및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한 지원 강화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및 배치 확대로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

* ('19.) 4명→('20.) 2명→('22.) 12명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대상 확대('20. 11.), 장애인 학대 범죄 피해 장애인 지원 대상 확대('21. 6.)

– 아동 학대 범죄 피해 아동에 대하여 국선변호사 의무적 선정, 시행('21. 3.)

– 매년 국선변호사 대상 전문화 교육 실시, 보수기준 개정, 실태조사 실시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현황

| 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지원 건수 | 22,755 | 25,487 | 26,007 | 38,446 | 39,161 |

• 진술조력인 제도의 지원범위 및 양성 확대를 통해 진술조력인 사각지대 해소

– '20년 10월 시행된 「아동 학대 처벌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아동 학대 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의 경우 기존 지원 대상인 아동 학대 범죄사건의 피해자에서 참고인과 증인까지 진술조력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 확대

– '22년 1월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에 따라, 기존의 아동 학대와 성폭력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술조력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 확대

– 매년 신규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 교육을 통한 자격 부여로 진술조력인 양성 확대 지속

* ('18.) 13명→('19.) 15명→('20.) 14명→('21.) 15명→('22.) 14명

• 진술조력인 조력 현황

| 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지원 건수 | 1,722 | 2,226 | 2,684 | 4,184 | 3,822 |

### ○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정보 보호 강화
  -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강화
  -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귀가 시 검찰 직원 동행,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21.)
  - 여성·아동분야 타겟형 교육 및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여성·아동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매년 상·하반기)
  - 수사기관 대상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20., '21.)
  - 디지털 성범죄 불법동영상 관련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배포('20. 4.), 성폭력, 가정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및 아동 학대 수사매뉴얼 제정·배포('21. 12.)
-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이전비 지원 활성화 및 신속 지원을 통한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지원, 형사조정실 CCTV 설치, 성범죄 등 사건 대질조사 및 형사조정 시 분리
  - 중대범죄 신고자나 범죄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커서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경우, 검찰청에서 마련한 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 일정기간 무료로 거주하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시설 제도' 적극 홍보

### ○ 구금 · 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 강원북부교도소, 거창구치소 2개 기관 신축, 춘천교도소 등 16개 기관 수용동 증·개축

〈최근 5년간 교정시설 수용인원 변동〉

| 구 분 | 5년 평균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정원(명) | 48,476 | 47,820 | 47,990 | 48,600 | 48,980 | 48,990 |
| 일 평균 수용인원(명) | 53,345 | 54,744 | 54,624 | 53,873 | 52,368 | 51,117 |
| 수용률(%) | 110 | 114.5 | 113.8 | 110.8 | 106.9 | 104.3 |

〈보호시설 소규모·현대화 추진사항〉

| 구분 | 기관 | 예산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완료 | 전주소년원 | 210.5억 | | | 설계 | 착공 | 계속 | 계속 | 완공 | | | |
| | 대전소년원 | 86.61억 | 의료재활소년원 직제 신설 추진 | | | | | 설계 | 착공 | 완공 | | |
| | 안양소년원 | 5.3억 | | | | | | | | 설계 | 착공 | 완공 |
| | 부산소년원 | 52.78억 | | | | | | | | 설계 | 착공 | 완공 |

| 구분 | 기관 | 예산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
| 진행·계획 | 춘천소년원 | 215.7억 | | | 설계 | | | | 완공 예정 | | |
| | 서울소년원 | 87.51억 | | | | 설계 | | | 완공 예정 | | |

〈최근 5년간 소년보호시설 수용인원 변동〉

| 구 분 | 5년 평균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정원(명) | 1,358 | 1,360 | 1,360 | 1,360 | 1,360 | 1,350 |
| 일 평균 수용인원(명) | 1,241 | 1,510 | 1,342 | 1,261 | 1,066 | 1,028 |
| 수용률(%) | 91.4 | 111 | 98.7 | 92.7 | 78.4 | 76.1 |

### ○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 체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

  * 연간 교육 인원(명): ('18.) 9,909→('19.) 10,952→('20.) 4,917→('21.) 7,177→('22.) 5,720

- 외국인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 4개(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기관 운영,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한글 교육 시행

〈외국인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 한글 교육 시행 현황〉

| 구분 \ 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대전교도소 | 38회 | 37회 | 0회 | 0회 | 0회 |
| | 355명 | 303명 | 0명 | 0명 | 0명 |
| 천안교도소 | 55회 | 62회 | 0회 | 12회 | 16회 |
| | 366명 | 492명 | 0명 | 91명 | 136명 |
| 여주교도소 | 0회 | 0회 | 0회 | 0회 | 8회 |
| | 0명 | 0명 | 0명 | 0명 | 16명 |
| 청주여자교도소 | 38회 | 38회 | 0회 | 0회 | 9회 |
| | 652명 | 696명 | 0명 | 0명 | 111명 |

- 장애인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 9개 기관(광주교도소, 안양교도소, 순천교도소, 여주교도소, 포항교도소, 군산교도소, 청주교도소, 충주구치소, 통영구치소) 운영
- 장애인 수형자를 위한 여주교도소 내 종합재활센터 설치 운영*

  * 교육 인원(명) : ('18.) 30→('19.) 38→('20.) 41→('21.) 27→('22.) 21

-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현황
  -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접 대면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은 저조하나, 화상접견이나 소규모 가족접견을 확대 운영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연도별 실시 실적〉

|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가족만남의 집(회) | 1,913 | 1,908 | 27 | 0 | 5 |
| 가족만남의 날(회) | 8,891 | 9,004 | 59 | 0 | 24 |
| 가족사랑캠프(회) | 541 | 513 | 0 | 0 | 0 |
| 가족접견(화상접견포함, 회) | 4,144 | 4,295 | 158 | 859 | 1,454 |

- 서울구치소 등 47개 기관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22. 12. 기준)

### ○ 보호·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 개선

- 수용소년 과밀화 해소를 위한 생활관 신축공사·증설·리모델링 및 소년분류심사원 신설, 의료재활소년원 신설 등
- 소년원생 1일 급식비 매년 인상('18.~'22.), 면회시간 연장(30분→40분), 생활실 연중 온수 공급 등('18.)
- 인권친화적 보호장비(벨트형 족승) 개발 및 전국 기관 보급('20.)
-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정('20.), 「보호장비 사용규정」을 법무부훈령에서 시행규칙으로 격상('21.)
- 고위험 정신질환자 조기 선별 및 사전개입을 위한 소년원생 정신건강증진 프로세스 구축('21.)

- 수용소년 인권처우 향상을 위한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운영('20. 4.~'21. 4.)
- 대전청소년진단센터 개관('21.), 서울소년원 등 3개 기관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 및 시범운영('22.)
- 의료장비 현대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구축 등 의료 서비스 개선('22.)

### ○ 성충동 약물치료 처우 개선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18. 1. 시행)
  -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 사이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 신청 시, 법원은 집행면제 여부를 징역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결정
  - 치료명령 집행면제 신청 실적 : '18년 1건(수원지법 안양지원, '18. 6. 기각결정), '22년 1건(의정부지법, '23. 11. 기각결정)
- 부작용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 및 치료 등을 통한 부작용 최소화
  - 집행인원, 실시횟수(명,회) : ('18.) 21, 34→('19.) 39, 72→('20.) 33, 64→('21.) 40, 73→('22.) 42, 76
  - 부작용으로 인한 약물치료 일시 중단자 : ('19., '20.) 1명, ('20., '21.) 0명
- 피치료자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정 개설 및 실시
  - 진천 법무연수원 성충동 약물치료 전담직원 30명 대상 교육('19. 3., '22. 6.), 법무연수원 온라인 필수 교육 지정 및 상시 운영

###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등 인권 보호 강화

-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 보호 준칙」 개정('19. 9.)
  - 직무수행 기본원칙에 사고 예방 노력 추가, 6개월에 1회 이상 단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신규 배치 시 법무연수원 등에서 인권교육 이수, 사전답사를 거친 안전요원 배치 계획 등의 방안을 포함한 단속계획 수립

-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통해 자진출국 유도 기간 중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방지 사전계도를 실시하도록 단속방식 개선 시행('19. 12.~'20. 6.)
- 출입국사범 단속 시 초상권 침해 등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상촬영 등 채증활동 매뉴얼 마련('20. 6.)
- 코로나19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유예, 코로나 검진 및 백신접종 독려 및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및 계도 활동('20. 7.~)
-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한 불법고용 범칙금 상향 및 불법고용 알선자 등 처벌 강화 ('20. 9.)
- 백신접종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를 통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환경 조성('21. 10.~)



### ○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보호조치 없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21. 1. 시행)
- 보호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한 기간 연장 심사 강화하여 불승인* 증가**

  * 불승인 기준 :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적법성, 보호계속 필요성, 건강상태, 보호 생활실태, 도주우려, 공공의 안전 등 종합적으로 고려

  ** 보호기간 연장 불승인 / 전체 심사(건) : ('18.) 44 / 320→('19.) 17 / 278→ ('20.)44 / 764→ ('21.) 93 / 987→('22.) 88 / 863

- 인도적 사유를 고려한 보호일시해제 증가*

  * 해당 연도 신청에 대한 허가(건) : ('18.) 107→('19.) 104→('20.) 188→('21.) 461→('22.) 718

- 「외국인보호규칙」 개정('22. 12.)

  – 보호시설 내 전반적인 인권상황 점검과 개선 조치, 인권침해 신고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내부통제 기능 수행

– 특별계호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기관장의 사전 허가·지시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특별계호 최대시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1회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제한 최소화

– 「출입국관리법」에 포승보다 신체 제한의 정도가 가벼운 '보호대'를 신규 추가하고, 각 보호장비의 종류·규격, 사용 요건 및 방법 등을 세분화하여 규정

•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을 위한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22. 4.)

–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보호동 일부를 개방형 보호시설로 전환하여 철창을 제거하고 운동장을 상시 개방하는 등 보호동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

– 인터넷 PC와 휴대폰 사용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외부소통 및 정보접근권 보장

○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 에 참석하여 정부 입장 발표('18.)

• 인신보호관의 성격과 기능이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인신보호법」 개정 추진 지연('19.)

• 「인신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용시설 현황, 인신보호청구 및 재판 현황 등 확인('19.)

• 현실적인 「인신보호법」을 위한 개정 방향 재검토('20.)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인신구속제도 개선

• 인신구속 관련 형사절차에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계속

• 전국 8개 검찰청에 설치한 '인권보호부' 운영을 통해 위법·부당한 인신구속 등 차단 노력 지속

• 수사 담당자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독직폭행·가혹행위 엄벌 기조 유지

### ②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가 신변보호부터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심리치유, 일상회복 등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안내·연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추진
- 범죄피해 보호·지원 및 민간단체 종사자 교육 지속 실시(매년)
-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2.~'26.)'과 연도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총 87개 추진과제)을 수립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 존중 및 인간다운 삶 보장 실현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재원 확보(매년)
-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성 강화
  - 스마일센터 세미나 등을 통한 심리치료 역량 강화(매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신분 노출을 꺼리는 대상자에게는 스스로 심리상태를 점검해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스마일센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범죄피해 유형, 치료 효과 등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 범죄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범죄피해자와 가족, 관련 종사자 교류를 위해 '다링안심캠페인',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매년 상, 하반기)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매뉴얼 책자 발간('23.)
-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기 위해「범죄피해자 보호법」개정 추진

### ③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권리 확대 및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내실화
  - 기존 성폭력·아동 학대·장애인 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외 지원 대상 확대 검토, 추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성 강화 및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등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 노력
  -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리 확대 추진
- 진술조력인 제도 내실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 다양한 지역 기반 및 경력,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여 인력의 양적·질적 향상 추진
  - 진술조력인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프로그램, 업무매뉴얼 정비
  - 진술조력인 지원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 ④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 시, 개선방안 적극 협력('23.~)
  -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경찰청훈령)에 변호인 메모 보장 및 의뢰인과의 대화비밀 보장 등,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침을 규범화하여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
  -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지속

### ⑤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

-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에 맞춰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포함한 매뉴얼 제작·배포 예정,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회적 상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 보완 검토
- '경찰 인권교육 종합계획('23.~'25.)' 수립 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
- 여성,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가 수사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경찰관서 직장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인권, 평등권 등을 철저하게 보장하도록 함

### ⑥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 여성폭력 및 아동 학대 범죄 관련 2차 피해 방지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현장경찰관 등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
-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피해자 심리안정, 신체안전을 도모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임시숙소 안전성 확보
  - 수사기관 및 법정 출석, 귀가 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방안 마련
  -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관련 정보 신속 제공
- 경찰청 '성범죄 피해자 상담 챗봇'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챗봇' 활용, 피해신고 및 지원기관 연계 활성화, 기능 고도화 추진
-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 수사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명예훼손·모욕·협박 등) 신고 시 수사 강화 등 엄정 대응

– 성폭력 신고, 조사 중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부주의한 언행이나 폐쇄적, 유도적 질문 등을 하는 2차 피해를 막고, 수사관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태도를 개선하는 'AI 음성인식 활용 피해조사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며 전국 시·도 경찰서로 확대 추진

* 성폭력 피해자 동의를 받아 수사관·피해자 문답을 AI 음성인식을 통해 자동 기록·저장·출력하는 시스템 ('20. 12. 14.부터 시범운영)

–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사실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 적극 활용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제도를 안내하여 법률 지원 강화

–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번역 대상 언어 지속 확대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제고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 구축

– 현재 전국 총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운영 중으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문수사 기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수사 전문성 제고 및 범죄 대응체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 매뉴얼 철저 준수 및 적시 개정

– 전문가 초청 강연, 유관기관 현장방문 간담회 등 관련기관 협업시스템 강화를 통한 능동적·효과적인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

•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 적극적인 잠정조치 청구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피해자의 생명·신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구축

– 우수수사 사례 전파, 잠정조치 사례집 배포 등 전담검사 전문화를 통한 스토킹 범죄 대응 역량 강화

•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처벌,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23. 6.)에 따라 매뉴얼·지침 등을 재정비하여 현장의 실효적인 법 집행 지원

### ⑦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제2차 경찰 인권교육 종합계획('23.~'25.)' 수립·시행, 경찰청 주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외부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인권교육협의회' 구성·운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교육 실시
- 경찰 인권교육 혁신 방안 수립, 핵심 정책과제 중심의 인권교육 추진, 직무 맞춤형 사이버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관리시스템 체계적 구축
- 경찰 소관 법률에 인권 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 신설
- 외부 개방형 인권정책관 신설 및 정식 직제 신설을 통해 내부 통제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
-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전 경찰서 시설개선(조사·사무 공간 분리)을 목표로 각 기능별 환경개선 사업 지속 추진
- 수사 과정상 권리 고지의무 불이행, 수사 지연, 불친절·폭언 등 수사절차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경찰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조치하여 고충민원 적극 처리
- 고소·고발 사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개월마다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수사 진행결과를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경찰 수사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22. 6.)

### ⑧ 구금 · 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 태백교도소 등 6개 기관 신축 및 안양교도소 등 7개 기관 이전 추진, 인천구치소 등 15개 기관 유휴부지 내 수용동 증·개축 지속 추진
- 법원 위탁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축 추진
- '28년까지 수용현원 기준으로 수용정원을 확대하여 과밀수용 해소

### ⑨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 단순 기능습득에서 실질 취업역량 강화로 직업훈련과정 개편
  - 다기능(복수 자격취득) 기술과정 확대, 고급기술 숙련자 양성을 위한 향상과정(산업기사 이상) 확대
- 학점은행제 도입을 통한 직업훈련 내실화
  - 산업기사 이상의 교육과정 평가인정을 통해 학점 및 학위 취득 기반 마련
  - ’23년 하반기 :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진행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9개 기관 14개 과정 진행 중
  - ’24년 상반기 :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기관, 학점은행제 교육 시행
- 외국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소양 함양 위주의 한글 교육 개편, 한국의 문화·예절 분야 교육
- 장애인 전담 수용기관 조정 등의 조치를 통해 여주교도소 등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교육 인원 확대 및 교육내용 다양화
-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용
- ’24년까지 교정시설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를 완료하여 가족접견의 효과성 제고, 공간협소로 설치 불가능한 5개 기관은 화상 가족접견을 적극 활용하고 이전 시 설계 추진
-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준법정신, 친사회성, 자기통제, 감사쓰기 등 학습 참여형 집중인성교육 실시
- 사회보장절차, 신용회복절차, 취·창업 정보제공 등 출소 이후 사회적응을 위한 석방전 교육 실시

### ⑩ 보호·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 개선

- 집단생활실을 4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고 내부에 세면장 화장실 설치하는 등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시설 조성, 광주소년원 위탁 생활관 리모델링, 춘천소년원 교육관 및 관리동 신축 등
- 연 1회 이상 소년 보호기관 수용 실태점검 등을 통한 인권 모니터링 수행, 직원 인권교육 시행('23.~'27.)
- 가족캠프 등 개방처우 활성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및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 ⑪ 성충동 약물치료 처우 개선

- 부작용 예방 및 최소화
  - 검증된 약물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특이사항 등 점검
  - 전문의 부작용 소견 시 약물투여 일시중단 후 부작용 우선 치료
- 치료명령 집행개시 6개월 후 이행상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검토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해 임시해제 신청제도 활용
- 약물치료 집행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집행 현황 수시 점검을 통한 약물치료 집행 절차 준수 강화, 피치료자의 부작용 사례 적극 대응
- 보호관찰관, 의료진 등 약물치료 집행 관련 전문가 간 주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각종 부작용 방지 및 약물치료 효과성 제고

### ⑫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등 인권 보호 강화

- 사업장 및 주거지 등 진입·조사 시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 보호 준칙」 이행 강화
- 단속을 통한 출국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유도를 위한 방안 적극 강구

### ⑬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외국인의 장기보호를 방지('25.)
- 이의신청, 보호기간 연장 등 심사를 위한 합리적인 심사방안을 마련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보호외국인 인권 강화('25.)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청주외국인보호소('2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개방형 보호시설 전환('24.) 추진

### ⑭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 고지의무 및 서류 비치의무 등 부과, 구제 청구 이후 임의 이송 또는 수용 해제 금지, 과태료 부과 등 「인신보호법」의 실효적인 개정안 검토
- 법률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법원행정처 등)간 지속적 협의

## 3. 안전권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에 위반되는 차별과 차별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고문방지협약 제13조, 제14조
  -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당국에 고소하여 신속하고 공평하게 조사를 받을 권리 보장, 고소 또는 증거 제공으로 인해 부당한 취급이나 협박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 조치

– 고문행위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완전한 재활 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 보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이 배상 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호, 제26조

–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효과적 구제조치 확보, 권한있는 사법·행정·입법 당국 또는 기타 당국에 의한 권리 결정 및 사법적 구제조치, 구제조치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집행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 차별에 대하여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

• 아동권리협약 제39조

–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 (가)목

– 성 우열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

•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2조 제1호, 제24조

– 강제실종 주장자의 신고할 권리 및 지체없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 착수

– 강제실종의 정황, 수사 경과 및 결과, 생사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 보장

– 실종자 수색, 소재 파악 및 석방, 실종자 사망 시 소재 파악 및 송환 등을 위한 당국의 적절한 조치

– 피해자들의 배상과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절한 보상 받을 권리 보장

– 실종자의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의무

–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관련 기구 및 단체를 결성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보장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5호, 제30조, 제34조
- 헌법재판소는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는 주거수색은 사전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 영장주의에 위반함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등 결정)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시설·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

-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안전 확보 필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에 근거하여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작성 및 훈련에 대한 현장 컨설팅 지원
-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 다중이용 문화시설·체육시설에 대한 기준개선으로 안전 확보 필요

**○ 재해에 강한 국토 기반 조성**

- 재난·재해 대응력 제고 및 사고 예방 체계 강화 필요
  - 지진에 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SOC(사회기반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필요
-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등록 대수는 전체 자동차의 약 7%에 불과하나,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은 매년 약 20%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화물차 관련 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는 등 국민 불안 확산

  *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22.) : 화물차 2.9 〉 버스 1.2 〉 기타 1 내외

○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생활문제(치안, 안전) 해결 추진**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치안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존 국가 연구개발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발·추진 필요
- 사전 이슈 모니터링, 신종 감염병과 철거 현장 건축물 붕괴사고 등 다양한 재난·재해 시의 긴급대응 매뉴얼 연구개발, 현장 적용·확산을 통해 재난·재해 사고에의 전주기적 대응 필요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필요
- 효율적인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훈련 실시 등 필요

○ **재난 · 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 재난피해자와 피해 가족에게 사상자의 개인정보와 재난수습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유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적 대응 어려움 및 재난 수습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불신과 혼란 발생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위기가족 대상 긴급 심리정서지원, 생활 도움지원 등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지원이 필요함에도 위기·취약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포함)*이 부족하여 확대 필요

  * ('20.) 79개소→('21.) 88개소→('22.) 93개소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 시설·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

-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에 대한 교육, 컨설팅과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표준안 개발 및 보급
- 국가안전대진단, 하절기·동절기 안전관리실태 점검,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구축·운영, 불법 야영장·숙박시설 집중 단속 실시 등을 통해 유원시설, 야영장, 관광숙박시설 안전관리 강화
- 체육시설 안전기준 개선
  - 「체육시설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신규 신고 업종*을 추가하여 안전·시설 기준 적용

    *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체육시설업('18. 9.), 합기도장을 체육도장업에 포함('19. 6.), 체육교습업('20. 5.), 인공암벽장업('20. 12.)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체육시설법」 및 시행령 개정('20. 12., '21. 6.)

#### ○ 재해에 강한 국토 기반 조성

- 내진 설계기준 개선·강화
  - SOC 내진설계 기준을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에 맞추어 시설별(10종)로 제·개정('18. 12.)하고, 28,014개소 중 27,629개소(98.6%)의 내진성능 확보('22. 기준)
-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전방주의 의무 위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용 지원
  - 사망 교통사고 등을 유발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안전점검 실시(분기별)
  - 사업용 차량의 특수성에 맞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마련('22. 1.)

○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생활문제(치안, 안전) 해결 추진**

-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시범사업에서 7개 과제를 수행하여 치안 현장에서 보이는 112 신고, 성범죄 대응 챗봇, 접이식 방검·방패 등 적극 활용('18.~'21.)
- 치안 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폴리스랩 2.0 사업을 추진하여 4족 보행 순찰로봇 개발, 아동 학대 증거영상 분석 등 19개 연구 과제 선정·지원('21.~)
- 신속한 연구개발 착수를 위한 관계부처(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행정절차 개선, 재난·재해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과 지속적 대국민 소통 지원, 실생활 관련 주제에 대한 국민생활 과학기술 포럼(매년 약 10회) 개최

  * '19년 사업 착수 이후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로살얼음, 과수화상병, 해양방사능 유출 등 36개 과제에 긴급대응 연구개발 착수

- 공공서비스 혁신 및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을 위해 우수 연구개발 결과 대상 실증, 인증 및 공공조달 연계 등 패키지 지원
  - 20개 과제('19. 9개, '20. 2개, '21. 8개, '22. 1개) 리빙랩 기반 실증, 시험·인증
  - 평가등급 우수 이상인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 신청 시 자격조건 완화 및 신청서류 간소화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관련 「재난안전법」 개정('19.)
-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수립·이행('20. 1.~)
  - 보행자 교통안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보행안전지수 산정 등 근거 마련('20. 12.)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권 강화를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22. 1.)

–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2.~'26.)' 수립을 통해 보행중심 사회 실현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방향 제시('22. 8.)

•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높이고 학교, 공공건축물 등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하여 지진 안전성 강화

* ('21.) 72%→('22.) 75.1%→(~'35.) 100%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인센티브 확대('22. 기준, 311건 완료)를 통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유도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축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5%) 감면 일몰기한 연장 (당초 '21. 12.→변경 '24. 12.) 및 감면 신청기한(당초 100일→변경 180일) 연장

• 효율적인 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훈련 실시

– 지진·지진해일 대응부서 및 관계 부처 주기적 훈련 실시('21. 9회, '22. 7회)

–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 대비 관계 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응훈련을 위해 지진대응체계 점검('21. 11., '22. 6.)

• 지진발생을 대비한 상시 위기징후 관리 및 대비태세 확립

– 제주 서귀포 해역 지진('21. 12. 14. 규모 4.9), 충북 괴산 지진('22. 10. 29. 규모 4.1) 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운영

• 지진 교육기반 마련 및 지진 안전문화 확산 기여

– 특수학교용 지진교재 및 그림·영상 등 콘텐츠 개발·배포, 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 대상 찾아가는 지진안전교육* 실시

* ('19.) 12개교→('20.) 48개교→('21.) 67개교→('22.) 98개교

– 지진안전주간(매년 9월 둘째 주) 운영, 생활 속 매체를 통한 지진대피 행동요령 홍보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시설·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

- 하절기·동절기 안전관리실태 점검, 유원시설 안전정보망과 등록야영장 정보망에서의 안전정보 대국민 공개,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한 유원시설, 야영장, 관광숙박시설 안전관리 강화
- 체육시설 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정기 및 주요 계기별 안전점검 실시, 시설 및 위생·안전기준 관련 법제도 정비,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등 안전경영 문화 확산
- 노후되었거나 긴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
- 안전관리 역량 향상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별 매뉴얼 작성·배포 및 훈련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진행

### ② 재해에 강한 국토 기반 조성

-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국토교통 분야 SOC의 내진성능 확보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해 수립된 3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21.~'25.) 및 연도별 내진보강대책에 따라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실시
  - 내진설계 기준 강화 전에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은 추가적인 내진 성능향상 검토
-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지속 확충
- 차량 단속 상시 실시 및 일정 규모 이상 업체(50대 이상 보유) 전수·불시점검
- 3.5톤 이하 화물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24.~'27.)하고,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23.)

### ③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생활문제(치안, 안전) 해결 추진

- 개발된 원천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과학치안 기반의 폴리스랩 생태계 확대

  –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분석,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시스템, 아동 학대 영상분석 시스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플랫폼, AI기반 위·변조 영상판독시스템 등 19개 기존 선정과제 관리·지원('24.)

  – 신규과제 발굴 및 현장 적용 지원('24.~'25.), 폴리스랩 3.0 기획 및 추진('26.~'27.)

- 부처·청·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까지 수요 발굴 대상을 확대·강화하여 다양한 현안에 긴급대응 연구 착수, 연구개발 성과 활용도 제고

  – 상시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실증·확산 지원(~'23.), 후속 사업기획 및 추진(~'24.)

### ④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지진안전주간 운영, 지진안전 누리집 운영, TV·라디오·SNS 등 광고 송출 홍보를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지진안전문화 정착

- 자력대피가 어려운 특수학교 학생의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수학교 학생·지도교사 대상 지진안전교육 실시

### ⑤ 재난 · 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 재난피해자를 위한 알권리 충족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원스톱 피해 지원방안 마련을 내용으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 사고수습, 피해지원, 피해자 유가족 간의 명단 확보 및 공유의 법적근거와 절차 마련 관련 재난피해자 지원 체계 확립방안 연구('23.~'24.)

- (가칭)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25.), 재난·사고 등 긴급 위기 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홍보 방안 마련

- 위기·취약가족 지원사업의 지역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기관 전국적 확대 추진 ('22. 93개소→'23. 98개소)

# 4.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8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 포함)
- 자유권규약 제18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강제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
- 아동권리협약 제14조 제1호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목 (vii)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2조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관련, 찬반 의견이 대립하며 현재 국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고,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와 관련하여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

– 헌법재판소는「국가보안법」제7조의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 이중처벌 금지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6헌바 361 결정)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 최근 5년간「국가보안법」위반 입건* 및 기소** 건수 추세

  * 입건(명) : ('18.) 20→('19.) 23→('20.) 32→('21.) 35→('22.) 97

  ** 기소(명) : ('18.) 6→('19.) 1→('20.) 5→('21.) 20→('22.) 15

- '18년~'22년「국가보안법」위반 사범 중 총 63명 기소유예 처분
- 법무연수원 공안수사 교육을 통해「국가보안법」위반 신중 의율 교육 지속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 사안의 중대성,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 남용 방지를 위한 수사관계자「국가보안법」위반 신중 의율 교육 지속

## 5. 표현의 자유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9조
  -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 포함)
- 자유권규약 제19조
  -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 포함)
-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호
  - 표현에 대한 자유권(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 포함)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목 (viii)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
-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제1호 (나)목, 제2호 (바)~(아)목, 제21조, 제31조 제3호
  -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 촉진
  -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촉진
  -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 촉진
  - 의사 및 표현의 자유(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얻고 전파하는 자유 포함)

–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 유형에 적합하게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

–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수화, 점자, 확장적이고 대체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

–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에 대해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 제공 촉구

–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에 장려

– 수화의 사용 인정·증진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통계의 보급 및 이에 대한 접근가능성 보장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항
-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중 광고 등 시설물설치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357 결정)
-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 선고(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164 결정)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 방송환경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방송시청에 대한 권리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에 반해,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동등하게 미디어에 접근·활용·향유할 수 있는 환경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모든 국민이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를 향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실현 필요

####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한 자는 그 내용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가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요청에 대해 삭제 또는 임시조치(임시차단조치, 최장 30일) 가능

  – 하지만, 정보게재자는 자신이 게재한 정보의 권리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삭제·임시조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경우 권리침해 정보가 임시조치 기간 뒤 원상복구되어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 발생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편의성 제고

  –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이용 편의 및 시청격차 해소를 위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TV 기능개선*·보급(연 15,000여 대) 및 유료방송 셋톱박스 장애인방송 호환성 기술개발

  * 자막크기·색상·위치변경 및 분리, 수어화면 확대, 음성안내 기능, 블루투스기기 연결 등

•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콘텐츠 제작지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연 40여 편) 및 장애인의 기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방송콘텐츠(연 4천여 편) 제작·보급

•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기술 개발 강화

–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방송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어영상의 위치·크기 조정 및 제거가 가능한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제공(9개사)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과 단계별 시범서비스 및 실태조사 실시

###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 임시조치 및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반영한 국회 입법 지원

– 임시조치 기간 축소(30일→20일), 임의의 임시조치 폐지, 정보게재자의 반론권 확보(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 지원

– 위법성 조각사유 신설 및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벌금 5천만 원→7천만 원 상향)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 지원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및 친고죄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 지원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 실시간·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각·청각장애인용 교육 콘텐츠(초·중·고교) 및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영유아·학령기·성인기) 콘텐츠 제작·보급 확대
-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 미디어의 음성을 자막·수어로 변환하는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인터넷 등 신규 미디어접근권 향상
- 장애인방송 인식 개선 홍보 영상 제작·송출, 배리어프리* 공모전 개최 및 대국민 인식 전환 캠페인 등 홍보 강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 ②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 임시조치 및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온라인상 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삭제·임시조치될 경우 정보게재자에 이의제기권을 부여하는 등 삭제·임시조치 후속절차 마련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삭제·임시조치의 적절성 여부 검토, 당사자·이용자·사업자 간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 담당

## 6. 결사·집회의 자유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0조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결사에의 참여 강요 금지
- 자유권규약 제21조
  - 평화적 집회의 권리
-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호, 제15조 제1호
  - 표현에 대한 자유권(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 포함)
  -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목 (ix)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 청소년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수련시설의 정책 및 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포털 등의 활용 필요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 · 시위 기준 마련**

•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 등의 금지를 재량행위로 규정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대규모 집회로 인한 감염 전파 가능성을 차단시키기 위해 필요

○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

• 경찰은 시간 ·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 시간 ·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각 단체의 집회 장소 주변에 경찰인력을 배치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장소 분할, 구획된 공간에서 개최토록 보장

•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권고 결정(22긴급10) 관련하여, '경찰청 이행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고 적극 이행 중('22. 4.)

–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신고가 있는 경우,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고, 타 단체 집회 방해 시 사법처리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적극 노력

– 현장에서 단체 간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각 단체별 전담 대화경찰관을 지정·배치하고, 명예훼손·모욕 행위 발생 시 즉시 중단토록 경고 등 적극 조치

–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 진행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

※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 ('17.~'19.) 188개소→('20.~'22.) 233개소

※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 ('17.~'19.) 305개소→('20.~'22.) 331개소

– 지역사회 ‘청소년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매뉴얼 마련·배포 등 독려

– 지역별 청소년 참여활동의 신규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20. 신규)

* (’20.) 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범운영→(’21.) 1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22.) 1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 온라인을 활용한 청소년 참여 기반 강화

–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참여포털’ 모바일 페이지 기능개선 및 정책제안 게시판 상시 운영(’20.~)

–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21. 6.~8., ’22. 6.~7.) 및 대한민국청소년원탁회의(’21. 8., ’22. 7.) 개최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 기반 강화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등 지원

•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 정책제안 공모전, 청소년원탁회의 등 다양한 청소년 의견수렴창구 운영,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기능 개선

### ②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 · 시위 기준 마련

•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원칙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감염병예방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27.)

### ③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

- 모든 단체의 폭넓은 집회권 보장을 위한 '중복집회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연구용역('22. 5.~11.)을 통해 경찰에 분할개최 명령권 부여, 분할개최 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 입법 개선방안 도출
- 향후 중복집회와 관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 3항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시, 개정 필요성 제시
- 충분한 병력과 장비 배치를 통해 단체 간 마찰을 방지하여 집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회적 소수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7. 사생활의 자유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2조
  -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 금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17조
  -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명예와 신망에 대한 불법적 비난 금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장애인권리협약 제22조, 제31조 제1호
  - 사생활·가족·가정·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한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과 명예와 명성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금지, 이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 동등하게 보호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에서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 준수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통계의 수집과 이용 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윤리원칙을 준수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 제16조~제18조
-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출소 후 무기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2항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바479 결정)
- 대법원은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 헌법재판소는 '위치정보 추적자료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법원의 허가에 수사의 필요성만 요건으로 하여 절차적 통제에 문제가 있어 개인정보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등 결정)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전기통신 감청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대해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결정)
-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사후통지 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결정)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보안관찰제도 운용 합리화

- 안보위해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양심과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제도를 보다 실질적이고 엄격하게 운영 필요

#### ○ 수사 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전 세계적 데이터베이스 실현과 사물인터넷 등 무선 네트워크 시대 개막에 따라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요청
  -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으며, 매년 15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크게 대두
  - 통신기술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통신 가입자, 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 등 통신 관련 정보 보호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의 핵심이 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 역시 증가

#### ○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에 따라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실효성 제고 방안을 위해 지속 검토 필요

| 법무부 | 여성가족부 | 경찰청 |
|---|---|---|
| 신상정보 등록·관리<br>신상정보 유관기관 전송<br>등록 면제·종료<br>형사사법포털 운영 | 신상정보 공개<br>신상정보 고지<br>성범죄자알림e 운영 | 신상정보 제출서 접수<br>사진촬영<br>신상정보 진위여부 점검<br>위반자에 대한 입건, 수사 |

○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 최근 대법원은 임의제출물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적법한 압수 범위에 관하여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 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위 전원합의체 판결)

-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자체가 아닌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한정하여 압수하는 것이 원칙

○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보인권 보호**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집중관리시스템 선정을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현황조사 추진('22. 7.)

  – 각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및 민감정보나 주민등록정보 처리를 중요 요소로 삼고, 선정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 적용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보안관찰제도 운용 합리화**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4명 중 3명을 비검사 출신으로 구성하여 외부위원 다양화

- 대상자에게 유리한 정상에 대한 적극적 사안조사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도모

• 당사자가 불응하지 않는 한 가급적 대면·전화조사 등을 통한 실질 사안 조사 시행

• 공공수사 교육을 통해 보안관찰제도 운용 시 필요한 유의사항 숙지 및 인권침해방지 교육 지속 예정

### ○ 수사 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 법무부, 대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간 8회의 협의를 통해 통신수사 시, 법정 요건과 절차, 판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자는 공감대 형성('18. 1.~'19. 10.)

• 「통신비밀보호법」 3차례 개정

– 통신제한조치 총 연장기간 신설(원칙 1년, 안보범죄 3년), 위치정보 추적자료·기지국 수사의 보충성 요건 신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범위 확대(기소중지·수사 중) 및 요청사유 통지 신청권 부여('19. 12.)

– 인터넷 회선 통신제한조치 집행 종료 후 법원에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 제도 신설('20. 3.)

– 단시간 내 종료 시 긴급통신제한조치 법원의 사후 허가 불요 규정 삭제 ('22. 12.)

• 사법경찰관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 검사 승인청구·기각서, 폐기결과보고서 등 법 개정에 따른 「검찰사건사무규칙」 서식 정비('20. 4.~'21. 1.)

### ○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 누적 등록사건 116,434건('22.)으로 약 11만 건을 등록·관리 중이며, 공개·고지집행을 위해 신규·변경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전송

• 신청자가 직접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한 면제심사 및 결과 통보(3,662건)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20. 2.)

- 고위험자(공개·고지 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 일제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정보 현행화로 오(誤)정보 공개 방지

  - 점검횟수(회) : ('19.) 4→('20.) 6→('21.) 7→('22.) 12

  - 점검건수(건) : ('19.) 9,362→('20.) 14,541→('21.) 12,017→('22.) 18,862건

-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간 신상정보 유관기관 정기협의회 개최(연 3회 개최)

- 표준화된 업무처리 및 오 등록 방지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질의·답변을 담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길라잡이' 제작·배포(경찰서 258개 기관 및 교정시설 54개 기관)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보안관찰제도 운용 합리화

- 안보위해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제도를 보다 실질적이고 엄격하게 운영

  - 보안관찰제도 운용 시 필요한 유의사항 전파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유관기관 회의 개최

  - 충실한 사안 조사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적극적 지도 및 보호 조치 실시

- 외부위원 구성 다양화 등을 통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심의를 도모하고 외부 의견 적극 청취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 결정) 취지에 따라 법령 개정 추진

### ② 수사 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 전국 검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통신 관련 정보 확인 시 법정요건과 절차, 판례 기준 철저히 준수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용자에게 사후통지를 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23.)

### ③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가 오 정보(오기, 착오, 누락, 허위 등)인 때 법무부 직권으로 정정하고 일제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공개정보 제도 실효성 제고
- 판결문 등 신상등록관련 비전자기록물 이미지화를 통해 전자문서 사용환경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록관련 서류의 접수 소요시간 대폭 감소

  ※ '24년 말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판결문, 신상정보 제출서 등 기존의 종이기록물이 전자문서로 대체되어 유통

-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실무협의체의 정기(연 3회)·수시 운영을 통해 신상등록정보의 효과적인 관리 및 신상공개정보의 정확성 제고

### ④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 재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또는 하위 법령 개정 검토
-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을 통해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 시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고, 수시 보완 노력 지속
  - 선별압수 원칙 준수, 제출자의 참여권 보장, 주요 서식의 교부, 자필서명을 통한 임의제출의사 확인, 임의제출물이 향후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
  - 전자정보와 관련성 없는 범행도구로서 사용된 매체를 임의제출 받은 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등이 필요해진 경우, 전자정보에 대해 별도의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수색영장 신청
- 현장수사관 대상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관련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경찰·검찰·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관련 세부 절차 통일 지속 추진

### 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보인권 보호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주요 시스템을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하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통해 당해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안 제시 등 입법 지원

## 8. 거주·이전의 자유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3조
  -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할 권리
  - 국내에서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 자국을 포함하여 나라를 떠날 권리와 돌아올 권리
- 자유권규약 제12조, 제13조
  - 모든 사람의 영역 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
  -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권리
  -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
  - 당국에 있는 외국인은 법에 따른 결정만으로 추방될 수 있고,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음
- 아동권리협약 제10조
  -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아동 또는 부모의 입·출국 신청 신속 취급
  -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의 정기적 면접교섭 유지권,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고려하여, 아동과 부모가 본국을 포함한 국가로 입·출국할 권리 존중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5조 제4호
  - 이전에 관한 법과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 부여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목 (i), (ii)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국내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하고 귀국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나)목, (라)목, (마)목, 제18조 제1호 (나)~(라)목, 제19조 (가)목, 제20조
  - 물리적 환경, 교통,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 보장(특히 건물, 도로, 교통,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공표하고 그 이행 감시
  -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
  -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 표지판을 설치
  -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
  -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장애를 이유로 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능력 박탈 금지
  -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
  -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모국에 입국할 권리 박탈 금지
  -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
  -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 특정한 주거형태 강요 금지
  - 최대한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

– 선택한 방식과 시기,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개인적 이동 촉진
–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사람 및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에 대한 장애인 접근 촉진
–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 제공
–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가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4조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증대 필요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공공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지속 확충 필요

#### ○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

• 도서주민이 부담하는 내항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완화를 통한 도서주민 교통편의 증진 필요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보급 지속 지원

  * 저상버스 보급(대) : ('18.) 8,038→('19.) 9,016→('20.) 9,840→('21.) 10,828

  ** 특별교통수단 보급(대) : ('18.) 3,187→('19.) 3,457→('20.) 3,914→('21.) 4,074

  – 마을·농어촌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 마련('18. 12.)

  –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기준 개선(보행상 장애인 200인당 1대→150인당 1대)

- 공공형택시 운영 활성화

  – 공공형 택시 도입 시가 ('18.) 49개→('19.) 57개→('20.) 60개→('21.) 61개→('22.) 61개로 지속 증대

  – 공공형택시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개최, 철도연계 서비스 개시('18.), 연구용역 실시('19.~'20.),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20.), 운영성과 점검('21.)

#### ○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

- 단거리 생활구간을 이용하는 도서주민에 대한 운임지원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20.~)
- 미취학 도서주민이 무상으로 지역 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지원 확대('22.~)
- 준중형·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운임을 30~50%까지 확대 지원('19.~)하고 5톤 미만 화물차에 대한 운임을 50%까지 확대 지원('20.~)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시행('23. 1.)을 통해 보급률 제고

  – 「교통약자법」 하위법령 정비('23. 1.) 및 저상버스 도입 지원예산 확대

  ※ 저상버스 도입률(%) ('22.) 34→('26.) 62

  – 국가연구개발 R&D('23.~'26., 국비 250억 원)를 통해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광역 좌석형 저상버스 개발 및 도입 의무화('27. 1.)

- 「교통약자법」 하위법령 정비('23. 7.)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방안 마련,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24시간 운영, 광역권 이동) 및 환승·연계 체계 구축 추진

-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형택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거점과 배후 마을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 활성화 도모

### ②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

- 도서주민 차량 생산지, 연료 종류, 크기 등에 따른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운임지원 확대 ('23.~)

- 도서주민의 부담액이 육지대중교통 수준(≤3,500원)으로 낮춰지도록 내항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추진

# 9. 인격권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2조
  -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 금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17조, 제24조 제2호 및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8조, 제16조
  -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명예와 신망에 대한 불법적 비난 금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모든 어린이의 출생 후 즉시 등록, 성명을 가질 권리
  - 아동의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 당국은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특히,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
  -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불법적 박탈 시 신속한 회복을 위한 원조와 보호 제공
  - 아동의 사생활·가정·주거·통신에 대한 자의적·불법적인 간섭 금지, 아동의 명예·신용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 금지
  - 이러한 간섭과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장애인권리협약 제18조 제2호, 제22조, 제31조 제1호
  - 출생 즉시 등록, 출생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
  - 사생활·가족·가정·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한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과 명예와 명성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금지, 이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 동등하게 보호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에서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 준수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통계의 수집과 이용 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윤리원칙을 준수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 제17조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전자감독제도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 전자감독제도 운용을 통해 재범위험성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자장치 성능개선을 통한 대상자의 생활편의성 증진 등 인권침해적 요소 최소화 필요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전자감독제도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 휴대용 추적장치의 기능을 전자발찌에 통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할 필요성이 없도록 편의성이 향상된 일체형 전자장치 보급* 및 소형·경량화

* ('18.) 1,800세트→('19.) 1,420세트→('20.) 330세트

- 전자식 탈부착방식을 적용해 탈부착 시간이 단축된 개량형 전자장치 보급*

  * ('20.) 1,293세트→('21.) 2,229세트→('22.) 2,300세트

- 전자감독대상자 사회적응력 향상 및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심리치료* 확대실시

  * 집행 횟수(회) : ('18.) 10,620→('19.) 14,427→('20.) 9,740→('21.) 14,381→('22.) 14,902

- 재범위험성 분석을 통한 부착명령 임시해제 실시*

  * 실시 인원(명) : ('18.) 157→('19.) 142→('20.) 123→('21.) 530→('22.) 407

- 법령에 근거한 수신 자료 제공* 및 '수신자료 폐기 대상 확인의 날'(월 1회) 운영 등 체계적 관리

  * 제공(건) : ('18.) 39→('19.) 46→('20.) 22→('21.) 140→('22.) 314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전자감독제도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 개량형 전자장치의 조기 보급 및 지속적인 전자장치 성능개선 추진으로 생활 편의성 증진
- 심리치료 전문 인력 확보 및 외부자원 확보 등을 통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사회적응력 향상 및 스트레스 경감
-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위험성에 따라 부착명령 임시해제 적극 실시

## 10.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7조, 제8조, 제10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에 위반되는 차별과 차별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기본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
  -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평등·공정하게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
- 고문방지협약 제13조, 제14조
  -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당국에 고소하여 신속하고 공평하게 조사를 받을 권리 보장, 고소 또는 증거제공으로 인해 부당한 취급이나 협박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 조치
  - 고문행위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 보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이 배상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호, 제14조 제1호,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현행의 입법 등이 없는 경우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조치 등 이행
  -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효과적 구제조치 확보, 권한있는 사법·행정·입법 당국 또는 기타 당국에 의한 권리 결정 및 사법적 구제조치, 구제조치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집행
  - 재판에 있어서 평등, 법률에 의해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 차별에 대하여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

• 아동권리협약 제39조

–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5조 제2호

– 민사문제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이를 행사할 기회 부여, 특히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일한 권리 부여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a)목, (b)목, 제6조

– 법원 및 기타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 폭행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인간의 안전 및 보호를 받을 권리

– 권한 있는 국가법원 및 기타 기관을 통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효과적 보호·구제 보장

– 인종차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변제를 구할 권리 보장

•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 제5조 제1호, 제2호, 제13조 제1호, 제16조 제3호, 제5호

– 장애로 인한 차별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

–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

–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 보장

–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

–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입법과 정책을 포함한 효율적인 입법과 정책 마련

•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2조 제1호, 제24조

– 강제실종 주장자의 신고할 권리 및 지체없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 착수

– 강제실종의 정황, 수사 경과 및 결과, 생사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 보장

– 실종자 수색, 소재 파악 및 석방, 실종자 사망 시 소재 파악 및 송환 등을 위한 당국의 적절한 조치

– 피해자들이 배상과 신속하고 공정하며 적절한 보상 받을 권리 보장

– 실종자의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의무

–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관련 기구 및 단체를 결성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보장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과거사 관련 위헌결정을 존중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조사·구제**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강화 추진 필요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및 구제

### ○ 군 장병 인권 보호

- 지속적 병영문화·복무여건 개선 추진으로 장병 기본권보장 수준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군 내 인권침해 예방·신고·구제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지속 필요
- 군 내 취약계층의 인권보장 및 인권침해 구제를 통한 임무수행 여건보장 필요
  - 장병 인권침해 상담·신고시스템, 인권자문제도 운용 및 군인권지키미시스템, 국방인권모니터단, 군인권자문위원회 운영
- 국방부, 각 군 참모총장,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한 정기 인권 실태조사
- '21년 기준 5년간 복무 중 자살한 장병(병, 간부)은 총 294명으로 예방대책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

  ※ 자살률 비교(10만 명당 자살자 수, '21.) : 군 14.1명, 사회 전체 26명

### ○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 집단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도 매우 큼
  - '22년 중앙행정기관 1,169건, 지방자치단체 6,633건 등 총 7,802건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이 중 100인 이상 집단민원은 1,785건(22.9%)('22. 민원서비스종합평가)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집단 고충민원 건수는 최근 5년간 증가추세*

    * 집단민원 접수 현황(건) : ('18.) 229→('19.) 266→('20.) 299→('21.) 311→('22.) 317
- 장기화된 갈등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의 전문적 해결을 위해 제도적 보완 필요

### ○ 회복적 경찰활동

- 피해자가 사법절차에서 소외되고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는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전통적 형사사법 체계의 대안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과 치유를 핵심 가치로 삼아 당사자·공동체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이 등장

- 지역사회에서 갈등·분쟁 및 범죄 발생 시 경찰과 지역공동체가 협력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피해자 간 관계회복,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안정 실현을 목표로 하는 '회복적 경찰활동' 도입

- '22년 1,203건 접수, 대화완료 1,007건, 조정 성사 899건, 피해자·가해자·경찰관 모두 대체로 긍정적 평가

### ○ 군 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보강

- '21년 5월 공군·'21년 8월 해군 여군 부사관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등 안전한 국방환경 조성 요구가 확산되어, 민간 전문가, 정부 부처, 정책수요자(장병·여군)로 편성된 민·관·군 합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간담회·설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성폭력 예방 분야 15개 과제 권고('21. 10.)

〈군내 여군 인력 비율 현황〉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평균 | 5.9% | 6.2% | 6.7% | 7.4% | 8.1% | 8.8% |
| 장교 | 7.4% | 7.9% | 8.6% | 9.2% | 10% | 10.9% |
| 부사관 | 5% | 5.3% | 5.8% | 6.5% | 7.2% | 7.9% |

### ○ 진실 · 정의 · 배상 · 재발방지의 원칙에 의한 과거사 청산, 전환기적 정의의 구현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독립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수행하고, 희생자·유족 결정 및 배·보상 업무는 개별법에 근거해 담당 기관에서 처리

  – 한국전쟁 전후사건은 「거창사건법」*, 「4·3사건법」**, 「노근리사건법」, 「여순사건법」*** 등에 따라 진상조사 및 희생자·유족 결정

  * '60년 진상조사, 희생자 934명('97.~'98.)

  ** '00년~'03년 진상조사, 희생자 14,660명(1~7차 신고), 의료지원금 8억 원(136명)

  *** '99년~'01년 진상조사, 희생자 226명 ('04.~'08.), 의료지원금 5억 원(36명)

– 민주화운동은 「5·18보상법」*,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 「3·15 의거법」에 따라 진상조사 및 관련자 결정, 보상금 등 지급

* 5,801명, 2,526억 원(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위로금)

** 4,938명, 1,146억 원(보상금 429억 원+생활지원금 717억 원)

*** 137명, 41억 원(보상금 36억 원+생활지원금 5억 원)



### ○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

• 가습기 살균제, 라돈침대, 아기욕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와 직결되는 소비자 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거래 증가에 따라 해외 위해제품의 소비자 안전 위협 이슈 발생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조사·구제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 실태점검

※ 기관 실태조사 : ('18.) 영월교도소 등 36개→('19.) 진주교도소 등 31개→('20.) 부산구치소 등 47개→('21.) 광주교도소 등 12개→('22.) 국립법무병원 등 24개

※ 개선요구(건) : ('18.) 60→('19.) 97→('20.) 150→('21.) 47→('22.) 80

※ 설문조사(명) : ('18.) 3,103→('19.) 3,801→('20.) 5,642→('21.) 782→('22.) 1,516

※ 개별 면담(명) : ('18.) 457→('19.) 261→('20.) 251→('21.) 164→('22.) 368

•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직원 인권교육* 실시

* ('18.) 162회, 6,161명→('19.) 157회, 7,211명→('20.) 34회, 1,846명→('21.) 46회, 1,160명→('22.) 79회, 2,381명

• 인권침해 신고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직접조사* 강화

* ('18.) 1,778건→('19.) 2,138건→('20.) 2,532건→('21.) 2,622건→('22.) 2,584건

• 화상조사시스템 확대 설치*

* ('18.) 40개소→('19.) 47개소→('20.) 55개소→('21.) 57개소→('22.) 63개소 구축

• 다수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도입, 실시('21.)

– '소년보호기관 의료처우 실태점검' : 서울소년원 등 6개 소년보호기관 점검 후 간호사 정원 확대, 의료장비 관련규정 마련 등 개선방안 마련·권고('21. 5.~7.)

– '외국인보호소의 실질적 보호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권 제한 요소 점검' : 3개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보호소 직원 의견 청취, 인권단체 간담회 실시 후 화성외국인보호소 '개방형 보호시설' 시범실시에 적용할 기본권 제한 최소화 방안 마련·권고('22. 2.~4.)

– '교정기관 내 수용자 간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 : 서울구치소 등 7개 교정기관에 대한 점검 후 폭행사고 예방 관련 개선 필요사항을 마련하여 교정본부 및 조사 대상 기관에 권고('22. 10.~12.)

• 전국 교정시설 수용처우 관련 교정혁신추진단과 협업하여 수용자 전수조사 실시 및 수용시설·운동·의료처우·급양·보호시설·작업·직업훈련·청원 관련 절차 개선, 외부교통권 확대 등 개선안 마련('21.)

• 노역장 유치 수형자 인권 보호 T/F('20.~'21.)

• 검찰 인권감독관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통해 인권감독관의 역할 및 위상 강화방안 마련·권고('21.)

•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속칭 '새우꺾기') 사건에 대해 5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권고('21.)

### ○ 군 장병 인권 보호

- 장병 급여는 '17년 21.6만 원에서 '22년 67.6만 원으로 3배 증가
-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군 인권상담 및 진정조사 수시 실시 및 주요 인권침해 상담·진정 처리 사례 전파
- 매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한 정기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장병 인권상황 파악 및 장병의 인식 변화 추이 분석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 정원 확대(명) : ('18.) 383→('19.) 522→('20. 이후) 660
  - 예산편성 확대(억 원) : ('18.) 166→('19.) 201→('20.) 281→('21.) 315→('22.) 332
- 병영문화 개선을 통한 장병 기본권 보장
  - 군인복무기본정책 제정('17. 1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여 정책 추진('18.~'22.)

    ※ 정책 추진과제 : ① 군인 기본권 증진기반 조성, ② 군인의 의무준수 생활화, ③ 존중과 배려의 병영생활 정착, ④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
  - 장병 사적 지시 및 운용 근절을 위한 규정 반영('18. 12.)
  - 군내 취약계층의 침해 방지를 위한 현장활동(지도방문) 정례화(반기 1회),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우수부대 선발 정례화(반기 단위)
  -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20. 7.), 변화된 병영환경을 반영한 '대대급 이하 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 최신 버전 재발간('20. 12.)
  - 폐지된 군 영창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군기교육제도 신설('20. 8. 5.), 군기훈련(舊, 얼차려) 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20. 5. 26.)
- 장병 인권침해 상담·신고시스템 운영
  -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을 통한 상담(11,671건), 진정(555건) 처리('18.~'22.)
  - 군인권자문위원회 운영(연 4회) 및 국방인권모니터단(장병 40명, 시민 15명) 운영, 군인권자문변호사제도 운용('20. 전면 시행, 105개 부대 대상)

○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 집단민원 총 559건을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하여 234,731명의 민원을 해소('18.~'22.)
  - 특히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보급에 대한 정부 약속 이행('21. 6., 21,765명), 경주 희망농원 한센인촌 열악한 주거환경 대책 마련('20. 10., 137명) 등 다수부처 관련·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해결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조사 · 구제

-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및 구제
  -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진정에 신속·적극 대처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조사시스템을 지속 확충하고 적극 활용
  - 전화, 이메일, 화상조사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 조사 및 직접조사 강화
- 인권 침해 예방 및 제도 개선 노력
  -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주제별·집중 실태조사 지속 실시, 소속기관에 대한 인권 보호 상황 평가를 통한 인권 보호 실태점검 및 제도 개선

### ② 군 장병 인권 보호

- '군인권개선추진단' 창설에 따라 인사(군인복무기본정책), 복지(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법무(인권정책종합계획) 등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군 인권정책 추진체계 제도의 전반적 정비
- 외부 전문기관 교육 등을 통해 군 간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자살 예방 전문교관으로 양성하고 전 장병 대상 자살 예방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자살 예방 교육 강화

- 상담인력 자격 기준을 재정립하고 상담관 감정소진 회복을 지원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전문성 강화
- 심리상담이 필요한 장병 대상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지원 강화, 내부상담을 꺼리는 간부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민간심리상담 확대 추진
- 인권상담, 인권침해 구제 및 자문 제도 운용 내실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 SNS를 통한 상담 등 상담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상담 접근성 향상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군인권자문위원회를 군인권개선자문단으로 확대 운영
  - 국방인권모니터단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제안 접수 활성화

### ③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 처리 역량 강화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장기 표류 중인 집단민원을 조정을 통하여 집중해결
-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민원의 조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신청권 규정을 신설
- 각급기관 민원 담당 직원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를 통하여 각급기관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평가하고, 피드백 및 컨설팅을 통해 해당 기관에 환류 유도

### ④ 회복적 경찰활동

- 회복적 운영관서 확대('21. 200개서→'22. 230개서→'23. 258개서 전 관서 확대)
- 회복적 경찰활동 전문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제도 운용의 양적·질적 제고방안 모색, 우수사례 및 성과 대내외 홍보, 경찰관 대상 전문교육 주기적 실시

### ⑤ 군 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보강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및 '성희롱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추진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
  - 성고충전문상담관을 '21년 50명에서 '23년 150명으로 확대 추진
  - 사건처리 관계자 및 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 위탁교육
  - 군내 및 군외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등) 활용 확대하여 다양한 채널 구축하여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의료 등 지원 서비스 강화
- 전 장병·군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교육자료 개발, 성인지교육 민간 전문강사 및 군 전담교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 양성평등소통자치협의체 운영,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컨설팅, 군 성폭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 및 제도 발전

### ⑥ 진실 · 정의 · 배상 · 재발방지의 원칙에 의한 과거사 청산, 전환기적 정의의 구현

-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20. 12.~'24. 5., 1년 연장 가능)
- 제주4·3 희생자에게 1인당 9천 만 원 이하(유족은 「민법」 상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분 지급)의 보상금 지급(~'26.)

### ⑦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

- '해외위해제품 협의체' 참여기관 확대('23.), 해외 소비자 기관과의 국제소비자 MOU 체결('25.)
- 안전 인증정보 One-Stop 서비스 구축('24.) 및 기능 개선('27.)
-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보건소·어린이집까지 확대('26.)

# 11. 참정권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1조
  -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정부에 참여할 권리
  -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질 권리
  -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자유투표 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되는 권리
- 자유권규약 제25조
  -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
  -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이 보장된 진정한 정기적 선거
  -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가)목, (나)목
  -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공기구에의 피선거권을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여성에게 확보
  - 정책입안·정책시행에 참여, 공직에 봉직하여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를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여성에게 확보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c)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할 권리와 보통·평등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할 권리, 공공업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할 권리와 공공업무에 접근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가)목

–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

– 투표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

–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 보호

–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 보호

– 유권자로서 장애인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투표에 도움을 받도록 인정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24조, 제25조, 제72조, 제130조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 의사결정영역에서 성별균형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3차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 계획('23.~'27.)' 내 관리직 임용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점검 관리,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 발간·공개 등을 통해 이행 추진

※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치 : ('23.) 11.5%→('27.) 13.5%

※ 여성 본부과장급 목표치 : ('23.) 27.2%→('27.) 30%

• 공직 내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 점검·독려 필요

○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2년 기준 3.66%로 의무고용률('22.~'23. 3.6%)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향후에도 지속 상승('24. 이후 3.8%)하기 위해서는 채용 여건이 열악한 장애인의 공직 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 공무원이 공직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등 개선 필요

○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교육환경 및 수험준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채용 확대로 공직 대표성 강화,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추진 필요

○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지역인재를 균형있게 등용하여 공직 내 대표성을 강화하고 중앙·지방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학교 활성화 도모 필요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국립대학교, 군·경찰 등 주요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 고위공무원(%) : ('18.) 6.7→('20.) 8.5→('22.) 11.2
  - 본부 과장급(4급 이상, %) : ('18.) 17.5→('20.) 22.8→('22.) 26.4
  - 지방자치단체 과장급(5급 이상, %) : ('18.) 15.6→('20.) 20.8→('22.) 27.4
  - 공공기관 임원(%) : ('18.) 17.9→('20.) 22.4→('22.) 23.6
- 고위공무원 11.2%, 본부 과장급 26.4% 등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 권한을 갖는 여성 임용 확대('22.)

○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지속 추진 및 근무지원 사업 확대

– 매년 중앙행정기관 법정 의무고용률* 초과 달성 및 지속 상승 중이며,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및 개선

* 중앙부처 장애인 고용률(%) : ('18.) 3.43→('19.) 3.56→('20.) 3.67→('21.) 3.68

** 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휠체어용 책상, 문자전화기, 특수키보드 등

*** 장애인 고용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지원 가능

○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9급 공채에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지원 대상자) 구분모집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을 통한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5*·7급** 공채시험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통해 우수 지방인재 적극 선발

* '22~'26년 연장 추진 완료

** '20~'24년 연장 추진 완료

– 지역인재 7·9급 선발* 지속 추진

* ('18.) 310명→('19.) 350명→('20.) 390명→('21.) 480명→('22.) 545명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연장 시행('23.~'27.)을 통하여 입직단계부터 성비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여성비율 지속 관리

### ②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국가공무원 장애인 채용 확대 정책 지속 추진
  - 7·9급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 비율(법정 의무고용률 이상)은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채용
  - 중증 장애인 일괄 경력경쟁채용시험 지속 추진 및 부처별 수요 적극 발굴

### ③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전체 선발예정 인원의 2%를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채용하여 저소득층 채용 지속 추진

### ④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연장 운영 및 지역인재 7·9급 선발 지속 추진을 통해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사람은 타인과 함께 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한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이를 위해 노동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등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1. 노동권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4호, 제24조
  -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
  -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
- 사회권규약 제6~8조, 제10조 제3호
  -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 포함)

-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모든 근로자에게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공정한 임금,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여성에 대한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의 보장,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에게 사회권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휴식, 여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 정기적인 유급휴일)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할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 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
-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 군인, 경찰 또는 행정관리가 노동조합 결성·가입권 및 파업권에 대한 합법적인 제한 부과 허용
-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 경제적·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처벌, 연령제한을 정하여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

• 아동권리협약 제32조
- 아동에게 유해한 노동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마련, 고용연령과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 수단의 규정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제1호
-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확보(근로의 권리,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직장안정·역무의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직업훈련·재훈련을 받을 권리, 수당을 포함한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의 질 평가에 있어서의 동등한 처우, 동등한 가치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 유급휴가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건강보호권 및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목 (i), (ii)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근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는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당하고 알맞은 보수 등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제1호 (가)~(마)목, (사)~(카)목
  - 동등한 노동권(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 포함)
  -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요건, 고충처리에 대한 권리 동등 보장
  - 동등한 노동조합권 행사 보장
  - 일반적인 기술과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한 접근
  -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 촉진
  - 공공부문에 장애인 고용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 제공 보장
  -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근로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
  -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전문적 재활,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 촉진
-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제29호(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32조 제1항, 제3~6항, 제33조
- 대법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 '택배원'에 해당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함(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 '20년 코로나 고용충격은 노동시장 진입기에 있는 청년층에 집중되었으나, '21년 3월 이후 청년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측면에서 개선세로 전환
  - 다만, '쉬었음' 등의 취업지연 청년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늘고*, 취업소요기간도 증가**하는 등 청년의 어려움은 여전

    * '21년 청년층 쉬었음(42만 명), 취업준비생(58만 명), 구직단념자(21만 명)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

    ** ('20.) 10개월→('21.) 10.1개월→('22.) 10.8개월

- 그간 청년고용정책은 에코세대* 고용절벽 방지, 코로나19 대응 등 단기적 실업해소에 집중한 측면

  *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인 '77년~'97년에 태어난 세대

  - 재학, 실업, 구직단념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취업애로 해소, 진로탐색·취업역량 개발 지원을 통한 취업지연 방지 등에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

- 아울러, 청년들은 '공정'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어 사회 진출의 첫 관문인 채용단계에서의 공정성 제고 필요

○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훈련 인프라 확충과 전용 훈련시설에서 기업체 수요와 개인별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제공 필요

-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이 경증 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므로, 중증 장애인 취업 및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차별·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서울·광주·부산·대구·대전·경기)

○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 여성 고용률은 지속 상승 추세

  ※ 여성 고용률(15세~64세)(%) : ('18.) 57.2→('19.) 57.8→('20.) 56.7→('21.) 57.7→ ('22.) 60 (통계청)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대상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 및 여성 관리자율*** 지속 상승

  * Affirmative Action : 여성, 소수민족 등에 대해 구조화되고 관행화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차별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

  ** 여성 고용률(%) : ('19.) 37.38→('20.) 37.69→('21.) 37.78→('22.) 38.05

  *** 여성 관리자율(%) : ('19.) 19.76→('20.) 20.92→('21.) 21.30→('22.) 21.75

-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등 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해 여성 고용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경력단절현상(M-Curve)* 여전

  * 여성이 2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다가 이후,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후 다시 재취업을 하는 현상

  ※ 경력단절 여성 규모(천 명) : ('18.) 1,847→('22.) 1,397 (통계청)

-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저탄소 산업구조 재편 본격화 등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필요

○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 자연·공학계열을 전공한 기혼여성 중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비율은 20.3%로 타 전공계열의 여성들보다 높게 나타남

  ※ 공학계열 21.6%, 자연계열 17%, 의약계열 15.4%, 인문사회계열 18.1%, 기타계열 16.5%('21.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 확산 및 환경 조성 필요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 미투(Me-Too) 운동 등을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수요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계획 수립 필요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필요
-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단체모임이 줄어듦에 따라 업무 및 문화 활동 영역에서의 성희롱·성추행이 감소한 한편, 개별모임 및 사적모임은 증가하였으므로 공간적 범위의 제한 없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
- 교육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사안대응 역량 강화 및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 지원 필요
- 사회 각 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 필요성 대두
-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은폐 방지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사건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 증가

○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기본적 근로조건 등 권익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산재예방 조치 필요
- 농축산업·어업 분야는 주거시설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

○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 기간제 근로계약 시 합리적 계약기간 설정,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노력,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개선방안을 반영한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20.)
-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승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열악
- 기업 내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확산과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한 방안 추진 필요

○ **사내하도급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건강보호 등을 위한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담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20.)
-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약화되어 노동기본권 보장 미흡
- 원·하청 근로자 간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필요

○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

-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18년 이후 산재신청 급증 추세

  ※ 산재처리(건) : ('18.) 114,687→('19.) 124,988→('20.) 123,921→('21.) 141,727→('22.) 150,862
  질병산재처리(건) : ('18.) 12,975→('19.) 18,266→('20.) 18,634→('21.) 24,871→('22.) 28,796
  판정위원회심의(건) : ('18.) 10,006→('19.) 14,206→('20.) 14,422→('21.) 16,441→('22.) 17,222

- 합리적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과 재해조사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재해조사 방안 마련 필요
- 근로자의 안전보건 예방과 산업재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연계방안 필요

○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 강화**

-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저소득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 현장안내 강화
  -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지원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 신고건수 감소 추세*

    * 최저임금 신고 건수 : ('19.) 2,336→('20.) 2,293→('21.) 1,852→('22.) 1,631

○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 필요
- 소외없는 포용적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신중년 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 세계 최고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경제규모 축소와 부양 부담 증가 전망**

  * 고령화→초고령사회 도달 연수 : (프랑스) 154년, (미국) 87년, (이탈리아) 80년, (독일) 76년, (일본) 35년, (한국) 25년

  ** '20년→'40년 : 생산연령인구(만 명) 3,738→2,852, 노년부양비(명) 21.8→59.1

  - 55~64세 고용률은 장기적으로 증가추세*이나 '17년 이후 정체되어 있고,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일본 대비 저조**

    * 55~64세 고용률(%) : ('05.) 58.7→('17. 최고) 67.5→('21.) 66.3

    ** 55~64세 고용률(%.) : ('21.) 일본 76.9, 독일 71.8, 한국 66.3, OECD 평균 61.3

  - 고령자는 노동시장에서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경력설계, 재훈련 등의 준비 없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음**

    * 장래 근로 희망 연령 73세

    ** 지난 1년간 직업훈련 참여자 비율 12.9%('22. 5.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강화**

-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중 29.5%는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였으며 대다수 청소년은 소극적 대처(참고 계속 일함 69.2%)

  ※ 부당행위 경험률(%) : ('18.) 37.5→('20.) 34.5→('22.) 29.5 ('22.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공인노무사 등 협업)*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

  * 최저임금 위반 등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 대리

-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취약업종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체불 예방 등 관련 노무관리지도 실시 필요

- 직업계 고등학교 등 학생 대상 근로권익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확대 필요

○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 · 연대의 노사문화 구축**

-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저출생 고령화 등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상생·연대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확산 계기 마련 필요

○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 비정규직·파견·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 정체, 대기업·정규직 근로자 중심 운영 등으로 인해 기존제도는 다양한 고용형태 근로자 권익보호에 한계

비정규직 근로자 : 8,156천명('22. 기준, 임금근로자의 37.5%)
비전형근로자('22., 천 명) : ①파견 189 ②용역 567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 561 등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가능자 중 가입비율(%) : ('10.) 56.7→('15.) 62.6→('20.) 56.1→('22.) 53.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선에서 유지→조직화되지 않은 90% 취약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의견수렴 필요

※ 노동조합 조직률(%) : ('15.) 10.2→('16.) 10.3→('17.) 10.7 →('18.) 11.8→('19.) 12.5→('20.) 14.2→('21.) 14.2→('22.) 13.1

–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과 함께 최근 증가한 플랫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

### ○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 지난 3년간 체불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 연도별 체불액(억 원) : ('17.) 13,811→('18.) 16,472→('19.) 17,217→('20.) 15.830→('21.) 13,505→('22.) 13,472

### ○ 공정 임금체계 확립

•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 한국(%) : ('18.) 34.1→('19.) 32.5→('20.) 31.5→('21.) 31.1

** OECD 평균(%) : ('18.) 12.7→('19.) 12.5→('20.) 11.6→('21.) 11.9

• 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상당한 수준을 유지

※ 300인 이상 정규직 시간당 임금(100%) 대비 임금수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300인 이상 비정규직(%) : ('18.) 63.2→('19.) 64.5→('20.) 68.9→('21.) 69.1
300인 미만 정규직(%) : ('18.) 56.8→('19.) 57→('20.) 57.3→('21.) 58.6
300인 미만 비정규직(%) : ('18.) 41.8→('19.) 42.7→('20.) 44.5→('21.) 45.6

– 임금격차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근속년수에 기반한 연공형 임금체계(호봉급)'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이를 직무·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 임금체계로 개편·확산할 필요

※ 100인 이상 사업체 호봉급 운영현황(사업체노동력조사부가조사, %)
('16.) 63.7→('17.) 60.3→('18.) 59.5→('19.) 58.7→('20.) 54.9→('21.) 55.5

###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노동 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 및 특별감독, 조직문화 진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 대응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제3호 특별감독 대상 사업장 '나'목: 상습·고의적 체불,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폭언·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노동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업장에 대해 공문 등을 통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지도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조성 노력

  * 사업장 교육 지원 및 강사 양성 사업 실시(한국고용노동교육원, '21.~)

  – 필요시 판단 사례 제공 및 제도 운영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 도모

### ○ 장시간 근로 개선

- 근로기준법 개정('18. 7. 시행)

  –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감축*

  * ('18. 7.) 300인 이상→('20. 1.) 50~299인→('21 .7.) 5~49인

-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운영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약청년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기간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제공

* '21년 총 42.3만 명 지원, 이 중 18.5만 명의 청년에게 소득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을 통한 청년 고용 촉진

– '18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7.9만 개 기업, 46만 명* 청년 추가고용을 지원하여 기업당 평균 5.9명의 신규고용 지원

* ('18.) 128,275명→('19.) 141,566명→('20.) 105,584명→('21.) 84,833명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 노동시장에 신규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일정금액을 적립

※ 누적가입 현황(청년, 명) : ('18.) 151,789→('19.) 250,361→('20.) 387,587→('21.) 507,370→('22.) 576,859

•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편견 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 확대

–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합동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을 마련('19. 11.)

#### ○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 민간기업(%) : ('18.) 2.9→('19.~'22.) 3.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공공기관(%) : ('18.) 3.2→('19.~'21.) 3.4→('22.) 3.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비공무원)(%) : ('18.) 2.9→('19.~'21.) 3.4→('22.) 3.6

•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 유도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제도 폐지, 6급 장애인 한시지원 제도 폐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 신설 등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대상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고용서비스 강화

– 장애인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훈련 인프라 확충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치 확대(4개소→19개소, 17개 광역시·도), 기업수요에 부흥하는 맞춤·디지털 훈련센터 확대{2개→9개소(디지털훈련센터 3개소)},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설립 추진('21. 착공)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대상 취업 지원 확대 등 고용서비스 강화, 근로지원 강화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6개소 운영을 통해 전문가(전문상담원, 변호사·노무사)를 활용한 고충상담 및 노무법률교육 실시

### ○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제출대상 확대('20.)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마련, 성희롱예방교육 및 근로감독 강화

•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 및 재직여성 고용유지 지원 강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등 취업서비스 기반 구축 및 취업상담·직업훈련·인턴·취업연계·사후관리 등 여성 종합취업서비스 지원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하여 신기술고부가가치 미래 유망직종 직업훈련 확대 및 수요자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 관련 직무 복귀 지원 및 교육·멘토링·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

  – 경력복귀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과제 지원 지속 확대('17. 324명→'22. 503명)

-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정착을 위해 수요기관과 연구개발 직무 적합 대체 인력을 연결하여 업무 공백 최소화 및 과학기술분야 경력개발 지원

###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점검〉

-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점검

  –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성폭력 특별점검('18. 3.~5.) 및 문화예술관광분야, 체육계, 공연예술·대중문화·출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18. 3., 12.)

  – 성추행·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 등 '보건 의료인력 실태조사' 발표('19. 12.)

〈성희롱·성폭력 대응 추진체계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 '관계 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추진

  – 공공부문 보완 대책('18. 2.),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18. 7.), 성희롱·성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방안('19. 9.),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20. 11.) 등

- 성희롱·성폭력 대응 추진체계 강화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구성·운영('18. 3.~'19. 12.),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설치·운영('18. 3.~'21. 3.)

  –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여성가족부장관의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권한 등 근거 마련{「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1. 7.),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1. 10.)}

• 경찰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청정조직 구현

–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 추진 및 외부 전문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22. 9.)

•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엄중 조치 및 제재 강화

– 성폭력범죄 관련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강화

–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성희롱 징계기준을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상향, 성 비위 은폐·미조치 및 2차 피해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세분화·강화

•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체계 구축

– 공직 내 성희롱 발생 시, 사건조사·조치 의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재를 위한 인사조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불이익 금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

– 공직 내 성 비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개설·운영, 신고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발생 시 인사감사 요구 가능

•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

–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18.~)를 설치·운영하여 교육현장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

– 시·도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전담조직 설치 확대 및 법령 개정에 따른 대학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22. 3.)로 사안 처리 대응체계 구축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

–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 : 예술인복지재단 ‘성폭력피해상담센터’('18. 6.~),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20. 11.~),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18. 3.~),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18. 3.~)

–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를 통한 문화예술용역관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및 시정조치 추진(「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등 개정, '20. 11.)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및 예방시스템 제도 정비
  -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개정(법무부 훈령, '19. 5., '20. 5., '21. 6.)
  -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 발간·배포('20. 1.)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 내실화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의무화('20.)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본부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의무화,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공표 근거 마련 등 법령 및 지침 제·개정('21.)
  -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의무화 지속 추진('18.~)
  -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19. 8,382명, '20. 9,250명, '21. 16,045명)
  - 성폭력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9. 1.)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강화
  - 센터 간 정례협의체 운영(연 2회)을 통한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사례공유, 지원기준 통일, 정책개선 등)
  - 예술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기구 설치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21. 9.)

### ○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상·하반기 지도점검 및 후속조치
- 농축산 어업 주거환경 실태조사('20.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동) 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침 강화('21. 1.~) 및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 고시 개정 ('21. 12.), 농업 분야 주거 실태조사('23. 10~'24. 4. 예정)
-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 및 정책홍보 지속

  ※ 입국 후 취업교육('21. 22,526명), 사업장변경자 교육(190명), 귀국예정자 재정착지원 훈련(68명)

○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정책논의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과 비정규직 T/F 구성·운영('17. 12.~'18. 10.)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연구회'('19. 10.~'20. 7.)에서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대화 추진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지도·감독

–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극 시정

•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 조성·확산

–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사업장 고용구조개선 컨설팅('21.~) 제공

–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구조개선 지원단'이 우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 **사내하도급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 원·하청 근로자 간 불합리한 격차 완화

–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등 보장,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금지 등 산업안전 보호 등 반영

–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구조개선 지원단'을 운영('21.~)하여 기간제·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 250개소에 고용구조 진단·컨설팅 제공

• 근로감독 강화 등 불법파견 근절 추진

– 파견·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 불법파견 감독 및 직접고용 형태로 시정 지시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획형 감독 실시

• 택배기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택배기사의 과로방지 대책을 마련('20. 11.)하고, 택배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과로방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21. 6.) 및 이행

• 플랫폼종사자를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20. 12.)하고, 플랫폼종사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한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21. 3.)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포용적 보호체계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 마련('21. 9.)



### ○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을 통한 산재근로자 입증책임 완화

– 발병에 영향을 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 뇌심혈관계 질병의 만성과로기준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18.)

–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요인에 의해 건강손상자녀* 발생 시 산재 인정기준 마련('22.)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노출 및 업무상 사고 등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함

• 업무상 질병 처리절차 개선 및 재해조사 역량 강화

– 직업성 암 산재처리절차 간소화 기준을 다른 업종*까지 확대

* ① 석고보드, 슬레이트 등 석면 관련 업종의 폐암, 악성중피종 ② 탄광부·용접공·석공·주물공·도장공의 폐암 ③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종, 조혈기계질환종까지 확대

–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산재보험 CIE*) 양성 및 지원('22. 기준 누적 633명 양성)

* Certified Investigation Expert, 재해조사전문가

–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 정신 질병 조사 및 판단지침 개선, 현장조사 매뉴얼 개선

• 판정위원회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 자살사건 지역별 분산 심의 등 판정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및 판정위원회 2개소 추가 설치, 인력 증원

• 재해조사 전문화 및 표준화 판정위원회 운영 개선 등 다각적 제도 개선으로 처리 기간 단축 노력

### ○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 강화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19. 1. 「최저임금법」 시행)

•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 지원 계속

※ ('20.) 간담회(15개소), 토론회(5개 지역), 현장 방문(2개소)
('21.) 간담회(7개소), 현장 방문(4개소)
('22.) 현장 방문(4개소)

• 정책캠페인* 및 최저임금 준수 지도**, 영세사업장 지원 등을 통해 최저임금 현장 안착 지원

* TV, 라디오, 신문지면 및 생활밀착형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송출

**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를 통한 정책안내·사전계도('22. 180,388개소), 노무관리지도·점검('22. 6,333개소), 현장예방점검('22. 10,026개소) 실시

### ○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 신중년 직업능력개발 확대

– 40세 이상 실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전직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과정을 지속 확대하여 안정적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 교육 환경개선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구축·운영을 통한 물리적 사각지대 일소

– 감염병에 따른 직업훈련 공백 최소화를 위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운영,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훈련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원격훈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비대면·혼합훈련 도입을 지원

*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의 약자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평생직업능력개발 학습 플랫폼

•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훈련 실시

–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신설('18.), 고용보험 미 적용자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훈련지원,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직업훈련 계좌 신설 지원

• 평생 경력진단 시스템 구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 개발 진단 및 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온라인 훈련 진단·상담 시스템 구축('20. 12.)

### ○ 신중년 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 신중년 근로자 실업급여 보장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라도 고용보험 적용('19. 1. 시행)

•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확산

–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참여자 특성 진단을 토대로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확대 지원('21. 1.~)

– 생애전환기(40대·50대·60대)에 경력진단·설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령별 서비스 제공

–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종사자의 이·전직 경로와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40대·50대 생산직, 서비스직, 사무직 프로그램) 개발

• 재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및 특화된 직업훈련과정 운영 및 확대

– 사업주에게 50세 이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예정 근로자에 대한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노력의무 부여* 및 의무이행 지원

* '19년 4월「고령자고용법」개정('20. 5. 시행, 1,000인 이상 기업은 의무 제공)

–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과정 개편 4개 학과 선정*('21. 인프라 구축→'22. 훈련 실시) 및 서울강서, 남인천 등 13개 캠퍼스 20개 과정 운영

* CAM&3D 프린팅, 자동차튜닝엔지니어, 특수용접, 시니어헬스케어

• 경영상 해고 및 희망퇴직 남용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 사업장 지도·지원

###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강화

•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한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위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집중 점검·지도 실시

• 대지급금* 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임금채권보장법」개정('21. 10. 시행)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

–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수령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7개월→2개월)

•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 운영

※ 이수 실적(명) : ('18.) 101,875→('19.) 94,349→('20.) 85,749→('21.) 85,139→('22.) 77,374

○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문화 구축**

- 노동자·사용자·정부가 '사회적 대화기구 전면 개편'에 합의('18. 4.)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舊「노사정위원회법」, '18. 6.), 4개 의제별 위원회 운영('18. 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18. 11.)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및 대화 활성화
  - 22년 만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참여한 노사정 대타협 추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20. 7. 대통령 참석)

    * '기업·일자리 유지'를 위한 노사정의 실천적 역할 포함, 전 국민 고용보험·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 확충의 계기 마련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 사회적 대화 시스템 내실화·체계화
  - 노사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신설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결정구조 마련
  - 노사정이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여('21. 11.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 어선원 고용노동 환경 및 안전보건 법제도 개선 계기 마련
- 노동존중사회 실현 및 당면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20. 7.)' 정신을 이어받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 노동자·사용자·정부 협약 확산 및 이행점검 강화
- 고용형태 다양화, 산업 전환 등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극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기반을 마련
  -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사·아이돌봄('22. 6.)', '대리운전업('22. 6.)'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과 종사자 보호 합의 도출 성과
  -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개별 노동현안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노사 갈등 해결 지원

○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 도출 및 합의내용을 반영한 개정 「근로자참여법」 시행('22. 12.)
- 근로자위원 대표성 및 선출 절차의 민주성 강화
  -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법률 규정(현행 시행령 규정), 근로자 과반수 투표참여(현행 과반수 요건 없음), '위원선거인' 직접·비밀·무기명투표(현행 해당요건 없음)
- 중소·영세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비영리법인 사업 지원 실시
  -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 실시('20. 8개 단체, '21. 10개 단체, '22. 9개 단체 지원)를 통해 민간의 사업 역량 강화를 촉진,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지역 내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역량 강화
-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활성화
  - 청년·여성·비정규직 대변단체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참여(계층별 위원회), 미조직·취약계층을 사회적 대화 틀에 포섭, 이해 대변 통로 확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비정규직위원회 2기 출범('21. 11), 관련 의제 발굴 및 논의를 지속 추진

○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 체당금 제도 개선 등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검토
- 재직자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발표('19. 1.),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발의('19. 2.)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인상(400만 원→1,000만 원)('19. 7.), 청구 방법을 온라인, 팩스로 가능하도록 개선('20. 8.), 지급요건 간소화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재발의('20. 10.)

•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인상(1,800만 원→2,100만 원)('20. 1.)

• 대지급금 중복지급 제한규정 정비('21. 6. 시행)

– 도산대지급금 지급 후 차액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가능

• 재직자 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시행('21. 10.)

### ○ 공정 임금체계 확립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대상 사업장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을 제출케 함으로써 불합리한 성별 임금격차의 자율 개선 유도

– '20년부터 '남녀 근로자 임금 격차 현황 등' 제출 대상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사업장 전체로 확대

•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임금체계 확산

–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업종별 직무평가 도구(13종) 및 활용매뉴얼(12종)', '직무평가도구 활용 사례집' 개발·발간

– 임금통계에 따른 산업·규모·직업 등 임금 현황·격차를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을 통해 공표(임금직무정보시스템 사이트, '20.~)

– 임금·평가체계 및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을 활용하고,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확산을 위한 노력 지속

### ○ 장시간 근로 개선

• 주 52시간제 도입, 특례업종 축소(26개→5개),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등 근로기준법 개정('18. 3)

• 3~6개월 탄력근로제 신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의무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21. 1)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

• 주 52시간 근로 정착을 위한 기업지원

– 주 52시간제 도입 관련,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5~299인)에 장려금 지원('20., '21.)

–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실시('19.~)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 1:1 상담을 바탕으로 저학년부터 전공·흥미 등을 기반으로 진로탐색과 진로설정을 지원하고 고학년에는 취업역량 제고 지원 및 훈련·일 경험 연계

• 민관협업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일 경험을 확대,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는 한편,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청년·기업 매칭

–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확대하여 운영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ESG 지원형 등 운영

* 기업을 경영할 때 고려해야 하는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

• 구직단념·자립준비 청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확대 지원

•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

### ②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 공공기관 고용컨설팅 대상 확대 및 명단공표 기준 강화를 통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
- 고용장려금 예산 확대를 통한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고용 유지 및 신규 고용 창출 지원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개원 및 직업훈련 준비과정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훈련 접근성 제고
- 근로지원 강화를 위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및 고객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지속 추진
- 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 대상 전문고충상담을 통해 노동문제 상담, 직업생활 유지 지원

### ③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제도 개선
- 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안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보급 등 지원 강화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부모 대상으로 확대 추진
- 전국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등 대상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

### ④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유입·활용 확대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 경력복귀 지원 적극 추진 및 과학기술 분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일자리 복귀를 위한 연구개발 연구과제 및 연구활동 향상 교육훈련 지속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력복귀 단계별 맞춤 커리어 지원 프로그램 설계

  –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활성화 및 출산·육아휴직자로 발생하는 업무공백 보완을 위해 휴직자에 대한 채용(대체)인력 매칭 및 인건비, 직무교육 지속 지원

### 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점검〉

- 공공부문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보완 요구 등(연중)

-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콘텐츠 산업('23.~'24.), 관광산업('25.~'27.)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 3년마다 진행되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지속 추진('24. 예정)

    * 성추행·성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 포함하여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활동 현황 및 근무여건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성희롱·성폭력 대응 추진체계 강화 및 근절 대책 마련〉

- 엄정하고 공정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기준 마련

  – 성희롱·성폭력 해당여부 판단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기준을 제시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반드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 처리

- 문화·체육 분야 신고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및 정례협의체 개최를 통해 센터 간 사례 공유 및 정책개선 등 연계 강화
- 법무부 내부망인 법무샘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이버 신고센터(익명)' 설치·운영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기관장 사건 전담창구 운영 등을 통한 신고·상담 활성화 및 서비스 연계, 사건처리 등 지원
-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종합대책' 지속 추진 및 현장 투영도 지속 점검
-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 건에 대한 상담 및 사안 처리 지원 계속,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역량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2차 피해 예방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고위직 대상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실시, 소속기관 폭력 예방교육 지원 등
  -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지속 추진, 조직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부서 간 상시협의체 지속 운영
  - 문화체육관광 분야 민간보조사업 수행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현황 지속점검
  - 예방교육 실적점검 및 부진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 지역사회의 폭력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실시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등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보급을 통해 폭력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수립·시행

•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조치 강화

– 신고사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공직 내 성고충담당자 워크숍 등 추진,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마련

• 성희롱·성폭력 예방제도 홍보 강화

– 폭력 예방교육 시 목격자 행동요령,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 안내 포함

### ⑥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도 감독

–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 실시(상·하반기)

•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교육 및 정책홍보 지속

–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본적 의사소통 및 노동관계법 등 관계법령 교육, 최초 고용허가서 발급받은 사업주에 대한 사용자 교육 운영

•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등 근로조건 개선

– 농축산·어업 분야 사업장 비율은 전체 사업장의 20% 수준이나, 지도·점검 대상의 40% 이상을 농축산·어업 분야에 배정하는 한편, 사업장 지도·감독 시 주거실태 집중 점검

– 주거지침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 실시('22. 12., 농업 분야 200개 사업장)

– 사용자 교육을 통해 인권·노동 관계법령 교육 실시

### ⑦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 의심 사업장 지도·감독 등 지속 추진
  - 기간제 쪼개기 반복·갱신 사업장, 비정규직 차별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물량 확대 등 현장 지도강화
- 민간부문 고용구조개선 지원 및 차별 해소
  -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기업의 정규직 전환 및 사업장 고용구조개선, 차별 해소 지원

※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을 통한 사업장 고용구조개선·차별 해소 진단 및 개선이행 지원

### ⑧ 사내하도급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 파견·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 사용 근절
  - 일시·간헐적 사유 위반 등 파견제도를 위법하게 운영하는 사례유형별로 집중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 방지, 파견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감독 강화
  -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컨설팅 등과 지방관서의 근로감독을 연계하여 불법파견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원·하청 노동자간 불합리한 격차 완화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을 토대로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 등에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참여 사업장 등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추진
- 다양한 노무제공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 전문가 논의, 종사자·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화 방안 마련

### ⑨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현행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 새로운 유해요인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간병료를 인상하여 보장성 강화

  – 유관기관 연계자료 자동입수 추진, 질병별 결정사례 데이터 분석으로 재해조사 착안사항을 개발·적용하여 처리기간 단축

  – 직업환경연구원 및 산업보건연구원 인력·예산 확충, 역학조사 수행기관 업무절차 개선 등으로 처리기간 단축

### ⑩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 강화

-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강화

-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캠페인, 최저임금 준수 지도

### ⑪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직업훈련 기회확대를 통한 포용적 훈련 실시〉

-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중소기업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통한 직업훈련의 시·공간적 제약 탈피〉

- 비대면 환경에서도 현장감 있는 훈련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공공 훈련 플랫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운영하여 훈련의 시·공간적 제약 완화

– 민간 공급이 취약한 기술공학 및 디지털 신기술 분야 중심 온라인 훈련 콘텐츠 직접 개발·보급

※ 이러닝 콘텐츠 개발 계획(목표) : ('23.) 400개→('24.) 320개

※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계획(목표) : ('23.) 15개→('24.) 15개

– 공공 콘텐츠 개발 시 자막을 추가 삽입하여 직업능력개발에 취약한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향상 지원('23.~)

• 비대면·스마트 혼합훈련 확산을 위해 온라인 훈련 인프라 보급 지속 추진

–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닝 콘텐츠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오픈 마켓 지속 운영

– 집체훈련기관의 스마트혼합훈련 운영 유도를 위한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제공 확대

– LMS을 활용한 원격·혼합훈련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STEP 활용 우수기관 공모전 신설('23.~)

〈신중년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급감 및 산업·직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직업훈련기관 역할 강화

– 40세 이상 실업자 대상으로 취업성과 및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훈련 직종 개발을 확대하고 신중년 특화과정 지속 운영

– 디지털정보화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디지털소양강화 지원을 위해 신중년 특화과정(6개월)에 AI 교과목(20시간) 편성 운영

### ⑫ 신중년 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
  - 직장 내 연령 차별없는 고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고령자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강화
  -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제도 이행 지원
  -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노동이동 지원 강화를 위해 중장년내일센터의 업종·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프로그램 확충 추진

### 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강화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환경개선 교육·홍보 및 신속한 상담·권리구제 서비스 지속
  - 다양한 상담채널 운영(대표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근로청소년 상담 지원
-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노무관리지도 등 자율개선 중심의 지도점검 강화
-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무사 등에 의한 상담 등 문제해결 창구 운영
-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내용 개편 및 운영 지속
  -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능동적인 안전사고 예방 태도 함양을 위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제공

### ⑭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문화 구축

- 연구회, 자문단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체 운영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의제 발굴 및 논의
-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⑮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근로자참여법」 개정 완료에 따른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배포('23. 1.)
-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의견참여 지원 및 자율적 권익 보호 활동 지원
  - 중앙·지방 사회적 대화에 미조직 노동자 의견 참여 통로 확대 추진
  -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현장의 자율적 질서 확립 지원

### ⑯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정부 등 보조 및 지원 제한, 공공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 신용제재

    *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 ⑰ 공정 임금체계 확립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성별 임금격차 개선 유도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사업장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등 지속

•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임금체계 확산

– 직무평가 표준안 매뉴얼 제작·보급 등을 지속하여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희망하는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접근성 제고와 함께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임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

– 합리적인 임금·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지속

• 임금정보 공개 확대

–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중인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 이외에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임금정보 확대 제공 검토

• 임금격차 해소,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

### ⑱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노동 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 현행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피해자 등은 피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고, 법 제102조 등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신고 사건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 조사

–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 실시

### ⑲ 장시간 근로 개선

• 근로시간 운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지도·감독

## 2.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 제1호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실업·질병·장애·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받을 권리
- 사회권규약 제9조, 제11조
  -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
  -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인정
- 아동권리협약 제26조 제1호, 제27조 제1호
  -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제1호 (마)목, 제13조 (가)목, 제14조 제2호 (다)목, (아)목
  - 유급휴가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가족급부금에 대한 권리의 남녀 동일 보장
  - 시골 여성의 사회보장 계획으로부터의 직접적 혜택 권리 확보
  - 시골 여성의 적절한 생활조건(주거, 위생시설, 전력·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 등) 향유권 확보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목 (iii), (iv)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주거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공중보건·의료·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장애인권리협약 제28조

–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될 권리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와 그 향유

–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 보장

–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보장

–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일시적 보살핌을 포함하여 장애 관련 국가의 비용 지원에 대한 접근 보장

–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보장

–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34조, 제35조 제3항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및 가입기준 개선으로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저소득 근로자·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등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의 운영·관리기준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근로방식을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

  * 근로자('95.)→예술인('20.)→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21.)→노무제공자(플랫폼) 2개 직종('22. 1.)→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22. 7.)

○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수돗물 수질기준항목 61개, 수질감시항목 31개 설정 운영

  – 수질기준항목 : 미생물 4개, 유해영향무기물질 13개, 유해영향유기물질 17개, 소독제 및 부산물 11개, 심미적영향물질 16개

  – 수질감시항목 : 미생물 1개, 유해영향무기물질 2개, 유해영향유기물질 17개, 소독제 및 부산물 7개, 심미적영향물질 3개, 자연방사성물질 1개

-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하고, 노출수준 및 인체위해도 등을 평가하여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지속적 관리 강화 요구

○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 4대강 권역별 제2차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16.~'25.)을 통해 체계적이고 깨끗한 물환경 구축 방향 마련 필요

  –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대권역별 지역의 맥락이 고려된 목표 및 전략 구체화

  – 수질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수질관리 강화

○ **물환경 위해 관리 체계 강화**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수질관리 목표로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및 생활환경 기준 운영 필요

○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의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체계적·과학적인 위생·안전관리 강화 필요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소비기반 구축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요구 증대

– 지역 생산·소비 등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지속적인 확산 필요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지방자치단체(개) : ('19.) 49→('20.) 67→('21.) 111→('22.) 139

• 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식생활 관련 주요 질병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수(만 가구) : ('15.) 155→('18.) 166→('21.) 206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의 당뇨병 유병률은 36.6%, 고혈압 14.1%, 고지혈증 19.2%이나 전체 가구 평균은 각각 22.5%, 7.9%, 15%('16.~'18. 질병관리청)

○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인터넷 상거래 발달, 코로나19 등으로 식품 온라인 거래 급성장

– 온라인쇼핑몰, 블로그, 회 배달 서비스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산물 거래 활성화

– 양식수산물에 동물용 의약품 등 사용량 증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 등으로 국내산 수산물 안전관리 요구 증가

• 수산물의 유통단계 위생관리 강화

– 위탁판매시장의 위생관리 기준이 마련('18. 고시, 시행)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이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위생·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

*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안심유통 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

•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 안전성 조사 강화로 불법·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공급 필요

•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관리

– 식중독의 주 원인인 하수(분변)의 해역유입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패류 채취제한 기준 설정 필요

### ○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 급식인구 지속적 증가에 따라 급식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급식위생 안전관리 내실화 필요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식습관 개선 교육 필요

※ 어린이집 등 어린이급식소 48,458개소 중 38,677개소(85.1%)가 영양사 없이 어린이에게 급식 제공('21. 12.)

※ 노인·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중 10,238개소(78.8%)에서 영양사 없이 식사 제공('21. 11.)

• 감염병으로 인한 배달 시장의 급성장 등 외식 소비형태 변화로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 관심 증가

– 외식환경 변화에 맞춰 치킨·피자 등 소비량이 많은 배달음식 중심의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 지정 확대 필요

–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반면 소비자와 영업자의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설문조사 결과 : 소비자 26.2% 제도 인지, 소비자 87.4% 위생등급제 필요로 응답
(식중독 예방 인지도 및 홍보효과 조사, '20. 12.)

### ○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 필요

###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보완·추진함으로써 노후·불량 주거지의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 정착 기여 필요

### ○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 무주택 서민,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필요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약 8%, 174만 호, '21.)이 OECD 평균(약 7%)을 상회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면적 확대, 시설개선 등 질적 개선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

○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 구입, 전세자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요건 조정으로 목돈 마련 부담 완화 지속 추진,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청년·신혼부부 전용상품 마련, 대출절차 간소화 등 주거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필요

○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확대**

- 지속적인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및 급여수준 상향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할 필요

○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 신체적 제약이 있는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편의시설이 기본 설치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 필요

○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이 1회 갱신요구 가능) 및 전월세 상한제(인상률 5% 제한) 도입을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 7.)
  - 갱신 임차인은 거주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보았으나 매물감소 및 4년치 인상분 선반영 등에 따른 전세가격 급등, 갱신만료 후 보증금 인상 등으로 임차인 부담이 오히려 가중된 측면
- 최근 들어 매물 증가, 전세가격 하락 등 임대차시장은 안정 흐름이나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주장 등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지속
  - 임대차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 임대차 제도 개선 필요

○ **상병제도 도입 및 운용**

-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보장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보장 필요
  - 코로나19 확산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및 노동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미도입, 제도화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중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6개 시·군·구에서 시행('22. 7.~)

○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농촌의 의료·보육·돌봄 등 필수서비스 부족으로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며 활력이 저하,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지는 문제 발생
  - 교육·보건의료 등 필수서비스가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많이 나는 분야이며, 농촌의 고령화·과소화로 서비스 전달의 어려움 심화
-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개선, 보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 필요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 위주 제도 개선
  - 기존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아 사중손실*이라는 외부지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가입자 지원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

    *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 제한, 세금 부과 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용의 손실
  - 신규가입자 기준 완화* 및 신규가입자 지원 수준 강화

    * ('17.) 3년 이내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18.~) 1년 이내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사회보험 가입 촉진 활동 강화

–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촉진 및 취업포털에 사회보험 가입 정보 제공

* '22년 3월 기준 보험료 추가지원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 : 강원도('18. 4.~), 충청남도('19. 1.~), 제주도('19. 1.~), 노원구('22. 1.~)

– 전국 48개 지역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총 294개 유관기관 참여), 집중홍보기간 운영(5월, 10월), 민간기업과 비대면 온라인 홍보 및 모바일 지원 안내(매 분기, 연금공단)

• 취약계층 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확대, 일용근로자 지원요건 완화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일몰기간(~'19.) 5년 연장(~ '24.),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국민연금법」 개정, '20. 1.)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행('22. 7.~)

•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 ○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방안 검토 및 자영업자의 가입요건 완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한 기간 폐지('19. 7.)

– 사업자등록증 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허용('22. 7.)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경과】

- ('20. 12.)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수립·발표
- ('20. 12.)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 ('21. 7.)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시행
- ('22. 1.) 노무제공자(플랫폼) 2개 직종 고용보험 시행
- ('22. 7.)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 경과】
- ('08. 7.)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 ('12. 5.)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16. 7.)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19. 1.)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 ('20. 7.)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교사
- ('21. 7.)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22. 7.)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제도 개선

– 실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21. 7.)

※ (기존) 사유 제한 없음→(개선)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 휴업으로 한정

• 플랫폼종사자 등 복수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산재보험 제도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적용·징수 체계와 보상·급여제도 도입

### ○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 ('18.~'20.) 먹는물 수질기준 1종 추가 설정 및 수질감시항목 4종 확대, 안전관리 강화

– 자연방사성물질 우라늄에 대한 수질기준(30㎍/L) 설정

– 자연방사성물질 라돈에 대한 수질감시항목기준(148Bq/L) 설정, 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 수질감시항목기준 설정

• ('21.~'22.) 신규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설정 등 수질관리 강화기반 마련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고시 개정

– 3종의 미량유해물질(Nitrosamines, Vanadium, Quinoline)에 대한 신규 수돗물 감시기준(안) 마련 및 감시항목 추가 설정 추진

### ○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 제2차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계획 이행 및 중권역별 수질 목표기준 달성도 평가

  – 전국 115개 중권역 중 수질목표기준을 달성한 하천 비율 증가추세('16. 73.9%→'21. 78.3%)로 수질관리계획의 성공적 이행

### ○ 물환경 위해 관리 체계 강화

- 조류경보제* 정상 운영, 먹는 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수장 일제점검, 조류대응 모의훈련 개최, 중·소규모 정수장 및 소규모 수도시설 기술지원 실시

  * 상수원으로 하는 하천과 호소의 조류 발생 상황을 측정하여 조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수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98년도부터 도입

  ※ 정수장 조류독소 검사('18.~'20.) 결과 이상 없음

- 미량오염물질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19년~'22년 낙동강 수계 산업단지 미량오염물질 조사, 인벤토리 구축연구·체계구축

- 물환경기준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미관리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탐색체계 구축연구('20. 4.~'21. 3.), 모니터링 ('21. 4.~'22. 3.), 탐색체계 구축('22. 5.~'23. 4.)

- 조류경보제(주요 상수원 및 친수활동구간 등 29개소) 정상운영, 관계기관 사전 대응력 제고를 위한 조류경보제 예측정보 대국민 서비스 확대('21. 5., 8지점, 물환경정보 시스템 공개), 조류대응 관계기관 사전 모의훈련 실시('21. 7.), 조류제거시설 및 조류 제거물질 사용지침 개정('21. 12.)

- 조류경보제(주요 상수원 및 친수활동구간 등 29개소) 정상운영 및 조류경보제 개선사항 적용 3개소 시범운영 실시('22. 6.~11.)

○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GAP 인증건수, 인증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

  ※ GAP 인증 건수 : ('18.) 7,782→('19.) 9,102→('20.) 10,362→('21.) 11,278→('22.) 11,888
  GAP 인증률(전체농가 대비, %) : ('18.) 8.3→('19.) 9.7→('20.) 11.3→('21.) 11.6→('22.) 11.7

- 농산물 PLS* 제도 전면 시행('19. 1.) 이후 농업현장의 농약 사용 인식 개선으로 부적합률이 지속 감소하는 등 국내 농산물 안전성 향상

  – 농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 성분을 확대(320→464, '22. 1.)하여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등록된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상시검사(동물약품 등), 축산물작업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 등을 통한 축산물 안전관리 추진

  * 양식수산물을 생산할 때 위해물질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 식품으로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안전한 생산·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유통 길목 검사 강화

  –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 시료 수거 방법 등을 개선하여 농산물 안전관리 기반 강화

  –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운영 확대

- 생산부터 소비까지 촘촘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안심 확보

  – 달걀 선별 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22. 1. 시행), 냉동·냉장차량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의무화('21. 6.) 등 규제강화를 통한 생산·유통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추진

  – 민·관 실무단 구성·운영('18. 2.~3.) 및 관계 부처(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T/F 구성·운영('18. 5.~)

- 관계 부처 합동 '국가식량계획 추진방안' 수립 및 발표('21. 9., 3대 추진전략*, 9대 중점 과제)

  * ①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②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③ 먹거리 접근성 보장

-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먹거리 질 향상 및 건강한 먹거리 공급,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등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산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먹거리 계획 협약'(지방자치단체·농림축산식품부·광역지방자치단체)을 맺고,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관련 농림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20년 이후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운영, 확산 기반 조성 등 지원 분야 확장

  – 거버넌스 활성화, 농가 조직화, 안전·품질 관리 지원 및 교육·컨설팅,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로컬푸드 지수 측정 등을 통한 확산 기반 조성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 기반 마련('21.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 저소득층의 식생활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 도입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산 과일, 채소,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등 구매전용 전자바우처 카드 지원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도입 기본계획 마련('21. 6.)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취약계층 식품 지원 근거 신설('22. 1.)

- 미래 소비층인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관련 다양한 교육 및 영양사 대상 쿠킹클래스 운영 실시

○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관리 강화

– 산지 위탁판매시장 위생·안전관리 기준 관련 표준 매뉴얼 제작·배포

– 신선유통을 위한 핵심기술인 활어차 산소공급시스템, 주요 수산물 품질 지표 및 유통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개발 착수

※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R&D, '21.~'25., 349억 원)

•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

– 소비자들이 홈페이지(수산물 이력번호 입력) 또는 이력제 앱(상품 QR코드 스캔)을 통해 생산자, 생산장소 등에 대한 유통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 업체 지원

※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19.~'21.) : 굴비, 봉지굴 집중 지원

•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 매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계획,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세부추진계획 및 안전한 굴 공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부적합 수산물 유통 사전 차단

※ 안전성 조사(건) : ('18.) 16,354→('19.) 14,921→('20.) 17,928→('21.) 18,764→('22.) 19,551

–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위생관리 지도·점검(매년 5~10월)

–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 등록(개소) : ('18.) 194→('19.) 237→('20.) 284→('21.) 354

•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관리

– 생산해역 및 등록시설에 대한 EU의 방한 점검에 효율적 대응('19. 3.)하여 수출국 지원 유지

– 강우에 따른 패류 채취제한 기준설정 : 11개 해역('24.까지 67개 해역 추진)

– 일반해역 위생관리 기준 마련('20. 8. 시행)

### ○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 제·개정
  -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21. 12.)하고,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센터 등록 의무화 시행('21. 12.)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개소) : ('20.) 228→('21.) 234→('22.) 236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 7.)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위생·영양관리 본격 지원

    ※ 사회복지 급식시설 지원(개소) : ('20.) 307→('21.) 402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를 통한 소비자 안심 제고
- 배달음식 대상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포장·배달 위주의 등급 지정업소에서 조리식품 포장지 등에 지정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1. 1.)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7조의4(위생등급의 광고)
  -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배달앱에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정보 표출 확대

### ○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 주거복지재단, 주거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정보접근성이 낮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정책홍보, 지원 대상자 발견, 현장 밀착지원 등 수행
  - 쪽방·노후고시원 등 취약거처 거주자 방문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제도 안내 및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여부 상담
  - PC방·만화방 거주자, 아동 빈곤가구 등을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자의 경우 자산검증을 생략하여 신속 지원
  - 주거사다리지원사업(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지하층) 거주자 추가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건설 등 특례규정 도입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불량건축을 개선하는 소규모주택정비에 '18년 67,505 백만 원(21개 지구), '19년 150,000 백만 원(38개 지구), '20년 386,900 백만 원(90개 지구), '21년 409,400 백만 원(약 120개 지구) 기금지원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

○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 '18년~'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7만 호 공급을 통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19.3만 호,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16.3만 호,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5.2만 호 공급

  – 고령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한 고령자복지주택 약 5천 호 공급(공모실적)

○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 금융 지원(조 원) : ('18.) 22.5→('19.) 23→('20., '21.) 18.8→('22.) 21

○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확대**

-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 지원 대상(만 가구) : ('18.) 94→('21.) 127.3

  – 임차가구 대상(월평균 급여지원액, 만 원) : ('18.) 12.3→('21.) 16.8

  – 자가가구 수선(만 가구) : ('18.) 1.7→('21.) 1.9

○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으며('18. 8.)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19년부터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50만 원 한도 내 신규 지원 결정
- 최근 5년간('16.~'2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건설공공임대주택 중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한 물량은 의무공급비율보다 높은 약 8.8% 상당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지원 대상 월평균 보수금액 상향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지원 대상 추가 등에 따라 필요시 지원 수준·요건 등 제도(고시* 등) 개선 추진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취약계층 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지속 확대 추진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일몰기간 5년 연장(~'29.), 지원 기준소득율액 인상*

* 사업장가입자 : ('22.) 230만원→('23.) 260만원
농어업인 : ('22.) 100만원→('23.) 103만원
지역가입자 : ('22.) 100만원→('23.) 100만원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 확대〉

- 보건복지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공유를 통한 가입자 발견 및 가입 추진 확대
- 경력단절 여성, 무소득 배우자 등 대상별 가입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 추진

  ※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 등 수급권 확보 중심의 제도 안내 및 가입 확대

- 제도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의 연금수급권 확대 추진

  ※ 사업장 가입요건 확대로 일용근로자 사업장 편입 강화

### ② 고용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로 전환
  - 근로자 고용보험의 적용기준, 부과·징수체계 등을 소득기준으로 개편하고, 국세자료를 활용한 가입누락자 발굴로 사각지대 최소화 도모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하나의 주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무제공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
  -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등 기존 14개 직종에서는 직종 내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현장화물차주 등 4개 직종을 새롭게 추가

    ※ '23년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어 14개→18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산재보험 보호

-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 산재보험 적용 현장 안착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이후 가입, 재해율 등 현황 분석 및 업종·직종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제점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③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 먹는물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대상 선정기법 고도화
  - 신규물질 탐색 강화를 위한 비표적 분석 기반시스템 구축·운영
  -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수질자료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신규 수질감시항목 설정 등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 정수장 원·정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확대 조사
  - 노출수준, 위해성 평가, 제거효율 평가 등 수질관리 내실화
- 수돗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제도 개선
  - 수질기준 설정·운영 체계 개선(안) 및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운영 관련 법 개정(안) 마련 연구

### ④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 권역별 수질관리계획 계속 이행을 통한 깨끗한 물환경 지속 방안 수립
  - '제3차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26.~'35.)

### ⑤ 물환경 위해 관리 체계 강화

- 물환경의 총체적 건강성 확보를 위해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외에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관리 확대
  - 수생생물 보호기준 마련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 ⑥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판매, 새벽배송, 국민 다소비 품목, 부적합 다발생 품목, 소면적 재배 취약 품목 등 집중관리

– 유통길목에서 부적합 농산물 유통·판매 사전 차단 및 단순처리 농산물* 관리강화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을 한 단순 공정 농산물

–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잔류농약, 방사능,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상시 조사·관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사전 예방

–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약 사용 변동에 맞춰 조사대상 유해물질 조정 및 분석 기법 향상

•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 축산물 가공·유통단계 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

–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집유장)의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 연간 위생감시를 통한 지속 관리

–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PLS의 '24년 도입을 목표로 동물약품 확충 및 안전사용기준 재설정 등 사전 준비

※ '24년 1월부터 한육우·젖소·돼지·닭·산란계 대상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적용 계획이며 기타 축종 대상 동물용의약(외)품과, 비의도적인 점을 감안하여 농약은 '24년 이후 적용 추진

• GAP 인증 사후관리 강화

– 단체인증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심사 표본농가 수 확대*

* (기존) 신청자 11명 이상~100명 이하 시 표본 농가수는 제곱근, 101명 이상은 10% 표본 추출→ (개선) 신청 농업인이 101명 이상인 경우 15% 이상 표본추출

– 인증품의 잔류농약 분석강화(2만 건) 및 RPA(로봇처리 자동화) 기법 도입(연 4회)으로 온라인상의 비인증품의 인증품 둔갑행위 집중 점검

– 수확 후 처리시설의 GAP인증품 취급량 등 통계 전수조사(1,035개소) 및 대량 취급 업체(45개소) 특별점검 추진

### ⑦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역량 강화(계속)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 지역먹거리계획 관련 근거 법령 및 조례 등 제도 보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22. 7. 시행)에 따라 지역 먹거리위원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한 자자체 조례 제·개정 확산

-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 주체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공공급식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강화

  – 표준화된 지역 식재료, 식재료 유통관리, 영양 및 식품안전 정보제공 등의 기능이 있는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사용 확대

-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를 통해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 취약계층 먹거리 선택권·접근성 보장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하면서 본사업 도입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등 본사업을 위한 관계 부처 간 사전절차 이행

### ⑧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수산물의 유통단계 위생관리 강화

  – 위탁판매시장 평가 시 위생기준 적용에 대한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위탁판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속도에 맞추어 위생기준을 단계적 의무 적용 추진

  – 수산물 신선유통을 위한 핵심기술인 활어차 산소공급시스템, 주요 수산물 품질 지표 및 유통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개발 지속 추진

  ※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R&D, '21.~'25., 349억 원)

•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검사 지속 강화

※ 고등어·갈치 등 다소비·대중성 품종에 대해 유해물질 검사 지속 확대(연중)

–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추진 ('21.) 354개소→('27.) 650개소

•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관리

– 강우 시 오염물질 유입이 패류 생산해역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패류 채취 제한 기준 설정 추진('26.)

– 실험실의 패류 위생검사 분석결과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장비 성능시험, 분석인력, 숙련도, 표준문서 등 국제인증(ISO 17025) 확대 추진

※ ('22.) 패류독소 2종→('23.) 병원성세균(살모넬라)→('24.) 중금속(카드뮴 등) 8종→('25.) PAHs 4종 →('26.) 유기염소계 농약 14종→('27.) 다이옥신류 17종

### ⑨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속 지원〉

• 어린이급식소별 급식형태에 따른 맞춤형 현장지원, 취약급식소 집중관리 등 지원 내실화

– 다함께 돌봄 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등 시설별, 급식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급식안전·영양관리 지원 세분화

※ 연령별 영유아 식단 뿐 아니라 청소년기 식단, 간식형 식단 등 급식형태별 맞춤형 식단 제공

– 급식소별 '전담영양사 관리제'를 도입하여 급식소 이력관리 등 관리 강화

• 노인과 더불어 장애인 시설까지 사회복지급식 지원범위 확대 및 센터 추가 확충 추진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본격 시행

– 사회복지시설 급식지원 확대를 위한 센터 확충*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개소 수) : ('23.) 68→('24.) 114→('25.) 170→('26.) 모든 시·군·구

〈음식점 위생개선을 통한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 및 기술지원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 배달 음식점 포함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개별 음식점 등 위생등급 지정 확대
  - 소규모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정평가 신청부터 지정받을 때까지 지원하는 전담 컨설팅 운영
-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이벤트, 유튜브 등), 생활 매체(버스, 지하철 등)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 배달앱 플랫폼 등급지정 표출 확대 및 소통채널을 활용한 제도 홍보

    ※ 표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위생등급 신청·지정 절차, 기술지원 등 안내

### ⑩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 주거복지재단, 주거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 및 현장 밀착지원 등 지속 추진

### ⑪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및 제도 개선 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조합, 공공기관 등)에게 사업비를 기금 지원하여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모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⑫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연간 10만 호)를 공급하되, 필요시 도심 내 취약계층에 즉시 공급이 가능한 전세임대 등을 중심으로 탄력적 공급
  - 경기침체·재해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 중심으로 공공임대 공급 추진('23.~'27. 전체물량의 86%)

– 건설임대는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3기 신도시 내 60% 이상)하고, 매입·전세임대도 도시 내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안) 〉

{단위 : 만 호 / 사업승인 기준(매입·전세임대는 계약기준)}

| 구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합계 |
|---|---|---|---|---|---|---|
| 건설임대 | 3.5 | 3.5 | 3.5 | 3.5 | 3.5 | 17.5 |
| 매입임대 | 3.5 | 3.5 | 3.5 | 3.5 | 3.5 | 17.5 |
| 전세임대 | 3 | 3 | 3 | 3 | 3 | 15 |
| 소계 | 10 | 10 | 10 | 10 | 10 | 50 |
| +α* | (0.7)** |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 | | | | (0.7) |

* 시장여건 및 수급상황을 고려, 주기적으로 공급계획 적정성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

** 공공임대 조정 물량('23. 전세임대 0.7만 호 추가)은 별도 산정

•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을 분양 수준으로 높이고, 공공임대(300세대 이상) 내 어린이집, 도서관 등 생활 SOC 의무 설치

### ⑬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 무주택 서민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상 추진

• 전월세 자금의 저리대출 지원 지속 강화

–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월세 대출을 제공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청년,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대상자 대출 지속 시행

– 청년 전월세자금 연 8만 호 대출 지속 지원(목표)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 강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상품 등 수혜 대상이 확대된 상품의 적극적 홍보 및 추가 개선사항 검토를 통하여 지원 실적 제고 추진

– 신혼부부 대출을 지속 지원하면서, 대출상품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구입자금 전환 대출 등 도입 검토

### ⑭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확대

-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주거급여 보장수준 확대
  -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 지급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수급가구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
  - 자가가구의 주택 노후도별 보수한도액을 상향하여 수급가구의 주거여건 개선

### ⑮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를 위한 안전·편의시설 설계가 반영된 건설공공임대주택을 일정비율(수도권 8%, 비수도권 5%) 지속 공급

### ⑯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 「주택임대차보호법」 T/F를 구성하여 시장동향, 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 정보제시 의무, 최우선변제금 조정 등 다양한 예방 제도 마련
-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연구용역과 임대차 시장동향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장혼선 최소화 및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⑰ 상병제도 도입 및 운용

• 1단계 시범사업('22. 7.) 및 2단계 시범사업('23. 7.) 시행 중

– 단계적으로 지역 확대(1단계 : 6개 시·군·구, 2단계 : 4개 시·군·구), 정책효과 분석(대상규모, 소요재정 등) 및 운영체계 등 점검

• 시범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하며 사회적 논의 및 제도 인프라 구축* 추진

* 법령 정비 및 관련 정보 연계, 재원 확보 등

| 연도 | 이행계획 |
|---|---|
| '23년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행('22. 7.~), 2단계 시범사업 시행('23. 7.~) |
| '24년 |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시행('24. 하~), 통합 시범사업 모형 설계 및 본제도 도입 검토 |
| '25년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속운영 및 본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검토 |

### ⑱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의료, 돌봄 등 농촌에 부족한 필수 생활 서비스 지원 강화

– 농촌지역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농촌 왕진버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22. 9천 명→'27. 15만명) 등

–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 생활 돌봄 공동체, 돌봄마을('23. 3개소→'27. 9개소) 등 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

– 농촌 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 체계 마련

•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

–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연금 수급 확대를 위한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인상 등 추진

## 3.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

### 가. 국제적 기준

- 사회권규약 제12조
  -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 사산율과 유아 사망률의 감소,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 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1~3호, 제33조
  -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 보장,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 제공 등을 통한 질병과 영양실조 퇴치, 산모를 위한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 보장,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 예방 기초지식의 활용에 대한 정보제공·교육·지원 확보,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 발전 조치
  - 아동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
  -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의 보호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2조, 제14조 제2호 (나)목
  - 보건분야(가족계획 관련 포함)에서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모든 적절한 조치
  -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 확보,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기간과 관련한 적절한 역무 제공 확보(필요한 경우 무상 제공)
  - 시골 여성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목 (iv)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공중보건·의료·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건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 제공
  -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건강 서비스 제공
  - 보건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
  -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관리, 보건 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 금지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35조, 제36조 제3항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 구축 및 기능 정립,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필요

#### ○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지원 강화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규모 증가

– '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98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7.4%를 차지하며, '30년 25.3%, '50년 40.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고령화 심화에 따라 치매 환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3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48%인 136만 명이 치매환자가 될 것으로 예상

•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필요

– 국가 치매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 조성 필요

–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삶의 질 제고

####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필요

○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특례 공급 지속 지원**

- 「약사법」 및 「의약품안전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의약품 허가 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수입하고 있음
- 특정 국가에 의존적인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국산화를 추진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여 공급 안정화 추진 필요

○ **군 장병 의료 접근권 향상**

-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한 병영생활 유지 및 전투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안심하고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 초·중·고·특수학교 및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원아 수 50명 이상, 「학교급식법」 적용)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등을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과 위생 및 안전성 확보 요구

  * 「학교급식법」 적용 확대 : 원아 수 100명→50명 이상 유치원('22. 6. 동법 시행령 개정)

  ** 학교급식 실시 학생 및 원아 수 : 585만 명('21.)

- 학교급식 종사자의 위생·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 강화 필요

○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질병예방, 음주·흡연·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시·도 교육청 및 지역 보건소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필요

○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 과거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문제 증가
- 마약류 사범의 초범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고 마약성 진통제 및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끊임없는 등장으로 마약류 남용 요인 지속 증가

○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 취약계층 대상 환경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통해 환경보건 관련 교육·홍보 운영

○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 전국 주택 실내 라돈 실태조사('15.~'18., 약 15,200개소 대상) 결과 라돈 기준치(148 Bq/㎥)를 초과하는 곳은 1,954개소로 약 12.9% 차지

  ※ 라돈은 무색·무취·무미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148 Bq/㎥에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 시 인구 1,000명 당 일반인은 7명, 흡연자는 62명이 폐암에 걸릴 가능성(미국 환경보호청)

- 자연 방사성 물질로서 흡연과 함께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인 라돈의 적정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필요

○ **환경성 질환 예방 · 관리 개선**

-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및 환경오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정책 추진 필요

○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 강화**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22. 1.)함으로써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 마련

  – 식품·의약품 등 제품별 위해성 평가 체계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안전 중심 체계로 전환

-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건강 보호 필요

○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 강화**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시행('22. 3.),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 '18년 대비 40% 감축(기존 26.3% 감축)

- 기후위기에 국가·지역·국민·산업·농업계*가 함께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적응 주체별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 필요

  *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1. 12.)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국내 감축 및 환경기준 강화 필요

-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사업 추진 필요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현황〉

(단위: ㎍/㎥)

| 연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농도 | 26 | 26 | 25 | 23 | 23 | 19 | 18 | 18 |

○ **생활소음 대책 마련**

- 공동주택 거주인구 증가와 주·야간 근무 등 생활패턴이 다양화되고, 개인중심 문화가 확산되어 정온한 환경에 대한 인식 증대

  ※ 소음·진동 민원 추이 : ('11.) 56,244건→('21.) 185,204건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사장·교통소음·층간소음 등의 소음·진동 발생원별 맞춤형 저감 필요

○ **국토 및 환경계획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보**

- 국토·환경계획 중 최상위 국가계획에는 통합관리 목표가 반영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집행하는 국토·환경계획은 통합관리가 미흡*한 실정

  * 204개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결과, 10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환경계획 시기 불일치('22. 기준)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가 지역단위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지방자치단체 교육·컨설팅 및 역량 강화 지원 필요

○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 신약의 적정한 가치가 반영되어 보험 적용시 제약사와 협의·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면서, 보험재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분담제* 도입·운영

  * 약제의 치료효과 및 재정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험자와 제약사가 별도 환급계약 등을 통해 분담하는 제도

- 진료에 필요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확대를 통해 환자의 치료접근성 강화 필요

○ **의료 서비스 이용 차별 개선**

- '85년 국내 첫 HIV(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5년간 신규 감염인이 매년 약 1,000명 이상 발생하였고, 생존 감염인의 경우 최근 10년간 연평균 6.6% 증가하였으며, 이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3.7%

  * 에이즈(AIDS)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

-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이용 차별 개선을 위하여 의료인을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식 개선(차별·낙인 방지) 필요

○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공개**

- 화학물질 등록을 통해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물질별 유해성 확인 및 유독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 심사결과를 고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필요

○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 매년 수용자들이 제기하는 의료처우 민원 증가

〈 의료처우 관련 수용자 출원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서신 민원 | 233 | 401 | 431 | 363 |
| 진정 | 196 | 236 | 318 | 351 |
| 청원 | 101 | 77 | 69 | 67 |

• 교정시설에 종사하는 의무관은 타 공공기관 의사들에 비해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민간병원은 물론 타 공공기관에 비해 보수체계는 유사하거나 낮은 편임

〈 의무관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의무관 정원 | 109 | 116 | 116 | 117 | 117 | 118 |
| 의무관 현원 | 93 | 93 | 89 | 91 | 90 | 83 |
| 의무관 결원율 | 14.7% | 19.8% | 23.2% | 22.2% | 23% | 29.7% |

〈 교정시설 의무관 급여 〉

('20. 기준, 단위 : 원)

| 항목 | 인 원 | 교정시설 의무관 급여 | | |
|---|---|---|---|---|
| | | 평균 | 최고 | 최저 |
| 전체 | 92/117 | 116,280,732 | - | - |
| 일반직 | 43 | 109,891,312 | 137,311,920 | 71,743,100 |
| 임기제 | 49 | 123,488,494 | 159,352,250 | 48,358,790 (시간선택제 포함) |

〈 타 공공기관 의사 급여 〉

('20. 기준, 단위 : 원)

| 기 관 | 구 분 | 평균 | 최고 | 최저 |
|---|---|---|---|---|
| 서울중앙보훈병원 | 일반직 (전문의) | 155,729,540 | 215,593,140 | 96,322,350 |
| 경찰병원 | 일반직 | - | 149,223,680 | 84,627,800 |

※ '20년 의사 평균 연봉 : 2억 3,070만 원('22. 7.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과밀수용과 노인수용자 증가로 인한 환자 증가, 과거 코로나19 대확산 등에 따른 업무부담 과중 등으로 의무관 근무 기피

- 수용자의 무리한 고소·고발로 실제 기소까지 된 경우는 없으나, 피고소인인 의무관 등은 심적 불안감·압박감으로 고통 호소

※ 진료에 대한 불만 등의 사유로 5년간('17.~'21.) 평균 97건 이상의 고소·고발이 제기되는 상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13년부터 간병비 부담 절감 및 입원환자 의료 질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 실시(건강보험 시범사업 전환, '15. 1.)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 8.) 일환으로 서비스 확대 추진('22.까지 10만 병상)

- '22년 12월 기준, 656개 기관·70,363병상이 참여 중으로 참여기관 및 병상 지속 확대 추진 중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높은 만족도 등에 비해 과거 코로나19 영향과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확대 규모 둔화

  ※ 연도별 참여(병상) : ('17.) 26,391→('18.) 37,288→('19.) 49,067→('20.) 57,321→('21.) 64,108 →('22.) 70,363

○ **지역 돌봄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

- 급격한 고령화와 복합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로의 변화로 병원·시설보다는 재가 중심의 일상적·주기적 지역의료·돌봄의 중요성 증대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필요

- 서비스 확충이 지연되고 관련 서비스 간 연계가 저조한 상황으로 지역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법 마련 검토 필요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의료인·환자 보호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허용

-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원칙 합의

  –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아래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합의

○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 장병들이 입대 전 사용했던 이불류와 상이하여 거부감이 있고,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운용하여 위생문제가 제기되었던 모포·포단을 상용이불로 교체 필요

  – 기존 실내외 구분 없이 사용하던 모포·포단은 야외 훈련시에만 활용하고, 상용 이불은 실내 전용으로 활용하여 위생개선

  ※ 상용 침구류 운용 : 공군 '74년부터, 해군 '99년부터 이용함

- 현 피복 체계상 피복압력 등으로 착용·활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다수이고, 많은 옷을 겹쳐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충분한 보온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장병들의 개선 욕구가 높으며, 전투효율성 향상을 위해 장병 피복착용 체계개선 필요

- 군 급식체계는 지난 5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를 유지 중, 장병의 다양한 요구수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하지 못하는 급식체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장병 기본권 차원에서 구조적·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 확산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

  –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의 시설·장비 확충,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21. 기준 지방의료원 54명, 적십자병원 5명, 54억 원)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속 확대('21. 기준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운영·지원('21. 기준 13개소) 등을 통한 공공보건 의료 협력 추진체계 구축

○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지원 강화**

- 전국 치매안심센터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다양화
  -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거점 기관인 치매안심센터 전국 256개소 설치('17. 12. ~'19. 12.)
  -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을 통하여 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22. 말 기준 387,000여 명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18. 1.),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가능('21. 기준 총 22,000여 명 등록)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지속 확충('21. 기준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총 115개소 확충)
-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 공립 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22. 말 기준 65개소 설치지원)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22. 말 기준 총 10개소 지정)
-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완화
  - 장기요양비 본인부담 경감 확대('18. 8.)로 '21년 총 37만 명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18. 8.) 및 치매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비용부담 경감

    * 본인부담금 20~60%→10%로 인하

○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개발과 성과제고 방안 연구 수행(한국보건의료연구원, '18. 4. ~'21. 6.)

• 환자안전지표 게시 및 보급('19. 1.)

–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수행 정도의 자율적 점검·관리를 위한 환자안전지표 4개*에 대한 시범 보급 및 공유

* ① 환자 확인율, ② 낙상 발생 보고율, ③ 손 위생 수행률, ④ 욕창 발생 보고율

• 연구 진행사항 점검 및 성과 확산 방안 논의('20. 5.)

•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지표 활용 결과 모니터링

– 「환자안전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환자안전위원회 운영실적 자료에 환자안전지표 선정·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필수 보고사항으로 하여 국가 차원의 지표 활용방안 및 개선활동 결과 모니터링 시행

• 한국형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활용·확산 전략 수립('22.)

– 한국형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활용·확산 전략 수립 사업을 통해 환자안전활동 우선순위에 따른 환자안전지표 도출

– 보건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한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지표 정의, 측정산식, 조사방법 등 표준화된 지표정의서 마련

### ○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특례 공급 지속 지원

• 희귀질환 등 치료를 위해 국내 미허가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 도입토록 하여 안정적으로 공급

※ 긴급 도입 인정 품목 수(개) : ('18.) 5→('19.) 9→('20.) 77→('21.) 17→('22.) 14

• 의약품 구입비를 확보하고 적정재고를 비축하여 희귀·필수의약품을 신속히 공급

– '20년부터 의약품 구입비(42.15억 원)를 확보하여 긴급도입 수요를 예측하여 필수적 치료제를 일정량 사전 비축함으로써 환자 수요에 따라 의약품을 신속히 공급*(주문공급 : 3개월 소요→재고비축 중인 의약품 공급 1주일 이내 소요)

* ('21.) 187품목·13,883건·260억 6천만 원 상당→('22.) 179품목·14,732건·442억 4천만 원 상당

○ **군 장병 의료 접근권 향상**

- 군의관이 미보직된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를 통해 장병 진료 접근성 보장, 의무후송헬기 배치를 통한 응급환자 후송 및 대응능력 확보
-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확대 및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 여건을 보장

○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 학교급식 종사자 위생관리 역량 강화 및 정책지원
  - 국가 차원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안내서 개발·보급(3종), 위생관리 특별연수(1,500명) 및 연수 동영상 제작·안내
-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검 강화
  - 학교단위 자체점검(연 1회 이상) 및 교육청 주관 위생·안전점검 실시(연 2회), 신설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안내('18.~'22. 매년 1월)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 교원 연수를 통한 흡연학생 관리역량 강화, 각급학교에서 활용이 가능한 흡연·음주 예방교육자료 공유
  -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를 통한 학생 연령대별 맞춤 교육 콘텐츠 제공(웹툰, 동영상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콘텐츠 제공)

○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실시 및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 마약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도점검으로 위반 적발률 제고
  -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정보제공 후 처방 개선 여부를 추적 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제도 운용
  - 국내외 불법 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신속히 지정('22. 12. 기준)
- 의료현장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환경 조성
  -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확정을 통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항불안제, 진통제,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 진해제에 대한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총 7건)
  - 의사가 과다투약을 점검할 수 있는 처방통계 정보(안전사용 도우미)제공으로 오남용 방지 및 적정 처방 유도
-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사업 실시('20. 4.~'22. 12.)

○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 국민들의 환경유해 물질 노출 및 건강 관련 환경오염 인구 최소화를 위해 국내 현황을 반영한 환경보건 기초조사사업 수행
  -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18.~'20.)에서 전국 426개 조사구 내 우리나라 국민 6,381명(성인 4,239명, 중·고등학생 828명, 초등학생 736명, 영유아 578명)의 환경유해인자 33종 임상검사 21종을 통한 체내 노출수준 조사
  - 제4기('18.~'20.) 기초조사 결과 국가승인통계 공표 및 제5기('21.~'23.) 기초조사 1차년도 현지조사 추진('21.)

•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 관리, 환경성 질환 대응, 유해화학물질 위해 관리,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 기술개발

– 환경유해인자·환경성질환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 추진 ('13.~'21.)

* 라돈, 아토피, 환경호르몬 등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인체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반 기술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환경보건센터 운영으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모니터링 추진

– 기존 환경성질환 조사·연구 중심에서 권역별 환경보건 기반 구축, 정책지원, 환경성질환 중점연구로 기능을 다양화하여 환경보건센터 15개소 운영

– 환경성질환 연구사업, 환경성질환자 모니터링, 환경보건콘서트, 환경보건 이동학교 등 사업 추진

### ○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 실내 라돈 권고기준 강화 및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 관리 계획 수립 지원 지속 추진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라돈 농도 권고기준을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19. 7.)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00Bq/㎥→148Bq/㎥

– 라돈 고농도 지역 대상 실내 라돈 실태조사(강원·대전·충남·충북·전북) 및 지역 라돈 관리계획 수립(강원·대전·충남·충북) 지원('19.~'22.)

• 실내라돈 무료 측정 및 컨설팅 사업 지속 추진

– 주택, 라돈 고농도 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해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시공, 컨설팅 등 지원*

* 무료 측정·컨설팅 8,986개소, 라돈 알람기 보급 1,928개소, 저감시공 354개소('18.~'22.)

○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개선**

•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체험 프로그램, 전문 의료인 상담·교육 등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제공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추진

*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15년~'21년까지 임신한 여성을 모집하여 태아의 환경부터 출생 이후 성장까지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건강 영향 간 인과관계를 추적관찰

– 임신부 7만여 명(상세코호트 0.5만 명, 대규모코호트 6.5만 명) 모집 및 환경노출, 채혈 등 건강조사 실시(~'21.)

– 모집된 임신부 및 영유아에 대해 환경노출, 인지발달 검사 등 추적조사 실시('15.~)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 고도화 및 추진 로드맵 마련('20.)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 실시

– 사회취약계층(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환경유해인자 관리방안 컨설팅 지원

– 환경개선이 시급한 가구에 시설개선(장판·벽지교체 등) 지원

–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등에게 진료 지원 서비스 제공

○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 강화**

• 인체적용제품·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량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위해성 평가 정보 수집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제공을 위한 인체위해성 평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발암 또는 위해성이 높은 물질 등에 대한 독성시험 수행 및 독성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독성시험 수행(누적)(건) : ('18.) 20→('19.) 50→('20.) 80→('21.) 110

※ 독성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누적)(건) : ('18.) 600→('19.) 1,200→('20.) 1,800→('21.) 2,400

• 소비자 위해우려 다소비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 및 결과 공개

– 중금속, 다이옥신 등(60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 유해물질 총 노출량, 주요 노출원,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결과 공개

※ ('18.~'19.) 비스페놀 등 14종→('20.) 중금속 등 33종→('21.) 과불화화합물 등 13종

※ ('20.~'21.) 중금속 등 47종 공개→('22.) 과불화화합물 등 13종 공개

### ○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 강화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 수립('20. 12.)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21. 3.~),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평가 지침 개정('22. 5.)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 9.)에 따라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행 의무화

•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적응시설(야외 물길 쉼터, 차열페인트 도장 등) 설치 지원('18.~'22., 130개 지방자치단체, 국고 214억 원)

• 탄소중립실천포인트*('22.~) 등 기후행동 인센티브 확대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기후행동 1.5℃앱, 연중 홍보 캠페인) 추진

*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일반국민의 탄소를 줄이는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 시 인센티브 지급

###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미세먼지 국내 감축 및 환경기준 강화

–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3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감축조치 시행(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 '19. 11.)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도입·시행('19. 12. 이후 매년 시행)

– 석유화학·제철·시멘트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19.~), 질소산화물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배출부과금 제도 시행('20.~)

– 지하역사 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50㎍/㎥) 신설('19. 7. 시행)

• 미세먼지 노출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확대

– 전국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시설 지원(약 27만 개 교실, 교육부), 공공육아나눔터·청소년 쉼터 등 공기정화시설 지원(2,243개소,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마스크·공기청정기 지원(지방자치단체) 등

• 중국과의 미세먼지 협력사업 추진

– 한·중 맑은하늘(晴天) 계획 세부이행방안 MOU 체결('19. 11.), '맑은하늘(晴天) 세부이행계획' 합의('20. 3., '21. 3., '22. 3.),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 등 국제협력 강화

### ○ 생활소음 대책 마련

•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1.~'25.)'을 수립하여 소음·진동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20. 12.)

•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본격 시행('20. 1.~)으로 교통소음의 사전적·근원적 예방과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운영 안내서 마련('21. 7.) 등으로 공사장 주변 소음관리 강화

• 층간소음 갈등 초기 중재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 실시,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시간 야간확대 및 층간소음 측정일 예약서비스 실시, 유아·어린이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 **국토 및 환경계획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보**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시행기반 구축 및 국가계획 수립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정('18. 3.), 통합관리를 최초 적용한 국가계획* 수립('19. 12.)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통합관리 반영)

• 지방자치단체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이행강화 지원

– 통합관리 이행협의체 구성(국토교통부·환경부, '21.~)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수립 공무원 대상 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협업 및 이행강화 지원

○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 위험분담제도 운용

– 위험분담제도 관리 보완 방안 마련 및 위험분담 약제,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대상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함이 인정되는 약제) 신규 등재('18.)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외 기타 중증질환치료제까지 대상 확대 및 후발 의약품* 대상 확대('19.)

* 신약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된 원개발사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 효과, 용법과 용량이 동일한 의약품

※ 위험분담제도 적용 중인 의약품의 후발의약품도 환자 및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 위험분담계약 적용

– 위험분담약제 및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 신규 등재('20.)

○ **의료 서비스 이용 차별 개선**

• 예비의료인 및 상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상담간호사, 예방강사, 예비의료인 및 의료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자 맞춤형 홍보 전략을 통한 도달 효율성 및 접근성 강화

– 대국민 : 에이즈 바로알기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전국 시·도 보건소와 민간단체를 통한 HIV·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성병)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유튜버 협력 교육 영상 제작 및 게시, '세계 에이즈의 날' 온라인 진행을 통한 참여형 퀴즈 캠페인 실시 등

– 청소년·젊은층 : 브랜드 웹툰을 활용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정보 전달, 웹툰 캐릭터를 활용한 에이즈 예방 콘텐츠 제작·배포

– 감염인, 감염취약군 : 신규 HIV 감염인 대상 역학조사, 교육영상 제작, 민간단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및 검사 등

• 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개발·보급

○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공개**

• 사전신고된 총 14,512종('22. 12. 기준)의 화학물질을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

– 연간 제조·수입량 1,000톤 이상인 기존 화학물질 및 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21년까지 등록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 공공보건 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기관별 기능 정립,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역 내 지방의료원, 권역 필수의료센터(응급·심뇌·외상·모자 등), 민간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필수의료 연계·협력 체계 구축
-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경쟁력 제고
  -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공공병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 질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②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 치매환자 관련 정보가 통합 구축되고,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 개편
-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 서비스 다양화
  - 중증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치매환자가 전담 의사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 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
- 치매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시·군·구별 치매안심마을 조성 확대 및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인을 이용·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제도 확대 시행 등 추진
  -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을 불식할 수 있도록 '치매(癡呆)' 용어 변경 검토 및 인식 개선 홍보 지속 추진

•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경도인지장애·75세 이상 노인·독거노인은 치매 고위험군으로서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상담 등의 집중 검사관리 추진

–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중 선별검사 무료 제공, 진단검사는 상한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③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적용·관리를 통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동일,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 환자안전지표 고도화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정책과제와 연계한 신규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확산('23.~'24.)

– 국가 수준의 지표 수집 및 산출을 위한 레지스트리 구축('25.)

– 국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문화 측정 등을 통하여 환자안전지표 활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26.~'27.)

### ④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특례 공급 지속 지원

•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원료 및 완제품 국산화 추진

–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국내 생산 기술 개발 지원

※ 연구사업 : (총 기간) 5년('22.~'26.), (사업비) 50억, (연구내용) 국가필수의약품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조, 품질관리에 관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산화·자립화 추진

※ 기타 : 연구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국내 업체로 기술 이전 시 보건복지부에 약가 우대 요청 등 관계 부처 간 협의 예정

• 원료의약품 안정 공급체계 마련

– 특정 수입국의 높은 의존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공급중단 위기징후 조기파악 및 신속대응을 위한 수급 모니터링 실시

– 위험요인을 사전포착·전파하고, 관련 품목 국내 생산·비축량을 점검하여, 대체 의약품 허가 여부를 감안한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화·비축 등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

• 국내 미허가 의약품의 도입 인정을 통한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속

– 현재 지원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도입 인정을 지속함으로써, 희귀난치병 질환자의 적기 치료기회 보장

### ⑤ 군 장병 의료 접근권 향상

• 군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외진셔틀 버스 증차 추진, 격오지 및 함정 원격진료 확대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후송체계 보완·발전

– 의무후송헬기 추가 배치

– 국군의료종합상황센터 내 첨단기술 기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⑥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 학교·유치원 급식에 대한 위생·안전점검 실시(교육(지원)청, 급식 전문가(교수 등)) 등을 활용하여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지원 강화

• 학교·유치원 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학교·유치원의 위생관리 역량 제고

### ⑦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 학교의 체계적인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 강화
  - 중·고등학교의 음주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내 주류 반입금지(술을 연상시키는 무알콜 음료 포함) 등에 대한 내용이 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 교육(지원)청은 흡연·음주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 교원 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배양 및 흡연학생 관리
  - 교원 연수 시 흡연 등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지도자 과정 운영
  - 흡연 등에 중독된 학생이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⑧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
  -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등 포함) 대상 맞춤형 마약류 예방교육 교재 개발·보급 및 강사 인력 지원
- 마약류 관련 범정부 통합 플랫폼 및 메타버스 콘텐츠 운영
  - 국민들의 마약류 관련 정보·교육·상담 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 플랫폼 운영
  - 비대면 온라인 상담 지원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상담 수요에 신속 대응
  -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해 AR·VR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
- SNS 채널을 이용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신종마약류 정보와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 제공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 중독자와 그 가족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추진('24.~)

  * (~'22.) 2개(서울, 부산)→('23.) 1개소 추가(대전)→('24.~) 17개 확대(14개소 추가 설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활용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지도점검〉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제공으로 의사의 자발적 마약류 처방량(환자 1인당 평균 마약류 처방량) 감소
- 데이터 기반 지능형 감시체계 운영으로 현장 감시 적발률 제고
-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오남용 의심 의사 수 대폭 감소

### ⑨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 체내 환경유해 물질 노출수준의 분포, 변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국민 건강보호 기여
  - 3세 이상 국민 대상 체내 중금속 등 환경유해 물질 71종의 노출 수준 파악,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국가 대푯값을 산출하고 건강실태 및 영향요인 조사·분석
- 환경보건 정책 연계성 및 활용도를 높인 공공기술 개발 추진
  - 환경유해인자·환경성질환 간 상관성 규명 기반 확대, 개인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기술 개발사업 추진
  - 환경성질환 및 환경보건 디지털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21.~'28.),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기반 구축 기술('21.~'24.) 개발 추진
- 환경보건센터 권역형 센터 지정 및 지역 환경보건 문제 해결 역량 강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사업 추진 및 지역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권역형 센터 운영, 환경보건콘서트 및 환경보건이동학교 등 체감형 서비스 사업 지속 추진

### ⑩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 실내 라돈 저감·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지속 추진
- 실내 라돈 무료측정·저감 컨설팅 지원 사업(수행 : 한국환경공단) 지속 추진
  - 현장 방문을 통해 라돈검출기를 설치·측정하고 라돈 농도값과 저감 컨설팅 내용을 포함한 분석 결과서 제공
  - 300Bq/㎥ 이상 고농도 마을회관, 주택을 대상으로 저감 시공을 하고, 저감효과 평가 및 사후관리 실시
- 라돈 고농도 지역의 라돈 우선 저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라돈관리계획 수립' 지속 지원
  - 지역별 라돈현황, 실내 라돈관리 계획지표 설정, 주요 실내라돈 노출원인 조사, 라돈 위해 소통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별 '라돈관리계획' 수립 지원

### ⑪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개선

- 성장단계별로 환경유해인자 노출 수준과 건강영향 간 인과관계를 추적·검토하여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 임신부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출산 이후 출생아에 대해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추적 관찰하여 성장단계별 환경유해인자가 아동의 발달상태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 규명 및 환경유해인자 노출 수준·저감 생활 습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배포
-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방어력이 낮은 홀로 어르신, 환경성질환자 가구 등 민감·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지원
  - 민감·취약계층 거주 가구·시설 대상 환경성질환 유발요인 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진단 결과에 따른 열악한 가구·시설의 실내환경개선, 환경성질환 의료 서비스 지원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아이들이 환경유해인자 저감 습관을 습득하고 환경보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 대상 '건강나누리 캠프' 등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추진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겪는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자연체험, 전문 의료상담, 환경성질환 관리법 안내 등을 연계한 통합적인 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 ⑫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 강화

-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체계 확립 및 안전 강화
  -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52종에 대해 통합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인체 노출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국민건강 보호
  -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23.~'27.)에 따라 실생활 중 유해물질 노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체 노출 총량을 고려한 유해물질 저감
  -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품·매체를 통합 위해성 평가 시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관리 방안 협의 등 협력 강화

### ⑬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 강화

- 기후 모니터링 체계 및 전망 기술 강화
  - 유관기관의 공간적으로 상세화된 자료(홍수, 산사태, 인구, 건축물 등)를 반영하여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도구 고도화
  - 농업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진단 및 관련 기술개발과 정책연계 역할을 하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26.)
- 기후위기 적응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 국가 단위 적응대책 추진체계(수립-이행-평가-환류) 정비 및 모든 이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 시민단체, 청년단체 등)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운영
  -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도입, 국가 주요 계획·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기후위기 리스크 부문별(물관리, 생태계 등) 기후위기 적응방안 마련
  - 저탄소 농업활동에 따른 추가비용(노동력 투입 등) 보전 및 인센티브 지원 등 농업인 탄소저감 활동 지원 체계 마련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기반 구축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유형별 고려방안, 피해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보호대책 가이드 마련

• 온실가스 배출 주체의 탄소 감축 유도

–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시장원리를 활용하여 기업의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투자 및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한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공개 유도

### ⑭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감축 지속

– 소규모 및 다량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생활 주변 유해물질 배출 저감

– 한·중 맑은하늘(晴天) 계획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사업 지속 추진

### ⑮ 생활소음 대책 마련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강화

– 건설 공사현장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활성화 및 저소음·저진동 공법 사용 유도

– 공사장 소음저감 가이드라인 마련, 저소음·저진동 공법 우수사례 전파, 공사장 현장 관리자의 자발적·지속적 소음관리 지원

–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소음저감 자재 대여(BANK, 에어방음벽, 이동식 방음시설 등) 지속 추진

• 도로변 교통소음원 관리 강화

– 소음 모니터링으로 소음추이 등을 분석하여 지점 특성에 맞는 소음저감 컨설팅 추진

– 과학적 관리 및 실시간 소음 측정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동측정망의 자동측정망 전환 추진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 노력

– 입주자가 체감하는 층간소음의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확대,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 예약 편리성 증대 추진, 이웃사이센터 야간 서비스 확대 등으로 층간소음 갈등 조기 해소 추진

*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조정 지원,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등을 하게 함

– 갈등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용 갈등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층간소음 민원 소통창구 다양화

### ⑯ 국토 및 환경계획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이행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리 모니터링 절차 반영, 통합관리 적용범위 확대 등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개정('23.)

• 지방자치단체 단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역량 강화 지속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국토·환경계획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관리 지원단* 구성 및 맞춤형 컨설팅, 공간환경정보 활용 등 순회교육 실시('23.~)

* 환경부·국토교통부, KEI(한국환경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환경계획 전문가 등 통합관리 지원단 구성

### ⑰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약제 급여 지속 확대 추진
  - 매년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 약제의 신규 보험 급여 적용
  - 항암제 등 보험급여기준 범위 지속 확대
-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검토
  - 위험분담 제도 및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 운용 평가를 토대로, 기존 제도의 범위 확대 등 추진 검토 계획 등

### ⑱ 의료 서비스 이용 차별 개선

-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의료인·예비의료인·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HIV·에이즈 관련 현장 방문 무료 교육 시행,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해 예비의료인 대상 HIV·에이즈 관련 교육 시행 등
- 대국민 에이즈 바로알기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에이즈 예방을 위한 대상별 콘텐츠 제작 및 교육자료 배포
  -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에이즈 바로알기 정보 제공 및 검사활성화 캠페인 실시
-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등에 HIV·에이즈 감염경로, 의료행위 중 표준주의 원칙 준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HIV 감염인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관련 교육·홍보

### ⑲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 공개

- 등록이 완료된 기존 화학물질 714종은 유해성, 제조·수입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급성이 높은 물질부터 우선적으로 유해성 심사실시, 결과 공개(~'24.)
- 연간 제조·수입량 1,000톤 미만인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 및 활용을 위해 등록 이행 지원

### ⑳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 의료인력 확보 추진
  - 의무관 정원 임기제 전환, 임기제 의무관 연봉 상향, 개방형 직위 전환 및 의료업무 수당 가산금 지급 추진 등 실질적 보수를 증액함으로써 의료인력 확보
  - 병력자원 감소 추세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또한 감축되고 있으나 교정시설 내 공중보건의사는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하여 외부 전문의 방문진료, 원격 화상진료,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를 활성화
  -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 치료중점시설에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 및 운영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및 단계적 확대
- 교정기관 원격의료 활성화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현재 전국의 54개 교정기관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설치하고, 39개 협력병원과 원격진료 실시 중이며 협력병원 지속 확보 추진
  - 현재 협력병원을 대상으로 10개과(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심장내과, 기타)에서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원격의료 과목 확대 추진

### 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 ㉒ 지역 돌봄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

-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학계·의약단체·관계 전문가 등 의견이 반영된 법안 도출하여 국회 논의
- 지역의료 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법 마련
  - 기관 간 정보연계 근거, 사업별 연계·조정, 시범사업 근거, 중앙·지방자치단체 역할 구분, 재원 등 근거 마련

### ㉓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국민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 관점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 「의료법」 개정 추진

### 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 침구류·피복 개선
  - 육군·해병대 침구류(모포·포단)를 상용 이불류로 교체(~'23.)

    ※ 다수공급자 계약을 통한 조달('22. 10만 세트·107억 원, '23. 21만 세트·218억 원)
  - 장병 피복 착용 체계(전투피복체계) 개선을 통한 고품질 피복류 보급
- 급식환경 개선
  -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식재료 가격 인상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하여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실시
  - 다양한 조리가 가능하도록 현대화된 조리기구(오븐기, 컨베이어형 토스터 등) 보급
  - 기본품목과 기준급식량에 따른 의무급식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반영한 자율적 선택 급식 추진('23.~)
  - 장병들이 먹고 싶은 외식메뉴를 지역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지역상생장병특식 추진('23.~)

## 4. 교육을 받을 권리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 교육을 받을 권리, 무상의 의무적 초등교육, 기술 및 직업교육의 일반적 접근 가능, 고등교육의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
  -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 촉진
  -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
- 자유권규약 제18조 제4호
  -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 신념에 따른 자녀의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
- 사회권규약 제13조
  - 교육에 대한 권리, 인격·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육, 인권과 기본적 자유을 더욱 더 존중하는 교육, 교육에 의한 자유사회로의 효율적 참여, 인종적·종교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키는 교육
  - 무상의 의무적 초등교육, 중등교육(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 포함)의 점진적 의무교육화 및 일반 개방, 고등교육의 점진적 의무교육화 및 능력에 따른 동등 개방, 기본교육의 장려·강화, 학교 제도의 발전 추구, 연구·장학제도 수립,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 지속 개선
  -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의 학교 선택의 자유 및 신념에 따른 자녀의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
  -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자유(교육의 원칙 및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기준과 일치하는 요건하에서)

•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9조

– 교육에 대한 권리, 무상의 의무적 초등교육, 중등교육(일반교육 및 직업교육 포함)의 발전 장려 및 일반 개방, 고등교육의 능력에 따른 일반 개방, 아동의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에 대한 이용 및 접근권,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중퇴율 감소 장려 조치

– 학교의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교육과 관련된 국제협력 촉진·장려

– 아동교육의 목표 :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부모·문화적 주체성·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 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평화·관용·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 개인 및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자유 침해 금지(아동교육의 목표 준수 및 국가가 정하는 최소기준과 부합하는 조건하에서)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제14조 제2호 (라)목

– 교육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 확보(취업·직업보도·학문혜택·학위취득 조건 동일 보장, 동일 교과·동일 시험·동일 수준 교사진·동질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모든 형태의 교육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 장려, 장학금 및 연구 장려금 혜택 기회 동일 보장, 계속교육의 혜택에 대한 동일한 기회 보장, 여학생 중퇴율 감소 보장, 조기 학업중단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 마련 보장, 스포츠 및 체육교육 참여 기회 동일 보장, 가족 건강 및 복지에 유익한 구체적 교육 정보의 수혜 보장)

– 시골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훈련 및 교육의 혜택 받을 권리 확보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목 (v)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 보장

–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개발과 인권, 기본적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인성·재능 및 창의성의 개발 극대화,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 참여 증진

– 장애를 이유로 한 일반 교육제도에서의 배제 금지, 장애를 이유로 한 무상 의무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의 배제 금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공,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

–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조치

– 점자, 대체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수단 및 형식, 방향정위 및 이동기술의 학습을 촉진,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 및 조력 촉진

–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 촉진

–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

–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실현을 돕기 위하여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훈련에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보완적이며 대인적인 방식, 수단 및 형태의 의사소통,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이 통합)

–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 이를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 보장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31조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취학 전 유아의 무상교육 점진적 확대 필요

– 누리과정 지원 단가인상('18. 22만 원→'22. 28만 원)

–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 전 계층에 대해 학부모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속 지원('18. 561,000명→'22. 443,000명)

#### ○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 특별전형 확대 등에 따라 고등교육 기관 장애학생 규모 지속 확대 추세

※ 장애 대학생 규모(명) : ('10.) 5,213→('16.) 8,747→('20.) 9,717

• 전체 성인 대비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저조

※ 평생교육 참여율('20.) : 전체 성인(40%), 전체 장애인(0.9%)

#### ○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 교육 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의 집중단속 및 이전·폐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 청소년 인구감소에도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최근 학업중단율이 다시 증가추세('20. 0.6%→'22. 1%)

  – '22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은 16만 8천 명으로 추산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 3~5세 누리과정 지원인원('18. 561,812명→'19. 562,976명→'20. 529,303명→'21. 499,875명→'22. 443,750명)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단가 및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인상

○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 장애대학(원)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

  – 장애대학(원)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를 통한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 ('18.) 장애대학생 653명에게 546명 지원→('19.) 장애대학생 643명에게 538명 지원→('20.) 장애대학생 675명에게 589명 지원→('21.) 장애대학(원)생 778명에게 685명 지원, 110개 대학의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 교육부 내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부서(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18. 1.) 및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18. 4.) 설립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 마련('19. 12.) 및 관계 부처(기관) 합동 연차별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추진

### ○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추진
  - 교육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개학 시기 각 1회 합동단속 및 시·도 교육청별 매월 자체점검 실시
- 학교 주변 불법 유해시설 이전·폐쇄 조치
- 교육환경평가제도 내실화
  -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 보완을 위한 관련 연구 추진('19.),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발·보급('20.)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1.) :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시·도교육 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정비 및 심의 시 학교장 의견수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1. 9. 시행)

-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센터 등 인프라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개소) : ('18.) 208→('22.) 220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개소) : ('20.) 20(신규)→('22.) 44

- 대입준비 학교 밖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지원('21. 7.), 청소년생활기록부 적용 대학 확대* 등 학생과의 차별 개선

  * ('20.) 4개→('22.) 11개 대학(전북대 등 신규 적용)

- 학업·자립·건강 등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실시('22. 39,232명)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 적정 수준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추진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통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

### ②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취업 지원 강화

  – 장애학생의 흥미·적성·진로성향 등을 파악하고,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직업 탐색 및 체험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의 취업성공 및 직업유지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장애대학(원)생 지원 사업 운영 내실화

  – 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병행, 수업 중 활용 영상물 제작 관련 장애인 편의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시·도 교육감과 협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포함)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사회참여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추진

### ③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 학교 주변 불법 유해시설의 이전·폐쇄를 위한 관계 부처 합동단속(연 2회) 및 시·도 교육청별 자체점검(수시) 실시
-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 추가 검토

### ④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 범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기존 초·중학생)
  - 학업중단 청소년을 신속하게 찾아 정보를 연계하는 온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체험활동 및 또래 소통이 가능한 전용공간 확대
- 비대면교육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령별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사회성 훈련프로그램 등 개발
- 진로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직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추진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신규 실시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활동사항을 대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생활기록부' 적용 대학 확대 추진

##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7조, 제23조 제1호, 제27조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
  -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 당하지 아니할 권리
  -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
  -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
  -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 사회권규약 제15조 제1~3호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자신이 저작한 과학적·문화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
  -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 존중
- 아동권리협약 제31조
  -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 장려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제1호 (다)목, 제13조 (나)목, (다)목, 제15조 제2호, 제3호
  -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직장안정·역무의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직업훈련·재훈련을 받을 권리
  - 은행대부, 저당 및 기타 형태의 금융대부에 대한 권리의 남녀 동일 보장
  - 레크리에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남녀 동일 보장
  - 민사문제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이를 행사할 기회 부여, 특히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일한 권리 부여
  -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갖는 모든 계약과 기타 사적 문서는 무효로 간주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목 (v), (vi), (e)목 (i), (vi)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상속권을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근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는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당하고 알맞는 보수 등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5호, 제30조
  -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 보장,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 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
  -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문화자료에 대한 접근 향유, 텔레비전 프로그램·영화·연극 및 다른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 향유, 문화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
  -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국제법에 따른 조치
  -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

–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의 최대한 참여 장려·증진,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체육활동·레크리에이션·관광지에 대한 접근 보장, 장애아동의 놀이·레크리에이션·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참여 보장, 레크리에이션·관광·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로부터 서비스 제공 보장)

– 유네스코는 '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증진 및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그 가치에 대한 인식 고취를 통해 문화가 번성하고 서로 호혜적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발효, 대한민국은 '10년 비준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전문,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문, 제15조, 제34조, 제69조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필요

• 신문, 잡지와 같은 기존 매체뿐만 아니라 SNS*,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청소년·아동이 증가, 이에 따라 비판적인 미디어 수용 및 능동적인 미디어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필요

* 10대 청소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비율 : ('19.) 87.4%→('22.) 97.4%

** 10대 청소년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 ('19.) 4시간 30분→('22.) 8시간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 청소년 주도 문화활동 확대

• 지역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증진 도모 필요

### ○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 체육 참여를 제한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장애인(중증, 노인 등)의 경우 기저질환에 따른 약한 면역력, 이동권 제약, 심리적 위축 등으로 감염병에 특히 취약*

*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19년 24.9%→'21년 20.2%로 4.7%p 감소

– 비장애인 대비 열악한 수익구조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체육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등으로 민간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다양한 장애인체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

### ○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노년층의 경우, 유아·청소년·청년·중년에 비해 직접적인 문화예술 경험이 낮아 자발적인 문화활동 참여가 어려우므로 체계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필요

※ 문화예술관람률 : 60대(30.3%), 70세 이상(14.8%)로 세대 평균 관람률(58.1%)보다 매우 낮음 (202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

–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는 꾸준히 증가추세

〈국민의 과학인식도 조사 결과〉

(단위 : 점수)

| 조사항목 | 조사대상 | '16년 | '18년 | '20년 | '22년 |
|---|---|---|---|---|---|
| 과학에 대한 관심도 | 성인 | 37.6 | 39.2 | 46.9 | 47.5 |
| | 청소년 | 45.6 | 47.2 | 57.1 | 68.9 |
| 과학에 대한 이해도 | 성인 | 27.3 | 34.4 | 36.5 | 37.6 |
| | 청소년 | 33.6 | 41.3 | 44.6 | 52.4 |

• 코로나19로 발생한 과학기술·문화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디지털 불평등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반적인 교육·학습 결손 등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문화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통합의 기반 마련 필요

• 정보취약계층의 급격한 증가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식서비스 제공 필요성은 꾸준히 요구되나 예산 규모 등으로 정보서비스 제공은 한정적

– '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 및 다문화 가구 구성원이 전체 인구의 2%에 육박할 예정으로,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문화시설 중 하나인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중요

### ○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 인구감소·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역의 위기 심화

– 법정인구감소지역 89개 중 85개(95.5%)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지방거점도시(인구 20만 이상, 비수도권 22개) 인구는 지속 감소 추세*

* ('19.) 884.4만 명→('20.) 883.6만 명→('21.) 882.4만 명→('22.) 878만 명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문화인프라 및 향유기회 격차*로 지역 내 자생적 문화활동 여력 미흡

* (1개 시·도당 문화시설 수) 수도권 382.7개 〉 비수도권 142.4개
(문화예술관람률) 대도시 60.7% 〉 읍·면 50%

### ○ 문화다양성 존중정책 실시

• 체류 외국인 증가('22. 말 기준 225만 명, 총인구 대비 4.37%(법무부 출입국통계)) 및 이주배경 다변화, 이민자 정착 장기화에 따른 다문화 학생 수 증가 등 인구구성 다양화

•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은 다양해지고 있으나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은 낮은 편으로, 문화 간 접촉면 확대 및 상호 문화이해와 존중의 환경 조성 필요

– 국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도와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는 낮은 수준

※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35.4%에 불과하며, '나의 사회문화적 정체성(배경)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35%에 불과함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예술인 창작 기반 강화**

-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예술 분야의 열악한 기반 노출 및 공공의존도 심화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행사 취소 및 고용 불안정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예술 분야의 어려움 잔존
-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기반 강화를 통해 창작 활동 활성화 및 건강한 예술 생태계 조성 필요

○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도입 확대를 통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필요

○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에게 지식재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지식재산에 대한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취약
- 개인·중소기업 등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심판 등 분쟁 발생 시 법률전문가 이용도 저조

  ※ 특허·상표 출원 대리인 선임 비율 : 개인 70%, 중소기업 86%, 중견기업 92%, 대기업 99%('16.~'21.)

  ※ 특허·상표 무효심판 대리인 선임 비율 : 개인 58%, 중소기업 73%, 중견기업 81%, 대기업 83%('16.~'21.)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중소기업)에게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기반 확대 필요

### ○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 저작권 침해의 국제화·다양화

– 웹툰, 토렌트 등 불법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범죄가 국제화되어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발생

– 온라인 서비스, 커뮤니티 사이트, SNS, 웹하드 및 개인 간 파일공유(P2P), 토렌트 등 침해경로 다양화

※ 불법복제물 이용 비중('21. 기준, 한국저작권보호원) :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22.4%), 무료 음악 전용 온라인 서비스(22.1%), SNS(19.1%), 웹하드·P2P(15.7%) 순

•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물 이용환경 급변

–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술 등의 확산으로 저작물 유통·이용 환경 급변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 토큰

– 저작권자 허락 없는 NFT 작품 유통, 메타버스 내 공연·전시 등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및 분쟁에 대한 우려 확산

### ○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 개선

• 국민들이 일상에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60% 내외로 정체를 보이다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에 있으며, 참여하는 체육 종목도 걷기, 보디빌딩, 등산 등 위주

〈생활체육 참여율*〉

(단위 : %)

|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주1회 이상 | 62.2 | 66.6 | 60.1 | 60.8 | 61.2 |
| (증감, %) | 5 | 4.4 | -6.5 | 0.7 | 0.4 |
| 전혀하지 않음 | 28 | 25.9 | 29.5 | 28.7 | 29.5 |
| (증감, %) | -0.9 | -2.1 | 3.6 | -0.8 | 0.8 |

* 출처 : 국민생활체육조사(문화체육관광부, 전국 17개 시·도 10세 이상 국민 9,000명 대상 조사)

• 국민들의 스포츠 향유 환경개선 및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필요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국악·연극·영화·무용·만화애니메이션·공예·사진·디자인 등 8개 분야 초·중·고등학교 예술강사 지원
- 전국 문화시설·단체에서 실시하는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8.) 933개→('19.) 618개→('20.) 542개→('21.) 460개→('22.) 720개

- 교육 지원을 통한 미디어 수용 및 능동적인 뉴스활용 능력 강화
  -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미디어교육 등을 통해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 평생교육교실 등 시설·단체 미디어교육* 지원

    * ('18.) 396개 학교·107개 기관 지원→('19.) 308개 학교·156개 기관 지원→('20.) 502개 학교·77개 기관 지원→('21.) 632개 학교·118개 기관 지원→('22.) 662개 학교·146개 기관 지원

  - 미디어교육원('20. 5. 개관),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 인가('21. 4.), 온오프라인 교사 연수, 미디어교육 인정교과서 개발(2종), 미디어교육 수업지도안 및 학습 사용 도구 개발

#### ○ 청소년 주도 문화 활동 확대

-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전국 126개소 지원
  - 청소년 주도의 참여 활동 강화를 위해 청소년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을 시·군·구까지 확대 구성·운영('17. 4개 시·도→'19. 전국 적용)
  - 전국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주간('22. 10. 24.~30.) 추진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을 통해 비대면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 '18년 평창패럴림픽 개최 후, 장애인체육 지원 지속 확대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16. 17.7%→'22. 26.6%)

  –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18. 8.), '2018-2022 장애인체육 발전 중장기 계획'('18. 8.) 발표

  –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19. 도입) 등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확대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18. 546개소→'20. 604개소→'21. 705개소→'22. 673개소) 및 동호회 지원('18. 349개소→'20. 253개소→'21. 291개소→'22. 301개소)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19. 도입 15,000명→'20. 17,000명→'21. 38,000명→'22. 87,000명) 및 장애인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19. 도입 5개소→'20. 5개소→ '21. 5개소→'22. 5개소), 장애인 스포츠버스 운영('22. 신규, 24개소) 등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18. 577명→'19. 762명→'20. 915명→'21. 955명→'22. 1,000명)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장애인 체력인증 기반 확대

  –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19. 신규 30개소→'20. 신규 23개소(총 53개소)→'21. 신규 13개소→'22. 신규 10개소(총 76개소))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18. 3개소→'20. 8개소→'21. 10개소→'22. 12개소)

### ○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공연·사회공헌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18. 297개→'19. 311개→'20. 202개→'21. 187개→'22. 199개)
  - 코로나19 기간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비대면 문화예술체험 꾸러미 제작·배포('21. 13,100세트, 580곳→'22. 4,500세트, 206곳) 및 비대면 영상제작('22. 어르신 맞춤형 체조 등 21편)
  - 어르신 문화예술축제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22. 278팀, 3,533명 참여)

###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과학〉

- 수혜자 규모와 지원상품을 확대하고, 기존 온라인 바우처 외에 수혜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과학기술문화 바우처'를 도입하여 서비스 이용 효과성 제고
- 도서벽지 주민·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생활과학교실 운영 확대로 생활 속 과학기술문화 저변 확대
- 소외계층 및 도서벽지 주민 대상 우수과학도서 보급 확대,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관' 운영 및 찾아가는 과학행사 개최 등 두드림 프로젝트 운영
-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감형 과학문화학습콘텐츠를 개발하여 전국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으로 지원 확대, 사회적 배려계층의 디지털 격차해소 기여

〈문화〉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지속 확대
- 장애인 대상 영화 향유 기회 확대 지원
  - 가치봄 영화(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지원 장애인용 영화) 제작·상영 및 영화제 개최 지원, 장애인·비장애인 동시관람 환경 구축 지원

•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정기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군 장병, 수형자, 학교 밖 청소년 등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노인 등 저시력자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큰글자책 보급

### ○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 지역 문화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19년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20년부터 예산 규모 급증으로 지원 규모 대폭 확대(666개관 6,982억 원)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야간 개방 22시까지)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사전평가('15.~'22. 232개관 평가), 평가인증제('17.~'22. 국립 36개관,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누적 746개관) 시행

• 문화로 지역발전을 이끌 문화도시 지정

–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18. 5.)

– 문화도시 지정 및 본사업 추진(1차 '20.~'24., 2차 '21.~'25., 3차 '22.~'26.)

### ○ 문화다양성 존중정책 실시

•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마련

– 제1기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21. 2.), 제1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21. 5.) 및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전담기관 지정('21. 11.)으로 체계적 추진기반 마련

–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을 통해 정책모니터링 수행

• 문화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문화다양성 교육 및 주간행사 추진 등 정책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 간 상호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도모

– 지역문화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주민·장애인·노인 등 문화적 소수계층과 주류문화 간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 간 상호이해 장려

– 유치원·초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운영 지원(연 4개교), 교원 대상 직무연수 및 일반인·문화기관종사자 등 대상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유엔 지정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 21.)' 기념 주간행사 추진(5. 21.~27.)으로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도모

### ○ 예술인 창작 기반 강화

• 예술인 지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직후부터 지속적인 예술계 현장간담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홍보 추진,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 안내서 및 예술인 고용보험용 간이계약 양식 제작·배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20. 12.) 2년여 만에 가입 16.8만 명 돌파(168,723명, '22. 12.)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예술인 권리 보호·구제의 기본법 제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권리 침해 시 실효적 구제의 제도적 장치 마련('21. 9.)

• 예술인 복지사업 확대를 통한 창작 안전망 강화

–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 지속을 위한 예술인 창작준비금 규모 대폭 확대('18.→'21. 5.3배) 및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 신설('21.)

– 소득 불안정과 낮은 신용으로 인해 일반 금융제도 활용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19.) 및 코로나19 특별융자 시행('20.)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운영 및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계약 및 저작권 교육, 성폭력 피해 및 예방지원 등)

○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및 사용 확산

– 영화 : 매년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실시 및 현장 배포·확산 지원

– 애니메이션 : 방영권·제작투자·시나리오·음악 분야 4종 제정('19. 8.) 및 사용 설명서 제작·배포('21. 6.)를 통해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만화 :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개정('19. 9.) 및 해설집 제작('19. 12.), 만화·웹툰작가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 실시('18. 12.~매년)

○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 공익변리사가 온라인·전화·내방 및 지역순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절차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명세서, 의견보정서 등)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에게 해당 서류작성 지원

– 심판, 심결취소소송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공익변리사가 대리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심판, 심결취소소송 수행

• 지식재산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영역을 산업재산권에서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까지 확대

○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 국제화·다변화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극 대응

– 온라인 공간에서 해외기반(해외 체류·서버 등)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공조수사 및 유사침해(대체사이트 등) 방지를 위해, 불법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정부합동단속' 매년('18.~) 실시

- ‘인터폴 협업사업’ 추진 : 인터폴 내 온라인 콘텐츠 침해대응 전담반 구성 및 194개 회원국 협력망 활용 사전정보 공유 및 국제공조 수사 추진
- 정규교과 및 보완적 교과활동과 연계한 저작권 교과 내용 연구, 저작권 교육 협력 강화 및 교과서 반영 확대
-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일반인 등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실시
- 저작권 홍보 강화
  - 반듯ⓒ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웹툰 제작·연재, 저작권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18.)

    * 반듯한 저작물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 자투리 저작권 홍보영상(20편) 및 저작권 브랜드 웹툰(16편) 제작, SNS 채널 연중 운영,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단 운영 등('20.)

### ○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 개선

- 전문, 생활, 유소년, 노인,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육지도자 양성 및 시·군·구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해 생활밀착형 생활체육지도 서비스 제공
-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회원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지도하는 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추진('16. 42개소→'22. 226개소)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 파견 지원(~'27.)

  – 학교 현장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사업 다각화 추진

- 아동·청소년 수요 및 사회 변화에 알맞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우수 프로그램의 지역 확산을 위한 워크숍 등 운영(~'27.)

-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미디어교육 강좌 지속 확대(~'27.)

  – 교사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나 문화 콘텐츠에 적절히 접근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를 활용, 의미 있는 정보와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및 윤리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태도

  – 아동·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육 운영

### ② 청소년 주도 문화 활동 확대

-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어울림마당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 주도의 참여활동 지원

  ※ ('23.)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16개 시·도 및 110개 어울림마당

-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23년 청소년단체 국외역사체험, 청소년포럼 등 다양한 문화 활동 추진

### ③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 기술 진보 및 장애 인구 특성 변화에 대응한 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 노인 장애인 대상 지원 확대 등 생활체육 지원 다각화
  -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장애인 체육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가상현실 체험관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참여 확대
  - 노인장애인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체육교실 지원(매년 100개소), 통합체육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 체육 축전 개최(매년)
-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재가·중증·고령층 장애인 등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 지도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확대
  - 장애인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금 인상, 수혜자 확대, 가맹시설 확대(~'27. 5,000개 이상) 추진
-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육 참여 확대
  -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및 반다비 체육센터 중심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확대(~'27. 22개소)
  -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운영 확대(매년 60회), 유휴 시간대(오후·야간·휴일) 학교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개방(매년 10개소)

### ④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60세 이상 노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지역맞춤형 문화활동 지원, 문화프로그램 연계 세대간 교류·경험공유 지원
- 적극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은 新노년 특성을 반영, 어르신 문화활동 및 사회공헌 지원으로 긍정적 노년문화 확산

### 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과학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운영
  - 아동·청소년, 성인, 실버세대까지 전 연령층을 포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체험 지원 강화를 통한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지원
  - 장애학생 대상 과학학습 체험, 멘토링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 특수교육 전담 강사 활동 지원으로 장애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과학문화 체험의 복지 서비스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동 및 수혜자별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개인+기관' 신청 병행 추진
  - '복지로', '정부24' 내 '과학문화 바우처' 코너를 마련하여 사업소개 및 신청연계(바우처 홈페이지로 연결) 추진
- 과학문화 종합체험 서비스 '두드림 프로젝트' 지원
  - 이동형 과학차량('가칭' 싸이횔)을 신규 제작함에 따라 싸이횔을 활용한 이동형 과학관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과학체험 서비스 제공
-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및 이용 편의 강화
-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
  - 가치봄 영화 사전제작 지원 및 영화관 상영회 진행으로 장애인 영화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영화관 접근이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온라인 관람 지원 병행
  - 매년 가치봄 영화제 개최 지원(장애인용 영화 및 장애 소재 영화 상영, 장애인 영화인 제작 작품 상영 등)
  - 동시관람 환경(폐쇄상영 시스템*) 정착을 위한 연구 및 현장 배포 등 지원

* 보조기기(화면·음성해설)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영화관에서 동시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

-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 향유 기반이 취약한 국민을 찾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 다문화 가구에 대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급속히 확대되는 우리나라 노인층의 독서 문화 수요에 맞추어 큰글자책 보급 지원

### ⑥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 지역 문화기반시설 경쟁력 강화
  -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컨설팅 추진(매년 30여 개관)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평가인증제 시행
  - 지역 공·사립 문화시설 전문인력* 확충 지원

    * 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교육인력 지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력지원
-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격 조성
  - 제4차 문화도시 지정, 본사업 추진('22. 12., '23.~'27.)
  -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22. 12.)→조성계획 승인('23. 12.)→지정, 본사업 추진('24. 12., '25.~'27.)

### ⑦ 문화다양성 존중정책 실시

-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및 사회 각층 전문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다양성 가치 확산
  - 중·고등 문화다양성 교과서('문화다양성의 이해') 배포 및 활용 지원
  - 교원·문화기관 종사자·콘텐츠제작자 등 주요 전문인력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통해 다양성 가치 확산의 매개인력 양성

• 대국민 문화다양성 가치 홍보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축제형 행사·캠페인·포럼 등 프로그램 강화로 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 법정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등 정책 모니터링 통해 증거 기반 정책 수립 체계 강화

– 문화다양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 문화창조 및 향유 활동에서의 다양성 등 문화다양성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정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통해 국내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적 조치(정부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를 모니터링

### ⑧ 예술인 창작 기반 강화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2. 9.) 본격 시행 및 교육지원 확대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정착 및 가입 편의 제고

•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한 창작 여건 개선

– 신진예술인 등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

–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 및 금융지원 강화

### ⑨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영화 :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영화산업 지원 사업(모태펀드* 영화계정 투자 등) 심사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 및 심사 시 우대 등 활용 확대 독려

* 개별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 국내에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일컬음

• 애니메이션 :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실태조사 실시 및 정부 지원 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등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만화 : 웹툰 작가·사업체 대상 불공정계약 실태조사 및 웹툰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추진('23.~)

### 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 전국 주요도시의 유관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해 교육·상담하는 '공익변리사 지역상담서비스' 운영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관명칭을 '지식재산 법률지원센터'로 변경 추진
  - 산업재산권 상담, 출원·심판 서류작성, 산업재산권 심판·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대리, 산업재산권분쟁 컨설팅·법률자문,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관련 상담·자문
-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시, 지식재산권분쟁대응센터와 협력하고, 특별사법경찰관수사 및 행정조사 연계 지원 추진

### ⑪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업시스템 마련 등 신속한 통합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마련,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
- 신기술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선제적 예방
  - 현실세계의 콘텐츠가 가상세계에서 재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의 예방 안내서 발간
- 초·중·고등학교 저작권 교육 강화 기반 조성
  - 시·도 교육청 담당자,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대상 전문연수 추진을 통한 저작권 교육 협력 강화
- 저작권 강좌 개설, 저작권 특강 추진 등 대학 내 저작권 강좌 운영 고도화 및 저작권 인식 제고 홍보
- '한국저작권체험관' 내에 전시체험환경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창작체험과 전시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23.)

### ⑫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 개선

- 모든 국민이 다양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 양성,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 서비스 제공 및 스포츠클럽 제도 정비
  - 다양한 수요자에 맞는 전문성 있는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시·군·구 체육회 배치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체육지도 활동 지원
  - 「스포츠클럽법」 제정('22. 6. 시행)에 따른 등록 스포츠클럽 및 지정 스포츠클럽 제도 시행

## 6.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제16조, 제25조 제2호
  -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 금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성년 남녀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 혼인 기간 중 및 혼인해소 시 남녀의 동등한 권리
  -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한 혼인 성립
  - 가정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보호
  - 어머니와 아동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

• 자유권규약 제17조, 제23조

–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명예와 신망에 대한 불법적 비난 금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 단위인 가정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

–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함

– 혼인 기간 중 및 혼인해소시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 확보, 혼인해소의 경우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조치

• 사회권규약 제10조 제1호, 제2호

– 가정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

–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혼인 성립

– 임산부에 대한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 보호 부여

– 근로임산부에 대한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 부여

•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호, 제8조, 제9조 제1~3호, 제10조 제2호,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나)~(마)목, 제25조, 제27조 제2~4호

– 모든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

–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불법적 박탈 시 신속한 회복을 위한 원조와 보호 제공

–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부모와의 분리 금지(법률 및 절차에 따라 관계당국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분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외)

– 부모와의 분리 절차에서 아동의 견해 표시권 부여

– 아동의 면접교섭권(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제외)

–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의 정기적 면접교섭 유지권,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고려하여, 아동과 부모가 본국을 포함한 국가로 입·출국할 권리 존중

- 아동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 금지, 아동의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 금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부모 쌍방의 아동 양육·발전에 대한 공동책임, 부모 또는 후견인의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대한 일차적 책임
- 아동 양육책임을 이행하는 부모와 후견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공, 아동 양육을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 개발 보장
- 취업부모의 아동이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
- 적절한 방법에 의한 출신국 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국제입양 고려
- 국제입양 아동에 대하여 국내입양과 대등한 보호와 기준 향유 보장
- 국제입양 시 양육지정으로 인한 관계자들의 부당한 재정적 이익 금지
-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도록 노력
-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보호 또는 치료 목적으로 양육지정된 아동의 정기적 심사를 받을 권리
- 부모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의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
- 부모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지원
-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부터의 아동 양육비 회수 확보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 (나)목, 제11조 제2호, 제16조 제1호 (가)~(바)목, (아)목, 제2호

- 모성에 대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발전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 인식을 가정교육에 포함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 임신 또는 출산휴가 및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 종전의 직업·선임순위·사회보장 수당의 상실 없는 유급 또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 도입
–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무와 병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 혜택 제공 장려(특히 아동보육 시설망의 확립과 발전 촉진)
– 임신 중 여성에게 유해함이 증명된 작업 유형에는 특별한 보호 제공
–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보장,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권 및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한 혼인을 할 권리 보장, 혼인 중 및 혼인 해소 시 동일한 권리와 책임 보장,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 관련 문제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 및 책임 보장,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 및 그 실행을 위한 정보·교육·수단에의 동일한 접근권 보장, 아동의 보호·후견·재산관리·입양 또는 유사 제도에 관한 동일한 권리 및 책임 보장
– 유·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취득·운영·관리·향유·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보장
–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무효, 혼인 최저연령의 특정 및 공공 등기소에의 혼인등록 의무화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목 (iv)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을 평등하게 보장

• 장애인권리협약 제18조 제2호, 제23조
– 출생 즉시 등록, 출생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
– 혼인, 가족, 부모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근절
– 결혼 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
– 자녀 수와 출산계획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 및 이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 제공
–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한 접근권과 이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 제공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이 동등하게 생식능력 유지

– 아동의 보호, 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 보장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

–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 제공

– 장애아동의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동등한 권리,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 제공

–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한 아동의 부모로부터 분리 금지

–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확대가족 내 대체 보살핌 제공,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대체적인 보호 제공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36조 제1항, 제2항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 가정양육 가구에 가정양육수당 및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필요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

– 발달 단계별 부모교육 강화, 양육정보 제공 전달체계 개선 및 시간제 보육 확대로 부모 양육지원 강화

○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22년 국공립어린이집 493개소가 확충되었으나, 부모의 높은 선호도*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21.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 25.3%)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이 요구됨

  * 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육아지원정책 1순위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1. 보육실태조사)

○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 대부분의 공적 돌봄은 시설 돌봄 위주로 틈새 시간(오후 5~8시)에 돌봄 공백 발생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정규 시설 돌봄 종료 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 양질의 돌봄 확보에 한계
  - 돌봄을 매개로 한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지역이 책임지고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돌봄 제공 필요
- 아이돌봄서비스*는 '22년 말 기준 전국 12세 이하의 98,6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공공 재가돌봄서비스로서의 기능 수행

  * 취업부모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 영유아 수 변동 등 환경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육지원정책 추진
- 온종일 돌봄 정책('18. 4. 매년 700실 확충 계획)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추진 및 시·도 교육청 여건에 맞는 내실 있는 돌봄교실 운영

○ **일 · 가정 양립 문화 확산**

-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확산 필요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

  *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한 기업

○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 및 생활 안정 지원**

- ’22년(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한부모 가구는 총 약 149만 가구이며, 이 중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는 35.5만 가구로 파악됨

- 한부모가족은 혼자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며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

  ※ 한부모의 77.7%가 취업 중이나 상용근로자는 49.2%에 불과하고, 평균 가구소득은 245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416만 원)보다 낮으며, 한부모의 순자산은 10,947만 원으로 전체가구(4억 1,452만 원)의 26% 수준으로 근로빈곤층(워킹푸어) 특성을 보임(’21. 한부모실태조사, ’21. 가계금융복지조사)

-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는 아동의 양육과 더불어 본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 필요

-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중 비양육 부모에 대한 양육비 정기채권이 있으나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약 25.9% 정도로 추산(’21. 한부모실태조사)

- ’21년 국내외 입양아동 415명 중 미혼모(부)·혼외아동이 355명으로 85.6%에 달하며, 유기아동의 수도 49명에 이름(보건복지부, ’22. 5. 보도자료)

- 지난 11년간 1,379건의 영아유기 및 116건의 영아살해가 발생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중심 보호시스템 구축 필요(경찰청, ’22. 5. 보도 관련 통계)

○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이행법률 제정 추진 중

  – 입양기관 내 결연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결연위원회 도입(’21. 2.~) 및 친생부모 상담을 입양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수행하도록 제도 변경(’21. 6.~) 등 협약의 취지에 따른 제도 개편 추진

○ **이혼가정아동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 이행 촉진**

- 자녀 또는 한부모 본인의 비양육 부·모의 교류 정도를 살펴보면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자녀 57.5%, 한부모 65.6%로 절반을 넘었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비율은 자녀 10.2%, 한부모 2.6% 수준임('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 사건 중 양육비 이행률이 40.3%에 불과함('22. 말 누적 기준)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가정에서 양육 중인 취학 전 아동(최대 85개월)에게 가정양육수당(월 10~20만 원) 지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가정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소급이 가능하도록 소급 지원 적용 범위 확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4항 신설('22. 2.)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 증진

  – 안정적인 양육수당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현황 및 집행실적 등 모니터링 실시

- 출생 초기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 지급('22. 월 30만 원)

  ※「아동수당법」 개정('21. 12.)을 통한 근거법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 8.) 및 예산 확보, 영아수당 제도 운용을 위한 시스템, 지침 등 마련

○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보육취약지역 위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속 추진

  – '18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총 2,817개소(연평균 563개소) 확충

    ※ ('18.) 574개소→('19.) 654개소→('20.) 581개소→('21.) 515개소→('22.) 493개소

○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자녀 양육 부담경감 및 지역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 및 처우 개선 등 추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특례지원 실시('20., '21.)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수* 증가

  * ('18.) 64,591→('19.) 70,485→('20.) 59,663→('21.) 71,789→('22.) 78,212

- 장애부모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 확대('20. 720시간→960시간)
- 주말, 야간에 긴급하게 필요할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시연계서비스' 실시('20.)
- 위반행위를 한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강화, 서비스질 개선 등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0.)
- 온종일 돌봄 정책 발표('18. 4.),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마련 시행('21. 8.)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집행현황 모니터링 (분기별)

### ○ 일 · 가정 양립 문화 확산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지속 확대*를 통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제고

  * ('18.) 3,328개→('19.) 3,833개→('20.) 4,340개→('21.) 4,918개→('22.) 5,415개

- 정부·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인센티브 지원

-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운영 확대 추진

- 가족친화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고시) 개정('22. 12.)

  – 출산·양육지원 등 기본 제도 외에 청년, 중·장년층 등 생애주기에 있어 다양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요구에 맞는 제도 신설

- 인증제 시행 15년 계기 '가족친화 최고기업'* 지정('22. 12개)

  * 인증 장기간 유지 기업을 최고기업으로 지정(대기업 3개, 중소기업 9개)

### ○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 및 생활 안정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및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자 확대 추진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단가 인상 및 지원 연령 확대('19. 1.~)

  – 한부모가족 선정 시 보유차량 기준 완화('21. 1. ~)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범위 확대('21. 5. ~)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확대('19. 159호→'22. 245호(누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중위소득 60% 이하→100% 이하, '21.)

- '한부모가족의 날' 계기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민 의견조사('21. 5.)

  – 여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 협업을 통한 의견조사 진행, 결과 발표 및 카드뉴스 발행

○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으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적 책임성을 강화, 협약 비준을 위한 이행법률안 발의

  – (제20대국회)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및 국제입양법 제정 관련 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종료 폐기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 가정양육 시에도 양육자가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 양육자의 휴식보장 및 양육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거점 양육지원 기관 제도 도입 추진 및 수요자 맞춤형 부모교육 체계 마련

### ②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보육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
-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해 국비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여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

  – 신축 방식과 매입,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다양한 사업방식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비 예산을 적극 지원

### ③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 읍면동 단위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하여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확대 추진

  ※ 전국의 만0~9세 아동 300명 이상 읍면동 총 2,165개(어린이집은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이상, 의무 설치)로 2,200여 개까지 확대 필요

- 예산절감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중앙부처의 사업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공간 확보, 민간의 리모델링 지원 등을 통한 설치 확대

- 돌봄공백 가구 부담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정부 지원 시간* 및 지원가구** 확대

  * ('22.) 연840시간→('23.) 연960시간

  ** ('22.) 7.5만 가구→('23.) 8.5만 가구

-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검토,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검토

### ④ 일 · 가정 양립 문화 확산

- 가족친화 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지속 확대를 통해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

  – 사전컨설팅을 통한 인증제 지원 확대 및 사후컨설팅을 통한 제도 내실화

- 가족친화 홍보 및 인식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 가족친화 직장교육 지원 등 가족친화 인식 개선

  –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상 정부포상 및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등 홍보 강화

- 자율실천 목표제 운영 등을 통한 가족친화 최고기업 역할 제고

  –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대응하려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민간 자율적 가족친화문화 확산 기반 마련

### ⑤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 및 생활 안정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추진
  - 소득기준 : (현행)기준 중위소득 60%이하→(확대)중위소득 63%이하
    ※ 소득기준 상향 시 아동 양육비 지원인원 약 2만 명 증가 전망(20만 명→약 22만 명)
  - 지원연령 : (현행)18세 미만 자녀→(확대) 고등학교 재학 자녀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 상향
  - (현행) 월 20만 원→(상향) 월 21만 원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양육비 이행률 제고 : ('23.) 42%→('27.) 55%
-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
  - 양육비채무자의 동의 없어도 행정정보망을 통한 소득·재산 조회 근거 마련 등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추진〉

-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2. 10.~)에게 아동 양육비 연 420만 원(월 35만 원×12월),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지원
  - 0~1세 자녀 양육 시 아동양육비 단가 상향(월 40만 원)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 사례관리* 추진

  * 개인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정보 안내 및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등 밀착 사례관리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강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개선 추진
  - 자녀특성별·기능별 시설 유형 개편 및 유형별 시설 입소기간 조정을 통해 임신·출산·양육·자립 등 한부모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주거 안정 지원
  -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 운영기관 및 신규 주택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

〈미혼모·부의 보호 지원 강화〉

- 가족센터 사례관리,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대상 사례관리를 통한 상담, 정부서비스 연계, 자녀 학습지원, 위기 시 긴급돌봄 및 가사정리 등 지원
- 미혼부 출생신고 전 자녀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절차 개선

### ⑥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 및 국제입양법 제정안의 시행('25. 7.)에 맞추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추진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헤이그 협약이 정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입양체계로 개편 추진1

### ⑦ 이혼가정아동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 이행 촉진

- 면접교섭 서비스 확대 : ('23.) 18개 가족센터→('24.) 모든 가족센터
-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Ⅲ.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이므로 입법과 법 집행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시정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함.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논의는 인종, 피부색, 성, 장애 및 연령,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실질적 이해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요청함. 특히 사회적 약자의 개인적·사회적 취약성은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저해하므로,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인권정책의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함.

## 1. 평등 증진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 개인이 속한 국가나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에 위반되는 차별과 차별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호, 제3조, 제16조, 제26조, 제27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 확보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 차별에 대하여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

–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의 문화 향유, 종교표명·실행, 언어를 사용할 권리

•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호, 제3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 사회권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 확보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3조, 제5조 (가)목, 제7조 (나)목, (다)목,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호, 제2호 (가)목, (마)~(사)목, 제15조 제1호

– 여성차별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 여성차별 철폐 정책 추진(헌법 또는 기타 입법에 남녀평등의 원칙 규정,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입법 기타 조치,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확립 및 법정 기타 공공기관을 통한 여성차별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여성차별 행위 또는 관행의 억제 및 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행동 보장, 개인·조직·기업에 의한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 여성차별을 구성하는 현행법·규칙·관습·관행 수정 또는 폐지하는 조치, 여성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형사법 규정 폐지)

-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
- 성 우열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
- 정책입안·정책시행에 참여, 공직에 봉직하여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를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여성에게 확보
- 국가의 공적·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단체 참여권 남녀동등 보장
-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차별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정부들 대표하며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 부여,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
-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
- 시골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 시골여성에게 본 협약의 모든 조항의 적용을 확보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
-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시골 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고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골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모든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 취업 또는 자가경영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있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집단 및 협동조합 결성, 모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농업신용 및 대부, 매매시설, 적절한 공업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토지 및 농지개혁과 재정착계획에 있어 동등한 대우)
-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 부여

• 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제5조, 제6조

-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
-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

-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 보장
-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 조치
-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 촉진 및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함
-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 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 아동권리협약 제30조

-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호, 제5조 (c)목, (d)목 (iii), (f)목

- 인종차별 :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할 권리와 보통·평등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할 권리, 공공업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할 권리와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국적 취득권을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항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관련 법제 정비

- 성별·장애·연령·종교·인종·국적·학력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시정권고, 손해배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불이익 조치 금지 등)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별금지(평등) 법안」 의원안 4건이 발의됨

#### ○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 생활밀착형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성별통계 개선·이용 강화 등 성인지 정책의 기반 확립 필요

#### ○ 성별 임금차별 해소

- 성별 임금격차*는 '21년 기준 31.1%로 하락하며 다소 완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성별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한국(%) : ('18.) 34.1→('19.) 32.5→('20.) 31.5→('21.) 31.1

  ** OECD 평균(%) : ('18., '19.) 13→('20.) 11.6→('21.) 11.9

#### ○ 성별 대표성 제고

- 「여성발전기본법」(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13.)으로 정부위원회 위촉직 성비 준수 근거를 마련하여 '13년 27.7%였던 여성 참여율이 '22년 41.4%로 법정 기준(40%)을 상회하였으며, 여성 참여율이 40% 이상인 위원회가 77.2%('22.)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법정 기준을 미준수하는 위원회가 여전히 존재

### ○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및 제36조에 근거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성주류화 및 사회 전반의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요구 지속적 확대
  - 양성평등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시행(성별영향평가 책임관·업무담당 대상 업무 역량강화 과정, 성인지력 향상 과정 등)
- 학교 구성원들의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의 범위를 확대·활성화하여 보다 양성평등한 학교 환경 조성 필요

### ○ 차별 · 비하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

-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의 성, 인종, 종교, 문화 등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차별·비하·혐오 표현 발언에 대한 지속적 개선 필요
-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에 따라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차별·비하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 요구 증가

### ○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 개선 지원

- 미디어를 통한 성별 비하·차별 표현 심화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및 양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강화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대중매체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의식 확산 지원 필요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관련 법제 정비

• 사회적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시정권고, 손해배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불이익 조치 금지 등)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별 금지(평등) 법안」 의원안 4건이 발의되었고, '22년 5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 ○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 주요 법령·정책·사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하여 국민의 성인지 정책인지도 및 체감도 제고

– 제·개정 법령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개선 이행률: ('18.) 71.3%→('19.) 69.5%→('20.) 71%→('21.) 77.8%→('22.) 80.1%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18.~'22.) 건강증진정책, 청년창업 지원사업, 전문체육 분야정책, 청년정책기본계획 등 총 49개 과제

– 신규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의견 제시

*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위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통계

–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교육 실시

#### ○ 성별 임금차별 해소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제도 개선을 통한 성별 임금격차 자율개선 유도

– '20년부터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등' 제출 대상을 AA 대상 기업 전체로 확대

– AA 대상 기업의 임금현황 자료 제출 서식 개정을 통한 자료의 신뢰성 제고('22.)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용 실태에 대한 집중 감독 실시('18. 659개→'19. 700개→'20. 400개→'21. 868개→'22. 996개)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 '13년부터 매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추진*

* '22년 개발(11개) 및 개선(132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반영하여 총 1,083개 고시('22. 11. 기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 활용 컨설팅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직무능력 중심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18 1,044건, '19~'21. 각 700건, '22. 740건)



### ○ 성별 대표성 제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위원회의 성비 균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의사결정 권한 증대

※ 중앙행정기관(%) : ('18.) 41.9→('19.) 43→('20.) 43.2→('21.) 42.4→('22.) 41.4

※ 광역지방자치단체(%) : ('18.) 44.4→('19.) 44.9→('20.) 44.9→('21.) 44.5→('22.) 44.3

※ 기초지방자치단체(%) : ('18.) 39.1→('19.) 40.8→('20.) 41.4→('21.) 42.2→('22.) 42.4

### ○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 양성평등교육 확대

–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 양성평등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 추진

※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 ('18.) 25회 4,580명→('22.) 27회 11,629명

※ ('20.~'22.) 방송·언론 분야 관계자 대상 교육 총 8회 실시

•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학교에서는 양성평등의식의 함양을 위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기본법」 시행('22. 3.)을 통해 양성평등교육 기반 마련

○ **차별·비하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

•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문화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방송심의 규정 위반 방송사에 제재 처분

–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 등)에 근거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29조(사회통합), 제30조(양성평등),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등 위반 방송사업자에게 제재 조치를 명함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관련 방송심의 의결 〉

(단위 : 건)

|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법정제재 | 17 | 13 | 3 | 3 | 3 |
| 행정지도 | 41 | 42 | 35 | 11 | 9 |
| 계 | 58 | 55 | 38 | 14 | 12 |

※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처분을 요청받은 경우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를 명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개정 시, '차별적 언어' 관련 조항 신설('19.)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외모 등 신체적 차이, 장애,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지역, 신념, 종교, 인종, 민족, 국가 등과 관련하여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조롱·모독·비하하는 차별적 언어 사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

• 차별·비하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심의 지속 실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18년~'22년 차별·비하 등 관련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심의를 통해 총 5,761건의 정보에 대해 시정 요구

(단위 : 건)

| 위반내용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합계 |
|---|---|---|---|---|---|---|
| 심의 | 2,638 | 1,886 | 1,580 | 1,369 | 1,699 | 9,172 |
| 시정 요구 | 2,352 | 1,406 | 473 | 308 | 1,222 | 5,761 |

○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 개선 지원**

• 대중매체 내용분석으로 양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 지원

– 성인지 관점의 대중매체 내용분석, 관계기관에 대한 성차별 사례 심의요청 및 대상별 양성평등 미디어교육 추진으로 양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 지원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관련 법제 정비

- 차별 관련 국내 법·제도 개선
  - 장애,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의 사유로 인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 예방 및 시정 등 개선방안 마련

    ※ 관련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 고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등에서 차별적 관행이나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
  -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

### ②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부처별 양성평등 실행 목표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 실시
  -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특정 성별영향평가 과제 발굴 및 정책 개선 추진
- 성별 통계 개선 및 활용 활성화
  - 신규 승인 통계, 주요 정책 분야 통계 등에 대한 성인지적 점검·개선
- 국가 및 지방 양성평등지수 측정·발표
  -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양성평등 수준 진단 및 취약분야 개선 등을 양성평등 정책 수립에 활용

### ③ 성별 임금차별 해소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의 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을 제출케하여 불합리한 성별 임금격차 자율개선 지속 추진

  – AA 대상 기업에 대한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등 지속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집중 감독 지속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도입·확산 지원

  – 현장 직무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23년 신규 개발 10개, 개선 110개 추진)

  – NCS를 활용해 중견·중소기업 직무를 분석·재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채용·훈련 등) 도입 지원('23년 기업활용 컨설팅 740건 추진)

### ④ 성별 대표성 제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참여 개선

  –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연 2회),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연 1회) 위촉직 위원 성별참여현황 조사·발표 및 법정기준(40%) 미달 위원회 개선 권고

- 여성인재를 찾고,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추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활용도 제고,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등재자 사후 관리

- 기업의 성별다양성 제고 및 일·생활 균형을 맞춘 조직문화 형성 방안을 제안하는 '성별균형 포용성장 컨설팅' 제공

### ⑤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 공무원, 방송관계자 등에게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 실시
  - 공무원 및 언론·방송 분야 종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시행
-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및 문화 확산 지원
  - 학교 현장에 적합한 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 자료 활용 지원
  - 교원연수 및 다양한 교육 활동 사례 발굴·공유 등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지원 지속

### ⑥ 차별 · 비하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

-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문화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등에 대한 심의 및 위반 방송사 제재 지속 추진

  ※ 적용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 제29조(사회통합), 제30조(양성평등),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등

- 인권 보호, 양성평등 관련 심의사례에 대해 방송사 공유 및 심의책임자회의 등을 통한 방송사 자체심의 역량 강화 지속 지원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차별·비하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3.~'25.)
  - 교·강사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매년)
- 언론인 연수과정에 장애인보도, 언론과 인권 등 연수 실시
-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혐오 표현 및 차별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한 언론인 연수·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
  - 장애관련 보도특강 등 온라인 연수 서비스 제공
  - 최신 이슈별 교육 콘텐츠 개발로 언론인 현업 활용도 제고 및 차별·비하 관련 인식 개선

⑦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 개선 지원**

- 시민사회의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활성화
  - 대중매체 내용분석을 위한 민간 협력기관 운영 지원
- 시민 대상 미디어 인식 개선 지원 강화
  - 양성평등 미디어교육, 캠페인 등 시민의 미디어 인식 개선 활동 지원

## 2. 여성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 개인이 속한 국가나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에 위반되는 차별과 차별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호, 제3조,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 확보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 차별에 대하여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

•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호, 제3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 사회권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 확보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3조, 제5조 (가)목, 제6조, 제7조 (나)목, (다)목,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호, 제2호 (가)목, (마)~(사)목, 제15조 제1호

- 여성에 대한 차별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정책 추진(헌법 또는 기타 입법에 남녀평등의 원칙 규정, 여성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 및 기타 조치,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확립 및 법정 기타 공공기관을 통한 여성 차별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며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여성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 여성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형사법 규정 폐지)
-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
- 성 우열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
- 정부정책의 입안·정책의 시행에 참여, 공직에 봉직하여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를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여성에게 확보
- 국가의 공적·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를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여성에게 확보
-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차별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정부들 대표하며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 부여,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
-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
- 시골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 시골여성에게 본 협약의 모든 조항의 적용을 확보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
-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시골 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고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골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모든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 취업 또는 자가경영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있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집단 및 협동조합 결성, 모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농업신용 및 대부, 매매시설, 적절한 공업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토지 및 농지개혁과 재정착계획에 있어 동등한 대우)
-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 부여

•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

-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 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3항
-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270조 제1항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인 가정폭력 가해자가 별도의 제한 없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갖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결정)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양상이 다변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꾸준한 상황으로 보다 세심한 대응이 필요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치유 회복 및 체계적인 자립 자활을 위한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정책 필요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을 통한 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치유회복 및 체계적인 자립 자활을 위한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정책 필요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등의 설치 운영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및 보호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폭력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

※ 보호 능력이 부족한 여성폭력 피해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의 민·가사 소송 무료 변호, 고소 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

• 공공부문 및 일반 국민 대상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필요

– 공공부문 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여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여성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

### ○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 농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가인구의 평균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남성보다 여성의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음

* 농가인구(천 명) : ('90.) 6,661→('00.) 4,031→('05.) 3,434→('10.) 3,063→('15.) 2,569→('20.) 2,314→('22.) 2,166

** 농가인구 중 여성(천명)/여성 비율(%) : ('90.) 3,382/50.8→('00.) 2,030/51.1→('05.) 1,757/51.2→('10.) 1,562/51→('15.) 1,305/50.8→('20.) 1,161/50.2→('22.) 1,096/50.6

*** 농가인구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 %) : ('95.) 16.2→('00.) 21.7→('05.) 29.1→('10.) 31.8→('15.) 38.4→('20.) 42.3→('22.) 49.8

• 농촌 구성원의 다양성 확대 및 농가별 소득격차 심화

– 귀농*·귀촌**·결혼이민여성*** 등 기존 주민과 유입 동기가 다른 집단 증가

* 귀농인 수/귀농인 중 여성(명) : ('13.) 10,312/3,073→('15.) 12,114/3,783→('20.) 12,570/4,074→('22.) 12,660/4,278

** 귀촌인 수/귀촌인 중 여성(천 명) : ('13.) 405/197→('15.) 467/222→('20.) 477/224→('22.) 421/195

*** 농어촌(읍·면부)의 다문화가구 수/결혼이민자 다문화가구 수(호) : ('15.) 69,759/35,852→('20.) 84,231/39,658→('22.) 90,339/38,513

–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U형, 귀농 70.7%, 귀촌 37.8%)하는 경향 지속

* U형 귀농 증가세(%): ('18.) 53→('19.) 54.4→('20.) 57.6→('21.) 67.6→('22.) 70.7

– 농가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농업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

* 평균 농가소득(천 원): ('05.) 30,503→('10.) 32,121→('15.) 37,215→('20.) 45,029→('22.) 46,153

** 평균 농업소득(천 원): ('05.) 11,815→('10.) 10,098→('15.) 11,257→('20.) 11,820→('22.) 9,485

• 어업종사 인구 중 여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개발정책 확대로 여성어업인 활동이 점차 다양해졌으나, 여성어업인의 가사·어업의 병행에 따른 과중한 노동 상황 및 여성어업인구의 노령화 문제로 대체인력 필요

### ○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현 필요

•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센터 운영

–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말·야간에도 돌봄이 가능한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 운영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여건 마련 필요

– 반디돌봄 센터(서울 대학로, '14.~) 및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서울 마포, '16.~)

### ○ 모·부성권 강화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활용도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명) : ('18.) 99,198→('19.) 105,165→('20.) 112,040→('21.) 110,555→('22.) 131,08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명) : ('17.) 2,821→('19.) 5,660→('20.) 14,698→('21.) 16,689→('22.) 19,466

– 특히 남성 육아휴직 활용 증가 등 아빠 육아 참여가 확산

○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 최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21년 4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21. 10.)

  – 이후 스토킹 신고가 급증*하였으며 스토킹 피해 상담 수요도 급속히 증가**

  * ('21.) 14,509건→('22.) 29,565건

  ** ('20.) 1,175건→('21.) 2,710건→('22.) 6,766건

○ **여성 건강증진 강화**

- 여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피임, 임신, 임신중절, 출산, 폐경 등 과정에서 안전과 존엄,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 행사에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정보 제공과 관련한 제도가 필요

- 낙태 비범죄 관련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국회 계류가 장기화되면서 제도적 공백 발생

- 최근 출산율 저하와 함께 여성장애인의 출산 건수도 감소 중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여성장애인 출산 현황〉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 건)

|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누계 | 2,172 | 2,117 | 1,838 | 1,745 | 1,632 |
| 출산 | 1,434 | 1,348 | 1,173 | 1,093 | 1,028 |
| 유사산 | 738 | 769 | 665 | 652 | 604 |

  – '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 도입 후 8개소를 지정하여 시설·인력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22년 2개소 추가 지정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 미투 이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11차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8. 12.), 「인신매매방지법」('21. 4.)제정 등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의 여성가족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중대 사건 현장점검 실시에 대한 근거 마련(「성폭력방지법」 '21. 7. 시행, 「양성평등기본법」 '21. 10. 시행)
  - 인신매매 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식별지표 개발·활용,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및 피해자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인신매매방지법」 '23. 1. 시행)
- 여성 대상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및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디지털 성매매, 아동 성매매 근절 관련 업무체계 정비 및 기관 협업·해외 공조 등을 통한 맞춤형 정책 추진
  - 관련 부처·국회 등 협업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개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장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재신고 시 112시스템 현출 등 업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세심한 업무체계 구축
-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마련
  - 경찰청에 여성 치안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안전기획과' 및 '여성안전기획관'을 신설('19.)하여, 정책개발·조정, 관련 부처·여성단체 등과의 소통·협업·합동점검 등 여성안전업무 전반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
  - '여성청소년기능 전략협의체(내부)', '여성안전 정책자문단(외부)' 등 소통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여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기반의 여성안심환경 구축 노력

– 범죄예방활동 우수기업·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등 수여

– 민·관·경 치안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개선 유도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성폭력 피해자 등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년 1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취학(입학, 전학 및 편·입학 포함) 요청 시, 학교의 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21년 1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장소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100m 내 접근금지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임시조치 불이행 시 제재를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로 강화함

– 가정폭력 국비지원 상담소 확대(25개소)* 및 상담소·보호시설 상담원 인력(151명) 충원**

* 국비지원 상담소 확대(개소) : ('18.) 103→('21.) 128

** 상담원 인력 증원(명) : ('20.) 43(상담소)→('21.) 108(상담소 43, 보호시설 65)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22. 8. 시행)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입증 증거서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에 대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용이하게 함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대상별 맞춤 서비스 추진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관련 예산 증액 편성 등 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원만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 구축

– 장애인 특화 가정폭력 상담소*(4개소), 보호시설**(2개소) 운영을 통한 중증 장애인 상담 편의 확충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요청 시 상담원 방문상담, 수화통역인(청각장애인) 지원 가능

** 장애인용 통행로, 승강기, 화장실, 침실 등 편의시설 구축 및 교통비 등 추가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보호, 주거,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 등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신설 지원('19. 1. 시행)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등 법률구조 지원

* 무료법률지원(건) : ('18.) 8,500 →('19.) 10,110→('20.) 10,514→('21.) 11,010→('22.) 11,433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 피해 여성 상담, 보호 및 자립·자활 프로그램 운영

–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진학교육 및 자립·자활 등 지원

※ 피해자 지원 실적(건) : ('18.) 128,871→('19.) 127,553→('20.) 148,427→('21.) 155,888→('22.) 145,390

–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민·관 협력을 통한 집결지 폐쇄 및 도시재생 등 지역사회 활성화

※ 집결지 현황(개) : ('10.) 27→('15.) 22→('20.) 15→('22.) 14

• 영상, 리플릿 등을 통한 성매매 방지 홍보 및 현장점검 추진

–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 19.~25.)계기 중점 홍보 및 합동단속·점검 추진

〈폭력 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 공공부문(1만 7천여 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 및 고위직·수사기관 등 대상 교육 실시

•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실시('22. 5,274회)를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

• 대상별·생애주기별로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지원

○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 확대〉

•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및 정책 참여 확대

– 경영주 동의 없이도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8.)

– 여성농업인 특화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1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하여 양성평등 개념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 추진 근거 마련('21.)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20.),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 및 실무회의 개최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여 '여성농업인의 날' 법정기념일(10. 15.) 제정(「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1. 11. 개정) 등 현장 여성농업인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수혜 확대

– 여성농업인이 농업인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도우미 지원조건 완화* 및 단가 인상**('21.~)

* 3일 이상 교육 시→1일 6시간 이상 교육 시

** 7만 원/일→8만 원/일

– 여성농업인 농작업 노동 절감을 위한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법 및 여성농업인 정책 컨설팅 등 마을에 찾아가는 교육 실시('20.~)

※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명) : ('20.) 2,622→('21.) 9,098→('22.) 16,800

– 성별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농업·농촌 분야에 특화된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교육 운영('20.~)

※ 교육인원 : 연간 40명
강사 위촉 : ('20.) 21명→('21.) 34명→('22.) 42명

•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및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촌 보육여건 개선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농촌 여건에 맞는 소규모 보육시설 지속 확충*

* 지원(개소) : ('18.) 29→('19.) 37→('20.) 54→('21.) 97→('22.) 98

※ 제도 개선 :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 대상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추가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22.)

–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10개 항목에 대해 2년마다 건강검진 실시

※ 51~70세 여성농업인 9천 명 대상 국비 90% 지원

〈여성어업인 활동 지원 확대〉

• 여성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동경영주* 등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영 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토록 함('19.)

* 공동경영주 현황(명) : ('19.) 176→('20.) 1,409→('21.) 3,713→('22.) 6,077

–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21.)을 수립·시행하여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을 우선 선정(20% 이상 추천)토록 개선

–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여성어업인 참여 비율을 40%까지 확대*('21.)

* ('17.) 10%→('19.) 35%→('21.) 42%(8/19명)

– 여성어업인의 직업적 질환 관리 등을 위해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사업* 도입('22.)

* 45세 이상 여성어업인 1,800명 대상, 국비 90% 이상 지원

• 어업활동지원 제도 개선 및 어촌생활 돌봄 지원 제도 시행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활동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5.~)

* 대체인력 일당 10만 원 기준 국비 50%(지방비 30%) 지원

– 어업인 가구 중 임신·출산 등으로 가사 수행이 곤란한 가구 및 어촌지역 취약 가구를 방문, 생활 돌봄 서비스 제공, 생활 돌봄 도우미(자원봉사자) 지원*('18.~)

* 1회 2시간당 19,000원(국비 70%, 수협 30%) 지원

### ○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 여성문화인 창작 환경 조성

– 양성평등문화상 시상식 개최('19~'21. 6개 분야 13점, '22. 6개 분야 10점 시상)

–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추진('19. 영상·디자인·문예 3개 부문 37점 선정), 양성평등 문화콘텐츠 제작('20. 웹드라마, 웹툰 등 42편)

– 문화분야 종사자 및 일반국민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벡델데이* 행사 개최('20.~'22.)

* 한국영화감독조합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년부터 함께 해온 사업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현장 종사자 대상 지역포럼 개최('19. 5회, '20. 11회, '21. 10회, '22. 8회)

– 문화 분야 근현대 여성인물을 찾아 자료집 제작, 특별기획전 개최, 구술채록 영상 제작 등 홍보사업 추진('21.~'22.)

•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등

– 예술인 자녀 시간제 보육센터(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 반디돌봄 센터 2개소) 운영 강화* 및 서비스 개선**

* 예술인 자녀 총 22,444명 지원('18.~'22. 12.) :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 12,912명, 반디돌봄 센터 9,532명

** 급식·간식 무료 제공('19.), 이용료 면제('22.) 등 서비스 개선 및 편의 확대

○ **모·부성권 강화**

•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육아휴직 활용 기업문화 개선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1. 1. 시행)

–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초기 영아기 육아휴직 도입을 촉진(「고용보험법」하위법령 개정, '22. 1. 시행)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21. 11.), 육아휴직 급여 인상(소득대체율 80%까지) 및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22. 1.) 등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최대 월 300만 원, 통상임금 100%)

• 근로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19. 12. 시행)

•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

–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미부여, 육아휴직 사용 부진 등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감독(스마트 근로감독) 강화

• 근로자의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일·가정 양립 도모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유도

–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21. 35개소, '22. 37개소 운영 중)하여 근로자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 스토킹범죄 형사처벌, 범죄예방과 응급조치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 10. 시행)

– 스토킹 피해자 상담, 일시보호, 보호시설에 입소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법 제정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 촘촘한 여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분석평가, 주요 정책 이행점검 등 여성폭력방지정책 이행력 제고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기관장에 의한 사건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한 현장점검·제재 조치 마련 등의 대응체계 내실화 및 조직문화 개선
  - 차질없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23. 1.)을 위한 인신매매방지 정책기반* 마련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운영 추진

    * 종합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 식별지표 고시·활용, 정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중앙 및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운영 등
  - 여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 공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 실시, 여성폭력 통계 생산 등 정책기반 강화
  - 권력형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의 여성 피해자에게 일어나는 복합적인 폭력피해*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해 통합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

    * 스토킹+데이트폭력, 가정폭력+디지털 성폭력
  - 이주여성 상담소를 통한 모국어 상담지원, 의료지원, 통·번역 지원, 고용·체류에 관한 상담,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등) 연계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이주여성 보호

    *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
- 여성 대상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속하고 세심한 지원을 적극 추진

– 여성폭력이 증대하는데 발맞추어 인력, 피해자 보호시스템 및 내외부 협력체계 등 치안 인프라도 확충 예정

– 아울러 일선 현장의 꼼꼼하고 세심한 조치를 위해 사건 접수에서 피해회복까지의 전 조치 단계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행, 전문인력 확보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 지원 인프라 확대

–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23. 추가 10호) 및 남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 지원('23. 각 1개소)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 강화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피해자의 접근성 제고 및 편의 증진, 장애인 피해자 특화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

• 피해자 보호·치료 기능 강화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금, 의료비, 직업훈련비 등 예산 지원 확대 추진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민사·가사·형사사건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지원 확대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해자 수요에 맞는 법률·의료·자립지원 등 유관기관으로의 신속한 서비스 연계실시

–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를 위한 촘촘한 의료지원 서비스 내실화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탈성매매 여성 보호·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 피해 여성에 대한 의료·법률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내실화, 상담원 등 인적자원 양성 및 역량 강화

–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성매매 피해자 보호·자립·자활 지원 강화

• 성매매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추진

–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 19.~25.) 등을 계기로 성매매 예방·방지를 위한 영상, 리플릿, 포스터 등 제작 배포

〈폭력 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 고위직 대상 교육 관리 강화 등 폭력 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명단 공표

– 공공부문 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 활성화 추진

• 맞춤형 콘텐츠 및 다양한 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지원

– 수사 과정 등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경찰, 검찰, 근로감독관 등) 대상 교육 지원

– 초·중·고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교육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 폭력 예방교육 실적 현장점검, 컨설팅 추진 및 맞춤형 통합교육 기획·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기관별 담당자 교육 지원

〈수사관 전문성 강화와 점검체계 구축〉

• 가정폭력 담당 수사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절차 및 단계별 조치를 중점으로 매뉴얼 개선

– 신고 접수부터 수사 종결까지의 단계별 조치, 현장 주요 Q&A, 우수 수사사례, 2차 피해사례 및 유형별 최신 판례 등 수록

• 경찰청 주관 현장점검, 각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자체 점검 등으로 촘촘한 수사 점검 체계 구축

### ②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

- 양성평등 교육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
  - 농업 분야 및 농촌지역에 양성평등교육을 확대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 농업·농촌 양성평등 실태, 농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강사 양성 및 교육안 제공으로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농업·농촌 성인지 감수성 제고
- 정책위원회 및 농협의 여성 참여 확대로 여성농업인 대표성 강화
  -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권한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유지
  - 농업인 생산조직을 대표하는 농협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지속 확대하여 여성농업인 의견 반영

    ※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조합에 여성 이사 선출 의무화(「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8항)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정책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 실시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및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농촌지역 어린이집 감소 및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이 증가하는 상황 등을 반영하여 농촌 여건에 맞는 소규모 보육시설 지속 확충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촌에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농촌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속 제공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지속〉

- 여성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2.~’26.)’ 시행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대상을 여성어업인 전체로 확대(’24.~계속)
- 어업활동·어촌 생활 돌봄 지원제도 확대
  - 어업활동 대체인력 및 어촌생활 돌보미 인건비 인상 추진
  - 여성어업인이 도우미 지원제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 ③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 여성문화인 창작 환경 조성
  - 양성평등문화상 시상식 지속 개최(연 1회), 양성평등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지속 운영(연 2회 이상)
- 예술인 자녀 시간제 보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

### ④ 모·부성권 강화

-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미부여, 육아휴직 사용 부진 등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감독(스마트 근로감독 등) 지속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및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분할 사용횟수 제한(현행 1회) 완화 검토(’23.~)

### ⑤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법 제정·시행
  -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여 법률에 근거한 스토킹 예방 및 안정적 피해자 지원 기반 마련('23. 7. 시행)
  -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정책 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추가
- 피해자 중심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강화
  -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및 안정을 위하여 피해자가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긴급 임시숙소*·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시범)사업 추진

    * 긴급 임시숙소(10개소) : 원룸, 오피스텔 등 활용 7일 이내 긴급보호

    ** 임대주택(5개소) : LH 등 임대주택 활용, 3개월 내·외 주거지원
  -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인 심리지원 과정으로서 전문상담·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17개소 시범운영)
  -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 개발·보급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연구 및 개발·배포 추진
  -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 사항 안내, 스토킹범죄의 심각성 소개, 초기신고 유도 등

### ⑥ 여성 건강증진 강화

-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 여성 및 태아 건강권을 위한 난임시술 통계 관리 지속 및 영유아 건강지원제도 등 여성 건강증진 강화를 위한 과제 지속 추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대상자를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의료기관 등 협력 및 지속적인 홍보 추진
  - 대상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복지로·보조금24 온라인 신청 기능 추가 등('21.)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을 확대하고 이미 지정된 7개 기관의 순차적 운영 개시
  -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게 임신·출산·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운영

## 3. 아동·청소년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25조 제2호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 개인이 속한 국가나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에 위반되는 차별과 차별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어머니와 아동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
-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호, 제16조, 제24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 모든 어린이의 출생 후 즉시 등록, 성명을 가질 권리
  - 모든 어린이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 차별에 대하여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

•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호, 제10조 제3호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 경제적·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처벌, 연령제한을 정하여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

• 아동권리협약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호,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1호, 제31조, 제34~37조, 제38조 제2~4호, 제39조, 제40조 제1호, 제2호 (가)목, (나)목, (1)~(4), (6), (7), 제3호, 제4호

– 아동 :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 아동 또는 그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의한 차별 없이 아동에게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의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 이를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

– 부모, 확대가족이나 공동체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의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에 의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 권리 및 의무 존중

– 모든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 당국은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특히,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

–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

- 아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 보장,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 보장
-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 보장
-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가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
-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 장려
-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
-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방지
-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방지
-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방지
-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
-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보장
-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
-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고, 연령상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의 격리,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보장
-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 보장
- 15세 미만자의 적대행위 직접 참여 금지 보장 및 15세 미만자의 징병 자제
-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해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 인정
-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함
-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피의사실을 부모나 후견인을 통해 통지받고,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법률적 지원을 받음,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함,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신문받도록 하며,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 확보,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 아동의 사생활 존중
-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 적용될 특별한 법률·절차·기관 및 기구 설립 촉진 노력(형사미성년자 최저연령 설정, 적절한 경우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조치)
- 아동의 복지에 적절하고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함

•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

-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
-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보장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4항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 청소년들이 자립적·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개발·체험하고 인성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 방과 후 돌봄(활동)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와 양육부담 경감 필요

#### ○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해 위(Wee)* 프로젝트 사업** 추진 중

  *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 '우리'를 뜻하는 'We'와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 '감정'을 뜻하는 'Emotion'의 합성어

  ** 학생들에게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형성과 적응력 향상으로 건전한 성장을 지원

#### ○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 다양한 학생 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및 청소년의 인권 보호 필요
- 117 학교폭력 신고체제 정비 및 피해 청소년 보호조치 강화 요구

### ○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지원 강화

- 아동 학대 의심사례 신고 접수 52,083건 중 아동 학대 사례는 37,605건(72%)이며, 아동 학대는 주로 아동의 부모(84%)에 의해, 아동 본인의 가정 내(84%)에서 발생함('21.)
-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쉼터 등 보호 인프라의 충분한 확충 및 치료·회복지원 정책 확대 요구

### ○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 전국 3,890개교 학교운동부(전체 학교의 32.9%)에서 학생선수 54,406명(전체 학생의 1.2%) 활동 중('22. 기준)
- 빙상 지도자 성폭행 사건, 프로배구 학교폭력 사건 등 잇따른 사건 이후,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19. 1.) 및 학생선수 인권 보호 강화 방안('20. 12.) 등이 발표되었으며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20. 8.)되어 운영 중

###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 시간제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 23조)

| 구분 | 대중문화예술용역<br>주당 제공시간 제한, 예외사유 | 대중문화예술용역<br>일일 제공시간 제한, 예외사유 |
|---|---|---|
| 15세 미만의 청소년 | ■ 주당 35시간 이내 | ■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br>※ 단,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자정까지 제공 가능 |
| 15세 이상의 청소년 | ■ 주당 40시간 이내<br>※ 단,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br>※ 단,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도 제공 가능 |

- 대중문화예술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등을 통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 인권 보호 강화 필요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성매매가 은밀하게 진행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책 필요

- 청소년 성매매 처벌 강화 및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청소년 성매매가 점차 저연령화·상습화 되어가는 추세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강화 등 기존 정책에 더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포상금 확대, 랜덤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방지 대책 등의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위기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

  * ('17.) 7.7%→('18.) 9.1%→('19.) 9.9%→('20.) 11.1%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필요

○ **가정 밖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가정 밖 청소년 신규 발생 건수는 연간 2만여 명 수준으로 이들을 사회적 지원 없이 방치할 경우, 학업중단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9~19세 가정 밖 청소년 신고 접수 현황(명) : ('18.) 24,384→('19.) 23,783→('20.) 20,875→('21.) 23,133→('22.) 28,643

○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따라 각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필요
-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지원

○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 아동유기, 불법입양 등 범죄예방을 위해서 아동의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관리가 필수적이므로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다양한 인구통계 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필요
- 감사원 감사결과, '15년부터 '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있다는 사실 확인
  -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출생사실이 파악되지 못한 채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

○ **아동 양육 및 보호의 국가 책임 강화**

-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및 원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법제화*되어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현실에서 미작동

  * 아동보호계획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18. 3. 시행)

  ** 시·군·구당 보호 대상 아동은 평균 196명, 아동보호 담당인력은 평균 1.2명('19. 4.)

- 아동이 원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 및 공적책임 강화 필요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 불법체류 아동이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게 발달·성장할 수 있도록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 확대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 보장 필요('21. 11., 제2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

○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

〈아동시설 종사자들에게 아동권리와 관련된 적절한 교육 및 지속적 훈련 제공〉

-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법 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아동의 권리, 아동 학대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교육하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필요

〈비행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선도교육 프로그램 강화〉

- 위기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전국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비행 초기 단계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교육 및 법원 의뢰 교육생 대상 비행진단·교육 등을 실시
- 소년범의 낙인효과 최소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경찰단계에서의 초기 개입을 통한 선도 중요
  - 그간 경찰은 '소년범 다이버전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찰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어려움 존재

*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에 대한 선도조건 훈방제도

**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

| | |
|---|---|
| 전문가 참여제 | 비행소년 조사 시 심리전문가가 참여, 비행촉발요인검사·인성검사(PAI-A)를 통해 재비행 위험성을 분석, 선도·처우의 자료로 활용('03.~)<br>※ '22년 13,965명 참여 |
| 선도심사 위원회 | 경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재범 가능성·피해자 처벌의사 및 전문가 참여 결과 등을 고려, 감경처분 여부를 심사('12.~)<br>※ '22년 처분결정 4,638명(△훈방 1,628 △즉심 2,836 △입건 174) |
| 선도 프로그램 | 비행소년의 재범·재비행 방지를 위해 전문기관·전문가 연계,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83.~) ※ '22년 26,714명 이수 |

〈우범소년 제도 개선〉

- 경찰은 상습 가출·폭력서클 가입 등 지속적 비행·범죄가 우려되는 고위험 위기청소년의 관할 소년부 송치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송치 시 보호자 사전설명 및 협의 실시

  – 우범소년으로 송치되는 사례는 가정·학교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고, 범죄 취약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임

    ※ 우범소년 송치 현황(명) : ('15.) 52→('16.) 178→('17.) 242→('18.) 416→('19.) 799→('20.) 1,124 →('21.) 792→('22.) 584

- 현재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복지적 행정조치는 다소 미약한 실정이며, 우범성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선도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복지분야 기관이나 인력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

-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소년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낙인 예방을 위한 우범소년 송치제도의 개선이 필요

### ○ 보호아동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으로 원 가정에서 분리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 중 다수가 대규모 양육시설에서 생활 중

  ※ 연도별 신규 보호아동 시설보호 비율(%) : ('20.) 66.2(2,727명/4,120명)→('21.) 63.5(2,183명 /3,437명)→('22) 56.5(1,294명/2,289명)

- 학대피해 영유아를 가정에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신설('21. 3.)

  – 아동복지법령 개정으로 가정위탁을 유형별 세분화('21. 6.),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22.)

○ **청소년 성교육 ·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 보장**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07.~, '22. 12. 기준 57개소 운영 중)

  – 아동·청소년, 양육자, 교사 등 대상 성교육 서비스 지원(체험관 교육 및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지원 및 성범죄 피해 예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근거

-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 모든 임산부로서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1. 1.부터 지원대상이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됨)

  – 지원내용 :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매비용 중 본인 부담비용 지원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의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는 혼자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므로 경제적 곤란*과 돌봄의 어려움을 함께 겪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아동의 양육과 본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

  * 청소년 한부모의 52.1%가 취업 중이나 비정규직이 61.3%이며, 평균소득은 160.6만 원으로 전체 평균소득(416.9만 원)의 38.5% 수준('21. 청소년 한부모 실태조사)

○ **아동참여와 아동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절차 및 기준 개발**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천하기 위해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아동 참여와 함께 제도 적용을 확장할 것을 권고(일반논평 제5호·제14호 등)

- 「아동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 제도를 규정('16.)

### ○ 공적개발원조 확대 및 국제개발원조 정책에 아동권리 등 인권 우선순위 반영

- 'KOICA 인권분야 중기전략(2021-2025)' 수립 및 아동 등 취약계층 권리증진 환경 조성
  - 여성·아동·장애인·난민 등 취약계층 권리증진 중심의 사업 확대

    ※ 인권 기반 개발협력 프로그램, 인권 보호 프로그램, 취약계층 권리증진 프로그램 사업 발굴 노력 지속
  - 사업기획, 실행, 평가 과정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조치 이행

    ※ 사업인권영향평가 제도, 범분야 성과관리(TAG) 제도, 범분야 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범분야 사업평가 의무화 제도 등을 통한 인권 내재화 강화
  - 민·관 협력사업 대상으로 아동권리옹호, 현지 시민사회단체 협력활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우호적 인권정책 환경 조성

    ※ 아동권리옹호(사업비 내 5%), 현지 시민사회단체 협력 활동 지원(사업비 내 5%), 파트너 인권교육 확산을 통한 아동권리 보호환경 조성 노력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 청소년 주도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동아리 2,500개 선정 지원, 청소년동아리 축제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 '지역 청소년동아리연합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동아리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 방과 후 아카데미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돌봄 취약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활동) 참여 불균형 해소* 및 수혜 청소년 확대**

  * 보편적 돌봄 제공을 위해 우선순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완화 및 '2자녀 이상 가정' 확대 추진

  **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수혜 청소년 수 : ('18.) 260개소, 10,742명→('21.) 332개소, 13,145명→('22.) 342개소, 14,059명

○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 시·도 교육청별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위기학생 상담·치유 지원

– 위(Wee) 클래스 및 위(Wee) 센터 설치 확대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정원 증원

※ 위(Wee) 클래스(개) : ('18.) 6,965→('19.) 7,230→('20.) 7,631→('21.) 8,059→('22.) 8,619

※ 위(Wee) 센터(개소) : ('18.) 215→('19.) 218→('20.) 233→('21.) 238→('22.) 238

※ 공립 전문상담(순회)교사(명) : ('18.) 2,231→('19.) 2,715→('20.) 3,336→('21.) 3,936→('22.) 4,664

– 위(Wee) 프로젝트 기관 소속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 기관 운영 실태 점검·컨설팅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위(Wee) 프로젝트 내실화

※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연수 제공, 전문상담인력과 학생 간 비대면 상담 지원을 위한 1:1 화상상담(랜선 위(Wee) 클래스) 운영, 각종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 학교폭력 신고체계 정비

– '12년 각 부처별로 운영해 오던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통합하여, 교육부·교육청·여성가족부·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17개소에서 운영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24시간 학교폭력 신고·상담 및 상담사의 전문역량 강화 지원*

*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협업하여 학교폭력 제도 안내 및 사례 중심의 실무 연수실시('22. 9.~10. 178명)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상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학생 지원기관 설치·지정 확대 및 내실화

– 주간 보호형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 신설(광주 빛고을 지세움, 대구 마음봄센터) 등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 19개소 추가* 설치·지정

* ('20.) 139개소→('21.) 158개소('21. 4. 기준)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길잡이'* 제작·배포('21. 3.) 및 온라인 연수 콘텐츠 개발 ('21. 12.)

*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 개요 및 이해, 이용 방법,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 프로그램 소개, 기관 현황 등 안내

○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지원 강화**

- ’20년부터 공공화 선도지역(118개 시·군·구)을 시작으로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전국 확산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

  – 전국(229개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총 852명, ’22. 12. 기준)하여 아동 학대 조사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

-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의 배치근거 마련, 즉각 분리제도 도입, 사례관리 의무화 등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20. 4., ’20. 12.)

- ‘포용국가 아동정책’(’19. 5. 총리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 7. 관계 부처 합동), ‘아동 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 1., 사회관계장관회의), ‘아동 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21. 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표하여 아동 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해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통(’18. 3.~)

  – 아동 대상 가정방문(104,195명) 실시, 복지 서비스연계(2,421명), 아동 학대(135명) 등 신고 (’21. 12. 기준)

  –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미등원 가정양육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약 2.6만 명, ’21. 4분기)

-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20. 69개소→’21. 77개소→’22. 85개소)·학대피해 아동쉼터(’20. 74개소→’21. 98개소→’22. 125개소) 확충

- 아동 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18. 33,532건→’19. 38,380건→’20. 38,929건→’21. 52,983건) 및 발견율(’18. 2.98%→’19. 3.81%→’20. 4.02%→’21. 5.02%) 지속 증가

-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 도입(’21. 3.)

○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 인권감시관 활동('22. 30명, 93회), 스포츠윤리센터 홍보대사 위촉, 전국체육대회 등 주요대회 홍보부스 운영 등 인식 개선 활동
- 초중고 운동선수 스포츠인권 실태조사('21. 9.~12.)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및 자유선택권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인권보장 강화(「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제23조)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 합의서('19. 3. 제정),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19. 9. 제정)
- 업계의 자율적 노력을 위한 정책적 유도
  -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정기교육* 실시

    * 교육 횟수(회) : ('18.) 17(1,903개 업체)→('19.) 16(1,876개)→'(20.) 8(온라인 병행, 1,950개 업체)→('21.) 전면 온라인 교육(9월~11월, 2,289개 업체)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양교육*, 심리상담** 지원

  * 소양교육(회/명) : ('18.) 155/1,272→('19.) 151/1,361→('20.) 143/1,429→('21.) 142/807

  ** 심리상담(회/명) : ('18.) 146/73→('19.) 329/111→('20.) 699/146→('21.) 899/175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 인권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시간 허용 기준 마련
  -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2조, 제23조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19. 3.) 제8조에 의하여 용역 제공시간 제한

###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불건전 만남 정보에 대한 청소년 노출 차단 및 안전한 채팅환경 조성(여성가족부 고시 제2020-36호, '20. 12. 시행)

  - 랜덤채팅앱을 주기적으로 점검(연 4회)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앱을 대상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후 재점검하여 재위반 시에는 사법기관 수사·고발 의뢰실시

  - '22년 말 기준 랜덤채팅앱 총 269개 중 262개(97.4%) 청소년 보호조치 완료, 시정명령 7건, 형사고발 3건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법·제도적 보호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1. 10. 시행)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

  - 기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역교육센터 10개를 확대 개편하여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전국 지역센터 17개소로 운영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 보호, 자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20. 6.) 및 신고포상금 지급('21. 17건·1,220만 원, '22. 13건·1,180만 원)

- 사이버 성매매 예방활동을 통한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성매매 예방

###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확대('18. 226개소→'22. 240개소), 청소년동반자(청소년 상담 전문가) 배치 확대('18. 1,261명→'22. 1,363명)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 확대('20. 9개소→'22. 20개소),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확대('20. 17개소→'22. 20개소)

-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청소년상담 1388 연중 상시 운영

- 청소년지도자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양성 확대**

  * 전문연수 지도자·전문지도자 과정에서 초등학생과 청소년 대상 맞춤별 '높이 날아올라 새롭게' 및 'Tell-Who' 프로그램 운영

  ** ('19.) 306명→('20.) 510명→('21.) 568명→('22.) 688명

○ **가정 밖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에게 인권·권리교육* 실시

  * 쉼터/청소년(개/명) : ('18.) 73, 3,562→('19.) 80, 3,829→('20.) 118, 4,976→('21.) 102, 5,696

- 청소년쉼터 종사자 대상 쉼터 입소·이용 청소년 인권 보호 및 인권 감수성 제고 교육

  – '청소년쉼터 종사자용 인권 보호 매뉴얼' 제작·배포

  – 청소년 인권 이해 증진 특성화 교육(2회) 실시 및 이러닝 콘텐츠 운영('22.)

○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교급별, 수준별, 역량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어울림(사이버어울림) 총 142종 개발(어울림 90종, 사이버어울림 52종)·보급

-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중앙교육연수원에 36종 탑재하여 연수 지원

○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 아동 관련 민간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가 참여한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18. 11.)

-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자문단'에서 출생등록제 도입의 목적, 규율대상, 도입방식 등에 대하여 논의('18. 12.)

- 연구용역을 통한 태국·베트남 해외사례 수집('20. 6.~8.),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안건 논의('21. 2.)

-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수렴('21. 4.)

- 관련시민단체 및 법무부 내 유관부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렴('21. 4.~9.)

- 아동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각종 조사 및 분석 실시

  – 월·분기별 및 연간 기준 인구동향 통계를 차질없이 작성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 (예 : 출생·사망통계(잠정, 2월), 출생통계(확정, 8월), 사망원인통계(9월) 등)

## ○ 아동 양육 및 보호의 국가 책임 강화

-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19. 5. 총리주재 현안조정회의)
  - 아동보호·인권 및 참여·건강·놀이 중심의 4개 분야 16개 과제(40개 소과제) 발표
  - 특히, 학대·빈곤·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결정, 관리, 원 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
- 아동보호전담요원* ’20년 신규예산 반영(’19. 12.)
  - 시·군·구에서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결정·관리·원 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하여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 운영

    *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보호결정으로부터 보호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
  -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에 따른 ‘2020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개정 및 교육 방안 마련(’20. 8.)
  -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시 상담·조사, 보호계획, 양육상황점검,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전산 시스템 기능 오픈(’20. 10.)
  - ’20년 334명, ’21년 524명(190명 증가) 배치에 이어 ’22년 715명(191명 증가)의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 보호아동대상 수 등을 고려하여 각 시·군·구에 전담요원을 최소 1명 이상 배치 중
-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21. 6.)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21. 6.)

    *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 중심으로 구성, 아동보호 관련 전문적 사항을 적시에 심의하는 것이 불가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사례결정위원회 설치(’21. 12.), 사례결정위원회 전국 시·군·구 평균 8회 개최(’22.)

    ※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18년 0.9회, ’19년 1.4회, ’20년 3.6회 개최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 청소년의 요구 변화를 반영하며 데이터 시스템화가 가능한 전국 청소년활동 예약·결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화 전략계획(ISP) 예산 확보 추진('24.~)
- 코딩, 드론, 영상·미디어 제작 등 청소년 디지털 체험활동 강화

### 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 청소년 수련시설에 개소되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 방과 후 아카데미(개소) : ('21.) 332→('22.) 342→('23. 이후) 350 이상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수혜 대상 청소년 확대*

  * ('21.) 13,145명→('22.) 14,059명→('23. 이후) 14,500명 이상

- 청소년 체험활동 주요 프로그램으로 코딩, 컴퓨터 활용, 드론, 로봇, 영상·미디어 제작 등 '디지털 체험활동'을 강화

### ③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 학교에서 위기 학생 등에 대한 상담 활동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등 위(Wee) 프로젝트 사업기관 확대 및 관계 부처 협의 등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전문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연수 지원 등 학생 상담 내실화

-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위(Wee) 센터 정신과 전문의 지정을 통한 심리치료 및 자문 지원

  – 비대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과 학생 간 1:1 화상상담(랜선 위(Wee) 클래스) 시스템 운영 및 지원

### ④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 학교폭력 신고체계 정비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24시간 학교폭력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폭력 유형별 지원 연계 지속 운영
  - 온오프라인에서 학교폭력, 아동 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지원하는 전방위적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지원시스템(App) 개발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중심의 또래활동 활성화
  - 친구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함께 성장·발달해가는 또래상담학교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 문화 조성
- 학생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예방활동 확대
  -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방어자 되기' 등 교내 학교폭력 예방 활동 실시 및 운영사례 발굴
- 위(Wee) 프로젝트 사업 및 전문기관 등을 통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속 지원
  - 가정형·병원형 위(Wee) 센터, 교육감 지정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등의 학생보호,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치유·회복 지원 지속 추진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해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 학생·보호자 심리지원 프로그램 연수자료 보급 및 피해 학생 상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일반교사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연수 실시

### 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지원 강화

-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 등의 신고 활성화 및 인식 개선
  - 교사, 의료인 등 직군별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교육 확대
  - 아동 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긍정양육 129' 원칙* 홍보 강화

* 1 기본전제 :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이다, 2 기본원리 : 긍정양육은 부모 자신과 자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며 부모와 자녀 간에 믿음이 필요하다, 9 실천원리 :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

• 위기아동 발견 및 조기 개입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사전 예측·발견하고, 필요서비스(드림스타트, 복지급여 신청 등) 제공 및 학대 신고

–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현장 방문 시 활용되는 체크리스트 개선을 통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현장 방문 운영 효과성 제고

•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회복지원 강화

–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인프라 지속 확충

* 아동보호전문기관(개) : ('22.) 95→('25.) 120

** 학대 피해 아동쉼터(개) : ('22.) 141→('25.) 240

– 아동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자문, 피해 아동 치료 등을 제공하는 아동 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확대('22. 8개 기관 시범사업 실시, '23.부터 17개 시·도로 확대)

– 피해 아동 및 그 가정의 기능회복과 가정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집중 사례관리(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지속 확대('22. 27개 기관(1,000가정) 시범사업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심리지원팀 운영 활성화, 심리치료 지원 대상 확대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기관 전환('23. 10.~) 역량 강화 지원

• 대응체계 공고화

– 원 가정에서 분리된 피해 아동의 성별*·연령**·장애*** 유무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생활 가능한 맞춤형 인프라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당 학대 피해 아동쉼터 2개소(남·여)씩 총 240개소 확충(~'25.)

**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위기아동보호가정 운영('21. 4.~)

***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신설('22. 6개소)

–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 확충을 독려하고, 배치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문직위 지정 권고 등을 통해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지원

– 지방자치단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교육(보건복지부·법무부 협업) 및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개정*·배포 등을 통한 협업 활성화

* 장애아동 조사·사례관리 과정에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아동 학대 대응체계 간 협업방안 구체화 등 보완 예정

### ⑥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체육계 인권 보호 및 공정성 확립 추진
  - 조사관·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체육계 사건 접수·조사 및 상담, 의료·정서 심리·법률·체육활동 비용 등 지원
  - 다중매체를 활용한 스포츠인권 홍보 강화(홍보대사, 전광판, SNS, 마스코트 활용 등)

### ⑦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23조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구체적 행동 지침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 환경 조성을 위한 업계 대상 교육 강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4,000여 명) 등록교육(40시간) 및 법정교육(최초교육 1년 6시간, 연간교육 1년 3시간) 과정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 관련 교육 내용 신설
- 우울증·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획사 또는 연예인의 신청 시 전문상담사가 방문하여 1:1 상담 진행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
  - 전문강사가 기획사 또는 예술고에 방문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연습생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스트레스 관리, 인성 등 교육(1회 1~4시간)

### ⑧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주요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점검 등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추진
  - 랜덤채팅앱을 주기적 점검·단속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형사고발 등 조치
  - 랜덤채팅앱 점검을 상시 실시하여 음란·성매매 정보 게재 이용자를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심의요청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맞춤형 지원 및 역량 강화
  - 중앙지원센터를 통한 종사자 교육, 센터 간 네트워크 관리 등 운영역량 강화
  - 피해자의 심신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의료·학업·자립 프로그램 운영
  -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검찰 조사 시 상담전문가 동행 등 법률지원
  - 보호자의 성매매 피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정대리인 교육
  -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피해 아동·청소년 적극 지원 및 성범죄 피해예방활동 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신고 연계
  - 웹사이트, 모바일앱 등의 성매매 유인행위 의심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온라인 성매매 의심 신고

### ⑨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위기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의료 등 통합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동반자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전화 1388’ 상시 운영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대응체계 강화

•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 신규 배치,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후 원스톱 지원,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운영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마음건강 지원 강화

### ⑩ 가정 밖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 아웃리치* 지속 실시

* 가출 청소년 구호 활동

•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교육 등 인권·권리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인권 감수성 제고

### ⑪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교급별, 수준별, 역량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어울림 지속 운영

–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사회성·정서 역량과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 강화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 인식 제고

– 학부모의 자녀이해 및 학교폭력 예방 이해를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소식지 배부, 교육자료 제공 및 학교폭력 예방 온라인 연수

•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문성 제고

–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원격연수 지속 운영

– 교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 ⑫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 아동 출생·사망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을 통해 아동 인권정책 수립 지원
  - 월·분기별 및 연간 기준 인구동향 통계의 생산과 서비스를 지속하고 개선
- 연간 인구 동향 통계 작성 및 서비스 추진
  - (매년 2월) 출생·사망 통계(잠정) 공표, (매년 5월) 영아·모성 사망 보완조사 실시, (매년 8월) 출생 통계(확정) 공표, (매년 9월) 사망원인 통계 공표, (매년 11월) 다문화 인구동태통계(출생·사망·혼인·이혼) 공표
- 출생통보제 추진 방안 및 이행계획
  - ('23. 3.) 법무부·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업무협의→('23. 6.) 출생통보제 도입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3. 8.) 출생통보제 시행 실무협의체 회의→('23.~'24.) 출생통보시스템 구축→('24. 7.) 출생통보제 시행

### ⑬ 아동 양육 및 보호의 국가 책임 강화

- 공공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 돌봄위기가구 출생미등록 아동 등 아동보호 사각지대 지속 발굴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자문 및 직무교육 등을 제공하는 현장 슈퍼비전* 체계 구축

    *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잘 사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라 아동의 원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는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구축 예정('24. 7. 시행)

### ⑭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 외국인 아동의 교육, 생활지원 및 인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추진(「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개정 추진)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24.)
- 법률안 통과 시 출생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예정('24.~)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신청과정 및 출생증명서 상의 정보로 체류자격이 드러나지 않도록 시행령 마련 및 출생등록정보시스템 구축

### ⑮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들에게 아동 권리와 관련된 적절한 교육 및 지속적 훈련 제공〉**

-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지속 실시
- 아동·청소년 시설종사자 대상으로 아동권리 보장, 소년사법 등 법 교육 직무연수 실시

**〈비행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선도교육 프로그램 강화〉**

- 학교·경찰·검찰·법원 등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 의뢰한 위기청소년과 보호자 대상 비행예방교육 실시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비행예방교육 활성화
-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관리 강화
  - 경찰·검찰·법원 등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대상 초기면담을 강화하여 자료를 생성하고, 소년처우단계 전반에 활용
  -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경제지원, 시설보호 등 사후 연계 가능한 지역사회 민간자원 발굴 및 조직화
  - 멘토링 연계 등 지속적 개입으로 비행예방 강화
- 비행초기 선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경찰선도제도 운용 실태 점검 등 활성화 지원 및 운영 예산 확충
  - 경찰청·국회·유관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비행 초기 적극적인 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선도제도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우범소년 제도 개선〉

- 우범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은 유지하되, 적절한 처우와 보호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지속 추진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에 '우범소년 제도 개선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보완책 마련 추진

### ⑯ 보호아동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 실효성 있는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실시 및 시설·그룹홈 등 종사자, 시설 퇴소 당사자 등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로드맵 구성을 위한 추진과제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수렴 추진
- 시설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가정형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계획 마련
  - 가정형 보호 활성화, 시설 기능전환·소규모화, 그룹홈 확대 및 환경개선 등 추진

### ⑰ 청소년 성교육 ·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 보장

-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서비스 질 제고
-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대상을 현행 19세 이하에서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 연령인 24세 이하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를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 청소년 한부모에게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가족센터 사례관리 추진

### ⑱ 아동참여와 아동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절차 및 기준 개발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참여를 점진적으로 제고하고, 영향평가 시 아동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 및 의견청취 여부 등을 평가
- 아동총회 등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시된 정책개선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및 정책이행 모니터링 실시

### ⑲ 공적개발원조 확대 및 국제개발원조 정책에 아동권리 등 인권 우선순위 반영

- 'KOICA 인권 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21.~'23.)'의 15대 실행과제*를 계획대로 이행

  * 인권기반 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수립, 인권 영향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인권 위험 관리 체계 구축, 개발 협력 사업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기여와 인권증진정도를 알 수 있는 인권지표 개발 등

- 인권분야 사업 인권지표 개발, 인권분야 사업 발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KOICA 인권분야 중기전략('21.~'25.)' 지속 수행

## 4. 장애인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 개인이 속한 국가나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에 위반되는 차별과 차별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호,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 차별에 대하여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
-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호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 아동권리협약 제23조 제1~3호
  -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성되는 여건 속에서의 충분하고 품위 있는 생활
  -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활용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장애아동과 그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 제공 보장
  - 장애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
- 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제5조 제3호, 제9조 제1호 (나)목, 제9조 제2호 (가)목, (나)목, 제11조, 제12조 제1~4호,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17조, 제18조 제1호 (가)목, (나)목, 제2호, 제19조 (나)목, (다)목,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호, 제29조 (나)목, 제33조
  -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
  -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 조치

-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
-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
-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
-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
-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
-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며,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
-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
-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 향유,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자유 박탈 금지,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함
-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

-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자발적인 동의 없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 금지,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
-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
-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
-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인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회복 및 재통합은 개인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요구 반영
-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
-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국적 박탈 금지
- 장애를 이유로 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능력 박탈 금지
- 출생 즉시 등록, 출생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
-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가정 내 지원 서비스, 주거 지원 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의 접근 보장
-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을 장애인에게 동등한 제공 및 요구 수용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건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 제공
-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건강 서비스 제공
- 보건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
-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관리, 보건 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 금지
-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
-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종합적인 훈련,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강화 및 확대
- 재활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필요와 장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에 기초
- 재활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
- 훈련과 재활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
- 훈련과 재활에 관련이 있는 경우,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유용성, 지식 및 그 사용을 촉진
-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니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

–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 공적 활동에의 참여 장려(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국제적·국내적·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의 결성과 가입 포함)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 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

–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하거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원칙을 고려하여 지정 또는 설치

–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5항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 보호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생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시설종사자 등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환기장치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권 실태조사 필요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거주시설*의 대표, 종사자, 전체 거주인을 면담함으로써 시설의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대응하여야 하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른 시설의 고립과 단절로 인해 드러나지 않은 인권문제** 파악이 더욱 필요해짐

* 시설현황(개소) : ('18.) 1,519→('19.) 1,553→('20.) 1,539→('21.) 1,535

** 시설 내 학대 발생(건수) : ('18.) 195→('19.) 222→('20.) 150→('21.) 143

(출처 :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 ○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 교육 기회가 부족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여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 필요

### ○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7.5만 명으로 전체 아동(769만 명) 대비 약 1%, 전체 장애인(263만 명) 대비 약 2.9% 수준이며, 그들 중 85%(6.5만 명)가 심한 장애를 가졌으며 67.4%(5.1만 명)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에 해당함

* 인지·의사소통·자기통제 능력 부족의 특징을 가진 아동기 장애로, 평생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함

•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장애아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필요

–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재활바우처)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부모상담 및 가족휴식 지원,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봄 및 휴식지원 등 양육지원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취미·여가, 직업탐구·자립준비 등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가진 6세~65세 미만 장애인은 12.7만 명으로 전체 6세~65세 장애인(127.8만 명) 대비 약 9.9%, 전체 등록장애인(264.5만 명) 대비 약 4.8% 수준으로, 그 중 97.2%(12.4만 명)가 심한 장애인으로 파악되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54%(6.9만 명)는 발달장애인에 해당

- 발달장애는 부모의 도움이 전체 장애인(20.8%)에 비하여 현저히 필요한 장애(71.4%)로, 평생에 걸쳐 특별한 보살핌이 요구됨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18. 7.8만 명→'22. 10.7만 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19. 도입 2.5천 명, 월 88시간→'22. 1만 명, 월 125시간) 등 관련 서비스 지속 확대 필요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동지원급여(서비스)* 제공 필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전년도 사용 승인된 건축물(약 2,000개소)의 편의시설 설치·유지 모니터링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정상 설치·유지되도록 조치

- 유니버설 디자인*(UD, Universal Design,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 환경 확대 방안 강구

  – 생활환경의 유니버설 디자인화

  *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 불리며, 연령, 성별, 국적, 장애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

– 국제교류를 통한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의 국내적용 방안 모색,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구축을 위한 민·관·산·학의 연계시스템 구축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디어 대전 개최 등을 통해 디자인 환경 기반 확대 및 형성

• BF 인증 활성화 필요

–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로 민간시설 BF 인증유도, 인증 사후관리 강화, 인증 운영기관 지정·운영

•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없는 사법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사회적 인식 고취 필요

–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

### ○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 장애인 대상 차별 및 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회 내의 장애인 대상 차별 및 편견에 대한 인식 개선 정책 필요

• 장애 인식 개선 의무교육 대상기관 확대, 교육내용·방법 구체화, 교육결과 제출 등 의무화 조치('16. 6. 시행)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약 5만 개소의 장애 인식 개선교육 이행률*은 92.8% 수준

* 교육 이행률(실적관리시스템, %) : ('16.) 19.3→('18.) 52→('20.) 78.2→('21.) 92.8

### ○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상 제도 운용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보건·의료를 보장받음으로써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도모

– 장애인과 재활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복귀 지원 및 건강격차 해소

–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 편의시설이 법에 위반된 경우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편의시설 적정 설치 유도 필요
-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숙박시설 설계 마련 및 관련 법규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등의 숙박시설 접근·이용 활성화 필요

○ **장애인 학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 장애인 대상 신체적·경제적 착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수행 필요

○ **장애인 고용 개선**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근로자 적합 직무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여, 장애유형·업종 등에 적합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 개선 필요

  ※ 장애인 미고용사업체의 72.4%가 장애인 고용의사 없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로 응답(202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고용개발원)

○ **변호사 시험 장애인 시험장 확대 운영**

- 보조장비와 전문인력 등이 필요한 변호사 시험 장애인 시험장*의 확대 운영 필요

  * 음성형 문제, 답안작성용 컴퓨터, 전자파일 법전,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애인 시험장 운영을 위하여 보조장비와 전문인력 등이 필요

– 제1회('12.)~제10회('21.) 서울 소재 1개 시험장 운영

– 제11회('22.)에서는 서울 소재 2개 시험장 운영(연세대, 중앙대)

### ○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추진 필요

  – 후견 심판청구 비용(1인 연간 최대 50만 원), 후견인 활동비용(1인 월 15만 원, 3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지원

  – 후견법인 2개소를 지정하여 후견인 후보자 발견, 양성·보수 교육, 후견심판 청구 지원, 직접 후견 서비스 제공 등 실시

- 공공후견 예산('18. 1,176백만 원→'22. 2,360백만 원) 및 지원 대상('18. 400명→'22. 1,263명)등 지속 확대 필요

### ○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교통지원 등 입원환자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22. 2.)

- 장애인단체, 학계 전문가, 정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18년~'19년 민관합동 T/F를 통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개선 추진과 관련한 논의 진행

  – 장애인 근로자의 실업, 고용불안 등 우려를 이유로 제도 폐지보다는 적용 제외 근로자 실질적 감소 노력에 합의

- '18년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기준* 및 절차** 강화

  * 비교 대상 근로자 작업능력의 90% 미만→70% 미만

  ** 비교 대상 근로자(1인→2인), 평가 횟수(1회→2회) 등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저임금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노동시장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20.)

– 참여 장애인에게는 월 30만 원의 고용전환촉진수당을 지원하여 낮은 임금의 일부를 보전

– 참여 장애인이 일반사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취업성공 장애인에게 최대 100만 원, 채용사업주에게 지원금 월 80만 원(최대 3년)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또는 중위소득 50% 미만('23. 확대 시행)인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지원을 위해 월 최대 5만 원의 출·퇴근비용 신규 지원('21.)

• 장애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일자리 불안정

– 장애여성 고용률(23.1%)은 장애남성(46.2%)의 절반 수준이고, 장애인 고용률 성별격차(23.1%)가 전체인구(18.6%) 대비 다소 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2.)

• '22년 말 현재 전체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 인원 4,558명(직접훈련 3,880명, 위탁훈련 678명) 중 여성장애인은 1,656명(36.3%)*이며, 여성장애인 전용반으로 네일아트 직종('20. 14명 수료→'21. 30명 수료→'22. 11명 수료)을 운영 중

* 여성 직업훈련 비율(%) : ('20.) 34.1→('21.) 35.6→('22.) 36.3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 보호

• 장애인 거주시설 전체 종사자 인권교육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

– 시설장과 사무국장 대상 시·도 주관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의 필수적 이수

※ ('19.) 교육부의 '장애학생 인권 보호 종합대책'에 의해 사립특수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거주시설 이용학생을 대상으로 실시(33개소, 240명)

※ ('21.) 10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 실시(26개소, 거주인 41백 명, 종사자 22백 명)

※ ('21.)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 (집합교육 및 광역시·도 주관 교육 11회 실시)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22.) 시각장애인(16개소)·청각언어장애인(7개소)·지체장애인(25개소)·장애영유아(9개소) 거주시설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 실시(57개소, 거주인 2,163명, 종사자 1,521명)

※ ('2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 (집합교육 및 광역시·도 주관 교육 실시 등)

• 시설 내 거주 장애인 인권상황 점검을 위하여 종사자, 보호자,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5~11인)과 관련한 지침 개정으로 감시체계 강화

– 외부단원의 역할 확대 및 지원 강화, 인권지킴이단 단원 후보자 추천 내실화 등

### ○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 지원*

* ('18.) 1,219명→('19.) 1,235명→('20.) 1,100명→('21.) 1,006명→('22.) 1,021명

– 행복e음 장애인복지 누락서비스 조회 기능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견,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확대('19. 11.)

– 보건복지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홍보, 보건소·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지원 대상자 발견 등

• 상담·사례관리, 역량 강화 교육,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18.) 전국 42개소 100,000명→('19.) 42개소 107,000명→('20.) 42개소 76,000명→('21.) 43개소 106,000명→('22.) 43개소 92,700명 지원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위탁기관 1개소(대전) 증가

○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 ('18.) 52,684명, 76,244만 원→('19.) 57,094명, 82,626백만 원→('20.) 61,094명, 88,415백만 원→('21.) 65,094명, 94,204백만 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대상, 연간 제공시간 및 금액 확대*

  * ('18.) 3,725명/연 528시간, 11,277백만 원→('19.) 4,005명/연 600시간, 17,186백만 원→('20.) 4,005명/연 720시간, 20,873백만 원→('21.) 5,005명/연 840시간, 21,562백만 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대상 및 금액 확대*

  * ('19.) 4,000명, 9,169백만 원→('20.) 7,000명, 33,059백만 원→('21.) 10,000명, 44,637백만 원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 ('18.) 10,556명, 1,210백만 원→('19.) 12,311명, 1,478백만 원→('20.) 7,371명, 1,478백만 원→('21.) 12,353명, 1,478백만 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 ('18.) 731명, 601백만 원→('19.) 790명, 730백만 원→('20.) 783명, 730백만 원→('21.) 812명, 730백만 원

○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19. 7.)을 통해 개개인의 요구·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량이 도입 당시의 113.8시간보다 월별로 약 20시간 증가한 133.8시간 기록('21. 6.)

  –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였으며, 중증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3급)만 신청 가능하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경증장애인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 장애인의 상태·환경·요구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급여시간 4구간 체계를 15구간 체계로 세분화

– 시청각 장애인의 특성 반영을 위한 시청각 복합평가 지표를 추가하고 발달장애인의 주요특성을 반영하는 등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 평가지표에 비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조정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활동지원 수급자(명) : ('18.) 94,000→('19.) 105,000→('20.) 115,000→('21.) 127,000

•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활동 지원 등 적극행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

– 활동지원 수급자가 자가격리되거나 확진되는 경우 자가격리 해제 또는 퇴원 시까지 일 24시간 활동지원 제공, 수급자의 보호자가 자가격리·확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경우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

– 장애인 이용·생활시설의 휴관 등으로 돌봄 공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자가 아닌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20시간의 긴급활동지원 제공

– 도전적 행동 등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코로나19 시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에 대해 한시적 허용

– 활동지원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40시간, 최대 6개월의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

– 코로나19의 유행에 대응하여 활동지원 기관 및 활동지원사 준수사항을 배포하고 활동지원사 비대면 교육을 허용하여 활동지원사 양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

•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및 제공기관 평가지표 개선

– 최저임금·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에 대한 서비스단가를 매년 인상

– 기능 제한이 심하거나 공격성·돌발행동 등으로 인해 지원 난이도가 높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위하여 예산을 늘리고(47억 원→90억 원) 인센티브 지원 대상('21. 3,000명→'22. 4,000명) 및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인상('18. 680원→'19.~'20. 1,000원→'21. 1,500→'22. 2,000원)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제도 개선

– 헌법불합치 결정('20. 12.)*에 따라 「장애인활동법」을 개정하여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2. 5.)

*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한 요건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 결정)

• 65세 이후 장기요양 전환자 지원 체계 마련 및 지원

– 65세 이후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법」 개정('20. 12.) 및 예산('21. 71억 원) 반영

–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 중 65세 이후 사회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인활동법」을 개정*('21. 1. 시행)하여 497명 지원('21. 9. 기준)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18년 85억 원에서 '22년 2,080억 원으로 대폭 증가

• 장애 관련 정책의 변화, 전염병·재난 상황 시 대응요령, 성인지 감수성 등을 반영하여 활동지원사 교육교재 개선연구 시행

### ○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 전국 2,058개소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설치하고 '19년~'21년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의 확대 방안을 강구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개선

–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 강화*('22. 5.)

* ①슈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300㎡→50㎡ 이상 ②이용원·미용원 500㎡→50㎡ 이상 ③목욕장 500㎡→300㎡ 이상 ④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500㎡→100㎡ 이상

- 대형마트(전국 416개소)에 마트 당 최소 3개 이상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함

- 전문·생활체육시설의 출입구(문)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통과유효폭(0.9m→1.2m)과 장애인 화장실 활동공간(1.6m×2.0m→2.0m×2.1m)의 설치기준 개선('22. 7.)

• BF 인증 활성화*

* 인증실적(건) : ('18.) 1,654(예비인증 1,041, 본인증 613)→('19.) 1,755(예비인증 1,015, 본인증 740)→('20.) 2,258건(예비인증 1,302, 본인증 956)→('21.) 2,221(예비인증 1,242, 본인증 979)

• BF 의무인증시설 범위를 기존 국가·지방자치단체 신축 건물에서 공공기관·민간(초고층건물, 지하복합연계건물)이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건물까지 확대하고 BF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21. 12.)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22. 1.)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일반형), 마을버스는 '23년 1월부터 저상버스 의무 도입 예정*

* 「교통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2. 7.~8.)

- 광역급행버스 등은 '27년 1월*부터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

* 연구개발('23.~'26.)를 통해 광역·좌석형 저상버스 개발

• 도시철도 역사에 승강기 설치를 지원('08.~'19.)하여 '21년 현재 702개 도시철도 지하철역사 중 1역사 1동선 확보 역사는 680곳(96.9%)이고 동선 미확보 역사는 22곳임

•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23. 7. 시행)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

- '21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장애인 학대 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 '21년 장애인 범죄피해자 지원 실적 : 1,144건(장애인 학대 범죄 58건)

• 사법 접근성 보장(소송절차상 진술조력인 제도 적극 활용)

– ’22년 1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시행으로 장애인 학대를 포함해 모든 범죄피해자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 지원 가능

※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지원 현황(건) : (’18.) 888→(’19.) 1,009→(’20.) 1,133→(’21.) 1,440→(’22.) 1,323

### ○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질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의 우수강의안 동영상 제작(~’18. 8.)·보급, ’17년 유아 대상 우수강의안 공모전 최우수작, 우수작 2편 동영상 제작(’18.)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공무원 등 성인교육용) 실시(’18.)

– 성인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사이버교육용 동영상 제작(’18.), 청소년 대상 영상콘텐츠, 초등학생 대상 학습 사용 도구 2종 개발(’21.)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과 활용가이드, 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매뉴얼 제작(’19.)

– 국내외 콘텐츠를 발굴하여 외부 전문가 심사단 평가 후 실적관리시스템에 총 56종 선정(동영상 44종, 도서 11종, 만화 1종)의 추천콘텐츠 게시(’21.)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표준교안 2종(학령기, 성인), 초등학생 대상 콘텐츠 1종 등 개발(’22.)

– 국내외 콘텐츠를 발굴하여 외부 전문가 심사단에 평가 후 실적관리시스템 내 총 220종(동영상 154종, 도서 35종, 이미지 18종, 교안·교재 3종, 기타 10종)의 추천콘텐츠 게시

• ‘장애 인식 개선·장애인차별 금지’ 교육 지원 시스템 체계화(’20.)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이러닝(e-learning) 사이트 구축(’19.)

– 장애 인식 개선 강사양성 1차 시범사업 운영(’19.), 2차 시범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표준화된 강사양성 과정·교육교재 등을 마련하고 전문강사 25명 양성·위촉(’20.)

– 강사양성체계 구축·강화,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20.), 전문과정 · 맞춤과정 · 특별과정을 통한 전문강사 양성(’21. 67명→’22. 148명)

– 장애 인식 개선 교육기관 지정(’21. 14개소→’22. 22개소)을 통한 안정된 교육 환경 제공

•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식 개선 교육·홍보 내실화

– 매년 12월 1일~10일 대국민 장애공감주간을 운영(’20.~’22.)

– 인식 개선 온라인 강연 제작, SNS 채널 플랫폼 활용 인식 개선 이모티콘 제작·홍보 등(’20.)

– 랜선 장애 인식 개선 콘서트, AR필터 수어 챌린지, 증강현실 통합놀이터 컬러링 이벤트, 장애에티켓 관련 이모티콘 배포 및 인스타툰 이벤트, ‘장애인 보조견’ 인쇄 광고 확산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 운영(’21.)

– 너와 나를 위한 1cm 캠페인(정보접근성 관련 캠페인), 장애 인식 개선 콘서트, 콘텐츠 제작 및 송출, 장애 인식 개선 대학생 서포터즈 등의 프로그램 운영(’22.)

### ○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 지역주민 대상 ‘마음이음축제’ 홍보부스 운영(’18. 6.), 장애인(7만 명), 요양기관(79기관 139명 참석) 대상 설명회, 장애인단체(183명 참석) 대상 설명회

–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11회, '19. 5.~12.),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18. 9.~'19. 7.) 결과에 기반하여 개선방안 마련 후 2단계 시범사업안 보고('19. 1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주치의 1차 시범사업('18. 5.~'20. 5.)을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 시행('20. 6.)

–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예방·관리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소도포·치석제거 등 구강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수가 신설('20. 6.)

– 케어플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연 1회 추가하여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 중중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1년 단위의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에 따라 건강관리 교육·상담을 제공받음

– 전화상담료를 폐지하고 환자관리료로 전환하여 비대면 환자 관리* 강화

* 주치의가 비대면 전화상담·문자 송·수신 통해 환자 상태, 약물복용 여부 확인 등 장애인 환자의 건강 상태 주기적 관리 진행

–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20. 1.~'20. 11.) 결과에 기반하여 개선방안 마련 후 3단계 시범사업안 보고('21. 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20. 6.~'21. 9.)을 공급자·수요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3차 시범사업 시행('21. 9.~)

– 주 장애 관리 서비스 대상 장애유형을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까지 확대

–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만성질환 관리(고혈압·당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참여 장애인 대상 질환별 검사 바우처 제공

– 교육·상담료 시간별 세분화 및 방문진료비용* 도입

* 방문 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수가는 별도로 사정 불가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및 사업 간 연계강화

– 중앙센터로 국립재활원 지정('18. 3.), 지역센터 14개소 지정('18. 3개소, '19. 3개소, '20. 4개소, '21. 4개소)

– 보건소 개소당 CBR* 전담인력 1명 충원 추진(256개소, '19. 60명→'20. 120명→'21. 180명)

* 지역사회 소외된 장애인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중('21.~)



### ○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 전체 대상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및 사후조치('18. 4.~'19. 1.)

• 기숙사 및 숙박가능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부착물들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8년~'21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집중관리대상시설에 대한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 및 소관 중앙부처의 이행계획 수립요청

–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사후조치

– 편의시설 점자표기 관련 표준지침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간 협의를 통해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38호) 및 점자 편의시설 표준지침서 마련

○ **장애인 학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 「장애인복지법」 개정
  - 장애인 학대관련범죄 정의, 피해 장애인 변호사 선임 특례, 학대범죄자의 장애인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피해 장애인 보호 강화('20.)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며,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피해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21 .7.)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22. 1.)
-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배포
  - '19년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황, 장애인 학대 사례의 학대 유형 등에 관한 세부 내용분석('20. 7.)
  - '20년 신고 사례 분석에 따르면 신고건수 4,208건 중 학대사례가 1,008건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5.3%로 가장 높으며, 가해자는 지인(20.1%), 사회복지시설종사자(19.3%) 순으로 나타남('21. 8.)
- 학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통합 신고망 및 학대정보시스템 구축('19.~'21.)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문자신고시스템 개통('21. 4.)
  - 학대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학대정보시스템과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 연계 기능 개발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업무수행지침 작성,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사례 워크숍 실시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내실화('21.)
  -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21. 11.까지 총 4,284건 접수, 학대 판정 997건, 23.3%)

- 장애인 학대사건 '17년~'20년 판례집('17.~'20.) 및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 학대 대응 안내서 발간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종사자 대상 기본·보수교육 실시 및 워크숍 3회 개최 등 역량 강화

•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20개소(중앙기관 1개소, 시·도 지역기관 19개소*)를 설치·운영 중('22.)

* '22년도 하반기 충청북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완료

• 학대피해 장애인쉼터(19개소) 운영('21.) 중이며 '22년도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6개소)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안 마련

○ **장애인 고용 개선**

•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18. 5.부터)에 따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사업주 교육의무 이행 지원

- 교육강사 6,097명 양성, 교육기관 694개 지정 등 교육인프라 구축

- 사업장 53,108개소 무료 교육 지원 및 교육 콘텐츠 100종 개발·보급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 보호

•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이행 여부 확인

•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 인권 권리주장 방법, 인권침해 시 대처 요령, 이용자 간 인권 존중 등을 포함한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

- 후보군 마련 등 인권지킴이단원 후보자 추천 과정을 개선하여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
  - 관할 시·군·구는 인권지킴이단 단원 중 50% 이상을 외부 단원(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이용장애인보호자 등)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외부 단원을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인권지킴이단 후보군을 마련해 놓도록 추천 과정 개선, 인권지킴이 단원 중 외부단원에 의한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
-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연 2회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점검) 시,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관련 내용 집중 점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인권침해 발견 시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등 모니터링 실시
- 인권침해 의심 사례 발생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통해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에 장애인 학대 공익신고자 구제방안을 반영하여 사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

### ②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 양질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소외된 장애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
- 여성장애인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액 상향 등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확대
-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이행방안 마련 시 장애여성 등 교차적 차별에 직면하는 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 ③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지속 확대
-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발달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체계 구축

### ④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활동 지원 및 지원 대상의 지속 확대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지속 확대
-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 해소 및 활동지원사 매칭을 강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제공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법정수당 지급 등을 고려한 서비스 단가 인상 지속 추진

**〈장애인 자립 관련 정책지원 강화〉**

- 장애 정도·특성을 고려한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및 주거·돌봄 등의 통합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2.~'24.)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지원 추진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장애당사자·관련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및 대상자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 등 결과를 검토하여 '25년 본사업 전환 추진
- 장애인 거주시설의 유형별 다양화 등에 관한 연구용역 연구 결과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 예정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자립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추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대상자 및 제공시간을 확대 및 모형 개발 등 지원 강화

### 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 '23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 등 보행이 불편한 보행약자가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의 고도화 추진
-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디어 대전(3월), 인식 개선을 위한 DK 페스티벌*(10월),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10월), 전시·체험공간 운영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다양한 홍보활동

  * 디자인 코리아(Design Korea) 페스티벌 : 디자인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다채롭게 선보이는 디자인 축제

- 1역사 1동선 확보를 통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승강기 설치 지속 추진
-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상향*('23. 7.)하고, '26년까지 상향된 법정대수 100% 달성 추진 및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24시간 운행 등을 위해 운영비 국비지원 추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24. 1. 시행)

- 편의점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확대

  * 현행 : 건축물의 일부 용도(서점, 세탁소, 탁구장 등)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

- 공중의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민간의 BF 인증제 의무인증 대상에 현행의 초고층건물, 지하연계복합건물에 더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영화관을 추가

-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장애인 학대 범죄 피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강화 추진
  - 적극적인 홍보, 안내 등을 통하여 지원 실적 증가 도모
  - 국선변호사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전문교육 실시하여 법률조력 전문성 강화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
- 진술조력인을 통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강화 추진
  - 장애인 의사소통에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및 관련 업무 매뉴얼 개선 추진
  - 장애인 진술조력 사례 공유 및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전문교육 실시

### ⑥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 장애 인식 개선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전체교육 인원 대비 실 교육인원 집계, 대면교육 의무화 등 교육 질 관리
  - 기관평가 반영, 교육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공표 등 실효성 확보
- 표준교안을 중심으로 한 이러닝교육 활성화, 학습 사용 도구·교재 개발, 문화예술 접목 교육 등 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 콘텐츠의 다변화
- 효과적인 교육 연계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확대 및 전문강사 양성체계 내실화
- 대국민 홍보(장애공감문화) 강화를 통하여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모바일앱,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편의제공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한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제고
- 사회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금지영역 확대 및 차별금지영역의 복지제도 연계 방안 연구 실시

### ⑦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21. 11.~'22. 10.)를 통한 평가 및 시범사업 활성화 추진
- 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및 사업 간 연계 강화

### ⑧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2025-2029)계획'* 수립('25.)

  * 국가는 시설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토대로 '00년부터 5년마다 편의 증진 국가종합계획 수립·시행

### ⑨ 장애인 학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상담 전담인력 지속적 확대
- 피해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남·여 분리 및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지속적 확대
- 장애인 학대 신고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학대사례 발생 시 신속한 조사 및 보호
- 장애인 학대 예방 온오프라인 홍보물 개발 및 정책통계자료 구축, 학대 현황 보고서와 사례집 등 발간을 통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과 경찰청 시스템 연계 강화 및 지속적 서비스 개선

### ⑩ 장애인 고용 개선

- 수요자 중심 교육 인프라 운영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교육 내실화 도모

  - 이러닝 시스템('22. 12. 구축) 정식 운영에 따른 온라인 교육 제공

– 모듈형 콘텐츠*, 원격교육 콘텐츠 등 인식 개선 교육 콘텐츠 확대

* 수요자가 교육환경(업종, 장애인 고용현황 등)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택하여 수강

– 문화체험형 인식 개선 위탁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

※ 악기, 공연, 합창, 연극, 뮤지컬 등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과 연계한 인식 개선 교육('20.~)
: ('22.) 8개소, 13억→('23.) 8개소, 13억→('24.) 10개소, 22억



### ⑪ 변호사 시험 장애인 시험장 확대 운영

• 지방 거점별로 장애인 시험장 점진적 확대 추진

– ('23.) 대전→('24.) 대전, 부산→('25.) 대전, 부산, 광주→('26.) 대전, 부산, 광주, 대구→('27.)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제주

※ 매년 응시인원, 희망지, 편의지원 유형 등이 상이하므로 유형별 장애 응시자 원서접수 현황에 따라 확대되는 시험장 위치 및 개소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중증 장애인 응시자 전원 희망 시험장 배정('23.~)

– '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부터 중증 장애인 응시자 전원 희망 시험장 배정

• 장애인 시험장 운영을 위한 시험 장소(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예산·인력 확보 및 전문교육 실시

### ⑫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 제도 활성화

•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 실시

### ⑬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등에 대한 거소투표 안내를 철저히 하여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
- '18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선 이후 변화와 시사점 등을 토대로 추가 개선방안 검토하되,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폐지보다는 적용 제외 근로자 실질적 감소 방향을 우선 검토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개선을 통해 저임금 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 적극 연계
-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기회 확대 ('24. 11. 개원 예정)

## 5. 노인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 개인이 속한 국가나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에 위반되는 차별과 차별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호,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 차별에 대하여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

•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호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4항, 제5항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폭력 · 학대 등으로부터 노인 인권 보호**

• 노인학대 신고·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 시급

* ('18.) 5,188건→('19.) 5,243건→('20.) 6,259건→('21.) 6,774건

** '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학대 경험률은 9.7%로 학대노인은 약 80만 명으로 추정되어, 학대 은폐 정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인식

○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 장기요양기관(재가(在家)급여 제공기관 제외) CCTV 설치 의무화 및 영상정보의 보관·관리 및 열람의무, 의무위반 처벌 규정 도입 필요
- 노인인권에 대한 기본교육을 통해 노인 인권 감수성 및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바람직한 태도 함양 요구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교육과정 운영

○ **노인 건강권 보장**

- 저소득층 노인의 기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

○ **단체·문화 활동, 사회활동 참여 강화**

- 평균수명 연장, 소득 및 건강수준의 개선, '50~'60년대생의 노년기 진입과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노인집단이 다양한 특성을 발현함을 고려하여 여가문화 인프라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책 필요

○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 노인빈곤 완화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14년 5월 「기초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액을 '18년 25만 원, '19년 저소득 노인부터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21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월 최대 30만 원)하여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추진 완료

○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을 추진 중으로, 제5차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재정전망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연금개혁방안 마련 필요

○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필수서비스 강화**

- 노인돌봄서비스가 노인의 건강과 존엄한 일상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인권에 기반한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 최근 5년간('17.~'21.)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치주체는 법인(3,940개소)·개인(22,361개소)이 지방자치단체(공립 246개소)보다 월등하게 많음

  ※ 최근 5년간('17.~'21.) 요양기관(개소) : ('17.) 20,377→('21.) 26,545(6,168 증가)

  ※ 연평균 증가율 : 6.83%(개인 7.97%, 법인 1.49%, 지방자치단체 4.41%)

○ **농지연금 활성화**

- 농촌사회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나 고령 농업인의 노후 준비는 부족**하여,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촌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비율('20.) : 42.3%,

  ** 농업인 국민연금 미가입자 비율('18.) : 64.4%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폭력 · 학대 등으로부터 노인 인권 보호**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 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 강화
  -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의무화* 및 학대 피해 노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20. 12.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0('18. 3. 신설)

  - 가해자 및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정서안정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맞춤 서비스 연계 제공 등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19.~)

• 18개 직군으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 대응방안 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18.) 및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22.)까지 확대

• 노인 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홍보행사 진행

– 노인 학대 조기 발견 및 상담, 사례관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17. 31개→'22. 38개), 쉼터 확대('17. 17개→'22. 19개) 등 인프라 확충

– 노인 학대 예방의 날 행사 진행('17.~),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브랜드화

### ○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 인권교육 의무화 및 인권교육 과정 운영

– 「노인복지법」('18. 4.)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18. 9.)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19.~)하여 누적 교육 이수자 1,916천 명

### ○ 노인 건강권 보장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19. 1.~) 및 내실화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제1차~제5차 공모 및 수시모집을 통해 참여지역 및 참여의원 확대*

* ('19.) 1,474개 의원, 환자 약 17만 명→('20.) 1,552개 의원, 환자 약 22만 명→('21.) 3,781개 의원, 환자 약 46만 명→('22.) 3,722개 의원, 환자 약 56만 명

– 시범사업에 참여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검진바우처의 적용 연령* 및 검진항목**을 확대함으로써 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 예방을 도모

* 40세 이상→전 연령('20. 1.~)

** 지질검사 4종 횟수 추가(1→2회), 당화혈색소 횟수 추가(2→4회), 요 일반검사 신설('21. 1.~)

• 저소득 노인 대상 의료비 지원 확대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에 대하여 저소득 노인의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 원 지원

* ('18.) 1,087명(1,659건)→('19.) 1,722명(2,549건)→('20.) 1,735명(2,537건)→('21.) 1,705명(2,484건)→('22.) 1,741명(2,491건)

– 백내장, 망막질환 등으로 노인개안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비급여 항목 포함 본인부담금 지원(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일부 제외)

* ('18.) 4,889명(7,718안)→('19.) 5,429명(8,321안)→('20.) 5,458명(8,334안)→('21.) 4,968명(7,564안)→('22.) 5,462명(7,295안)



### ○ 단체·문화 활동, 사회활동 참여 강화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통해 전국 노인복지관에 전문예술강사 파견, 교육지원금 및 기자재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운영 노인복지관 수(개) : ('18.) 235→('19.) 252→('20.) 245→('21.) 263→('22.) 239

※ 운영 프로그램 수(개) : ('18.) 316→('19.) 314→('20.) 274→('21.) 272→('22.) 239

※ 참여 인원(명) : ('18.) 6,276→('19.) 6,199→('20.) 5,200→('21.) 4,871→('22.) 4,680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확대 시행한 경로당 (개소) : ('18.) 6,073→('19.) 6,030→('20.) 6,467→('21.) 6,608→('22.) 6,778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평가대회를 개최해 우수기관을 시상하고 사례를 공유('19.~'22. 매년 8개 기관 수상, '22. 우수직원 4명 수상)

• 민간자원을 활용한 노인여가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21. 12.~'22. 3.)

○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 범위 확대('17.부터 64세→69세)* 및 개인별 특성·요구를 고려한 프로세스 개선

  * 60세 이상 장년층 참여자(명) : ('18.) 10,904→('19.) 13,022→('20.) 16,186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장년층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범위를 II유형 중장년층*까지 확대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취업 지원 및 생계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20. 5.)→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1. 1.)

    ※ 소득 요건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지원

  – '21년 취업 취약계층을 총 42.3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 60세 이상 장년층 참여자(명) : ('21.) 30,733→('22.) 18,544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추진

    ※ I유형(15~69세, 저소득층 구직자) 소득(50→60%) 및 재산(3억→4억 원) 요건 확대(시행령 개정, '21. 9.)

    ※ 영세자영업자 취업 지원 확대(매출액 1.5억 원→3억 원 이하)(고시 개정, 7월), 영업제한·집합금지업종 종사자 지원 근거 마련(3월)

- '18년 기준연금액* 25만 원으로 상향, '19년 저소득 노인부터 기준연금액 30만 원으로 단계적(조기) 인상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 ('17. 4.) 20만 6,050원→('18. 9.) 25만 원→('19. 4) 30만 원→('20. 1.) 30만 원→('21. 1.) 30만 원→('22. 1.) 30만 7,500원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급기준 현실화 및 수급자 확대

* 선정기준액(단독/부부) : ('17.) 119만 원/190.4만 원→('18.) 131만 원/209.6만 원→('19.) 137만 원/219.2만 원→('20.) 148만 원/236.8만 원→('21.) 169만 원/270.4만 원→('22.) 180만 원/288만 원

• 찾아뵙는 서비스 확대 등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수급률 제고

※ 기초연금 수급자 수(만 명) : ('17.) 487→('18.) 513→('19.) 535→('20.) 566→('21.) 597→('22.) 624



### ○ 농지연금 활성화

• '22년 말까지 누적 21,708건 가입, 10,903억 원의 농지연금 지급

※ 신규 가입건수(명) : ('18.) 2,652→('19.) 3,209→('20.) 2,606→('21.) 2,080→('22.) 2,530

※ 연간 지급액(억 원) : ('18.) 1,003→('19.) 1,538→('20.) 1,767→('21.) 1,848→('22.) 2,408

•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 상향(80%→90%), 기대이율의 하향(4%→3.65%)을 통해 월 지급액 증액('19.)

• 월 185만 원까지 압류를 방지하는 '농지연금지키미통장'을 출시하여 농지연금 압류 위험으로부터 원천 보호('20.)

• 6억 원 이하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4년까지 연장('21.)

• 농촌사회 취약계층(생계급여 수급자) 및 농업·농촌 기여도가 높은 경력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을 대상으로 월 지급금을 추가 지급(각 10%, 5%)하는 우대형 상품 출시('22.)

• 중도 상환, 상품 변경 허용('22.)

– 약정변경 없이 연금채무를 중도에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채무부담 경감

– 가입자 가계 상황에 맞는 지급방식으로 가입 상품을 변경 가능토록 개선

• 가입연령 기준 완화(65세→60세 이상) 및 담보 설정 농지에 대한 가입 기준 완화* 추진을 통해 농지연금 가입대상 확대('22.)

* (기존) 농지가격의 15% 미만→(개선) 예외적으로 수시 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전액 상환 시 30%까지 가입 가능

•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22.)

– 농지연금 지급기간 만료 시뿐만 아니라 수급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채무부담을 감소시키고 우량농지를 비축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폭력 · 학대 등으로부터 노인 인권 보호

• 노인 학대 예방 강화

– 노인 학대 예방의 날(6. 15.) 행사의 확대, '나비새김' 캠페인·노인 학대의 신속한 신고를 위한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활성화 추진

– 학대 감지, 응급신고, 영상녹화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가정·시설 내 학대 사건 예방

– 노인복지생활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 및 권리보장 방안 마련 연구

• 학대 피해 노인 및 가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강화

– 인프라 확충 및 인원 확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사후관리 대응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수요에 맞춘 상담, 심리프로그램 및 법률·의료·일자리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

• 학대 사건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예방효과 확대

– 노인 학대 조사원의 역량 교육 강화 및 사례·판례집 등 전문적 자료 발간

– 조사원의 현장조사에 대한 단순 조사 거부, 방해, 거짓 진술 등에 대해 과태료 등의 법적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조사 확보

### ②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제공기관 제외)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23. 6. 시행)
-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설운영자, 종사자, 전문가 등 관계자와 협의해 하위법령 및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인권교육,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해 인권 보호 교육 및 인권 보호 제공〉**

- 노인복지생활시설 인권지킴이 활동 강화
  - 지방자치단체 내 인적자원 활용하여 '인권지킴이'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인권지킴이' 운영실적 반영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정부포상 추진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시 인권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인권교육 내용 및 시간 확대 추진

### ③ 노인 건강권 보장

-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추진 및 사업 수행 지역 전국 확대 추진
- 저소득층 노인의 개안수술비 지원 및 실명예방 추진
  - 대상자 발견으로 수술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 홍보를 통해 안과검진 등 실명예방 사업 추진
- 지속적 홍보를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확대

### ④ 단체·문화 활동, 사회활동 참여 강화

-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노인여가시설 중심으로 노인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및 다양한 경험의 기회 창출
  -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복지관 수 확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및 우수 사례 공유
  - 노인복지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지원

### ⑤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1:1 심층상담 및 취업활동계획을 토대로 중장년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및 취업 알선 강화
  - 복합적인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사례관리 강화, 복지·금융·간병 등 장애요인 제거
  - 지역사회 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취업희망하는 장년층 모집 추진

### ⑥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 재정전망을 도출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 방향 논의
  - 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편안 마련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23. 10.)

### ⑦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필수서비스 강화

- 공립요양시설·병원이 없는 지역(53개 시·군·구) 중심, 지방자치단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립 요양시설 단계적 확대 예정

  –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내실화를 위해 지정갱신제*를 운영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 담보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통해 지정 유효기간 갱신

### ⑧ 농지연금 활성화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가입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 농지연금 가입대상 확대

  – 배우자 승계 연령 기준 완화(60세→55세) 추진('23.)

  – 기간형 상품* 가입연령 인하(68세 이상→63세 이상) 및 지원방식 확대(5·10·15년형→20년형 추가)('23.)

  *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

- 인식 개선 홍보 강화

  – 정책고객인 농업인과 의사결정 보조자인 자녀세대에 맞춤형으로 홍보하여 농지연금 인지도 및 인식도 개선

**〈담보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23.~)〉**

-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또는 임차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함으로써 농지 유휴화를 방지하고 농업인력구조 개선 및 농지 유동화에 기여

– 농지연금 가입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 지급액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상품 출시

– 약정 해지 후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 가능한 농지는 매입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24.~'25.)〉**

• 담보농지의 압류, 제한물권 설정 등 담보농지 권리 변동에 따른 약정 해지 방지를 위한 부기등기* 제도 도입

– 담보농지에 농어촌공사의 동의 없이 압류, 가압류 및 제한물권 설정을 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하여 타 권리 설정에 따른 약정 해지 방지

*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

## 6. 외국인과 재외동포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호, 제25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 개인이 속한 국가나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에 위반되는 차별과 차별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
-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실업·질병·장애·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받을 권리
- 어머니와 아동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

• 자유권규약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호, 제2호,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호, 제23조, 제26조, 제27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현행의 입법 등이 없는 경우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조치 등 이행
-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효과적 구제조치 확보, 권한있는 사법·행정·입법 당국 또는 기타 당국에 의한 권리 결정 및 사법적 구제조치, 구제조치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집행
-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 확보
-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 노예상태에 놓이지 아니함,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 금지
-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함
-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함. 다만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 법원 명령에 의한 억류 중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역무, 군사적 성격의 역무,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 요구되는 역무, 시민으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는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아니함

-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할 권리,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유 박탈 금지
- 체포시 체포이유 및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통고받을 권리
- 체포되거나 억류된 자의 사법기관에 신속히 회부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 재판에 회부시 억류가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됨,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한 출두의 보증을 조건으로 석방 가능
- 법원이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
-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의 인도적 또는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
-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기결수와 격리, 유죄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 미성년 피고인을 성인과 격리,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
- 교도소 수감제도에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 포함, 미성년 범죄자를 성인과 격리, 미성년의 연령 및 법적 지위 상응 대우
- 모든 사람의 영역 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
-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권리
-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
- 재판에 있어서 평등, 법률에 의해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 받을 권리,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지고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권리, 부당하게 지체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 반대신문할 권리,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 미성년자의 경우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과 갱생촉진을 고려

- 유죄판결 받은 경우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
-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사면을 받았을 경우 유죄판결의 결과 법률에 따라 보상
-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명예와 신망에 대한 불법적 비난 금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할 권리
-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 존중
-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 포함)
-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
-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
- 평화적 집회의 권리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 단위인 가정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
-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함
- 혼인 기간 중 및 혼인해소시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 확보, 혼인해소의 경우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조치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 차별에 대하여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
-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의 문화 향유, 종교표명·실행, 언어를 사용할 권리

-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호, 제6조, 제7조, 제11조
  - 규약의 당사국은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
  -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 포함)
  -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모든 근로자에게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공정한 임금,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여성에 대한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의 보장,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에게 사회권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휴식, 여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
  -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인정
- 아동권리협약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호,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호, 제14조 제1호, 제15조 제1호,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1~3호, 제26조 제1호, 제30조, 제37조, 제40조
  - 부모, 확대가족이나 공동체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의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에 의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 권리 및 의무 존중
  -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
  -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보장
  - 모든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 당국은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특히,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
  -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부모와의 분리 금지(법률 및 절차에 따라 관계당국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분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외)

- 부모와의 분리 절차에서 아동의 견해 표시권 부여
- 아동의 면접교섭권(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제외)
-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아동 또는 부모의 입·출국 신청 신속 취급
-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의 정기적 면접교섭 유지권,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고려하여, 아동과 부모가 본국을 포함한 국가로 입·출국할 권리 존중
- 아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 보장,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 보장
- 표현에 대한 자유권(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 포함)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아동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 금지, 아동의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 금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 보장
- 난민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
- 난민 아동에 대한 보호, 원조 및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한 협조,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가정환경 박탈 아동과 같은 특별한 보호
-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치료·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 보장
-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 제공 등을 통한 질병과 영양실조 퇴치
- 산모를 위한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 보장

-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 예방 기초지식의 활용에 대한 정보제공·교육·지원 확보
-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 발전 조치
- 아동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
-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
-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보장
-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
-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고, 연령상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의 격리,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보장
-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 보장
-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해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 인정
-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함
-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피의사실을 부모나 후견인을 통해 통지받고,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법률적 지원을 받음,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함,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신문받도록 하며,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 확보, 판결에 따라 부과된 조치는 공정한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 무료 통역원의 지원, 아동의 사생활 존중
-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 적용될 특별한 법률·절차·기관 및 기구 설립 촉진 노력(형사미성년자 최저 연령 설정, 적절한 경우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조치)

– 아동의 복지에 적절하고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함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호, 제5조 (c)목, (d)목 (iii), (f)목

– 인종차별 :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할 권리와 보통·평등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할 권리, 공공업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할 권리와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국적 취득권을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고문방지협약 제3조

–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 금지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2조

– 여성에 대한 차별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 여성차별 철폐 정책 추진(헌법 또는 기타 입법에 남녀평등의 원칙 규정,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입법 기타 조치,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확립 및 법정 기타 공공기관을 통한 여성차별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여성차별 행위 또는 관행의 억제 및 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행동 보장, 개인·조직·기업에 의한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 여성차별을 구성하는 현행법·규칙·관습·관행 수정 또는 폐지하는 조치, 여성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형사법 규정 폐지)

-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4조, 제16조 제1호, 제17조 제1호, 제2호, 제21조, 제25조 제1호 (가)목
  - 어떤 사람도 강제실종을 당해서는 안됨(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정당화 불가)
  - 강제실종 :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
  - 강제실종 행위를 수사하고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 강제실종이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강제실종 위험이 있는 다른 국가로 추방, 송환, 인계 또는 인도 금지
  - 비밀 구금 금지
  - 자유 박탈에 대한 적법절차 보장(자유 박탈을 명할 수 있는 조건 설정 및 권한이 부여된 당국 명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감독되는 장소에만 수용, 가족 및 변호사 접견권, 권한 있는 당국 및 기관이 사법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 있는 장소에 대한 접근 보장, 법원이 자유 박탈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유가 박탈된 사람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자격 보장)
  -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 석방 시점에 신체적 완전성 및 자신의 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보장
  - 강제실종을 당한 아동, 부모나 보호자의 아동 또는 강제실종을 당한 모(母)가 감금 도중에 출산한 아동을 불법적으로 분리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A (2), 제3조, 제4조, 제7조 제1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호,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3호, 제26조, 제34조
  - 난민 :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없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규정 적용
- 종교를 실천하는 자유 및 자녀의 종교적 교육에 관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호의적 대우 부여
- 난민에게 이 협약이 더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 대우 부여
-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에 관한 기타 권리의 취득 및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 가능한 유리한 대우 부여,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부여
- 문학적 예술적 및 학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그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 부여
-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단체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 외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가장 유리한 대우 부여
-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유로이 재판을 받을 권리
- 주거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 부여,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부여
- 초등교육, 수학의 기회, 학업에 관한 증명서, 자격증서 및 학위로서 외국에서 수여된 것의 승인,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감면 및 장학금의 급여에 관한 유리하고 동일한 대우 부여
-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의 유지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 간에 이미 체결한 협정 또는 장차 체결할 문제의 협정의 서명국의 국민에게 적용될 조건을 난민이 충족시키고 있는 한 협정에 의한 이익을 동일하게 부여
-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및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
- 난민의 동화 및 귀화 장려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제1호, 제3조, 제4조, 제7조 제1호, 제22조, 제24조 제3호, 제26조, 제32조

  - 무국적자 :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
  -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의 차별없이 본 협약의 규정을 무국적자에게 적용
  - 신앙의 자유 및 자녀의 종교교육의 자유에 관하여 그 국민에게 부여하는 바와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부여
  -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부여
  - 초등교육, 연구의 편의, 외국학교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등의 인정, 학비 면제 및 장학금의 급여에 관한 유리하고 동일한 대우 부여
  - 사회보장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 또는 취득수속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에 관하여 체결된 또는 장차에 체결될 협정의 이익을 무국적자에게 부여
  - 거주지를 선택하며 또한 자유로이 이전할 권리 부여
  - 무국적자의 동화 및 귀화를 위하여 편의 도모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4조,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 헌법재판소는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을 받아 송환대기실에 수용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청구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 거부처분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를 이유로 위헌확인 결정을 선고함(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결정)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방문취업 동포 지원

- 임금체불·산업재해 등에 노출되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크르메니스탄) 출신의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보호 필요

#### ○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중국·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을 확대 부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출신 국가에 따른 동포 간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동포 간 차별 해소 및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사회통합지원 필요
  - 외국국적동포의 입국 초기 사회적응 지원방안 요구 및 영주권·국적 취득을 위한 사회통합기반 마련 필요

    ※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 소양교육 체계 구축

#### ○ 국외입양인 인권 개선과 지원

- 국외입양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들의 친생부모 찾기 지원을 통하여 어린 시절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외로 이주하게 된 재외동포들의 인권 보호 실현을 위한 지원 필요

○ **이주민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안정적 정착**

- 수시로 변하는 외국인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문조사 항목 추가·보완 필요
- 정부부처와 민간부문의 정책 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적극적 노력 필요

○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 제도 활성화**

-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사회통합교육 활성화 및 관련 제도의 내실화가 요구됨

  * 재한 외국인,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의 사람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과 같은 기본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와 기초법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외국인 ·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전통과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및 교육·홍보 필요

○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 보장**

- 임금체불, 열악한 숙소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사업장 및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역 및 상담지원 필요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

- 외국인 근로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주의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17. 2.)하였으나, 숙식비 징수 상한의 적정성 여부 등을 두고 노·사 이견 지속

- 일부 사업주가 1실을 여러 명이 사용케 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숙식비를 공제하여 임대료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사례 등 문제가 있어 공제금액·기준 등 개선이 필요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제도 개선**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및 인권 보호 강화 필요

- 다문화 가구는 약 37.5만 가구*로 전체 2,202만 일반 가구 중 약 1.8%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가구원 수는 112만 명(전체 가구원 중 2.1%)

  * 2021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19년 35.4만 가구 대비 2.1만 가구 증가

  ** ('18.) 33.5만 가구→('19.) 35.4만 가구→('20.) 37만 가구→('21.) 37.5만 가구

  – 결혼이민자·귀화자는 지속적 증가추세로, 최근 귀화자가 결혼이민자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내 체류 장기화

  – 코로나19로 인해 증가추세에 있던 국제결혼*은 일시적 감소**한 반면, 다문화 이혼은 건수와 비중 모두 감소하는 추세

  *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국제결혼 현황(건) : ('16.) 14,822→('17.) 14,869→('18.) 16,608→('19.) 17,687→('20.) 11,100→('21.) 8,985

  ** ('17.) 21.9천 건→('19.) 24.7천 건→('20.) 16.2천 건

○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 농업인구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결혼 가능 인구감소로 농림어업종사자와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이 06년 3,525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감소했음

* 농림어업종사자와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 ('95.) 1,378→('00.) 1,081→('05.) 2,883→('06.) 3,525 →('10.) 2,023→('15.) 752→('20.) 406→('22.) 475

– 농어촌지역 다문화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농 의지가 있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후계 농업인력 육성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할 필요

* 농어촌의 다문화가구 수/결혼이민자 다문화가구 수(호) : ('15.) 69,759/35,852→('20.) 84,231/39,658 →('22.) 90,339/38,513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매 추방주간을 법제화 하였으나('14. 3.), 성매매의 지능화·음성화로 유사 성매매, 해외원정 성매매, 신·변종 성매매가 증가추세에 있어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필요

○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222만 명 중 여성은 '19년 기준 103만 명으로 46.6%를 차지함

• 이주여성은 언어문제, 경제적 문제, 체류 불안정 등으로 폭력피해에 노출되기 쉽고, 폭력피해 시에 모국어 지원 등 특화서비스가 필요하므로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이 필요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및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여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 중

○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의 유입 증가 및 다문화·외국인가정 자녀 증가에 따라 이주배경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 증대

  – 다문화가정 자녀(0~18세)와 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는 최근 5년간 매년 약 1만 명 이상씩 증가하여 각 266,321명('20.), 160,058명('21.)에 달함

○ **외국인 입국 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지원 등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특례마련 및 입국규제 유예·해제 사유 확대 필요성 대두
- 변화하는 중대범죄 유형을 반영하고 법 위반사항 및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규제 기간 적용 고려 필요

○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 인신매매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범죄*로서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필요

  * 인신매매 관련 범죄 기소(명) : ('18.) 89→('19.) 103→('20.) 100→('21.) 110→('22.) 114

  **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영리 등을 위한 약취 등, 추행 등 목적약취유인, 인신매매, 국외이송약취, 결혼약취, 「특정범죄가중법」(약취유인), 「특정범죄가중법」(영리유인)

- 「형법」 상 인신매매죄는 사람에 대한 '매매'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적용이 쉽지 않고, 실제 인신매매죄로 수사한 사례*는 연 5건 미만

  * ('18.) 3건→('19.) 4건→('20.) 2건→('21.) 0건→('22.) 1건

- 다만, 매매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폭행·협박 또는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경우 약취·유인죄로 처벌

  –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영리 목적 또는 노동력·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포괄적인 인신매매에 해당

  – 약취·유인죄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인신매매 범죄 발생 현황은 연 200여 건으로, 적극적인 수사로 대부분 검거 중

- '20년 11월 20일 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수사 활동 및 피해 보호·지원 강화 필요성 대두

  – 특히,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보호·지원에 중점을 둔 수사 활동 전개

- 「선원법」을 개정하여 여권 등 신분증 강제 압수를 금지하고('21. 6.), 선사 및 선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23. 1.)

- 국내외 인신매매 등 피해자식별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내용을 담은 최소한의 식별지표 개발 필요

  * 인신매매 피해자로 의심되거나 피해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공무원이 피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항목(행위·수단·목적 등)

- 인신매매등에 대한 개념과 피해자식별지표에 대한 실무담당자의 인식 확대를 위해 교육자료 개발 및 정기적 교육 실시 필요

### ○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유입 증가에 따라 국내 체류 다문화·외국인 등 이주배경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다문화·외국인가정 자녀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주배경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다양하게 시행될 필요

○ **외국인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개정**

-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결혼이민자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인 경우 국적국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됨(제23조)
- 향후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보호·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에게도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구조금 지급범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 이혼·사별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체류·의료·법률지원 등 기본권 보장 필요

○ **난민심사 제도 기반 개선**

- '18년, '19년 무사증 입국 확대 등으로 난민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난민심사 전문인력* 충원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필요성 증가

  * '22년 12월 기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은 4명

〈 연도별 난민 신청 현황 〉

(단위 : 건)

| 연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신청 | 2,896 | 5,711 | 7,541 | 9,942 | 16,173 | 15,452 | 6,684 | 2,341 | 11,539 |

- 국내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진정한 난민에 대한 신속한 보호 등을 위하여 제도 정비 필요
- '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난민 신청이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상황 종료로 난민 신청의 증가가 예상

• 난민 신청자 수가 증가한 것뿐 아니라 신청자의 국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난민전담 공무원과 난민통역자원 확충 및 전문성 지속 강화 필요

* '22년 12월 기준 누적 132개국 출신자가 난민 신청함

• 1차 난민심사 기관의 심사 인력 확충 및 결정 건수 증가로 난민 이의신청 건수도 지속 증가하고,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권리구제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도 지속

〈 연도별 난민 이의신청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신청 | 349 | 2,064 | 3,257 | 5,277 | 3,729 | 3,110 | 4,067 | 5,955 | 4,718 | 3,748 |

• 난민 신청 국가 및 사례의 복잡·다변화, 주변국 정세의 급격한 변화 추이 등을 반영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난민심사를 위해 체계적인 국가정황정보 관리의 필요성 증대

### ○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 난민인정자 또는 인도적체류자*의 국내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난민에 해당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인도적체류자는 난민 신청자와 같은 기타 자격(G-1)이 부여되어 체류기간 연장 및 사전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음

–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국민정서 고려 및 내·외부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장기적인 검토 필요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 방문취업 동포 지원

-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제를 시행하여 총 체류한도*를 조정하고 허용업종을 추가**

  * 체류한도(천 명) : ('18.~'20.) 303→'(21.) 250→('22.) 250

  ** 산지농산물유통센터, 식육운송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광업,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택배),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

- 불법고용, 고용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개선함*

  * 시정 6건, 과태료 53건, 고용제한 46건, 법무부 통보 26건('18.~'22.)

#### ○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19년 7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3세대까지 인정되었던 재외동포 범위에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4세대 이후 동포를 포용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 뿌리산업 업체 근속 동포('18. 6.), 국내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사람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19. 9.)에 대하여 재외동포(F-4) 자격변경 허용
  - 동포들의 취업 수요가 많은 29개 건설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 종목으로 추가('20. 5.)
  -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중증 장애·장기 질병치료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동포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자격부여('21. 12.)

•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제도 개선

– 영주자격 재한화교,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한민국 공적장부에 한글성명이 확인되거나 중국 등 국적국 공적장부나 신분증에 한글명 또는 동포임이 확인되는 외국국적동포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19. 4.)

– 동포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 서류 제출 의무화('19. 9.), 고려인 동포를 위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20. 6.)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충해소를 위해 방문취업 동포가 만기출국 후 재입국할 때까지 동반가족 국내 체류 허용('20. 11.)

– 취업 외 목적으로 국내 체류를 원하는 체류기간 만료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 허용('20. 12.), 방문취업 자격 동포의 취업 허용업종 7개 추가('21. 6.)

– 동포 영주 '생계유지능력' 가족합산요건 범위 완화('21. 1.)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포 체류 고충해소

– 코로나19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동포가 '한시적 계절근로'에 60일 이상 참여할 경우 국내 자격변경 또는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21. 2., '21. 4.)

–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방문취업 동포의 체류기간 직권연장 시행('21. 4., '21. 12.)

○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 귀화·영주 자격취득 시 기본 소양평가를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체계로 일원화

•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동포 등을 대상으로 동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한국사회 이해 교육과정을 사전에 학습하게 함으로써 빠른 국내 정착지원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과정에서 동포 중점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재외동포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 **국외입양인 인권 개선과 지원**

-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국가기관 등 보유 입양기록 전산화 작업('18.~)
- 입양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가족 찾기 지원
  - 언론매체 및 방송 연계 등을 통한 입양인 가족 찾기 사연 전파('18.~)
  - 14개국 34개 재외공관에서 해외입양인 무연고아동 유전자 채취 등록 절차 마련 ('20. 1.~)
- 입양 정보공개(뿌리찾기) 온오프라인 신청 등 공개창구 확대('21.~)

  ※ 입양 정보공개청구(건) : ('20.) 1,449→('21.) 1,327→('22.) 2,045

○ **이주민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안정적 정착**

- 매년 이주민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 매년 5월~6월 약 2주간에 걸쳐 전국적('21. 17개 시·도, 105개 시·군·구에서 실시)으로 외국인 2만 명, 귀화허가자 5천 명에 대하여 면접 방식의 표본조사 실시
  - 조사 결과는 매년 12월 통계청·법무부가 합동으로 보도자료 배포함으로써 공표하고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 게시

    ※ 조사기획(전년도 12월~차년도 4월)→조사 준비(4월~5월)→ 조사 실시(5월~6월)→ 집계 및 공표(6월~차년도 1월)의 1년 단위 조사
- 정부부처, 연구기관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이주민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법무부의 이민자 정책 수립자료,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및 업종별 허용인원 판단의 기초자료,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정책 관련 지표, 교육부의 유학생 취업실태파악 등 정부부처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됨
  - 이민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민간 기관에서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 제도 활성화

• 입국 초기 외국인에게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국적·영주 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체계적인 학습을 제공하는 등 사회통합교육 운영을 내실화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 제도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사회통합프로그램 | 50,639 | 56,535 | 36,620 | 43,552 | 42,163 |
| 조기적응프로그램 | 79,656 | 51,534 | 6,620 | 7,237 | 29,552 |

• 재정착 난민에 대한 맞춤형 정착지원 교육 제공(연중)

– 신속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등 실시

– 가족별 멘토링 제도를 통한 사회통합 촉진 및 맞춤형 정착지원 제공

〈멘토링 제도 지원 현황〉

|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인원<br>(가구 수) | 26명<br>(8) | 37명<br>(15) | 17명<br>(5) | 0명 | 67명<br>(24) |

• 출입국 민원안내,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콜서비스, 19개 외부 공공기관에 대한 3자 통역 서비스 등 재한외국인에게 다양한 상담서비스 제공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상담전화 현황〉

(단위 : 건)

|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총 상담콜 | 2,488,450 | 2,524,421 | 2,890,594 | 2,691,735 | 2,695,478 |
| 전년 대비 | 89.6% | 101.4% | 115% | 93.1% | 99.9% |

○ **외국인 ·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 외국국적동포 등 재한외국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제11회~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등('18.~'22. 매년 5. 20.) 문화행사 개최

※ 제13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20.)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포상 유공자 전수식'으로 대체

○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 보장**

•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노력

–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 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 추가('18.~'21.)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제·개정으로 기숙사 시각자료 제출 근거 마련('19. 7. 제정, '21. 12. 개정)

– 농축산·어업, 건설업 등 소수업종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18.~'21.) 농축산업 3,589개소, 어업 1,167개소, 건설업 540개소

• 외국인력상담센터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다국어 상담원 추가 배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역 및 상담('21. 상담 331,858건) 지원 지속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 주기적 점검·감독으로 필수 전용보험 가입률 제고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제도 개선**

•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 및 경제·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정착 안정화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및 결혼이민자 대상 새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결혼이민자 자립('21. 12. 연 인원 32,208건), 및 취업 지원('21. 12. 4,078명)

– 자녀성장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적응·정서지원 및 이중언어 인재 발견·지원을 위한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 확대('19. 1,211명→'20. 1,282명→'21. 1,411명)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역량과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포스코 1% 나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관 협업을 통한 다각화된 서비스 제공

–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생활 서비스 및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지원

### ○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사업 운영

– 결혼이민여성의 농촌정착 지원 및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농업교육('18. 1,569명→'19. 1,398명→'20. 1,784명→'21. 1,389명→'22. 1,441명) 실시

– 기초농업교육 단일과정을 정착단계 별로 세분화(기초/심화, '20.)하고 맞춤형 교육*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의 경우 전문여성농업인을 후견인(멘토)으로 연계하고, 멘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교육 실시

– 필수 교육과정으로 농업정책, 양성평등, SNS 활용 교육을 지정하여 운영

–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20.~)*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 3개 부문(우수농업, 사회활동, SNS 활용)별 3명씩 총 9명 시상

• 다문화가족 농촌 정착지원 과정* 운영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장과정, '09.~), 지역 내 상호 이해 증진 및 농촌·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탐색·체험 등 교육 실시(청소년캠프, '19.~)

* 농촌정착지원교육 참여 인원(명) : ('18.) 1,008→('19.) 1,003→('20.) 1,277→('21.) 1,092→('22.) 784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 외국인 지원시설 1개소에서 긴급보호 및 안전한 귀국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 ('18.) 의료 149건, 법률 149건, 치료회복프로그램 112건, 귀국지원 23건, 취업 19명

  – ('19.) 의료 102건, 법률 155건, 치료회복프로그램 124건, 귀국지원 37건, 취업 31명

  – ('20.) 의료 89건, 법률 211건, 치료회복프로그램 166건, 귀국지원 7건, 취업 29명

  – ('21.) 의료 97건, 법률 116건, 치료회복프로그램 197건, 귀국지원 6건, 취업 25명

  – ('22.) 의료 105건, 법률 88건, 치료회복프로그램 64건, 귀국지원 9건, 취업 30명

○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및 자립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지속 확대*에 따른 지원 서비스 큰 폭 확대**('18.~'21.)

  * 상담소 9개소, 쉼터 2개소, 그룹홈 1개소 신설

  ** 이주여성 지원 실적 : ('20.) 80,584건→('21.) 128,996건(전년 대비 60% 증가)

-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복합적 가정 내 문제, 코로나19 관련 등 상담진행('20. 161,466건→'21. 194,802건)

○ **이민 배경 아동의 교육권 보장**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이민 배경 아동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6세~17세의 중도입국*·난민 자녀에게 해당 국가 언어로 국내학교 입학·편입학 안내자료 발송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인 배우자와 재혼함으로써 그를 따라 이주한 본국의 자녀 또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

  ※ ('18.) 3,404명→('19.) 3,225명→('20.) 4,377명→('21.) 5,583명→('22.) 6,551명

•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의 방문이 잦은 유관기관*에 국내학교 입학·편입학 안내자료(14개 언어) 배포

* ('18.) 359기관→('19.) 367기관→('20.) 366기관→('21.) 375기관→('22.) 378기관

• 한국어학급을 통해 입국 초기 이민 배경 아동에 대한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확대*

* ('18.) 197교, 223학급→('19.) 217교, 326학급→('20.) 245교, 372학급→('21.) 274교, 404학급→('22.) 291교, 444학급

### ○ 외국인 입국 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 중요 법익 침해사범에 대하여 처분 또는 판결의 경중에 따라 차등 규제('18.~'21.)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특례 및 감경·유예 대상 확대('18.), 입국금지 특별해제 기준 완화 방안 마련('20.)

• 외국국적동포 신원불일치자, 장기 입국규제자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적극 실시('18.~'21.)

### ○ 난민심사 제도 기반 개선

• 난민심사 전문인력 충원 및 난민 이의신청 심의 전담부서 신설

– '18년에 8명, '19년에 36명(일반직 16명, 전문임기제 20명)의 난민심사 전문인력 증원

– '20년 2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전담하는 난민심의과를 신설하고 기존 난민과를 난민정책과로 변경

• 난민심사 전문성 제고

– 국제기구, 대학교수, 법률전문가 등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국가정황, 판례분석, 면접기법 등 난민심사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업 교육 실시

– 국가정황 이슈페이퍼('18. 9.), 난민소송 주요 판례집('20. 6., '21. 11., '22. 2.), 난민관련 국제협약 자료집('22. 2.) 등 난민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서적 발간

• 난민통역의 전문성 강화 및 객관성 확보

– 난민전문통역인 위촉('18. 2. 27개 언어 246명, '20. 11. 29개 언어 205명)을 통한 통역인 후보군의 지속적인 확대 도모

– '19년 9월 '난민전문통역인 자격검증 및 난민통역 품질관리방안 연구' 용역 실시

– '20년부터 분기별(연4회)로 난민전문통역인의 면접 녹음자료를 외부전문가에게 평가·자문 의뢰하는 등 통역능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통역인 활용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함으로써 난민통역의 전문성 제고

– '21년 5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 제도를 추진하여 '22년 12월 기준 308명의 통역인(34개 언어)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

• 난민심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 「난민업무지침」 개정('22. 9.) 및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22. 10.)으로 난민 업무처리 기준을 보완하고 명확히 하는 동시에 지침을 대외 공개하여 난민 업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이의신청 심의기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난민 분과위원회를 확대(3개→4개)하고 분과위원장을 전원 위촉직(민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난민위원회 구성 개편('20. 4.)

– 국가정황, 종교, 인권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을 발족하고, 이의신청 심의 안건에 대한 외부 자문 청취를 활성화함('20. 7.~)

– 법정 제기기간 도과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의신청에 대해 접수 후 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하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21. 7. 「난민법 시행령」 개정)

– 신청인이 이의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의견진술 및 추가 입증자료 제출 희망 의사를 신청 단계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 서식을 변경('22. 1. 「난민법 시행규칙」 개정)

– 난민위원 및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연수과정 개설('22. 2.)

• 국가정황정보 관리 체계화

– 난민 신청자 출신국 정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5명을 조사 인력으로 확보 및 운영('21. 7.)

– 국내외 난민 관련 뉴스·동향, 정책·지침·연구자료 등을 주기적으로(주간, 월간) 수집·배포하여 난민심사 및 정책에 활용('21. 8.~)

– 전국의 난민심사 담당자로부터 의뢰받은 국가정황정보를 조사 인력이 독립적·전문적으로 조사 후 회신하는 제도 시행('21. 11.~)

• 난민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15→50명) 및 민간위원 확충 등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 도모를 내용으로 한 「난민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22. 12.)

### ○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 난민 등 정착지원 강화

–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자에 대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범실시('18. 5.~11.)

– 난민인정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안내 책자 배부 및 문자메시지 등을 제공하여 정보접근성 강화('19.~'22.)

– 지역사회에 정착한 재정착 난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멘토링 실시,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난민 신청자 등에 대한 긴급 지원

– 난민 신청자·난민인정자용 가이드북 다국어 버전 추가 제작('22.)

※ (난민신청자용) 한국어, 영어→아랍어, 미얀마어, 힌디어, 이란어 등 5개 국어 추가
(난민인정자용) 한국어, 영어→아랍어, 미얀마어 등 2개 국어 추가

• 난민 처우 개선 노력

– 난민의 특수성을 반영한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허가기준(기본소양 및 소득 요건 등) 정비('18. 9.)

– '주요 국가의 보충적 난민보호 제도 연구', '난민 체류 정책 해외사례 등 연구'를 통해 정책적 방향 설정 및 시스템 연구('20.~'21.)

• 난민 지원 체계 강화

–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지속

– 서울의료원 및 외국인 의료지원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를 통해 난민 신청자 등의 의료지원 강화('21.)

– 재정착난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22. 9.)

• 난민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추진

– 유엔 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세계난민의 날' 기념 학술포럼 개최('18. 6.)

– 강원대 난민연구센터, IOM이민정책연구원*과 학술포럼 개최('19. 6.)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aganization Migration) 사이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주무관청은 법무부

–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등에게 현행 난민제도 이해도 제고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난민정책 설명회' 개최('20. 11.)

• 난민인정자 등의 신속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자에게 상담과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 통지할때 난민 신청자에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한 「난민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방문취업 동포 지원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임금체불이 없는 사업주에게만 방문취업 동포 채용을 허용하여, 방문취업 동포를 임금체불 등으로부터 보호
- 사업주의 방문취업 동포 불법고용 시 고용제한 조치

### ②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하여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확대
- 이원화된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
- 동포의 국내 체류 관련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사증제도 개선

  - 동포의 미성년 자녀(F-1자격)의 체류기간을 부모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허용

### ③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적응 및 자립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강화
- 외국국적동포 지원 강화를 위한 동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④ 국외입양인 인권 개선과 지원

-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입양기록물 이관을 통한 공적관리 및 입양 정보공개청구 절차 일원화(「국제입양법」 시행, '25. 7.~)
- 국외입양인 시민권 취득 등 입양인 권익 보호 캠페인 및 현지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국외 현지단체 지원

### ⑤ 이주민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안정적 정착

- 설문 항목 내용 재편성
  - 국내 거주 이주민의 변화 및 통계적 활용 가능성을 반영하여 조사대상과 항목 수정,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연구를 위해 관련 항목 재편성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변경
-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업무협의, 검토의견 제시 등을 통해 법무부와 통계청 등 관계기관의 협업 지속

### ⑥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 제도 활성화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내실화
  - 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활성화
  - 이민자를 위한 멘토교육, 시민교육 특강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다양화
- 재정착 난민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제공
  - 지역사회 정착 시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경제, 생활법질서, 부모 코칭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재정착난민에 대한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소를 치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지원 강화
- 재한 외국인 대상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 20개국 언어로 재한외국인의 출입국 업무상담, 생활과 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 운영 및 상담원 교육 시행
  - 질병관리청(1339), 국민권익위원회(110) 등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민원 관련 통역 서비스 및 번역 지원

### ⑦ 외국인 ·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주간행사 개최, 세계인의 날 주제 및 홍보 영상 제작·배포('23.~'27.)
- 국민의 재한외국인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콘텐츠의 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 수행('23.)
-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이해 과정' 교육 실시('23.~'27.)
- 고충상담, 법률상담 및 건강캠프를 내용으로 하는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고충상담' 개최('23.~'27.)
- 재한외국인 미담사례집 발간·배포('23.~'27.)

### ⑧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 보장

- 지속적 제도 개선 및 지도점검을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노력
-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 고용허가제 소수업종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내실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 송출국 16개 국어, 연중무휴 상담 실시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통역 및 지방관서 통역원 배치를 통한 상담 지원 지속 추진
  -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임금체불·사업장 내 언어 소통 문제·일상생활 고충·행정 지원 등 상담 지원 강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국어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여 외국인 근로자 대상 상담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 귀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미신청 출국자에 대한 찾아주기 사업 운영

### 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

-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숙식비 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숙식비 관련 실무TF 운영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23. 7.,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 기존 숙식비 지침을 폐지하고 숙소비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1개 숙소에 다수 근로자가 공동거주 시에는 숙소비를 공동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23. 11.)

### ⑩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제도 개선

- 다문화가족 정보제공

  – 다문화가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 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정책 및 생활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여 초기 정착을 지원

  – 다문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제고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해소 및 사회통합 환경 조성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 학령기 다문화가족자녀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 정서안정·진로취업 지원 및 학습지원 신규사업 추진

-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문제 개선

  –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하여 주요 결혼 상대국과의 공조체계 구축

  –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국제결혼중개문화 유도

-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한 이주여성 지원 강화

  – 13개국 언어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예방접종 등 관련 내용 안내 및 우울감 상담 진행

  – 생활정보, 부부갈등 상담 등 통역 지원

### ⑪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 농촌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통해 농업인력으로 육성 및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
  -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농촌 결혼이민여성교육생 간 정보 공유 및 소통 활성화 지원
  - 전통음식 교육,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지역화합 유도
- 지역농협 자원을 활용한 농촌 밀착형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한국 농촌의 역사·문화체험, 다문화가족 관계 증진 및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과 활동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농촌사회 통합에 기여
  -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및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농업체험 등 농식품 분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미래인력 육성

### ⑫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보호, 통역서비스,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자국대사관 등 관련 시설 연계, 귀국 지원 등을 통해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운영을 통해 성매매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다국어 긴급상담 실시

### ⑬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의 모국어 상담, 무료 법률·의료 서비스 제공, 숙식·주거지원 및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홍보를 통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으로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

### ⑭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 국적 및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공교육 진입 지원
  - 법무부 연계 국내학교 입학·편입학 안내(연 2회) 실시, 유관기관에 국내학교 입학·편입학 안내자료(14개 언어) 배포
- 입국 초기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 설치 확대를 통한 학교 조기 적응 지원

### ⑮ 외국인 입국 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 등
  - 중대 범죄자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등 입국규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동포의 입국기회 확대

### ⑯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 인신매매 관련 범죄 엄정 대응
  - 전국 60개 모든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성착취, 노동착취, 장기적출 등 인신매매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
  - 인신매매 피해자를 사전식별하기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여성가족부 고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
  - 사회적 약자인 아동 또는 여성, 지적장애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갈취, 협박 등에 대해서도 엄단기조 유지 예정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 검찰은 인신매매 사건을 포함하여 사건 수사 시 피해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소 시 사건처분결과 및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재판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는 등 피해자 참여 보장을 위한 조치 강화

-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법률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 보호
- 인신매매 관련 법률 및 지침을 통해 피해자 식별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 어선 및 양식장 대상 외국인 노동자 강제노동 집중단속

• 인신매매 등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확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등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교육 강화

- 해양경찰교육원(수사연수소) 전문과정 중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교육 확대 시행

• 도서 지역의 염전 종사자·선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일제점검을 실시

-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

• 강제 근로 등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성매매·성착취 등 다양한 유형의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

• 아동·청소년 성매매 연중 상시 단속체계 구축

- 관서별 여성청소년수사·생활질서 등 유관 기능 간 협업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연중 상시 단속 추진
- 랜덤채팅 등 SNS상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그루밍')가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 수사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위장 수사 제도 보완 추진

- 피의자가 성인인 대화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 간 보완 입법 논의

- 선원근로감독관의 선원 노동현장에서의 인신매매 식별능력 강화와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선원근로감독관의 증원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외국인선원 근로감독·노동인권 보호 강화, 개정 「선원법」에 따라 선사 및 선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시행
- 근해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을 국적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차별 해소('22. 1. 노사합의)
- 지정교육기관, 업·단체 및 선원노련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인권 보호 실태 모니터링
-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20. 6.)'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근해 외국인 어선원 대상 근로실태조사 지속 추진(연 2회)
-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송출국 정부와 협력 확대 추진, 피해자식별지표(안) 고시 및 관계 부처 사용 권고('23.)
- 인신매매등피해자 통계자료 확보 및 현장을 반영한 지속적인 식별지표 수정 및 개발 ('24.~'27.)

### ⑰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안내 문자 및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급
- 시·도 교육청 협의회 등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교원의 통보의무 면제사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을 학교 및 유관기관에 적극 안내
- 현장 수요에 맞춰 다국어 가정통신문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번역 언어를 단계적으로 추가 보급
  - 시·도 교육청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통·번역 서비스 지속 제공
-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 재학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KSL)*교육과정을 활용한 한국어학급 확대 운영

  * Korean as a Second Language, 일상생활로서 필요한 한국어

- 시·도 교육청 협의회 등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서 한국어학급 전담교원을 확보하여 필수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

• 이주배경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지속 강화 추진

– 학령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등 이주배경가족 자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

### ⑱ 외국인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개정

•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 통과 노력 지속

–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인 경우 상호보증에 상관없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20. 11.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 향후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보호·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체류자격을 갖춘 결혼이민자에게도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구조금 지급범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 ⑲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 베트남 하이퐁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및 체류·법률지원 실시

※ 베트남 북부지역 출신 결혼이주여성 및 귀환여성 중에서 하이퐁, 하이즈엉 지역 출신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북부지역 결혼이민자 49%가 하이퐁 출신)

| 구 분 | 프로그램 및 사업(안) |
|---|---|
| 사업기반 확립 | ○ (요구분석) 한·베 귀환 다문화가족 발견 및 실태 파악<br>- 일반적 특성, 귀환과정, 경제·사회적 여건 및 요구 조사 지속<br>○ (네트워크 구축) 현지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
| 귀환 결혼이민자 및 아동 | ○ (학업지원) 공공교육 소외 아동에 대한 기초학습 및 학업지원<br>○ (양육지원) 의료지원 연계, 심리상담, 부모상담 등<br>○ (자립지원) 귀환결혼이민자 대상 취업소양 교육 및 취업연계 등<br>○ (법률지원) 한·베 가정 법률상담 및 행정절차 지원 |
| 한베 귀환가족 포함 공통사업 | ○ (자조모임) 재정착을 위한 정보(자녀 양육, 취업 등) 공유, 치유프로그램<br>○ (언어교육) 귀환 결혼이민자 및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실 운영<br>- 자존감 향상, 정체성 강화 및 현지 한·베 인재 역량 강화<br>- 귀환 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역량 도모<br>○ (다문화도서관) 한·베 귀환 가족과 귀환 결혼이민자 자녀와의 교류·소통 공간 제공 |

### ⑳ 난민심사 제도 기반 개선

- 신속하고 전문적인 난민심사를 위한 심사 인프라 확충
  - 유엔 난민기구(UNHCR) 등과 연계한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서적 발간 등을 통한 난민심사 역량 강화
  - 난민심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난민전담공무원 자격기준 마련 및 난민심사관 증원 추진
  - 난민심사관과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장기 근무 보장 등 업무 연속성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으로 우수 인재 발견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실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 통역인 확보 및 소수언어 구사자 발견 등 난민면접 통역서비스 품질 제고
- 난민법령 제·개정 등을 통한 난민 제도 개선
  - 난민인정자의 취업 · 사회적응에 필요한 상담 제공 등 지원 절차 마련, 난민신청자를 위한 통·번역 지원
  - 난민위원회 위원 증원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제도 운용
  -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의견진술 청취 시 출석 요구 방법과 서식 등을 법령 및 지침으로 구체화하여 의견진술권 보장을 강화하고 절차적 권리 및 예측 가능성 제고
  -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인 구두 의견진술 대상자 선정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공정성 강화
  - 난민불인정결정 통지 시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북을 다국어로 제공하는 등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

– 지속적으로 변화·고도화하는 국제 난민 심사 기준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위해 시민사회 단체, 학계 등 전문가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전문성·투명성 제고

– 유엔 난민기구(UNHCR)와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운영

– 소송 패소 건 분석, 우수 조사보고서 선정·공유 등 심의품질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 구축

• 국가정황정보 조사·분석·관리 체계 고도화

– 난민 신청 다발국에 관한 국가정황정보를 신청 사유별로 통합·정리하여 난민 심사 업무 담당자에게 전파

– 난민 신청 규모를 고려한 국가정황정보 인프라 강화

### ㉑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 난민 등이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립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취업 지원·직업훈련 연계 등 안정적인 국내 자립 지원

– 멘토링,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난민 인식 개선 기여

• 민·관협력을 통한 난민지원 체계 강화

– 지방자치단체, 유엔난민기구(UNHCR),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등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 7. 북한이탈주민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호, 제25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 개인이 속한 국가나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에 위반되는 차별과 차별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
  -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실업·질병·장애·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받을 권리
  - 어머니와 아동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
- 자유권규약 제2조, 제3조, 제7~10조, 제12조, 제14조, 제16~18조, 제19조 제1호, 제2호,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호, 제23조, 제26조, 제27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현행의 입법 등이 없는 경우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조치 등 이행

-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효과적 구제조치 확보, 권한있는 사법·행정·입법 당국 또는 기타 당국에 의한 권리 결정 및 사법적 구제조치, 구제조치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집행
-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 확보
-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 노예상태에 놓이지 아니함,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 금지
-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함
-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함. 다만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 법원 명령에 의한 억류 중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역무, 군사적 성격의 역무,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 요구되는 역무, 시민으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는 강제노동에 포함되지 아니함
-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할 권리,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유 박탈 금지
- 체포시 체포이유 및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통고받을 권리
- 체포되거나 억류된 자의 사법기관에 신속히 회부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 재판에 회부시 억류가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됨,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한 출두의 보증을 조건으로 석방 가능
- 법원이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
-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의 인도적 또는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
-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기결수와 격리, 유죄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 미성년 피고인을 성인과 격리,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

- 교도소 수감제도에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 포함, 미성년 범죄자를 성인과 격리, 미성년의 연령 및 법적 지위 상응 대우
- 모든 사람의 영역 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
-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권리
-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
- 재판에 있어서 평등, 법률에 의해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 받을 권리,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지고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권리, 부당하게 지체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 반대신문할 권리,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 미성년자의 경우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과 갱생촉진을 고려
- 유죄판결 받은 경우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
-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사면을 받았을 경우 유죄판결의 결과 법률에 따라 보상
-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명예와 신망에 대한 불법적 비난 금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할 권리
-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
-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 포함)
-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
-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
- 평화적 집회의 권리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 단위인 가정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
-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함
- 혼인 기간 중 및 혼인해소시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 확보, 혼인 해소의 경우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조치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 차별에 대하여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
-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의 문화 향유, 종교표명·실행, 언어를 사용할 권리

•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호, 제6조, 제7조, 제11조

- 규약의 당사국은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
-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 포함)
-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모든 근로자에게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공정한 임금,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여성에 대한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의 보장,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에게 사회권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휴식, 여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

–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인정

• 아동권리협약 제5~7조, 제9조 제1~3호,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호, 제14조 제1호, 제15조 제1호,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1~3호, 제26조 제1호, 제30조, 제37조, 제40조

– 부모, 확대가족이나 공동체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의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에 의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 권리 및 의무 존중

–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

–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보장

– 모든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 당국은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특히,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

–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부모와의 분리 금지(법률 및 절차에 따라 관계당국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분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외)

– 부모와의 분리 절차에서 아동의 견해 표시권 부여

– 아동의 면접교섭권(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제외)

–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아동 또는 부모의 입·출국 신청 신속 취급

–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의 정기적 면접교섭 유지권,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고려하여, 아동과 부모가 본국을 포함한 국가로 입·출국할 권리 존중

– 아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 보장,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 보장

– 표현에 대한 자유권(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 포함)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아동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 금지, 아동의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 금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 보장
- 난민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
- 난민 아동에 대한 보호, 원조 및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한 협조,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가정환경 박탈 아동과 같은 특별한 보호
-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 보장,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 제공 등을 통한 질병과 영양실조 퇴치, 산모를 위한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 보장,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 예방 기초지식의 활용에 대한 정보제공·교육·지원 확보,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 발전 조치
- 아동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
-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
-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보장
-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
-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고, 연령상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의 격리,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보장

-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 보장
-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해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 인정
-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함
-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피의사실을 부모나 후견인을 통해 통지받고,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법률적 지원을 받음,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함,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신문받도록 하며,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 확보, 판결에 따라 부과된 조치는 공정한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 무료 통역원의 지원, 아동의 사생활 존중
-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 적용될 특별한 법률·절차·기관 및 기구 설립 촉진 노력(형사미성년자 최저 연령 설정, 적절한 경우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조치)
- 아동의 복지에 적절하고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함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호, 제5조 (c)목, (d)목 (iii), (f)목

- 인종차별 :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할 권리와 보통·평등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할 권리, 공공업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할 권리와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국적 취득권을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고문방지협약 제3조

–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 금지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2조

– 여성에 대한 차별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 여성차별 철폐 정책 추진(헌법 또는 기타 입법에 남녀평등의 원칙 규정,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입법 기타 조치,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확립 및 법정 기타 공공기관을 통한 여성차별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여성차별 행위 또는 관행의 억제 및 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행동 보장, 개인·조직·기업에 의한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 여성차별을 구성하는 현행법·규칙·관습·관행 수정 또는 폐지하는 조치, 여성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형사법 규정 폐지)

•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4조, 제16조 제1호, 제17조 제1호, 제2호, 제21조, 제25조 제1호 (가)목

– 어떤 사람도 강제실종을 당해서는 안됨(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정당화 불가)

– 강제실종 :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

– 강제실종 행위를 수사하고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 강제실종이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강제실종 위험이 있는 다른 국가로 추방, 송환, 인계 또는 인도 금지

– 비밀 구금 금지

- 자유 박탈에 대한 적법절차 보장(자유 박탈을 명할 수 있는 조건 설정 및 권한이 부여된 당국 명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감독되는 장소에만 수용, 가족 및 변호사 접견권, 권한 있는 당국 및 기관이 사법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 있는 장소에 대한 접근 보장, 법원이 자유 박탈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유가 박탈된 사람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자격 보장)
-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 석방 시점에 신체적 완전성 및 자신의 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보장
- 강제실종을 당한 아동, 부모나 보호자의 아동 또는 강제실종을 당한 모(母)가 감금 도중에 출산한 아동을 불법적으로 분리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 북한인권법
  - 국가의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책무
  -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근거 마련
  - 국가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의무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호대상자 보호·교육·주거·의료·생활보호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
  -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및 보호규정
  -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보호 등, 영농 정착지원, 창업 지원, 공무원 특별임용,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등, 정착금 등 지급, 정착자산 형성 지원, 거주지 보호, 교육지원, 의료급여 등, 생활보호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법제 개선

- 정책환경과 정책수요의 변화에 맞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및 제도를 정비·개선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 자활 지원 강화

-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 필요
-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경제활동 지표는 양적·질적 모두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주요 경제활동 지표〉

|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경제활동 참가율(%) | 64.8 | 62.1 | 60.1 | 61.3 | 63 |
| 고용률(%) | 60.4 | 58.2 | 54.4 | 56.7 | 59.2 |
| 실업률(%) | 6.9 | 6.3 | 9.4 | 7.3 | 6.1 |
| 월평균임금(만원) | 189.9 | 204.7 | 216.1 | 227.7 | 238.4 |
| 평균근속기간(개월) | 26.9 | 27.7 | 31.6 | 31.3 | 35.3 |

※ 출처 : 남북하나재단, '18년~'22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포용적인 환경 조성 필요

####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북한이탈주민 해당 여부 조사 및 임시보호 과정에서 인권 보호 필요성이 요구됨

○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 북한이탈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학습, 언어, 심리상담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진로·직업교육 지원 필요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법제 개선**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 신변보호제도 근거 마련('19. 1.), 보호결정 대상 확대('20. 12.),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지원 책무 규정('21. 1.)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 위원에 지방자치단체 실장·국장급 추가('18. 2.), 국가정보원이 설치하는 임시보호시설에 인권 보호관 신설('19. 7.)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기본금, 주거지원금, 가산금, 취업장려금 등 정착금 금액 인상('18., '19., '21.)

〈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 현황 〉

| 항 목 | 내 용 |
|---|---|
| 기본금 | ▸ 1인세대 900만 원, 2인세대 1,500만 원,<br>3인세대 2,000만 원, 4인세대 2,500만 원,<br>5인세대 3,000만 원, 6인세대 3,500만 원,<br>7인세대 이상 4,000만 원<br>※ 2024년에 세대별 100만 원 인상 예정 |
| 주거 지원금 | ▸ 1인 세대 1,600만 원, 2인~4인 세대 2,000만 원, 5인 이상 세대 2,300만 원 |
| 취약계층<br>보호 가산금 | ▸ 고령가산금(60세 이상인 자): 800만 원<br>▸ 장애가산금: 1,540만 원(중증), 360만 원(경증)<br>▸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1개월 80만 원(최대 9개월)<br>▸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13세 미만 아동): 세대당 400만 원<br>▸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만 원<br>※ '24년에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설 예정 |
| 취업 장려금 | ▸ 3년간 근속 시 최대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
| 지방거주 장려금 | ▸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

-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1.~'23.)'을 수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의 정책 비전 제시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 하나원 직업교육관 개관('20. 6.) 및 취업연계 단기연수사업 등을 통해 생애설계프로그램 운영, 기초·심화 직업훈련 등 직업역량 강화
- 양질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등록, 동행면접,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제공, 창업교육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창업지원, 영농교육·실습 및 컨설팅 등 영농정착지원
- 자산형성지원 제도인 '미래행복통장' 가입대상자·만기수혜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복지·위기감지지표(보건복지부) 정보의 정착지원시스템 연계 확대, 분기별 조사·지원 실시('19.~) 및 통일부 내 전담조직 신설('22.~)
- 하나센터별 위촉변호사·지정변호인 제도 도입 및 법률교육·상담 등 법률지원 강화('19.~)
- 남북하나재단의 북한이탈주민 상담전화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긴급 상담전화 실시간 연계('20. 6.~)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남북통합문화센터'를 개관('20. 5.)하여 남북 주민 간 소통·교류 및 남북소통·통합체험 관련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및 운영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 북한이탈주민 조사 및 임시보호 권한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19. 1.)
- 인권 보호관 제도를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에 상세 규정('19. 7.)
  - 인권 보호관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 임시보호 중인 탈북민을 전수 면담하고, 탈북민 업무담당자 대상 정기 인권교육을 실시
- 탈북민의 심신 안정을 위해 생활실 및 조사실 환경 개선
- 국내외 인권기관의 북한 인권침해 경험 탈북민 면담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 'UN 북한인권사무소',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 중인 탈북민 면담 지원

○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 북한이탈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맞춤형 멘토링, 대학 등록금·장학금 지원, 예비대학(디딤돌대학) 과정 운영 등 지원
- 북한이탈 청소년 및 제3국 출생 자녀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보호시설 운영 지원
- 무연고 탈북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규정을 신설('21. 12., 제11조의2)
- 1:1 맞춤형 멘토링, 지역전문기관 연계 전문심리상담('20. 54명→'21. 65명→'22. 76명) 등 맞춤형 교육지원
-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한 잠재역량 강화 프로그램(21팀) 등 진로·직업교육(22팀, 73회) 지원('22.)
- 맞춤형 멘토링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담당교원 연수 실시(대면·비대면 연수 698명 참석)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법제 개선

- 정책환경과 정책수요의 변화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정비

  – 탈북민이 범죄자일 경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추진

- '제3·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1.~'23., '24.~'26.)'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 등 정착금 제도 개선

### ②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 직업역량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지속 발굴
  - 기업 수요, 탈북민의 선호, 취업 유리 업종 등을 고려하여 하나원 직업교육과정 확대
  - 중견·강소기업 일자리 적극 발굴, 구인구직 기회 확대, 직업훈련·일자리 연계 확대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창업·영농 정착지원 강화
  - 청년·여성·전문직·고학력 기술 인력 등 맞춤형 직업훈련·취업 지원을 통해 고용 기회 확대 추진
  - 귀농귀촌 희망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컨설팅 등 영농 정착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유인 제고 및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행복통장' 제도 개선 지속, 탈북민 단체 등의 자조적 활동 지원 강화

### ③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대상 보호 및 지원 강화
  - 위기가구·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을 발견하고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생계 및 생활 안정 지원 확대
  - 성범죄·사기범죄 사각지대 해소 등 범죄예방과 피해 구제 관련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정서·심리 및 건강증진 지원
  - 북한이탈주민 심리·정서 지원 관련 거점 간 연계 및 통합지원 강화

    ※ 하나원 마음건강센터,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제도, 하나재단 마음소리공감상담센터, 남북통합문화센터의 '마음숲' 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 '23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대상 하나재단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노력

– 남북주민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 정착 우수사례 콘텐츠 발굴·확산 등 탈북민 인식 개선 관련 교육 강화 지속

– 민간단체, 대학생, 남북청년 등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협력 강화

### ④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 신속한 조사, 조사종료 후 하나원 이동 대기기간 단축* 등 임시보호 기간을 법정시한(90일)보다 단축하도록 실질적 추진

* ('18. 2.)「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을 개정, 탈북민 조사·임시보호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

• 외부 변호사인 인권 보호관의 조사 전후 면담 등을 통해 임시보호 중인 탈북민의 사법접근성 강화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사·임시보호 절차 개선

– 외국제도 연구용역, 인권 보호관의 정책·제도 개선 자문, 각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탈북민 조사·임시보호 체계 지속 개선

### 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 담임·교과교사 1:1 멘토링, 성장 멘토링, 전문 심리상담 등 맞춤형 교육 지원 지속 실시

• 찾아가는 진로상담단 운영 등을 통해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및 학부모 교육 내실화

•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규학교 적응 및 통일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 지원

– 통일전담교육사, 멘토링·상담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교원·학생·학부모 이해도 제고 연수 등을 통한 북한이탈 학생의 적응 및 성장 지원

– 탈북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HOPE), 예비대학 운영 등을 통한 적응지원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보호·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 탈북 무연고 청소년,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대안학교, 보호·교육시설 지원 강화

# Ⅳ.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은 자유권 및 사회권적 권리의 향유를 증대하고, 사회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술 격차, 사생활권 침해, 신기술을 이용한 범죄 등 다양한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함. 이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 등이 요청됨. 디지털 심화의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는 정책 수립에 있어 인권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Ⅳ.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함

## 1. 디지털 환경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19조, 제27조 제1호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
  -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 포함)
  -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
-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호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 포함)

• 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호 (b)목

–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20.)

–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에 참여하고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의 보존과 발전, 보급에 대한 전략을 포함한 참여적 국가전략이나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이행

•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베네치아 선언('09.) 제16조 (a)목

– 기본적 인권에 부합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체계 도입 및 제도 수립

## 나. 국내적 기준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생활 보호 시책 마련 의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신체·명예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등 권익보호 시책 마련 의무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및 공공성·책무성·통제성·투명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정부와 사업자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의무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 디지털은 ① 정보화/인터넷→② 모바일/방송통신융합 등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거쳐 ③ 디지털 심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

  * 단순한 디지털화 및 기술·산업의 변화를 넘어 디지털이 경제·사회·지역 등 국가 전반의 혁신과 돌파(Innovation & Breakthrough)를 이끄는 핵심 동력의 역할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용자 편리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시장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나, 이해관계자 갈등, 기술 불신, 불공정 행위 등 부작용도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규범 필요

  – ChatGPT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인공지능이 학습용으로 사용한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등 기존 규범체계로 해소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를 새롭게 야기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새로운 질서 확립 필요

#### ○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 디지털 시대의 기본 철학과 핵심가치를 반영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필요

#### ○ 성숙한 디지털 이용 문화 조성

- 디지털 심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해 디지털 윤리 역량은 전 국민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인식하에 성숙한 디지털 이용 문화 조성 필요

○ **인공지능 윤리 · 제도 정립**

• 3대 원칙*·10대 요건**을 담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기준'('20. 12.) 마련과 함께, IT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윤리원칙 수립, 교육 등 자정 노력 병행 중

* ① 인간 존엄성 원칙 ② 사회의 공공선 원칙 ③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 ① 인권보장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③ 다양성 존중 ④ 침해금지 ⑤ 공공성 ⑥ 연대성 ⑦ 데이터 관리 ⑧ 책임성 ⑨ 안전성 ⑩ 투명성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하여, 생명의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피해자 안전조치용 지능형 CCTV'를 '22년 하반기에 도입함에 따라 개인정보, 사생활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속적 점검 필요

○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 · 확산**

• 차세대 플랫폼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한 메타버스*는 몰입감 높은 경험적 가치와 능동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방향적·입체적 소통 방식 확산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 발생도 우려됨

* 이용자들의 참여로 형성되는 상호연결된 가상현실 공간

– 3대 지향 가치*·8대 실천 원칙**을 담은 국가 차원의 '메타버스 윤리원칙'('22.)을 수립·발표하여 메타버스의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의 참여 주체들이 추구할 윤리적 지향점과 구체화된 행동강령 제공

* ① 온전한 자아 ② 안전한 경험 ③ 지속가능한 번영

** ① 진정성 ② 자율성 ③ 호혜성 ④ 사생활 존중 ⑤ 공정성 ⑥ 개인정보 보호 ⑦ 포용성 ⑧ 책임성

○ **자유롭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

-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용자 권익 침해, 불공정행위, 서비스 장애,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중이며, 특히 악의적인 불법·유해정보 및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포나 무분별한 거짓리뷰·악성댓글의 확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증가

○ **국제사회 규범 형성 기여**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규범 형성 노력
  - 유엔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 추진, OECD AI 권고지침 발표('19.),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지침 발표('21.) 등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 방향과 시민의 권리와 주체(개인, 기업, 국가)별 책무를 담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23. 9.)
  - 5대 기본원칙 ① 자유와 권리 보장 ②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③ 안전과 신뢰 확보 ④ 디지털 혁신의 촉진 ⑤인류 후생의 증진
  - 노인·장애인, 스타트업 등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구성·운영('23. 3.~) 및 대학총장, 주요 학회장, 기업 CEO, 청년세대 등 순차 간담회, 웹페이지 형태의 '디지털 공론장' 운영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수립
-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디지털 시대의 개인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부처별 디지털 정책 수립,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등 추진

### ②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통해 도출된 52개 쟁점·현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제도 정비 등 정책방안 마련(~'24. 상반기)

  –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슈와 쟁점에 대한 실질적 정책 추진계획 수립

### ③ 성숙한 디지털 이용 문화 조성

- 전 국민의 성숙한 디지털윤리 의식과 인공지능 역기능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연간 21만 명 이상 대상으로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23.~'27.)
- 디지털 윤리 체험관 운영 및 지역 연계 대국민 행사 개최('23.~'27.)

### ④ 인공지능 윤리 · 제도 정립

- AI 제품, 서비스 기획·운영자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의 분야별 확산 및 인공지능 윤리 영향평가체계 검토('23.~)
-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20.) 이행 및 신규과제 발굴('23.~)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에 인권영향평가 항목 편성 검토('23.~)
- '2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22.)'을 준수하며, 기술개발·운영 중 지속적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 방지
-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권고('22.)'를 반영하여,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 등 생체정보 처리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가칭)생체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24.~)

### ⑤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 · 확산

- 메타버스 기업 약관·가이드라인 등에 실천윤리 핵심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 등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 지원('23.~)
-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고 신속하게 활용가능한 실천윤리 보급·확산('23.~)
-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연구를 추진하여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처리유형 및 침해요인 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사항 도출('23.)
-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마련 및 모니터링('23.)
  -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메타버스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제시
  - 메타버스 이용자 대상 윤리 교육 실시 등 윤리역량 강화 추진('23.~)

### ⑥ 자유롭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

-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23.)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계속),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유도('23.~)

### ⑦ 국제사회 규범 형성 기여

- 유엔 차원의 신기술과 인권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23.~)
  -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 지속 주도
  - 신기술과 인권 분야 결의안·선언문 등 적극 참여, 다자무대 논의에서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증진 강조

- 유사입장국과 신기술과 인권 분야 협력 확대('23.~)
  - 온라인 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등 소다자협의체 논의 참여
- 디지털 인권 보호 관련 국제 거버넌스 형성 논의 적극 기여
  -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에서 '온라인과 인권'을 핵심 이슈로 포함하였으며, 유럽평의회는 '인공지능, 인권, 민주주의와 법치 협약'을 추진 중



## 2.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호
  -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
- 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호 (b)목
  -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20.)
  - 과학, 과학지식 및 응용과 관련된 시설, 서비스, 물품, 정보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률, 정책, 관행 제거
  - 과학·기술 부문에서 여성과 소녀의 참여를 저해하는 법률, 정책, 관행,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파악하고 철폐
  - 과학 지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기술에 대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건강권과 여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매우 중요한 과학 진보의 응용에 대한 접근을 보장
-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베네치아 선언('09.) 제16조 (b)목
  - 과학과 그 응용의 이익에 비차별적 접근 증진

## 나. 국내적 기준

- 전자정부법
  - 행정기관 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 의무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을 위한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지원 규정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해상교통정보시스템·서비스의 구축·운영, 고도화 의무 규정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학교 등의 장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등 의무 부여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의무 및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의무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정부의 디지털콘텐츠의 진흥·활성화 의무 및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의무
- 지능 정보화 기본법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격차 해소 시책, 관련 기술개발·지능정보제품 보급 지원 및 교육 등
  - 국가기관 등의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품질인증 등

- 장애인복지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정보에의 접근권 개선 의무 부여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등 방송사업자 등의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 사회 전 분야가 빠른 속도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을 이용·활용할 수 있는 역량·환경에 따라 새로운 사회·경제적 격차 발생
  -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등 어떤 상황에서도 시·공간의 제약 없는 지식정보 제공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필요
  - 모바일·가상세계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를 위해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하는 도구를 마련할 필요

    *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함께하여, 아날로그적 취향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이전 세대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s)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정보수집·이해·활용 패턴을 나타냄

#### ○ 디지털 교육 강화

- 초·중등학교의 정보 과목 교육시수인 51시간 이상이 해외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수와 교원의 증가를 통해 충분한 교육 기회 확보 필요

  * 미국 샌프란시스코 235시간 이상, 중국 베이징 212시간 이상

-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교육환경 제공 필요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 격차 해소**

- 고령자, 장애인, 농어민, 저소득층 등 4대 취약계층의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5.4%이며, 웹접근성은 60.8점, 키오스크 접근성은 66.7점 수준으로 조사** 되어, 정보접근 수준의 격차가 있음

  *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접근성 실태조사('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G 통신 등 다양한 첨단서비스가 제공되는 육상에 비해, 해상은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 안전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전국 연안에 기지국 264개를 구축하여 100km 해상까지 LTE(4G)급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지털 통신서비스 확대, 원격의료 지원, 교통정보 음성서비스 제공 등 해상 안전·복지 증진 필요

○ **디지털 스마트 복지 구현**

-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와 65세 이상 고령자 1인당 평균 상승** 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 지원 필요

  * ('20.) 15.7%→('25.) 20%→('35.) 30%→('50.) 4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20-2070('21.)')

  ** ('17.) 4,255천 원→('19.) 4,910천 원→('21.) 5,085천 원(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 지원 필요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 격차 해소

- 정보통신기술(ICT)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 정보접근성 보장범위를 기존의 웹, 앱에서 무인정보단말기('20. 6.), 전자출판물('21. 6.)까지 확대
  - 장애인·고령자 등이 무인정보단말기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지침(KS X 9211) 개정('22. 2.),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국가표준(KS X OT0003) 개정('22. 12.)
  - ICT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최신 웹 접근성 개선 기술교육 추진('18.~'22., 20회) 및 제작기법 개발·보급
  - 접근성 보장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공공조달 우선 구매 도입('21. 6.), 접근성 개선 키오스크 개발·실증('19.~'21., 5건), 현황조사('19.~)
  - 장애인 복지관 등 정보접근성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관에게 정보접근성 직접 개선 지원('18.~'21., 153건) 및 이용도가 높은 모바일 앱에 대한 접근성 진단 및 컨설팅 지원('18.~'22., 1,100건)
  - 정보접근성 최신 기술 및 정책 현황 공유 등 논의를 위한 민관협력 콘퍼런스 개최('18.~'21., 7회)
- 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활용과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18.~'22., 20건) 및 보급('18.~'22., 18,307대)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배움터 운영 및 맞춤형·방문교육 실시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디지털배움터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용 키오스크, 태블릿, AI 스피커 등을 배치한 체험존 조성
  - 도서산간, 농어촌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 버스 운영
  - '23년 배움터 1,000개소('22. 911개소) 운영, 60만 명 이상 교육, 강사·서포터즈 4,000명 채용 예정
- 시간·지역·공간의 제약 없이 국가 지식정보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가상 국립도서관' 구축, 가상 도서관 콘텐츠 제작 및 메타버스 기반 서비스 운영

〈연도별 추진계획〉

| 연도 | 추진계획 |
|---|---|
| '23년 | 가상 국립도서관 시범 콘텐츠 구축 |
| '24년 | 데이터 변환, 가상공간 구현, 저작도구 개발(1차) |
| '25년 | 데이터 변환, 가상공간 구현, 저작도구 개발(2차) |
| '26년 | 데이터 변환, 가상공간 구현, 저작도구 개발(3차) 및 가상 국립도서관 서비스 개시 |
| '27년 | 신규 콘텐츠 구축 및 고도화 |

-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하여 국내연안을 항해하는 선박 선원 등에 대한 원격 의료지원시스템 시범서비스(의료기관과 선박 간 영상통화 등) 운영('24.~)
- 육상에서의 도로 교통정보와 같이 해상에 있는 선박에도 바다내비 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해양안전정보 음성 서비스 제공(~'24., 시범운영)

### ② 디지털 교육 강화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현행 대비 초·중학교 정보교과 필수시수 2배 확대 운영, 정보교사 충원 추진('24.~'27.)

- 정보통신기술(ICT) 이노베이션스퀘어 과정을 지역 수요 기반의 디지털 기술분야로 확대*('23.~)하여 실무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 양성

  * AI·블록체인 중심→AI·블록체인+데이터, IoT, 네트워크 등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 등 디지털 가상캠퍼스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 이수 지원

### ③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 격차 해소

- 국내외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웹 접근성 표준 개정('22. 12.)에 따라 관련 법령 및 품질인증 기준(고시) 개정 추진

-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구매하는 제도 신규 도입('22. 11.~)에 따른 성과 등 모니터링

- 전국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속 확대 추진

  ※ 보급 확대 계획(안) : ('23.~'24.) 연 5.3천대, ('25.~'26.) 연 6천대, ('27.) 7천대

### ④ 디지털 스마트 복지 구현

- 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화재 등 응급상황 대응뿐 아니라 정서·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모형을 생성해 대상자 확대

  – 현재 독거노인, 장애인 등 18여만 가구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24년부터 매년 대상자를 발굴해 '27년까지 총 50만 가구 운영 확대

-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행태 개선 등을 위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27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

  * 스마트밴드,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성분 측정기, AI 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보건소 전담 인력이 대상자의 건강수치를 모니터링하고, 건강실천과제를 부여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22.) 86개소→('23.) 139개소→('27.) 258개소

## 3. 디지털 정보 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12조

–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 금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17조

–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명예와 신망에 대한 불법적 비난 금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나. 국내적 기준

- 정보통신망법

–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국가의 보호시책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표시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의무

–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금지의무, 침해에 따른 삭제요청 등 권리 구제절차 및 정부의 정보 보호 의무 규정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의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금지 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요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동의철회권('23. 9. 시행)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 ('23. 3. 시행)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시행일 미지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서의 신용정보 주체 동의 의무화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 국민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공공·금융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활용 영역과 대상 개인정보는 제한적

*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

–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분야별 자기정보 전송권*을 도입하는 한편, 자발적인 민간의 참여 확산을 위해 데이터 산업 발전전략,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등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필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에 대한 제공요구권 시행(「전자정부법」 제43조의2 개정, '21. 12. 시행) 및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 공공분야 전송요구권 실현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정부24 앱) 서비스 제공

※ 공공 마이데이터로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정보 160종을 은행신용 대출 등 105개 서비스에 활용 ('23. 12. 기준)

○ **보안 취약계층 역량 지원 강화**

- 최근 랜섬웨어 등 사이버침해 사고가 증가*하고, 보안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랜섬웨어 신고 건수(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건) ('19.) 39→('20.) 127→('21.) 223

○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 마련**

-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CI)가 온라인상 개인의 실질적 식별자로 활용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이용자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일괄 변환된 C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CI의 안전하고 절제된 활용을 위한 규범 마련 필요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

○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체계 마련**

-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통신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므로 자율적 데이터 보호, 피해 예방 등 디지털플랫폼의 사회적 책무 강화 필요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 정보주체인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마이데이터 실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증서비스를 발굴하고 기반조성 활동 추진(매년)

  – 자기 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의 결정권 행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 중심의 새로운 실증서비스 발굴

– 매년 아이디어 공모전, 온라인 교육, 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대국민 마이데이터 인식 제고 활동 추진

•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23.~)

• 본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 시스템 본격 적용('25.)

### ② 보안 취약계층 역량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보안제품 도입 지원(1400개社)('23.)

• 보안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웹 방화벽, 이메일 보안 솔루션 등 보안제품 도입 지원 지속 추진('24.~'27.)

### ③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 마련

•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 추진

– 규제샌드박스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계정보 일괄변환 제도를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 추진('24. 1.~)

###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체계 마련

• 사업자 자율로 이용자 보호업무를 점검하고 전문가·이용자의 평가결과를 공유하여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강화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종합평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 유도(「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1항, 제2항)

– '23년도에 신규로 시범평가 대상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평가지표 개선 및 신설 검토 등 실효성 있는 평가방안 마련 및 평가('24.~)

## 4. 디지털 이용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8조
  - 기본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
-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호
  -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효과적 구제조치 확보, 권한있는 사법·행정·입법 당국 또는 기타 당국에 의한 권리 결정 및 사법적 구제조치, 구제조치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집행
-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2020)
  -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에 참여하고 이익을 향유할 권리에 대해 권리침해 시 법적 구제를 포함한 참여적 국가기본법 제정
  - 거짓되고, 호도하는, 사이비과학에 근거한 관행의 해로운 결과로부터, 특히 다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채택
-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베네치아 선언(2009) 제14조 (d)목, 제15조 (a)목
  -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데 과학과 기술이 이용되는 것을 예방
  - 제3자가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인권, 기본적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예방·배제

## 나. 국내적 기준

- 정보통신망법
  -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국가의 보호시책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표시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금지의무
  -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금지의무, 침해에 따른 삭제요청 등 권리구제절차 및 정부의 정보 보호 의무 규정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의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금지 의무
- 청소년 보호법
  -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16세 미만 청소년 가입자 친권자 등에 대한 고지 및 동의의무
  - 여성가족부장관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규정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 'n번방 사건'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빠르게 정보가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해당 영상물의 확산 방지 및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필요
- 각 부처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나, 개별적·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부처 간 협업 및 정부·플랫폼 사업자 간 소통 등의 유기적 대응 필요
-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행의 근원적 동기를 차단하고 이를 통한 범죄 예방 필요성 증대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 SNS 발달,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생활의 중심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지속 증가

〈최근 5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연도별 현황(KIS 통계)〉

(단위 : 건)

|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18년→'22년 |
|---|---|---|---|---|---|---|
| 발생 건수 | 15,926 | 16,633 | 19,388 | 28,988 | 29,258 | 83.7% 증가 |
| 검거 건수 | 10,889 | 11,632 | 12,638 | 17,243 | 18,242 | 67.5% 증가 |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온라인 범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정책·규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삭제·차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개발)·문화체육관광부(교육·홍보)·경찰청(단속) 등 범정부 합동 대응 및 법 개정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등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관계 부처 합동T/F를 구성하여 대응('18. 10.)

• 온라인 스토킹을 스토킹 행위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 완료

•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온라인에서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온라인 스토킹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법 개정 완료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와 관련 개정 논의 필요

○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 국민의 84.1%가 SNS를 이용 중이며, 응답자의 71.8%가 SNS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다고 답해* 온라인 혐오 표현이 만연한 상태

* 매우 자주 접한다: 5.8%, 자주 접한다: 19.4%, 가끔 접한다: 46.6%(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차별·비하 표현 정보의 주된 유형은 성차별, 특정 지역이나 그 지역 출신자 비하, 성소수자·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정보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심의를 통한 시정 요구 필요

〈차별 · 비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단위 : 건)

| 위반내용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합계 |
|---|---|---|---|---|---|
| 심의 | 1,886 | 1,580 | 1,369 | 1,699 | 6,534 |
| 시정요구 | 1,406 | 473 | 308 | 1,222 | 3,409 |

• 비대면의 일상화로 온라인 차별·비하 표현 등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관련 예방과 대응을 위해 유아부터 청소년, 청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필요성 증가

* 국민(1,200명) 대상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62%이며, 79.3%가 온라인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2021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특히 10대 청소년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19년 97.2%에서 '22년 98.3%로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이용률이 97.4%로 플랫폼/서비스 이용률 중 가장 높게 나타남('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인터넷의 양방향성으로 인해 온라인에서는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온라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포괄적 대안이 요구

### ○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 고도화된 인공지능의 규율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인공지능위원회 규정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중이나, 산업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성 확보 사이의 균형 요함

– 주요국에서도 인공지능 규제 대상, 수준 등 논의는 시작 단계에 있으며, 최근 제안된 EU '인공지능 규제안(AI Regulation)'도 그 입법 절차에 따라 실제 법 집행까지는 최소 3~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공지능의 구체적 규제 대상과 수준에 대하여는 글로벌 논의 동향을 고려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21년 6월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발표하여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이용자의 불만·분쟁 사항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료·재활 체계 구축**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료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위험군 비율(%) : ('19.) 16→('20.) 17.1→('21.) 18→('22.) 18.5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내실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20. 4.)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18. 4.~)' 및 '지역특화상담소('21. 7개소)' 운영을 통해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728,639건 지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先삭제지원* 실시('21.~)

* ('21.) 46,682건 지원, ('22.) 48,719건 지원

–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적 허위 편집·합성물'을 삭제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삭제지원 요청자 범위를 본인 및 직계 친족 등에서 대리인까지 확대('21.)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 신설 및 경찰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제도화('2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여 13개월 간('21. 9.~'22. 10.) 위장수사 201건 실시, 433명 검거, 30명 구속

• 지능화·조직화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매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8개월 간('22. 3.~10.) 단속 1,612건, 1,694명 검거, 99명 구속

- '19년 11월부터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유관기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공동대응 중
- 해외 불법·유해 정보 유통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요 글로벌 플랫폼과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 주요 플랫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78,285건의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요청(원 정보 삭제 요청)을 실시하여 약 85% 이상 삭제 등 이행 조치

**○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료·재활 체계 구축**

- 매년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과의존 위험군을 발견* 하고 과의존 수준별·대상별 특화 치유서비스** 지원

* 과의존 위험군 발견 : ('21.) 인터넷 18.3만여 명, 스마트폰 12.9만여 명, ('22.) 인터넷 18.9만여 명, 스마트폰 13.5만여 명

** 치유서비스 지원(명) : ('20.) 35,258→('21.) 50,200→('22.) 54,389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장수사 제도 확대 검토
-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지원시스템과도 연계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
- 국내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수사자료 확보를 위해 해외 법 집행기관·글로벌 플랫폼 기업들과의 공조 확대

• 사이버 범죄예방 전문강사, 학교전담경찰관 및 교육사이트・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범죄예방교육・홍보 실시

• 정부·민간 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주요 법안이 발의되거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논의를 요하는 안건이 선정될 경우 수시 개최

•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주축으로 '전담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

• 개정 법률 반영 등으로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입체적 대응 강화 및 범죄 대응 정책 고도화 추진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하여 범죄 대응 수사역량 강화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통한 상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先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피해지원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접근성 제고

* ('21.) 7개소→('22.) 10개소→('23.) 14개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연구용역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실시

•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지원하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

• 범죄수익환수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시스템 구축

– 동남아시아 신생 사법협력 네트워크인 SEAJust* 가입을 통해 주요 인접국들과 형사사법공조 강화('23.)

* SEAJust(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는 '20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지원 하에 만들어진, 동남아 형사사법공조 중앙당국 간 직접 소통 창구



### ②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기존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심한 욕설 댓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 표현, 가족 구성원 비하 등 악성 영상 및 댓글 게시행위 엄중 처벌

• 수사 중 발견된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요청 등을 통해 삭제·차단 요청 지원

※ 다만, 명예훼손·모욕죄는 개인적 법익으로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피해글이 게시된 업체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경찰청 사이버 범죄 예방강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 누리캅스**의 '사이버 공간 불법 유해정보 클리닝 활동' 전개 등을 통한 예방 활동 적극 추진

* '12년 시작되어 현재 현직 사이버수사관 1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년 11월 기준 총 2,748회에 걸쳐 578,406명에 대해 교육 실시

** 누리꾼의 '누리'+'cops'(경찰)의 합성어로 사이버 명예경찰을 뜻하는 민·경 협업 파트너로, '07년부터 운영되어 '23년 현재 774명이 활동 중

• 온라인상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범정부적 대응

• 딥페이크* 등 새로운 기술 및 도구를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한 시스템 구축 검토 등 대응

* 딥러닝(Deep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람 이미지와 음성·영상을 합성해 허위 콘텐츠를 만들거나 변형하는 기술

• 신종 사이버 범죄 대응 관련 입법 지원

–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온라인에서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온라인 스토킹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정부안 제출 검토

–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 관련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23.)

### ③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 대상별, 지역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미디어 교육 종합계획('24. 1분기 예정)에 따라 혐오표현 예방·대응 등을 포함한 미디어 역량 교육 지원 확대 추진

–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자유학기(년)제 등 확대를 통한 공교육 기반의 유아·어린이·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23.~'25.)

*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나 문화 콘텐츠에 적절히 접근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와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및 윤리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태도

– 평생교육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거점을 활용한 사회 미디어교육 활성화로 보편적 미디어 리터러시 기반 구축('23.~'25.)

– 전국 10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 및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계속)

– 유아 대상 놀이형 교육 및 청소년 교육과정·진로탐색 과정 연계 교육, 청·장년층 및 노인·장애인·다문화 가족 대상 격차없는 평생교육 제공

– 미디어교육원* 중심의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강화로 전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인프라 마련('26.~'27.)

* '21년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유일의 미디어교육 종합연수원으로 미디어교육 분야 전문인력 양성, 연구모임 지원 등을 사업으로 하여 미디어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민의 다양한 미디어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로 지역 미디어 리터러시 허브 육성(계속)

* ('23.) 대구·경남 시청자미디어센터, ('24. 이후) 전남·경북·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 도서·산간 등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디어교육 통합 플랫폼 운영으로 분산된 학습자료·강좌 등을 종합 제공

– 온라인 차별·비하 표현 해소를 위한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고도화('25.~'27.)

* 생애주기별로 콘텐츠 생산·이용·활용 등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민간자격시험* 실시 및 국가공인자격증 추진('26.~'27.), 미디어 분야 전문성을 갖춘 강사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 및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규 미디어교육 강사를 양성(연 2회)하고 미디어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기존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연 18회) 운영

* 미디어교육지도사('16.~), 미디어교육사('22.~)

• 온라인 차별·비하 표현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강화('26.~'27.)

•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 유도

### ④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 「인공지능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23.~)

• 학계·전문가·시민단체·공공이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통해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이용자 권익 침해 위험과 그 영향력을 검토하고 이용자 정책 발전방안 논의('23.~)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각국 전문가와 인공지능의 영향력과 이로 인한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공조('19.~)

• 인공지능 서비스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연구 추진('23.~)

### ⑤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료 · 재활 체계 구축

• 특정 학령기(초1, 초4, 중1, 고1)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수진단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단계에 따른 수준별 예방교육, 상담, 치료서비스 제공

– 공존질환*을 보유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 청소년에게 병원 치료비 지원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이외 기타 우울중, ADHD(주의력 결핍장애)등의 질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를 지속 확대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상담 및 병원 치료 연계 등을 위한 지원기반 확충

# 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 보호와 존중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음. 국제사회에서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기업과 인권 NAP 안내서' 등에 따라 기업과 인권에 관한 표준적 국제규범이 정착됨.
정부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확보·지원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고 고충처리·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함.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 보호·존중을 위한 과제는 노동권·적절한 생활에 관한 권리 등에서도 다루고 있으나, 기업 활동에 대한 인권정책의 특수성과 최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3,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기업과 인권'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함.



## 1. 기업과 인권

### 가. 국제적 기준

- 유엔 글로벌 콤팩트*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을 보호·지지 및 존중할 것, 기업은 자신의 활동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등

    * 유엔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로 인권,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 분야에 있어 10대 원칙 준수를 강조함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국가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보호, 충족할 기본적 의무를 가짐
  - 기업은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전문 기관으로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짐

–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요구할 권리 및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인권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권장

–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 중재, 권고와 함께 가이드라인 준수 홍보·교육 실시 등

※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은 총 51개국이 수락

•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3자 선언*

– 국가는 적극적인 고용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개도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은 고용기회와 고용수준 확대에 노력할 것 등

* 노동자 조직·사용자 조직·정부 삼자 사이의 협력 및 정부의 적절한 정책과 법령을 통해 다국적 기업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고, 다국적 기업의 운영방식이 일으킬 문제를 최소화할 것을 목적으로 한 선언

• 유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24호('17.)

–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국가의무 제시

•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17.)

– 기업과 기업의 공급망(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하여 기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가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 침해 위험성을 식별하고, 침해를 예방 및 완화하며, 기업의 결정이나 운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인권실사를 시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당사국의 사법적 및 비사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 공공조달, 융자, 원조, 보조금 지원을 기업의 국내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준수 여부와 연계하도록 권고

– 인권 기준에 따라 홍보활동 및 조정 등을 통해서 OECD 국내연락사무소의 영향력, 투명성, 포용성 및 효과성을 향상할 것을 권고

## 나. 국내적 기준

- 산업발전법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시행 의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설정·운영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산업기술·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촉진을 위한 사업장려 의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의무화
  - 국가 등의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조달청장의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근거 확립
  -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 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거 등 명령 규정
- 제품안전기본법
  -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수거 등의 의무
  -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수거 등 권고 및 명령 규정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국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의무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지급하는 구제급여 마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결함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담·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대기환경보전법

– 자동차 제작자에게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함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제작자 등이나 부품 제작자 등에게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의 자동차·자동차부품 상 결함을 시정하도록 함

• 소비자기본법

– 국가의 위해방지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소비자분쟁해결 의무

– 사업자의 물품 등에 대한 생명·신체·재산 위해 방지의무, 소비자 권익증진 기준준수의무

– 법정 단체가 다수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규정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 ○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 범정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상 인권정책 실천 내용 포함

– '전략4 : 함께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우호적 사업환경 조성 및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노력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외 인권침해에서부터 국내 기업의 '갑질'까지 기업에 의해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 보장 강화 필요
- 성별 임금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 한국(%) : ('18.) 34.1→('19.) 32.5→('20.) 31.5→('21.) 31.1
  OECD 평균(%) : ('18.) 12.7→('19.) 12.5→('20.) 11.6→('21.) 11.9



###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 EU 등 공시의무 규범화 확산과 투자의사 결정, 대기업 공급망 편입의 기준으로 ESG* 영향력 확대→기업의 대응 및 정부의 정책지원 필요성 증가

  * 기업을 경영할 때 고려해야 하는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

-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정책 기본방향·목표, 국제표준화·규범화에 대한 대응방안, 기업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17. 12.)

### ○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 절차에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문 신설('16. 1.)
- 공공조달부분에 참여하는 기업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으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 기여 필요

### ○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

- 어린이 사고 예방, 건강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정착 필요

○ **기업의 아동권리 영향평가 등 아동보호프레임 체계 수립 등**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도입 및 사회의 관심* 증대에 따라 기업의 아동의 인권존중 책임실현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 지속 제기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발간(세이브더칠드런, 유엔글로벌콤팩트, 유니세프)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19.)

  ※「근로기준법」상 아동(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규정 : 아동노동 관련 최저연령, 취업금지 업종 또는 직종,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제한, 갱내근로 금지 등

○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

- 기업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에 기본적으로 동참하며 관련 논의 참여

○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 시장과 생산의 글로벌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공급망 내 인권경영 강조,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노무관리·인권경영 지원 필요성 대두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용**

- 소비자 의식 수준 향상에 따라 자동차 리콜이 급격히 증가 중

〈최근 자동차 리콜 추이〉

|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리콜 건수(건) | 283 | 290 | 258 | 307 | 296 |
| 리콜 대수(만 대) | 264 | 201 | 221 | 266 | 325 |

※ 리콜 대상 차량은 '22년 말 전체 등록차량(2,581만 대)의 12.6% 수준

- 리콜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제품 안전 향상 도모 필요

○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운영 중('01.~)

– 한국 NCP(위원장 : 투자정책관)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사무국을 두고,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교육 및 동 가이드라인 위반 관련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

• NCP 절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NCP 운영을 개선하고, 가이드라인과 NCP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기업책임경영(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

○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06년 도입 후 현재까지 8건만 제기된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엄격한 소송 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인권경영 전략 고도화

– 국내외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한국국제협력단 인권경영 체계 구축('제1기 인권경영 이행계획('18.~'20.)'* 수립 및 28개 세부과제 수행)

* 대표성과 : 파트너 인권존중 책임 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조달계약에 대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 의무화) 등 인권 인식 제고

– 전사적 인권위험 관리 및 공급망 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전략 고도화('제2기 인권경영 이행계획('21.~'23.)'* 수립 및 이행)

* 3대 분야 : ① 인권친화적 조직문화를 위한 인권경영 (기관운영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 ② 사업 인권기반접근(HRBA)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③ 파트너와 함께하는 인권경영

• 조직 경영 및 사업에서의 인권위험 관리체계 구축·고도화

– 한국국제협력단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내부규정 개선을 통한 잠재적 인권침해에 대비한 제도 개선

– 개발협력 사업현장에서의 인권위험 방지를 위해 국별·신규 사업 대상 파트너 인권영향평가 전면화 및 인권위험 관리비용 지원제도 수립

• 사업 참여 기업 대상 인권교육 플랫폼 운영, 이해관계자 대상별 인권교육 확대, 인권영향평가 워크숍 실시를 통해 인권 전문성 강화 및 사업 현장에서의 인권위험 예방

• 기업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지침 등을 마련하여 장려할 것을 명시한 「인권정책기본법안」 국회 제출('21. 12.)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항을 포함하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용실태에 대해 사업장 집중 지도·점검*을 매년 지속하여 여성고용환경 개선

* ('18.) 659개소→('19.) 700개소→('20.) 400개소→('21.) 868개소

###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 '지속가능경영 확산 대책(종합시책)' 발표('20. 12.)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20., '21.)

–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 동향을 반영하고 인권 관련 항목을 포상평가 기준에 포함한 K-ESG 가이드라인 마련

### ○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 일반용역, 기술용역,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에서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령자 친화기업 등에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점 부여('20.~)

〈여성 기업 등에 대한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여성 기업 | 35,783 | 43,966 | 48,967 | 53,934 | 57,896 |
| 장애인 기업 | 7,517 | 9,583 | 10,213 | 11,610 | 11,512 |
| 사회적 기업 | 2,161 | 3,474 | 4,558 | 5,166 | 5,410 |

### ○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

-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22. 1. 발표),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현재 총 7개소 구축·운영 중), 어린이제품 안전성 역량평가 강화사업 신규예산 확보('22. 11.5억)

- 어린이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21. 12.) 등 제품 관리 체계 선진화

  *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변형하거나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넣은 첨가제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생식 기능에 문제나 손상을 유발

- 제품안전 법정 의무 점검 강화 및 인증 신뢰성 제고

- 어린이제품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체험형 교육,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선도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확대('20. 6,069명→'21. 7,079명)

### ○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

- 유엔 인권이사회 내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 제38차 인권이사회에 상정된 '기업과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

- 제41차 인권이사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합동대화에 참석
- 제46차 인권이사회 초국적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규범 실무그룹 관련 유사입장국 공동발언 동참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주관 제7~11차 기업과 인권 포럼에 참석 및 동향 파악

•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및 사람 중심의 회복 필요성 등 지지

- 제108차 ILO 총회에서 국내 및 해외 공급망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 보장, 다자체계 내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일의 미래를 위한 100주년 선언문' 채택 지지
- 제109차 ILO 총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우수사례 및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호 수준 강화 노력 소개
- 제110차 ILO 총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한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신기술을 활용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안전한 일터 마련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소개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에서 재정·임금·사회보호 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사례 및 일자리 불평등 해소 정책(제57차) 및 장애인, 청년, 노인, 가족문제 관련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정책 소개(제58차)

• OECD 고용전망 발표를 계기로 개최한 고용노동장관회의('22. 6.)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소개

• ASEAN+3 직업능력개발 포럼('22. 11.)에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포괄적 성장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직업기술교육훈련 개편 등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

○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 진출기업의 안정적 노무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및 인권경영 인식증진을 위해 고충처리 지원 강화, 인권경영 인식 제고 등을 담은 동남아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방안 수립('19. 12.)

- 해외 공관에 노무관리 고충처리 전담반을 설치하여 기업인 단체 및 현지 전문가와의 안정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출기업의 인권경영 등 노무관리 현황 및 대응 필요사항 상시 파악('20. 5.)

- 해외진출기업의 현지법 위반 및 인권침해 등 노사분규 발생 시 현지 공관의 노무관리·인권경영 지원 역할 등을 명시한 '동남아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매뉴얼'을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현지 공관 등에 배포('20. 7.)

- 동남아시아 등의 현지 노동시장 현황, 노동법·제도 등에 대한 노무관리 종합안내서('19. 2개국, '20. 8개국, '21. 8개국, '22. 7개국) 및 뉴스레터 발간

- 진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인권경영 관련 정보제공과 지원을 위한 현지·국내 세미나·간담회('19.~'22. 20회)·포럼(매년 2회) 개최 및 종합안내서 발간

  – 베트남, 인도네시아 고용노동관 세미나 개최('22. 4.),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진출(예정)기업 대상 노무관리 세미나 개최('22. 12.)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노무관리종합안내서를 발간한 7개국(스리랑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칠레, 브라질, 멕시코)과 동영상 콘텐츠 제작('22.)

  – 해외진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ESG 등의 동향 파악과 인권경영 국제기준 대응을 위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포럼 개최(연 2회)

-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이 동남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개최('22. 1.) 및 아세안 노무담당관 회의 개최('22. 3.)

###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18., '20.)을 통해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및 구제 지원 체감률 향상**

  * (기존) 특정질환 중심의 심사→(개정) 종합적 건강상태 심사(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심사)

  ** 피해 인정자(명) : ('17. 8.) 280→('22. 12.) 4,572
  지원액(억 원) : ('17. 8.) 42→('22. 12.) 1,258

### ○ 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 운용

- 자동차 리콜제도 및 운영 개선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 리콜정보를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과 연계하고 리콜정보 제공 표준양식 개발 및 전산시스템 개선('18.)

  –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대상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리콜 알람서비스 운영·확대('20., '21.)

  – 결함 은폐, 축소 및 늑장리콜 시 처벌강화, 리콜 적정성 조사 의무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20., '21.)

  – 판매 전 리콜 대상차량의 시정조치 후 판매자·구매자에게 고지 의무화('21.)

  – 리콜 여부 결정 전에도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결함 유형별 조사대상 선별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내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 구성('22.)

- 소비자의 다양한 제품 구매·이용 형태에 맞춰 안전관리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을 리콜 처분하고, 리콜 처분된 제품에 대해 기업의 리콜 이행 전주기 밀착 관리

  – 안전성 조사에 따른 리콜 조치 현황(건수) : ('18.) 427→('19.) 478→('20.) 373→('21.) 327→('22. 6.) 57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전기용품 176종 및 생활용품 72종,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의거한 어린이제품 342종

- 소비자단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대한상공회의소, 온라인쇼핑몰회사 등의 리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소비자와 사업자의 제품안전 경각심을 제고하여 제품안전관리 확보
- 사업장 방문 등 리콜 이행 현장점검을 위한 규정 신설, 사업자의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불성실 리콜 이행 사업자에 대한 보완명령 및 처벌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제품안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20. 6.)
- 리콜 대응 전담창구인 리콜 이행 HelpDesk 운영('20.~)
- 리콜 등 위해상품 판정 시 해당 상품의 판매가 실시간으로 차단되도록 유통사와 연계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09. 구축) 운영 및 확산

※ 운영매장(개) : ('20.) 180,891→('21.) 222,481

〈 위해 제품 리콜 관련 주요 실적 〉

| 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리콜업체 이행점검수(건) | 579 | 975 | 1,156 | 1,392 |
| 리콜제품 회수율(%) | 45.5 | 52.2 | 55.5 | 50.3 |
| Help Desk 운영 상담(건) | - | 365(시범) | 1,034 | 1315 |

### ○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 NCP 위원 구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 선임절차 신설('18. 11.), OECD 동료평가 이행계획 보고 및 이행조치 보고를 통해 NCP 운영 개선('21., '22.)
- 해외 NCP 이의 제기사건 분쟁사례집 발간(연 1회), OECD 실사 지침 발간, 이해관계자 등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포럼, 세미나 등 개최
-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한국 NCP 절차 동영상, 지면광고 등 홍보활동 실시
-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인권교육 등 현지설명회 개최('19.~'20. 3회, 하노이), 인도네시아 팜유사건의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표('22. 1.)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인권경영의 제도화〉

#### 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개발협력사업 참여기관의 인권존중 책임 강화〉

- 기업의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외사업장 인권 책무성 제도 강화 및 인권 기반 평가 강화
  - 파트너 인권영향평가 실시 확대 및 사업장 인권영향평가 실사제도 운용 강화를 통해 사업수행 파트너·현지 사업파트너·현지 주민 등 공급망 내 인권위험 사전 예방
  - 현지사업장 인권침해 신고창구 구축을 통한 구제절차 제도 개선, 사업기획 시 인권 주류화 검토, 사업평가 시 인권기준 평가 지속
- 파트너 인권경영 확산 지원 및 인권친화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인권 현안·실무 중심 맞춤형 인권교육 제공을 통한 개발협력 참여 기업의 전문성 강화
  - 인권경영 및 인권기반 개발협력 정책 실행 과정에서 기업·NGO 등 이해관계자와 정례적으로 소통하여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국내 정책 환경 조성〉

- 국제인권기구의 기업과 인권 관련 권고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 법무부 발간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활용 방안 연구 및 기업과 인권 관련 정책연구 실시
  - 기업과 인권 관련 학술대회·포럼 주최를 통해 국내 정책추진 토대 마련
-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및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참여

〈공정 임금체계 확립〉

- AA 대상 사업체에서 제출하는 임금현황 서식을 개선함으로써 불합리한 성별 임금격차의 자율개선 적극 유도
- AA 사업장 컨설팅, 교육, 코칭 등 지도체계 강화 등 지속

### ②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마련('23.~)
  - 「산업발전법」과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따른 K-ESG 가이드라인 개정 시, 정부의 인권정책,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인권정책 동향 반영
- 인권·환경 등에 관한 공급망 실사 컨설팅 지원('23.~)
- '제2차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25.)

### ③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약자 지원, 고용 창출, 고용환경 등의 분야에서 해당 기업에 가점 지속 부여
- 공공조달 부문의 인권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기준 개정 지속 확대

### ④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근절, 기업·소비자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제3차('22.~'2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과제 추진

-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홍보활동 강화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시험장비 구축 및 개정안 마련 등 인프라 구축
- 신제품 출시 및 제품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기준 정비를 통해 생활용품 안전관리 강화

### ⑤ 기업의 아동권리 영향평가 등 아동보호프레임 체계 수립 등

- 아동 근로권익 실현과 보호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홍보 등 추진
  -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예방 및 시정 조치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등을 통해 자율개선 추진

    * 민간노동전문가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자율개선 유도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아동 근로 권익 보호 추진

    * 아동 상담, 교육, 홍보 및 무료권리구제 지원 등
  - TV, 라디오 등 각종 생활접점 매체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지급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에 대해 집중 홍보
  - 아동 고용 사업장 조사, 근로권익 사업 평가 등 각종 연구를 통한 아동노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개선에 활용
- 지속적인 실태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하여 법·제도 개선 방향 모색
- 국내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현황을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 방향 검토

### ⑥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

- 기업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WTO(세계무역기구), ILO, OECD 등 다자간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에 기본적으로 동참하며 관련 논의 참여
- 기업과 인권 이슈와 관련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대한 답변 및 정보제공 등 유엔기구 질의에 대응

### ⑦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 주요 진출국 노동법·제도 등에 대한 번역 및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
- 현지 공관 및 KOTRA 무역관 등과 연계한 노무관리 설명회 등 개최, 동남아시아 등 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실적 및 계획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 등

## 〈고충처리·구제 절차 실효성 제고〉

### 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 9.) 사항을 반영한 적극적인 구제 추진
  - 피해 신청자의 개별적인 건강피해 판정을 위한 조사판정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등 피해구제 속도 제고
  - 피해자 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분담금 추가금액 등을 결정(구제자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하여 분담금 추가 부과·징수
  - 생애주기별 건강모니터링, 법률구조사업, 의료상담 프로그램, 콜센터 운영 등 피해자와의 소통 및 지원 서비스 강화
- 신속한 국민 건강피해 구제 체계 마련을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1. 12. 시행)에 따른 이행 기반 구축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연착륙을 위한 피해구제 모의운영, 조사지침 마련

### 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용

- 리콜 사례 분석을 통해 제작사용 자동차 리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 유도('23.~)
- 자동차제작자 등의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 등의 공고 방식, 보고 내용 및 진행상황 보고 의무 개선('23.)

• 자동차제작사의 시정률 제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작사의 리콜 시정률 제고를 위해 시정률 보고 기간 규정('23.~)

– 반기별 시정률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자동차 리콜 재통보 조치 등 리콜 시정률 제고

–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자동차 리콜 알림서비스 지속 확대

• 위해제품 리콜 이행점검 강화 및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사업자별 점검 전담자를 지정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해 리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리콜 이행 HelpDesk 운영을 통해 사업자를 적극 지원

– 리콜 미이행 사업자는 형사고발하고, 리콜 불성실이행 사업자는 보완명령 및 재점검 실시

• 리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방안 〉

| 구분 | 내용 | 협력기관 |
|---|---|---|
| 유통 시장 감시 | 소비자감시원이 전국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몰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유통 중인 리콜의심제품의 적발, 온라인몰로 재유통되는 리콜제품 전담 감시요원 운영 | 6개 소비자단체 |
| 리콜제품 구매 차단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위해제품으로 확인되는 즉시 전국 유통매장 바코드 결재 시스템 및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위해제품 정보가 전달되어 소비자 구매를 차단 | 대한상공회의소 |
| 리콜제품 판매 중지 | 리콜제품 등록·판매 중지 협력 | 온라인유통업체 |

• 리콜제품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등 배포, 대학생 등 안전지킴이를 통한 리콜제품 정보 확산으로 소비자 인식 제고

### ③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 사건당사자와의 직접적인 소통기회 확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소통채널 운영
- 미디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일반대중에게 가이드라인, NCP 기능 등 홍보 확대
-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한 RBC 인식 강화, 법무부 등 유관부처 및 경제단체, 해외 NCP와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확보

### ④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한「소비자기본법」개정 노력 지속
  - 실태조사의 근거규정 마련,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권익 보호 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추가
  -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여 절차의 중복과 지연 방지

# Ⅵ.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과 인권문화는 인권 보호·증진 정책의 공고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하고,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기업에서도 인권 의식 함양과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함.

##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8조
  -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호
  - 규약의 당사국은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
- 아동권리협약 제23조 제4호, 제24조 제4호, 제28조 제3호
  -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 교환 촉진
  - 아동의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협력 촉진·장려
  -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교육과 관련된 국제협력 촉진·장려

-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제32조, 제33조 제3호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건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 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 제공
  -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건강 서비스 제공
  - 보건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
  -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관리, 보건 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 금지
  -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당사국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
  -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
  -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
  -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 촉진
  -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 제공
  -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
-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제29호(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 나. 국내적 기준

• 헌법 제6조 제1항

## 다. 현황

### (1) 국내 현황

**〈국제인권조약 비준 · 이행〉**

**○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 국제인권규범 가입 현황

| 국제인권조약<br>(소관부처) | 가입일 |
|---|---|
| 사회권규약<br>(법무부) | ’90. 4. 10. |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br>(법무부) | 미가입 |
| 자유권규약<br>(법무부) | ’90. 4. 10. |
|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br>(법무부) | ’90. 4. 10. |
|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br>(법무부) | 미가입 |
| 고문방지협약<br>(법무부) | ’95. 1. 9. |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br>(법무부) | 미가입 |
| 여성차별철폐협약<br>(여성가족부) | ’84. 12. 27. |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br>(여성가족부) | ’06. 10. 18. |

| 국제인권조약<br>(소관부처) | 가입일 |
|---|---|
| 인종차별철폐협약<br>(외교부) | ’78. 12. 5. |
| 아동권리협약<br>(보건복지부) | ’90. 9. 25. |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br>(보건복지부) | ’04. 10. 24. |
| 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br>(보건복지부) | ’04. 10. 24. |
|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보건복지부) | 미가입 |
| 이주노동자권리협약<br>(고용노동부, 법무부) | 미가입 |
| 장애인권리협약<br>(보건복지부) | ’08. 12. 11. |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br>(보건복지부) | ’22. 12. 15. |
| 강제실종방지협약<br>(법무부) | ’23. 1. 4. |

- 현재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상당수 가입, 비준한 상태

  – 미가입 인권조약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 등 정부 내 국제인권업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가입한 인권조약에 대한 이행보고서 작성·제출·심의를 통해 해당 조약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활동과 노력을 소개하며,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

  – ’18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18년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19차 국가보고서 심의, ’19년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22년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등에서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개진

## ○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 국제인권조약 유보조항 현황

| 국제인권조약<br>(소관부처) | 유보조항 |
|---|---|
| 사회권규약<br>(법무부) | |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br>(법무부) | |
| 자유권규약<br>(법무부) | 제22조 (결사의 자유) |
|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br>(법무부) | |
|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br>(법무부) | 미가입 |
| 고문방지협약<br>(법무부) | |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br>(법무부) | 미가입 |
| 여성차별철폐협약<br>(여성가족부) | 제16조 제1호 (사)목<br>(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br>(여성가족부) | |
| 인종차별철폐협약<br>(외교부) | |
| 아동권리협약<br>(보건복지부) | 제40조 제2호 (나)목 (5) (상소권 보장) |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br>(보건복지부) | |

| 국제인권조약<br>(소관부처) | 유보조항 |
|---|---|
| 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에 관한<br>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br>(보건복지부) | |
|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br>선택의정서<br>(보건복지부) | 미가입 |
| 이주노동자권리협약<br>(고용노동부, 법무부) | 미가입 |
| 장애인권리협약<br>(보건복지부) | ※ '21. 12. 23. 제25조 마호 유보 철회 |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br>(보건복지부) | |
| 강제실종방지협약<br>(법무부) | ※ '23. 1. 4. 유보조항 없이 가입 |

- 현재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유보 없이 가입·비준 및 상당수 유보조항을 철회한 상태

  – 자유권규약의 제22조(결사의 자유),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제16조 제1호 (사)목(가족성(性)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아동권리협약의 제40조 제2호 (나)목(상소권 보장) 유보 중

  –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 유보 철회('21. 12.)

### ○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등 유엔 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가 계속 이어지는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별 국내이행 현황과 노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의 대응 필요

-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방한('22. 6.),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면담 방한('22. 11.) 등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방문 조사가 증가 추세에 있는바,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국내외 확산 활동 수행('00.~) 중으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지속 강화 필요

*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 협정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교육부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수행 지원 중

○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국내 이행조치 방안 마련 필요

– 국가보고서 작성 전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협의 절차를 정례화하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한 권고 이행점검 강화 필요

– 개인진정절차에 따른 국제인권기구 결정의 국내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입법·행정·사법부, 전문가 간 협의 지속 필요

**〈인권 관련 국 · 내외 협력〉**

○ **국제사회 인권 협력 및 역할 강화**

•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필요

–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상정되는 국가별·주제별 결의 관련 논의에 참여하여 전 세계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통해 타 회원국의 인권 증진을 위한 건설적인 권고 제시

– 유엔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와 인권', '신기술과 인권' 등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이슈 적극 추진

○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

-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재정 기여 지속 확대를 통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증진에 기여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난민기구(UNHCR),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기금(GSF), 민주주의 관련 주요 국제협력체 등

○ **인권 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 **인권 기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 범정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상 '전략1: 포용적 ODA'의 '취약분야 인도적 지원 확대' 추진과제에서 아동·여성·난민 등 취약계층 중점 지원 방침, ODA 정책수립 및 사업기획 시 젠더 및 인권에 대한 고려 방침 설정

  –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19.)' 이행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21.)' 상 환경·사회·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예방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을 의무 시행, 취약층 보호를 위한 제도·사업 관련 협력 확대 방침 설정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 각종 자연재해, 팬데믹,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봉사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요구 증대

○ **인권시민단체 및 사업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과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 지원 필요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3. 9. 기준, 개) : 14,031(중앙행정기관 1,469, 시·도 12,562)

〈북한인권 증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 필요
  -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적극 참여, 북한인권 유사 입장국 회의 참석,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22. 7.) 등 국제사회와의 지속 공조를 통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

○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 대상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 필요
- 북미회담('19. 2.) 결렬 및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당국간 협력 답보상태이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북측의 국경봉쇄로 북한 내 인도주의적 활동 중단
- 인도적 지원을 넘어 농림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05년, '07년, '18년 남북 간 농림업 부분 협력 사항을 합의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미실행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22년 12월 말 기준 총 133,675명이며 그 중 생존자는 42,624명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권의식 함양 필요

○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 종합적인 통일 대비 준비를 위해 통일을 대비한 연구뿐만 아니라 인권정책 수립 필요

○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추진 중이었으나, 국회의 재단이사·자문위원 미추천으로 재단 출범과 위원회 구성 지연
  - '16년~'23년,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및 자문위원 추천 요청 공문 조치 총 12회 실시
  - '22년 9월, 통일부장관 추천 재단 이사 2명 인선 발표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 〈국제인권조약 비준 · 이행〉

#### ○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 정부안인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22. 12.)

  –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를 설치·운영('20. 11.~'21. 9.)하여, 동 협약 가입에 따른 이행입법 필요사항 검토

  * 형사법·인권법·국제법 전문가, 관계 부처(법무부·외교부·국방부) 협의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해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가입 검토 연구 추진('21. 8.~)

#### ○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18. 3.)에서 「민법」 제781조 제1항 개정을 통한 부성주의 원칙의 폐지 및 동 협약 제16조 제1호 (사)목의 유보 철회를 권고한 바, 유보 철회 여부 및 관련 절차 등 검토

- 장애인권리위원회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14. 9.) 권고사항에 따라,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상법」 제732조를 개정하고, 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를 철회('21. 12.)

#### ○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 ('18.)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이행보고서 심의·동 최종견해 이행계획 양성평등위원회 상정,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방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19차 국가보고서 심의

- ('19.)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유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 방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 ('20.)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유엔 특별절차 질의 서한 답변(라오스 댐 사고, 성전환 군인 등)
- ('21.)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질의 서한 답변(코로나19 상황하 장애인 탈시설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언론중재법」 개정,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등),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제출·심의와 심의 결과의 국내이행에 관한 기본적 절차를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안」 국회 제출
- ('22.)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면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3차 병합국가보고서 추가보고서 제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3차 병합국가보고서 심의,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면담,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 제출

###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교사 연수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대학 강좌 운영 지원, 개도국 내 교육 기반 확대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선도 등 세계시민교육의 국내외 확산 노력 지속 수행

〈교육부,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세계시민교육 국내외 확산 활동 성과〉

| 구분 |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 중앙선도교사(명) | 67 | 66 | 64 | 68 | 65 |
| | 시·도선도교사(명) | 616 | 604 | 620 | 617 | 593 |
|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운영 | 서울관 방문(명) | 1,920 | 1,198 | 100 | 170 | 710 |
| | 부산관 방문(명) | 2,659 | 3,500 | 200 | 900 | 985 |
| 고등교육기관 강좌개설 지원 | 대학/강좌수(개교/개) | 8/8 | 10/10 | 9/9 | 8/9 | 12/14 |
| | 학생(명) | 290 | 434 | 373 | 246 | 711 |
| UNESCO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킹(행사, 협약) 현황(건) | | 27 | 22 | 12 | 23 | 18 |
| 개발도상국 세계시민교육 확산 지원 | 교육과정 개발 지원(국가 수) | 4 | 4 | 4 | 8 | 8 |
| | 현지 전문가 연수 참여자(명) | 29 | 33 | 30 | 50 | 54 |
| | 현지 청년 워크숍 참여자(명) | 48 | 42 | 35 | 50 | 54 |

○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 국가보고서 작성 전·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와 소통·협의

–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간담회('19. 4.),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온라인 공청회 개최('21. 4.~5.),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21. 4.),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제4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22. 8.)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한 권고 이행점검 강화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18. 1회, '20. 2회, '21. 3회, '22. 1회)

• 국제인권기구 관련 관보 게재

–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 관보 게재('21. 12.)

• 개인진정 권고의 국내 이행방안 검토,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의 국내이행에 관한 기본적 절차를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안」 국회 제출('21. 12.)

•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관련 학술회의, 포럼 개최 및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제도화 추진을 위한 도서 발간·배포

– 제4·5회 국제인권심포지엄 개최('18., '19.), 제1·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20., '21.), 법무부·한국법학원 공동주최 제31회 인권 옹호 심포지엄 개최('21.), 기업과 인권 세미나 2차례 개최('22. 10., 11.)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성평등 해설서' 국문본 발간('20. 12.),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국문본('21. 12.) 및 영문본('22. 12.) 발간

〈인권 관련 국 · 내외 협력〉

○ **국제사회 인권 협력 및 역할 강화**

- '16년~'18년 및 '20년~'22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 내 국가별·주제별 인권 논의 및 결의에 적극 참여

  – 우리 주도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18., '20.) 및 '신기술과 인권' 결의('19., '21.) 채택, 제32~39차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다른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 발언 지속 시행 등

- 제73~77차 유엔 총회 국가별·주제별 인권 논의 및 결의에 적극 참여

  –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 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에 대한 우리 입장을 기존의 기권에서 찬성으로 변경, 제76차 유엔 총회 3위원회 부의장국 수임 등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출범('18.)하고, 동 구상의 일환으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19.~'22.)함으로써, 분쟁하 성폭력 문제 및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 담론 형성에 기여

○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

-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재정 기여 확대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난민기구(UNHCR) 등의 고위급 인사 면담, 정책협의회 개최, 유관 고위급회의 참석 등 지속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난민기구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을 지속 확대하고,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의 일환으로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기금(GSF)'에 신규 지원('20. 30만 불, '21.~'23. 연간 200만 유로)

-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기여

  – 민주주의공동체(CoD, Community of Democracies) 각료회의·운영이사회·집행위원회 참여 및 재정 기여 지속, 발리 민주주의 포럼 지속 참여, 스웨덴 주관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 웨비나 참석('20. 외교부 장관), 미국 주최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21. 대통령), 제1-2차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개최('21.~'22.)

• 우리 국민 및 정부의 국제인권기구 진출 적극 지원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20.~'22. 임기), 유엔 사회권위원회('19.~'22. 임기), 유엔 여성기구 집행이사국('20.~'22. 임기), 유엔 사회개발위원회 위원국('20.~'24. 임기), 민주주의공동체 집행위원국('19.~'22.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20.~'22. 임기), 유엔 자유권위원회('21.~'24. 임기),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 위원국('21.~'23.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20.~'23. 임기), 유엔 마약위원회(CND) 위원국('22.~'25. 임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22.~'26. 임기), 유엔 난민기구 고위급('21.~ 방글라데시 부사무소장) 진출 등

### ○ 인권 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 국제개발협력 기획·실행·평가 단계에서의 '인권에 기반한 개발협력' 제도화

– 국제개발협력사업 기획 시 취약계층 인권 고려요소 반영, 인권적 성과를 알 수 있는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평가제도* 수립

* 한국국제협력단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2020-2023)', '인권분야 중기 전략(2021-2025)' 수립 및 실행과제

• 국제개발협력 실행과정에서 인권위험 예방, 인권 책무성 강화

– 협력 대상국의 인권상황을 고려한 사업개발 정보 자료인 '협력대상국 인권, 젠더 팩트시트('21.)' 제작 및 파트너 안내

– 개발협력사업 착수 전 '인권영향평가' 이행 제도화

• 인권기반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인권기반 개발협력 고도화를 위한 국제 동향 및 정책 수립연구('21.)',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KOICA 사업 추진방안 연구('20.)', '인권기반 개발협력 고도화를 위한 국제 동향 및 정책 수립연구('21.)'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 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추진

– 정부 개정안 국회 제출('20. 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21. 5.),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등 유관 단체와 간담회('21. 10.)

• '기부자 알권리'를 최초로 규정하고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20. 7.)

• 기부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개통('21. 2.)

– 기부금품 모집절차 전산화, 단계별 기부정보 공개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기부정보 연계

○ **인권시민단체 및 사업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추진

– 200여 개 사업, 평균 70억 원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교육 및 평가

– 역량 강화교육 및 사업 이행사항 확인을 위한 사업·회계분야 평가 실시

–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회계검증 추진

## 〈북한인권 증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내실화,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

–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22.)' 수립·시행('20. 4.)

•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 (결의) 제37차, 제40차, 제43차, 제46차 인권이사회 및 제73~76차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 채택(컨센서스) 동참 및 제77차 유엔 총회 및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

– 주요국과의 북한인권 관련 협의 추진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한('18. 7., '19. 1., 6., '22. 2., 6., 8.) 시 활동 지원, 상호대화 등 북한인권 논의에 참여하고 우리 정부 입장을 개진

– 유엔 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의 실태조사 지원,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유엔 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 간 북한인권기록 분석·검증에 관한 세미나 진행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감대 형성 노력

• 북한인권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 북한인권 기록을 분석하여 반인도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 21년 '유엔인권메커니즘에 기반한 사회권 관련 북한인권 연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사회권 침해실태 분석 후 사회권 카드 작성, 보존·관리

### ○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추진

–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170가족 833명 상봉('18.),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개·보수('19. 13개소) 및 신규 증설('21. 7개소)

– 제3차 이산가족교류 기본계획 수립('19. 12.),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누적 25,078편),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누적 26,682명), 이산가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19건 3.6억 원)

– 지역별 이산가족 초청행사 개최(26회), 열린음악회, VR고향체험, 고향사진전, 위로물품 지원 등 비대면 위로 사업 추진('18.~)

– 남북정상회담 및 고위급회담 시 억류자 문제 협의('18.)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 문제 반영,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납북자 가족 진술 지원, 유관국·국제기구와의 소통 등 국제협력('18.~)

– 「전후납북자법」 개정, 피해위로금 미수령자 추가 지급('18.~, 10건), 통일부장관 억류자 가족 최초 면담('22.) 등 납북·억류 피해자·가족 위로('18.~), 전후납북자단체 보조금 증액, 귀환납북자 지원, 피해자 가족 위로('18.~)

–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특별전시 개최(5회), 유물 수집 및 도록 발간,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등('22. 말 누적 관람객 159,406명)

•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

– 유엔사무국,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소통 협조체계 유지

• 남북 보건 의료 분과회담('18. 11. 차관급), 실무회의('18. 12. 국장급)를 통해 보건 의료 협력 방안 논의

– 전염병 정보교환·대응체계·기술협력 추진, 결핵·말라리아 등 전염병 협력 강화, 포괄적·중장기적 방역·보건 의료 협력 사업 적극 협의

•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한 대북 지원 방안 등 논의

–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Kick-off 회의('20. 12.)

–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관련 코로나19 공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웨비나 개최('21. 10.)

• 농업 협력 추진 사전 준비 작업으로 국내 육성 식량작물 품종의 북한지역 재배 가능성 검토 및 적응 품종 선발

– 북한 기후대 적응 주요작물(벼, 콩, 옥수수, 맥류) 품종 선정 및 기술보급서 발간('19. 12.), 작물별 가공적성 구명 및 품종별 수량 특성 조사 등

• 북한 산림병해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 산림분야 협력 추진

– 금강산 지역 현장조사('18. 8.), 공동방제 추진(약제 50톤 제공, '18. 11.), 양묘장 현장 방문('18. 12.), 산림협력 전진기지 조성('18.~'22., 고성·파주·철원), 민간협력 인프라 구축

○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 독일·체제전환국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 연구 등, 통일 이후 인권정책을 고려한 연구 추진

– '서독 짤츠기터 중앙법무기록보존소의 활동 및 기록 수집, 활용, 보존 방안 연구', '전환기 정의 관련 해외 사례 분석 및 바람직한 사회통합 모델 연구' 등 연구용역 실시

## 라.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국제인권조약 비준·이행〉

#### ①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비준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등에 대한 가입·비준 가능성 연구 및 검토

•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가입 가능성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등 검토

#### ②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호 (사)목 유보 철회 검토

### ③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 국제인권조약 등 인권 메커니즘에 따른 이행보고서 작성·제출·심의를 통해 해당 조약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활동과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협력 강화 지속

(국가보고서 작성)

– '23년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 '24년 아동권리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 '25년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

(심의 준비)

– '2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 '24년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 '25년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21·22차 국가보고서 심의

– (미정) 아동권리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

– (미정)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방문 조사 시 협의 및 관계 부처 면담 실시 등

• 국제인권조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마련

–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제출·심의와 심의 결과의 국내이행에 관한 기본적 절차를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참여

### ④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한 이해력과 책임감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세계시민교육'의 국내외 확산 지원

– 초·중·고 : 선도교사 선발, 체험활동 기회 제공, 수업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초·중·고 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기반 확대 지원

* 오픈소스 기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초·중등 자율편성시간 등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독려

– 대학 : 대학(대학원 포함) 내 커리큘럼 개발 및 학생활동·특강 지원 등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학술 기반 강화 지원

– 국외 : 세계시민교육 의제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을 선도하고 개도국 교육자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 지원

### ⑤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 국가보고서 작성 전·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와 소통·협의 절차를 정례화하여 국가보고서 내용과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논의

–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심의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 개최('23. 4.)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한 권고 이행점검 강화

– 국제인권기구의 심의 후 심의 결과 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 정리와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 점검 후 결과 보고 및 공개

※ '23년 제1차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5월)

• 국제인권기구의 견해에 대한 공식 번역본 발간 및 관보,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일반 대중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해 제고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에 따른 관보 게재('23. 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관보 게재('23. 1.), 다자조약 국문본 번역개선작업에 따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정정'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정정' 관보 게재('23. 6.)

• 개인진정 권고의 국내 이행방안 검토

– 개인진정 권고의 국내 이행방안을 위해 법원, 행정부, 전문가 간 협의 지속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개인진정 등 추계 및 지원 필요성 검토 등)

-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의 국내 이행에 관한 기본적 절차를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참여
-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관련 학술회의·포럼 개최 및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제도화 추진을 위한 도서 발간·배포

##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 ① 국제사회 인권 협력 및 역할 강화

-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상정되는 주제별·국별 결의 참여를 통해 전 세계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통해 타 회원국의 인권 증진을 위한 건설적 권고 제시
- 유엔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와 인권', '신기술과 인권' 등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이슈 적극 추진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의 지속 추진을 통해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건설적 역할 수행

### ②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

- 인권, 민주주의 관련 협의회,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협력 기반 강화
- 국제인권기구에 대한 재정 기여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인권 증진에 기여
- 우리 국민 및 정부의 국제인권기구 진출을 통해 국제사회 인권 증진에 기여

### ③ 인권 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 인권기반 사업성과 관리체계 확립
  - 사업기획 시 인권분야 기술자문 활동, 인권지표 개발, OECD 정책마커 고도화를 하는 등 인권기반 개발협력사업 고도화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 실행

– 개발협력사업 평가 시 인권전문가 참여, 인권평가 매트릭스 및 평가를 통해 인권 주류화 평가체계 강화

• 인권기반 개발협력사업 발굴 다각화 노력

– '인권분야 중기전략(2021-2025)' 상 '인권기반 개발협력 프로그램', '인권 보호 프로그램', '취약계층 권리증진 프로그램' 발굴 강화

※ 평화·젠더·장애 분야 등 이슈별 통합적 권리증진 사업 발굴 확대, 시민사회·혁신 기업 참여 강화를 통한 사업유형 다각화

– 현지 시민사회·장애인단체 파트너십 강화 통한 글로벌 인권 증진 기여

• 개발협력사업 인권영향평가 제도 고도화함으로써 인권위험 관리체계 확립

– 사업기획 시, 인권위험 요소 스크리닝 및 인권위험 관리체계 확립하는 등 신규사업 대상 인권 영향평가 제도를 지속 이행

– 고충 처리 메커니즘 구축, 사업수행 민간부문 인권 인식 제고 확대 등을 통해 해외 현지 사업장 인권위험관리 책무성 시스템 강화

### ④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 민간 중심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지속 추진

– 자원봉사센터 민영화, 공유재산 지원 확대 등의 인프라 개선, 자원봉사관리시스템(1365 자원봉사포털) 구축·운영 등 근거 마련

• 시민사회·모금단체 의견수렴 등 민간영역 협력 강화

– 국가 책무, 기부의 날 등 기부문화 활성화

– 전용계좌 제출 및 현장·현금 모금 시 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근거 등 투명성 강화

### ⑤ 인권시민단체 및 사업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추진
  - ('24.) 공모 진행, 25억 원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교육 및 평가
  - 역량 강화 교육 및 사업 이행사항 확인을 위한 사업·회계분야 평가 실시
  -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회계검증 추진

## 〈북한인권 증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핵심 거점으로 (가칭)'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공론화·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널리 공개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 활동 지원
  -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 북한인권정책 제안·소통의 장으로서 북한인권 상호대화 운영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의 북한인권 논의 지속 참여, 고위급 협의 계기 등 북한인권 관련 공동 메시지 발신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와 협력 확대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 활성화를 위한 '북한인권 국제대화(International dialogu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개최

•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자료 수집·기록·보존·관리

– 북한인권 기록의 체계적 분석, 보존·관리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행위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록검증과 책임규명 준비 등에 필요한 국내외 북한인권 연구·분석자료 등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축적



### 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

– 취약계층에게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 방안 모색

• 남북대화 재개 시, 산림협력을 통해 황폐화된 북한 산림의 복구 및 산림보호 활동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 남북대화 재개 시, 이산가족 문제 협의·해결 추진

–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대면상봉, 고향방문 등 다양한 교류방안 협의

• 이산가족 교류기반 구축사업 확대

–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26. 제5차), 이산가족 실태조사('24. 제4차, '27. 제5차)

–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지속 추진, 지역별 초청행사, 위로방문 등 이산가족 소통·위로 추진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추진

– 생사확인 및 송환 요청 정례화, 미국, 일본, 유사입장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상징·전시·연극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한 공감대 확산

※ '23년 9월 통일부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 신설

### ③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북한인권 정책의 비전, 목표, 주요과제를 담은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발표
- 통일 대비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연구 추진

### ④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노력 지속
  -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 국회의 재단이사·자문위원 추천 시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 정부 내 북한인권 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북한인권정책협의회' 활성화

## 2.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 가. 국제적 기준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호
  -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 촉진
- 고문방지협약 제10조
  -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의 구금·심문 또는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 집행요원·의료인·공무원 및 그 밖의 요원들의 훈련과정에 고문방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충실히 포함 보장
  - 요원들의 임무 및 기능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에 고문금지 내용 포함

•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호

– 교육에 대한 권리, 인격·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육,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더 존중하는 교육, 교육에 의한 자유사회로의 효율적 참여, 인종적·종교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키는 교육

• 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42조

– 아동교육의 목표 :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부모·문화적 주체성·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 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평화·관용·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 개인 및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자유 침해 금지(아동교육의 목표 준수 및 국가가 정하는 최소기준과 부합하는 조건하에서)

–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 수단을 통해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다)목

– 모든 형태의 교육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 장려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7조

– 수업·교육·문화·공보분야에 있어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한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집단간 이해·관용·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리고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연합선언 및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할 의무

-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제1호 (가)목, 제2호 (나)~(라)목, 제9조 제2호 (다)목, 제13조 제2호, 제16조 제2호, 제24조 제4호, 제25조 (라)목

  -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 제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양성

  -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기관에 권장

  -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 장려

  -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 제공

  -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행정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 장려

  -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

  -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실현을 돕기 위하여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방식, 수단, 형태,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을 통합)

  - 공공 및 민간 보건 관리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따른 자유롭고 사전고지에 근거한 동의에 기초할 것을 포함하여 보건전문가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

• 강제실종방지협약 제23조 제1호

– 자유가 박탈된 사람에 대한 구금 또는 대우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 집행요원, 의료인, 공무원 및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훈련에 이 협약에 관련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정보가 포함되도록 보장(강제실종 연루 방지, 강제실종에 관한 예방 및 수사의 중요성 강조, 강제실종 사건 해결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보)

• 인권교육 기본계획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National Plans for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97.)

– 국가의 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1995-2004'을 기초로 작성



## 나. 현황

### (1) 국내 현황

**〈국민 일반 대상 교육〉**

**○ 인권교육 진흥 추진**

•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준수하며 인권문화의 형성과 증진에 기여하도록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할 필요

**○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 국제인권기구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와 번역본 발간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 증진 필요

〈학교 교육〉

○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질적 향상 필요

–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및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온라인시스템을 연계하여 인권·양성평등분야 적정성, 학년·교과 간 연계성, 표기·표현 오류 등에 대한 점검 및 수정·보완

○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 시·도 교육청 자격연수 교육과정 및 직무연수과정에 인권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예비교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등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 최근 10년간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연평균 2,200여 명 이상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

* ('14.) 87,278명→('17.) 89,353명→('19.) 92,958명→('21.) 98,147명→('22.) 103,695명

– 특히, '22년 4월 기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72.8%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어, 일반학교에서의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성공적 통합교육을 위한 체계적 지원 요구

○ **인권친화적 대학 · 학교문화 조성**

• 대학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대학 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

※ '22년 10월 기준 전국 357개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전체대학 중 약 91%)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의 존중 및 보호 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자치법」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 및 관련 사업 운영 등 지역별 여건에 맞게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 수행 필요

###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 교육〉

#### ○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요구

– 기본적 인권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세분화·다양화 필요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시행을 통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 '12년 이후 인재개발 지침 내용 포함,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시 인권교육 실시여부 평가 등 인권 관련 교육 활성화 방안 시행 중

#### ○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 사법연수원은 법관들이 5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경력별 연수'에서 인권(헌법, 기본권) 및 성인지 감수성 또는 양성평등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임 법관연수 및 기성 법관연수에서 양성평등 관련 교육 외에도 장애인식 개선교육, 국제인권조약 연구 등 다양한 인권교육을 시행 중

• 경찰의 인권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변화

– 경찰은 독자적 책임수사기관으로 권한이 확대되었고 인권 보호 책임도 증대된 상황으로, 경찰관의 인권 보호 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역량 지원과정으로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

○ **군 장병 인권교육**

- 군 장병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필요
  - 인권교관 교수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장병 인권교육 내실화 요구,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
  - 지휘관 및 간부의 인권친화적인 리더십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필요, 군 간부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을 통한 군 인권 공감대 확장 필요

○ **변호사 인권교육**

-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 윤리교육 강화 필요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 방지 필요

○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 이주여성 등 폭력피해 긴급지원, 종합정보, 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누리콜센터(1577-1366) 종사자 99명(중앙 55명, 지역 44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 및 인권침해 예방 필요
- 장애인 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 이행률 제고 및 양질의 교육 필요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종사자(아동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아동인권 옹호 역량,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및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의 필요성 증가

〈사회적 약자 · 소수자 대상 교육〉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근로권익 침해사례 예방 및 근로청소년 보호 의식 제고 필요
- 외국인 및 청소년 근로자와 관련한 근로조건에 대한 사업장 교육 및 인식 개선 필요
- 아동의 권리 인식 개선 및 교육, 포럼 개최 등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적극적 이행 필요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함양 제고를 위한 교과목 개편 등 인권교육 활성화 필요

〈인식 개선〉

○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 양성평등을 둘러싼 청년층 성별 인식 격차가 심화되고 성별 비하·차별 표현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필요

  ※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20, 30대 여성은 70% 이상이었으나, 10대 남성 31.5%, 20대 남성 29.2%, 30대 남성 40.7%가 이에 동의해 격차를 보임('21. 양성평등 실태조사)

○ **생활 속 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 생활 속 차별 언어 등 표현 개선과 평등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국어사전의 차별적 표현 개선 및 공공언어 진단 시에 차별 언어 사용 점검 필요

○ **평등한 가족문화 등 조성**

-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가족 내 성역할 인식은 평등을 지향하는 반면, 가사·돌봄 분담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여성의 돌봄 부담 체감**은 여전

  * 맞벌이 부부의 가사 노동시간(1일 평균) : 여성 3시간 7분, 남성 54분

  ** 어린이집·유치원 휴원기간 돌봄공백 경험 : 36.2% (맞벌이 49.4%, 외벌이 21.2%) ('20. 육아정책연구소)

○ **지역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인권보장체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경과

**〈국민 일반 대상 교육〉**

○ **인권교육 진흥 추진**

• 인권교육의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정책 기본법안」 국회 제출('21.)

– 유엔 인권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선언 및 '인권교육' 실시 규정을 포함한 국제인권규약 등의 검토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연구·개발 및 각종 인권교육 활동, 시설·장비 지원

○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 국제인권뉴스레터 발간('19. 3.~'20. 9., 총 7회)하고 법무부 SNS에 게시('21. 6.~'21. 12., 총 6회)

•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인권규범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발표한 '기업의 인권 존중책임 해설서'와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국문본 발행

•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인권규범의 이해를 돕고,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추어 자발적 실천 방안을 안내하는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발간('21. 12.)

• 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 및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인권경영 담당자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영문본 발간('22. 12.)

• 북한인권에 관한 교육

– 사이버 통일교육 과정에 '북한 인권문제와 향후 과제' 과목 운영

※ 공공·2030·시민과정 등 6개 과정 1,515,072명 수료

– 장·단기 통일교육 과정에 '북한의 인권실태와 인권문제' 과목 운영

※ 전문과정 등 34개('22. 기준) 과정에서 23,428명 교육 실시

– 북한 실상을 전달할 수 있는 통일교육 전문강사 인력 양성 및 재교육

※ 양성교육 146명, 재교육 136명 실시



**〈학교 교육〉**

**○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인정 심사기준'의 편찬 준거 및 지침을 적용

• 교과서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교과서 수정·보완 추진

– '양성평등·인권분야 교과서 검토기준' 추가 마련, 사진·삽화의 성비, 직업, 다문화, 장애, 가족형태, 사회적 약자 등을 포함하는 '인권 요소 분석표' 추가 마련

– 2015 개정 교과용 도서 총 813권에 대해 '양성평등·인권분야 교과서 검토기준' 등에 따라 수정·보완 543건 실시('18. 143권, '19. 178권, '20. 181권, '21. 131권, '22. 180권)

**○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및 안내

–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과정에 인권교육,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 안내(4회)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권고사항 안내('21. 6.)

– 인권교육 및 생명존중교육 포함('18. 2.)

– 예비교원에 대한 인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포함('20. 4.)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1. 2.)을 통해 교원자격취득 시, 성인지 교육 의무화 및 성인지 교육자료 보급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 4회 의무 이수(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자료 보급('21. 9.) 및 컨설팅('21. 7.~11.) 등을 통한 현장 안착 지원

### ○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상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실시학교 비율(%) : ('18.) 89.7→('19.) 90.4→('20.) 91.7→('21.) 93.3→('22.) 94.9

• 일반학교의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학교 수(개) : ('18.) 1,905→('19.) 1,880→('21.) 2,669→('22.) 3,470

• 장애 인식 개선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 연도별 현황 : ('18.) 초등학교 자료→('19.) 중학교 자료→('20.) 고등학교 자료→('21.) 유치원 자료 → ('22.) 초등학교용 콘텐츠

### ○ 인권친화적 대학 · 학교문화 조성

•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인권센터'의 설치 의무 규정 및 설치·운영 세부기준 마련(「고등교육법」 개정('21. 3.),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2. 3.))

• 각 대학에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를 안내하고 인권 관련 교양과목 개설 요청('18. 3.),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 지속 추진

–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운영('19.)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21.)

–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으로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직무연수 시행('22. 6.)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 교육〉**

**○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 '18년~'21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舊, 인재개발지침) 작성·통보 시,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

– 인권 감수성 및 인권의식 제고, 장애인 인식 개선, 양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 아동 학대 예방교육 등

• '18년~'21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시 인권교육 실시 여부 평가

– 국정과제 및 주요 시책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인권·장애인·양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의 과정 개설 및 교과목 반영 여부를 평가

• 주요 국정과제 교육에 인권 관련 교육을 포함하여 연도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 매년 시·도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에 인권교육과정(과목) 반영 여부 평가

– 인권 감수성,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독립 교육과정 개설 및 교과목 편성·운영 실적 평가

○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 경찰청 인권교육 체계적 기틀 마련 및 내실화
  - ‘경찰 인권교육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종합적인 인권교육 실시
  - 경찰관 연간 인권교육 의무 이수 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
  - 시민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경찰 인권아카데미’ 실시로 인권 소통의 장 마련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내용 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감염인의 이해’ 등 온라인 인권교육 콘텐츠 마련, 관련 영화를 제작하여 인권영화제에서 상영
  - 여성, 외국인 등을 주제로 경찰관서 직장교육 100회 이상 실시
- 사회적 소수자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권옹호자로서 경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관이 지켜야 하는 행동기준인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정('20. 6.)
- 검찰·교정·보호·출입국 등 법 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훈련*, 외부강사 기관 방문교육** 실시('18.~'22.)

  * 직렬별 인권감수성훈련 66회(1,543명)

  ** 외부강사 기관 방문교육 156회(7,868명) 실시
- 인권교육 내부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권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직렬별로 12회 실시('18.~'22.)
- 검사·검찰수사관의 모의 조사장면을 촬영하여 조사자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 실시('18.~'22.)

  * 검사 64회(395명), 검찰수사관 90회(535명) 실시
-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여성·외국인 등이 등장하는 역할극 및 사례분석 등의 체험형 교육 실시

•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 매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인식 개선, 안전수요 등을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

– 북한이탈주민에 만연한 가부장적 질서, 성차별·성희롱 등의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정폭력, 보호담당관 성범죄 등 사례 공유

– 북한이탈주민의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생계에 관한 권리 보장 교육

※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방법 소개

– 북한이탈주민이 초기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소외, 빈곤 등을 해소하는 사회보장제도 교육

※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지원되는 정착금, 의료, 취업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 안내

### ○ 군 장병 인권교육

• 부대 인권교관 인권교육과정 연 15회 운영, 군 인권업무 종사자(훈육, 법무, 수사, 의료, 모니터단, 상담관, 교도관) 대상 인권교육과정 연 9회 운영

• 지휘관 및 간부 대상 인권교육 수시 운영, 인터넷 나라배움터와 인트라넷 M-MOOC에서 사이버교육 인권교육과정 4개를 운영

• 장병 인권교육에 활용 가능한 '국방부 인권교육 기본교안' 배포, 국방TV '리얼병영 톡! 행복한 군대 이야기' 제작·방영

○ **변호사 인권교육**

- 대한변호사협회 연수과정에서 변호사 윤리교육 실시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과정 '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과목 1학점 부여('18.~'21.), '법조인의 자세와 윤리' 과목 운영('21.~'22.)
  - 변호사 의무연수과정에서 윤리연수 4시간 실시('19.~'22.)
- 대한변호사협회 공직퇴임 변호사 윤리교육('20.),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 실시('18.~'22.)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 찾아가는 노인인권교육, 인권교육 전문기관 워크숍 등 7과정 집합교육 50회 실시
- 사회복지와 인권, 장애인과 인권 등 사이버교육 21과정 실시

○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대상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보급
-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배포('20.~'22. 3회)하고 전년도 장애인 학대 통계 현황 공개, '장애인 학대지표' 개발 연구('21. 11.)
- 장애인 학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장애인 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 다누리콜센터 종사자 등 인권교육 추진
  -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권 보호 교육('20. 9. 3회 실시, 회기당 6시간)
  - 폭력예방 및 인권 보호 교육('21. 6. 3회 실시, 회기당 6시간)

## 〈사회적 약자 · 소수자 대상 교육〉

###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 체불 등 노동 관계법령 위반사례에 대해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인권교육 실시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교육실적 〉

| 구분 | 교육 | 교육 인원 |
|---|---|---|
| ’18년 | 534회 | 36,798명 |
| ’19년 | 624회 | 47,187명 |
| ’20년 | 693회 | 69,351명 |
| ’21년 | 724회 | 40,220명 |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 운영

〈 외국인 근로자 교육실적 〉

| 구분 | 입국 후 취업 교육 |
|---|---|
| ’18년 | 78,886명 |
| ’19년 | 85,145명 |
| ’20년 | 20,742명 |
| ’21년 | 22,526명 |

•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 하나원에서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등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 교육 실시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21. 1.)

• 하나원, 하나센터 등을 중심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및 인권 보호 교육 제공

–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교육생 대상(’18.~’22. 2,925명) 인권교육 실시

– 하나센터 지역적응프로그램 필수분야에 ‘인권교육’을 명시하고 ’19년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에 반영(’18. 12.)

•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 학교, 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197,569명 대상으로 4,883회 실시('19.~'21.)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 계 | '19년 | '20년 | '21년 |
|---|---|---|---|
| 4,883회 | 2,680회 | 1,118회 | 1,085회 |
| 197,569명 | 101,215명 | 54,390명 | 41,964명 |

• 유엔 아동권리협약 30주년 기념 '2021 아동권리포럼' 개최

– 국회, 정부, 아동인권 관련 민간기관이 함께 개최하여 아동인권에 대한 권리교육 확대, 사회적 인식 제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아동에 대한 권리 인식 확산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아동용 교재로 제작하여 배포('21.)

• '놀이로 배우는 아동권리교육' 개발·시범운영('21.~'22.)

– 놀이로 배우는 아동권리교육, 교육 콘텐츠 개발*(2월~6월), 강사양성(74명, 5월, 11월), 지역아동센터 대상(170개소) 교육 시범운영** (1·2차) 추진(4월~12월)

* 교육 영상 10편, 학습 사용 도구 10종(보드게임 4종, 카드 6종) 신규 개발 및 제작

** (1차) 아동 1,614명, 성인(보호자·종사자) 561명, (2차) 아동 1,047명 교육 수료

## 〈인식 개선〉

### ○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 양성평등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산

– 미술·영화·음악 등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 추진, 영화 제작을 지원한 뒤 양성평등 인식 제고 추진 교육 콘텐츠로 활용('19.)

– '양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홍보 및 활용 강화('20.)

○ **생활 속 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차별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정보보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내용 반영

  – 사전 뜻풀이나 용례 등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 약 200항목(립스틱, 가계, 단유, 파라솔, 처녀막, 남아, 가락지, 미용실, 의붓아버지, 눈요기 등)의 뜻풀이 및 용례 수정

-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속 차별적 표현 사용 사례 조사 및 진단, 차별적 표현 사용 여부를 공공언어 감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

- 현대사회에 맞는 배려와 소통의 호칭·지칭 방안 연구 및 언어예절 안내서 발간

-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 실태조사 연구용역('18. 12.)

○ **평등한 가족문화 등 조성**

- 가족 구성원 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명절문화 캠페인* 등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추진

  * 연 2회 이상 라디오 캠페인, 전국 전광판 광고, 전국가족센터 프로그램 홍보 및 국민참여 이벤트 등

- 가족 다양성 및 보편적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실시

  * 맞벌이,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대상 가족 문제의 예방·상담,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가정 관련 정보제공 등

## 다. 제4차 기본계획 과제

## 〈국민 일반 대상 교육〉

### ① 인권교육 진흥 추진

- 학생·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참여

### 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
  -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와 번역본 발간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증진
- 국제인권 뉴스레터 및 카드뉴스 발간을 정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의 접근성 증진
- 성별, 국적, 인종, 장애, 병력 등 다양한 사유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지속
- 북한인권에 관한 교육
  - 국립통일교육원 교육과정·프로그램에 북한인권 내용 강화
  - 북한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북한 실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탈북민 전문강사 인력 양성·활용

## 〈학교 교육〉

### ①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 교과용 도서 상시 수정·보완 체제 운영 시, 인권 요소 관련 내용 검토 반영
  -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 체제를 구축하여 수정·보완 승인 사항을 상시 점검
  - 국·검정도서는 수정·보완 체제를 상시 활용하여 수정 및 보완 실시

### ②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 교원 연수과정에 인권교육, 양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수립하여 지속 안내하고 예비교원 대상 양성평등교육 지원 지속

### ③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 일반학교 장애이해(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 감수성 향상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인권)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디지털 기반의 '장애이해체험존'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애이해체험관' 설치 확대,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식 개선 학생동아리 운영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대상 확대
  - 학교 과정 및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자료 개발·보급
  -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직원에서 학무모까지 확대
- 학교별 장애인식 수준 진단을 위한 지수 개발 및 활용
-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 ④ 인권친화적 대학 · 학교문화 조성

-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학내 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등에 따라「고등교육법」제2조 학교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의무 존재

- 대학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22.~'23.)*을 통해 인권센터의 현장 안착 지원

  * ('22) 7개교, 5억 원, ('23) 10개교, 8억 원

-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수업모델, 프로그램 지속 개발·보급
-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교원, 보호자 등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 마련
- 매년 학교인권교육협의회(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를 통해 시·도 교육청의 학교 규칙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 실시

##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 교육〉

### ①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 매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 작성·통보 시 인권교육 관련 내용 포함, 매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 시 인권교육 실시여부 평가
-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에서 인권 관련 교육을 충실하게 시행하고, 법정언행 및 법정운영기술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 등의 연수과정도 지속적으로 실시
  - 법관에 대한 교육·연수에서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보완

### ②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 법무·검찰공무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화
  - 법 집행 전반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각 직렬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내실화
  - 사례·실무수습 중심 토론식 교육을 확대 편성하고 교육생의 능동적 학습을 유도하여 교육만족도 제고 및 현장 대응 역량 향상
  - 내부 교수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직렬별 맞춤형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권교육의 직무 적합성·전문성 제고
- 법무·행정 직렬별 인권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권교육 체계 개선
  - 검찰직 : 피의자·참고인 조사 상황 외 압수·수색, 호송·인치 등 강제수사 및 강제처분에 대한 모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정직 : 법무연수원·지방교정청 단위 교육 강화, 인권침해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 행정에 적합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교정 행정에 특화된 인권교육 실시
  - 보호직 : 보호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개선 교육, 소년보호기관 관련 인권침해사례 교육 실시
  - 출입국관리직 : 출입국 심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활동 시 적법절차 준수요령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긴급보호·단속 장비와 계구 사용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제2차 경찰 인권교육 종합계획(’23.~’25.)’ 수립, 시행

– 통합관리체계 구축, 내부인권강사 양성・관리, 외부전문가 참여형 ‘경찰인권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시행

–「경찰인권보호규칙」 제18조의2~제20조의3에 따라 신규임용자 5시간, 재직 경찰관등 연 6시간 등 대상자별 체계적인 인권교육 필수 실시

– 인권교육의 방법은 다양하게 하되, 능동적인 학습권을 위해 토론식, 참여식 교육 확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 인권교육 콘텐츠 활성화

– 사이버 콘텐츠 제작 및 이를 활용한 인권교육, 인권업무 기본교재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고 사례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이버콘텐츠 공동활용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콘텐츠 확대

•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 뿐만 아니라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까지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인식 개선, 안전수요 등을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

### ③ 군 장병 인권교육

• 전 장병 대상 계급별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 소속 부대에서 지휘관, 인권교관, 법무관, 민간 전문가 등이 전 장병을 대상으로 연 4회 이상 인권교육

– 훈련병, 병 분대장, 사관생도, 부사관 후보생, 보수교육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대에서 인권교육

– 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각 군 인권교관 교수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국방대학교 연 7회, 국방부 연 8회의 인권교관 교육 실시
- 직무맞춤형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군 인권업무종사자(수사, 의료, 상담, 모니터단, 교정, 법무, 훈육)를 대상으로 7개 과정을 운영
- 부대 지휘관의 인권친화적 리더십 함양을 위한 과정으로 부대 지휘관 교육 연 4회 운영
- 온라인 영상콘텐츠 등을 통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사이버 인권교육 개설 확대
- 국방홍보원과 협력하여 장병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병들에게 재미있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병 인권교육의 실현을 위해 개편한 '국군 인권교육교재'를 각 군부대에 배부하여 장병 인권교육에 활용(~'23.)
- 인권 관련 업무종사자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담업무종사자 인권교육 교안 등 사례기반 '맞춤형 교안' 개발

### ④ 변호사 인권교육

- 변호사의 인권침해행위 등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징계 강화 및 징계사례 전파
-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회칙 인가 및 관련 규정 관리·감독 시 변호사 윤리의식 제고에 저해되는 규정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변호사 연수 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 법률사무종사제도 관련, 여성·청년 변호사에 대한 폭언, 성추행, 부당대우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 여성·청년 변호사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주의사항, 신고 및 구제방안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 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속 실시

### ⑥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인식 개선 및 학대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보급 강화
- 드림스타트 종사자 직무교육 시, 아동 권리 및 인권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실시
- 다누리콜센터 상담사 대상 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교육 등 지속 추진

## 〈사회적 약자 · 소수자 대상 교육〉

###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 소규모 실습형·참여형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에 특화된 노동환경 개선 교육을 수행하고 홍보 지속 추진
-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운영을 통해 노동인권 의식제고, 근로 상담 및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등 안내

  – 학교, 학교밖지원센터, 쉼터, 근로사업장 등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교육 실시

- 근로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업장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및 홍보물 배포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생활법률, 산업안전 등 기본적 근로조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아동인권 및 아동권리향상에 대한 포럼 개최

- ‘아동권리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아동권리인식 및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체감 정도 등을 조사

    ※ 아동인권교육 경험 및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항목포함
-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하나원, 하나센터 등을 중심으로 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 보호 교육 등 실시
- 북한이탈주민 관련 인권 보호 강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복합적 문제 해결과정에서 인권 보호 이슈를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하나센터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 및 인권증진 인식 활동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의 대상별·내용별 콘텐츠 개발, 확대 및 보급

## 〈인식 개선〉

### ①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양성평등 관련 지역 의제를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지역단위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지원, 청년·학부모 등의 주민참여형 정책 모니터링 실시
  - 취업·주거·안전·맞돌봄(부모가 함께 아이돌봄) 문화 확산 등의 소통 프로그램 추진

### ② 생활 속 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 사용자 의견 및 내부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속담, 뜻풀이, 용례 등에 있는 차별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 정비하고 올바른 용법 제시
-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속 차별적 언어 표현 사용 사례를 조사하고 진단하며 공공언어 감수 시 평등한 언어 표현 사용 권장

### ③ 평등한 가족문화 등 조성

- 가족 구성원 간 평등한 가사·돌봄 분담 등 상호 존중하는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 맞벌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가족지원 정책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실시

### ④ 지역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평가 절차 및 지역인권행정 체계 마련, 인권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참여

# 3 부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 1.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 기간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3년부터 ’27년까지 시행됨

## 2.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 관계 부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책임 있게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이행을 위해 상호 협조하여야 함

– 또한,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며, 인권정책자문단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임

## 3.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변경

– 국제인권 여건의 변화 또는 국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 가능함

## 4.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

– ’27년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 공개

## 5. 후속 계획의 수립

–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5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부록 1

# 국제인권기구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문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 18, 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 [국문 번역본]

1.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12.3-4간 개최된 제2691 및 제2692차 회의(CERD/C/SR.2691 및 CERD/C/SR.2692)에서 대한민국의 제17-19차 통합 정기보고서(CERD/C/KOR/17-19)를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2018.12.11-12간 개최된 제2703 및 제2704차 회의(CERD/C/SR.2703 및 2704)에서 현재의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 A. 서 문 (Introduction)

2.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17-19차 보고서 제출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고위급 대표단과의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사의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 보고서 심의 중에 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제공한 답변과 대화 이후에 제출된 추가 서면 정보에 대해서도 대표단에게 감사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환영한다.

## B. 긍정적 사항 (Positive aspects)

3. 위원회는 아래를 포함하여,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당사국이 행한 여러 긍정적 진전사항 및 활동을 환영한다.

(a) 인신매매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개정(2013년 4월 5일)

(b) 난민법 제정(2013년 7월 1월)

(c)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2018년 2월 12일)

(d)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2018년 2월 12일)

(e)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2018년 8월 7일)

4. 위원회는 2015년 11월 5일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및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이하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한 것을 긍정적으로 주목한다.

### C. 우려 및 권고사항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인종차별 관련 입법 및 정의***

5.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의 지난 권고(CERD/C/KOR/CO/15-16)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정의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 데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차별의 특정한 측면을 다루는 다른 현행 법률들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이하 "협약")에 따른 차별금지 사유의 완전한 정의 및 서술에 대한 충분한 대체물이 아님을 강조한다. 또한, 위원회는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처벌 요소로 규정하여 보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법상 조항이 부재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협약 제1, 2, 4조).

**6.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조에 부합하도록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직접적 및 간접적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법률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난 권고(CERD/C/KOR/CO/15-16)를 반복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4조에 따라 인종차별 동기를 형사범죄의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난 권고(CERD/C/KOR/CO/15-16)를 반복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에 관한 통계를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국, 종교, 체류자격, 성별 및 서로 교차하는 형태의 차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지표로 나누어 수집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인종주의적 혐오발언***

7. 위원회는 현재 당사국내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와 불신의 분위기를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특히 2018년 5월 약 500명의 예멘난민들이 제주에 도착하면서 악화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여 언론매체에 표현된 혐오발언, 인종 혐오 선동,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한 사상 전파 및 인종적 선입견의

증가를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유효한 허가 없이 당사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지칭하기 위해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는 "illegal immigrants(불법 체류자)"와 같은 비하적인 용어들이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악화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동 용어의 사용을 우려한다(협약 제2, 4, 7조).

**8. 인종혐오발언 대응에 관한 위원회 일반권고 제35호(2013)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i) 이주민과 난민,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편견, 오해, 및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며; ii) 난민의 권리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iii) 난민과 지역주민 간의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

**(b) 협약 제4조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한 사상을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종혐오를 선동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행위를 조사하고 만일 유죄일 경우 이러한 개인 또는 집단에 적절한 처벌을 부과;**

**(c) 방송언어가이드라인의 실효적 이행 확보;**

**(d) 장래에 "illegal immigrants(불법 체류자)" 용어의 사용을 철폐하고 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공식 문서 검토;**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사회 전반에서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을 감소시키고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노동자*

9. 위원회는 2012년 고용허가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a)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b) 국내 최장 체류기간의 제한; c) 가족 결합 불가능; d) 이주노동자의 장기 체류 혹은 영주 허가 취득을 저해하고, 불법체류의 위험성을 높이는 매우 제한된 비자 변경 가능성(협약 제5조).

**10. 위원회는 당사국에 a) 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 촉진; b)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c) 체류 가능 기간 연장; d) 비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고용허가제 및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여타 법률의 개정을 권고한다.**

11. 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이 농·어업에 적용되지 않고, 제조, 건설 및 축산업에서도 실제로는 종종 적용되지 않고 있어, 동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불충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익이 내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배분된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물리적·언어적 학대, 노동 착취, 괴롭힘을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데 우려를 표한다(협약 제1, 5, 6조).

**12. 외국인 차별에 관한 위원회 일반권고 제30호(2005)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별적 목적이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고용 규정과 관행 등의 근로조건과 취업 요건에 관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률의 필요한 개정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외국인노동자 고용업종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내외국인 노동자 간의 차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시 적절한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적절한 처벌로 제재가 가해지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국가보고서에 근로 감독 또는 여타 기관에 의한 방문, 위반사항 적발, 제재, 구제 및 처벌에 관한 통계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난민 및 난민신청자***

13. 위원회는 당사국이 유엔 난민최고대표와 함께 난민심사관 교육을 실시하고, 신속, 투명, 공정한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촉진하고,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받기 위해 경주한 노력을 주목하는 한편, 여전히 난민인정률이 극도로 낮은 데 우려를 표한다. 또한, 난민불인정 결정이 오직 한국어와 영어, 단 두 언어로만 통지되며 그 결정에 이의신청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포괄적 정보가 제

공되지 않는 등 난민신청자들이 여전히 이의신청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몇몇 경우에 난민인정심사 면접이 비전문적으로 수행되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른 지역 난민들에 비해 특징 지역 출신 난민들의 재정착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에 우려를 표한다(제 5, 6 조).

**14.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심사 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인력의 지원을 받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동 과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신청자들을 상대하는 출입국 담당 공무원 및 통역인에 대한 인권 교육을 지속 실시 및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인정심사가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를 권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신청자와 난민에 관련된 모든 결정이 공정하며, 인종·피부색·국적·민족 등이 아닌 보호 필요성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미등록 이주민***

15.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당사국에서 탄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출입국관리 및 경찰 공무원에 의한 단속 과정에서 빈번한 부상 사건들과 몇몇의 사망 사건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 MTU)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 조합 간부를 강제퇴거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때로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인권옹호가에 대한 탄압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인권 침해를 입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자신의 체류 자격 때문에 법집행당국에 (인권 침해 사실을)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제 5, 6 조).

16.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조합원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을 방지하고, 경찰 및 출입국 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권옹호자 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 권리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노동자들의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체류자격을 침해받**

**지 않고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적절한 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단속으로 인해 체포·강제퇴거된 이주민 수 및 동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이 사용된 경우 관련 조사 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17. 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주민 보호 기간이 법무부의 권한으로 3개월마다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보호된 미등록 이주민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반면, 이러한 이의신청들을 독립적인 기구가 아닌 법무부가 검토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의 출입국관리 관련 법령이 아동의 보호를 허용하고 그들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제 2, 5, 6 조).

18. **위원회는 당사국이 즉시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주민 보호 시, 그러한 보호의 적법성 여부가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63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가능한 최단 기간 동안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주민에 대한 보호 기간 제한 설정 및 보호 이외 다른 대안적 조치를 우선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아동 및 미성년자의 구금을 피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외국인 여성 보호***

19. 위원회는 젠더 기반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 여성들의 사법 및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2014년 이민법 개정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칙'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젠더 기반 폭력 피해를 당한 미등록 이주 여성들이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여전히 해당 사건 종결 후 강제퇴거의 위험이 있어 이들이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려를 표한다(제 5, 6 조).

20.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피해 여성들이 체류자격과 무관히 적절한 법률, 의료, 심리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관련 가해자들이 처벌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실시;**

**(b) 젠더 기반 폭력을 당한 미등록 이주민들이 사건 종결 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 부여;**

**(c) 이주 여성이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구제 수단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21.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결혼이민자")이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의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들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지 않거나, 혼인 단절에 본인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 체류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이혼 후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귀국하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당사국이 한국 아버지에 의한 자녀 부양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제 5 조).

**22. 인종차별의 성인지적(gender-related) 차원에 관한 위원회 일반권고 제25호(2000년)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건 없이 모든 "결혼이민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모든 "결혼이민자"에게 동등한 지원과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결혼이민자"가 이혼 후에도 이혼 사유와 무관히, 그리고 자녀 양육 및 배우자 가족 구성원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이혼 후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귀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혼 절차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적절한 행정적 및 사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권고한다.**

23.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적어도 한명의 한국인을 포함한 가족만을 의미함으로써 양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이거나 재외동포의 결혼은 배제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배제로 인해 난민신청자 및 난민을 포함한 이주 가족이 "다문화가족"만 특정하게 제공받는 혜택과 지원의 범위에서 벗어나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제 2, 5 조).

24.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재검토하여 (외국인 부부로 구성된 가족 및 재외동포로 구성된 가족과 같이) 적어도 한명의 구성원이 한국인이 아닌 모든 가족으로 확대하여 차별 없이 모든 가족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인신매매***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전히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이 부재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예술흥행비자(E-6) 및 사증 면제로 입국한 이주여성의 강제 성착취에 관한 보고에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사증) 면제 제도에도 불구, 미등록 이주민들이 특히 인신매매에 취약한 반면, 퇴거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는 것을 계속 꺼려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률이 낮은데 대해 우려한다(제 2, 5, 6 조).

2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에 합치하도록)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을 제정하고, 동 법률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 수행;**

**(b)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구제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기본 생계지원을 제공;**

**(c) 인신매매에 대한 조사가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재활을 포함한 보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출생 등록***

27. 위원회는 외국인들은 자국 대사관에서 (출생)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은 체계적으로 (출생)등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1] 또한, 위원회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가 어머니의 국적국에서 발행한 (아동 명의) 여권 제출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그 결과로, 외국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제 1, 2, 5 조).

28.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관한 위원회 일반 권고 재30호(2004)에 비추어, 위원회는 출생 등록이 다양한 인권 향유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적 및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당사국이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에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교육 접근***

29. 위원회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이 내국인에게만 의무인 것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이주 아동들이 학교에 등록할 권리가 있으나 입학이 학교장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어, 일부 이주 아동들이 학교에서 입학 거부를 하였거나 이들의 부모들이 학교 등록을 못하여 결국 입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이주 아동의 대안학교 등록 관행이 차별적이며 한국사회로의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제 1, 2, 5 조).

30.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의무 교육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2]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이주민 공동체 및 학교 교장단을 포함하여,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것**

1) 원 번역 "자녀들은 체계적으로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외국인 어린이들이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점 고려하여 수정, "자녀"를 "아동"으로 수정 (법무부)
2) 제정→개정(amend) 으로 수정(교육부)

**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이주 아동의 한국사회로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학교에서 이주 아동의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 보장 접근***

31. 위원회는 이주 아동을 포함한 이주민들의 낮은 건강보험제도 가입률에 대해 우려한다. 당사국이 이주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반면, 이주민의 보험료를 내국인보다 높게 책정할 예정인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몇 가지 범주의 이주민들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난민과 특정 범주의 결혼이주민(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자녀를 양육 또는 가족 구성원을 부양)에게만 적용되어 대다수의 이주민들이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범죄의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 이주민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제 1, 2, 5 조).

**32.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및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이주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조치 실시;**
**모든 이주민들이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정;**

**(b)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을 재검토;**

**(c)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동등한 신청 자격 요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실시**

33. 위원회는 당사국과 상호보증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당사국과 이러한 협정이 부재한 국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구제를 못 받는다는 점을 우려한다(제 1, 6 조).

34. 형사사법 체계의 관리와 기능에 있어서 인종차별의 방지에 대한 위원회 일반권고 제31호(2004)에 비추어, 위원회는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의 실효적 구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히 범죄에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D. 기타 권고사항 (Other recommendations)

*여타 기구 비준*

35.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을 유념하면서, 위원회는 아직 비준이 되지 않은 국제 인권기구, 특히「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등 인종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집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을 포함한 조약의 비준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및 가사노동자에 관한 ILO 제189호 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 후속조치*

36. 위원회 일반권고 제33호(2009)에 비추어, 위원회는 더반 검토회의(2009년 4월)의 결과 문서를 고려하여, 당사국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 불관용 철폐에 관한 세계회의(2001)」에서 채택된 더반선언 및 행동계획을 시행하고, 이를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아프리카 후손을 위한 10년*

37. 유엔 총회 결의 68/237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프리카 후손에 대한 인종차별에 관한 위원회 일반권고 제34호(2011)를 고려하면서, 차기 보고서에 아프리카 후손을 위한 10년 프레임워크에서 채택된 구체적 조치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시민사회와의 협의*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보고서 준비 및 최종견해의 후속조치에 있어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하는 인권 보호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지속 협의하고 대화를 증가할 것을 권고한다.

*공통핵심문서*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2016년 공통핵심문서를 제출한 것을 환영하나, 동 문서가 국제인권조약상 보고서에 관한 통합 가이드라인,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인권조약상 보고(HRI/GEN/2/Rev.6,chapI)에 따라 민족별 인구 구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통핵심문서를 갱신할 것을 유엔 총회 결의 68/268에 비추어 동 문서는 42,400 단어 분량 제한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최종견해 관련 후속조치*

40. 협약 제9조 1항 및 개정 절차 규정 제65조에 의거, 위원회는 당사국이 금번 최종견해 제16항(노동자들의 집회·결사 자유), 제28항(출생등록)항에 포함된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정보를 동 최종견해 채택 1년 내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특별히 중요한 항들*

41. 위원회는 제6항(차별금지법, 형법 개정 및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 관련 통계 수집 매커니즘), 제10, 12항(고용허가제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관련 노동법 개정), 제18항(이주민 보호), 제26항(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30항(의무교육)의 권고사항들이 갖는 특별한 중요성에 대해 한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며,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한 세부정보를 차기 보고서에서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정보 전파*

42.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시기에 일반 대중이 동 보고서에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보고서 관련 최종견해 역시 이와 유사하게 공식 언어 및 여타 적절한 상용 언어로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차기 보고서 준비*

**43. 위원회는 제71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C/2007/1)에서 채택된 인종차별철폐협약 관련 문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4일을 기한으로 제20차 내지 제22차 보고서를 통합된 문서로 제출하고, 금번 최종견해에서 제기된 모든 논점들을 차기 보고서에서 다룰 것을 권고한다. 총회 결의 68/268에 따라, 보고서 작성은 21,200 단어 분량 제한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끝/

United Nations CERD/C/KOR/CO/17-1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Distr.: General
10 January 2019

Original: English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venteenth to nineteen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combined seventeenth to nineteen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ERD/C/KOR/17-19), submitted in one document, at its 2691st and 2692nd meetings (see CERD/C/SR.2691 and 2692), held on 3 and 4 December 2018. At its 2703rd and 2704th meetings, held on 11 and 12 December 2018, it adopted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submission of the seventeenth to nineteenth periodic reports of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expresses its appreciation for the frank and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 State party's high-level delegation. It thanks the delegation for the answers provided during the consideration of the State party's report in response to the Committee's questions and for the additional written information submitted after the dialogue. In addition, the Committee welcomed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vibrant and dynamic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B. Positive aspects

3. The Committee welcomes a number of positive developments and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to fight racial discrimination and promote diversity, including:

(a) The adoption of 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Code that establishes criminal penalties for the offence of human trafficking, on 5 April 2013;

(b) The adoption of the Refugee Act, on 1 July 2013;

(c) The adoption of the third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on 12 February 2018;

(d) The adoption of the third Basic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cy, on 12 February 2018;

(e) The adoption of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n 7 August 2018.

4. The Committee notes with satisfaction the ratification by the State party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it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on 5 November 2015.

*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ninety-seventh session (26 November–14 December 2018).

## C.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 Legislation and defin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5. The Committee regrets that once again the State party has failed to adopt comprehensive legislation that prohibits and defines racial discrimination, in spite of the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s (CERD/C/KOR/CO/15-16, paras. 6–7). The Committee emphasizes that article 11 (1) of the Constitution along with other existing laws addressing certain aspects of discrimination are not sufficient substitutes for the full definitions and descriptions of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in the Convention. Furthermore, it is concerned about the absence of a provision in the Criminal Code establishing racist motives as aggravating circumstances leading to enhanced penalties (arts. 1, 2 and 4).

6.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recommendation that the State party expedite the adoption of a comprehensive law that defines and prohibits direct and indirect racial discrimination on all prohibited grounds, in line with article 1 of the Convention. It also reiterates its recommendation (ibid., para. 8) that the State party amend its Criminal Code to consider racist motivations as aggravating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criminal offences, in line with article 4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et up a mechanism to collect statistics on racially motivated crimes, disaggregated by race, colour, ethnicity, national origin, religion, immigration status, gender and other indicators that would identify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 Racist hate speech

7.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current climate of hate and mistrust towards migrants and refugees in the State party. It is also concerned about the rise of hate speech, incitement to racial hatred and the propagation of ideas of racial superiority and about racist stereotypes expressed in the media, including on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which appear to have been particularly exacerbated by the arrival of around 500 Yemeni refugees on Jeju Island in May 2018.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about the use of derogatory terms such as "illegal immigrants" used in official documents to refer to migrants residing in the State party without a valid permit, noting that such terms exacerbate negative perceptions of and discrimination towards these migrants (arts. 2, 4 and 7).

8. **In the light of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2013) on combating racist hate speech,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measures to firmly combat hate speech and adopt a strategy to:**

(i) **Address prejudices, misunderstandings and misinformation about migrants and refugees, in particular Muslim refugees;**

(ii) **Raise the awareness among the population about the rights of refugees;**

(iii) **Promote understanding and tolerance between refugees and the local population;**

(b) **Continue to monitor the media,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s to identify individuals or groups that disseminate ideas based on racial superiority or incite racial hatred against foreigners, investigate such acts and sanction such individuals or groups, if convicted, with appropriate penalties, as required by article 4 of the Convention;**

(c)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lanned national guidelines for broadcasting language;**

(d) **Review its legislation and official documents to eliminate the use of the term "illegal immigrants" and avoid its use in the future.**

(e) **Take steps to create an environment conducive to reducing the antagonism against migrants in the larger society and which facilitates the integration of migrants into society.**

**Migrant workers**

9.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despite amendments made 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2012, migrant workers still face the following obstacles: (a)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times they can change their workplace; (b) restrictions on the maximum period of authorized stay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party; (c) the lack of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and (d) the very limited possibility to change to a different type of visa, which hinders migrant workers' access to long-term or permanent residence permits and increases the risk of irregular stays (art. 5).

1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further amen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other legislation applicable to migrant workers to: (a)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b) remove restrictions that prevent migrant workers from changing their workplace; (c) extend the maximum period of stay; and (d) enable migrant workers to change to a different type of visa more easily.**

11.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reports that the Labour Standards Act does not apply in the agriculture and fisheries industries and is often not applied in practice in the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livestock industries, while working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in these sectors remain inadequate. It is also concerned that migrants do not benefit from the same minimum wages as Korean nationals in the fisheries industry and that the profit is reportedly shared exclusively among Korean workers. Additionally,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such migrant workers face obstacles to reporting any physical and verbal abuse, labour exploitation or harassment to which they are exposed (arts. 1, 5–6).

12. **In the light of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0 (2004) on discrimination against non-citizen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the necessary amendments to the legislation applicable to migrant worker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non-citizens in relation to working conditions and work requirements, including employment rules and practices that may have discriminatory purposes or effects.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firmly combat discrimination between national and foreign workers, including by strengthening its labour inspections in industries employing migrant workers, without prejudice to their immigration status. It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uarantee access to adequate remedies for migrant workers in cases where their rights are violated and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are held accountable and sanctioned with appropriate penalties. Finally,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nclude in its next periodic report statistics on visits of the labour inspection body, or any other body conducting labour inspections, including on violations found and any remedies or penalties imposed.**

**Refugees and asylum seekers**

13. While noting the efforts of the State party, in collaboration with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to trai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officers to promote speedy, transparent and fai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and to receive refugee status applications at the port of entry,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the acceptance rate for individuals seeking refugee status remains extremely low. It is also concerned that asylum seekers still face challenges in the appeal procedure, as the decision rejecting their asylum application is issued in two languages only, Korean and English, and does not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the steps to appeal the decision.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about reports that, in some cases,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unprofessionally. Additionally,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 appears to prioritize the resettlement of refugees from certain regions as opposed to others (arts. 5 and 6).

1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applicants for refugee status be supported by professional and competent staff throughout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and have access to clear information about the process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tinue to provide and strengthen human rights training for immigration officers and interpreters working with refugee applicants. It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measures to guarantee that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is conducted in a professional manner. Additionally, the Committee request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any decision related to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s fair and based solely on protection needs instead of race, colour or national or ethnic origin.**

**Undocumented migrants**

15.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undocumented migrants continue to endure repression in the State party and that there are cases of violent crackdowns by immigration and police officers that frequently result in injuries and, in some cases, deaths. It is also concerned about crackdowns conducted against the Migrants' Trade Union, in some cases leading to the deportation of union leader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about reported acts of repression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sometimes resulting in death. Moreover, it is concerned that, due to their immigration status, undocumented migrants who have been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reluctant to report such violations to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rts. 5 and 6).

1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measures to prevent violence targeting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cluding members of trade unions, and to intensify human rights training delivered to police and immigration officers, including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organize.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uarantee the right of all workers to participate in trade union activities without fear of deportation. It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steps to ensure that victims can report violations without prejudice related to their immigration status and that victims have access to adequate remedies. The Committee request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data on the number of migrants arrested and deported following crackdowns and, in cases where excessive force was used, the number of cases that have been investigated.**

17.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under article 63 of the Immigration Act the detention of immigrants who cannot be immediately deported can be indefinitely extended every three months based on an authorization gra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t is also concerned that while undocumented immigration detainees are entitled to submit an administrative appeal to challenge their detention, these appeals are review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not by an independent body.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s immigration legislation allows the detention of children and does not consider their best interests (arts. 2, 5 and 6).

1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mend article 63 of the Immigration Act to ensure that the lawfulness of the detention of immigrants who cannot be immediately deported be regularly reviewed by an independent mechanism. It also recommends that the detention of asylum seekers be consider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of time and that the State party establish a time limit for the detention of migrants and prioritize the use of alternative measures to detentio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void the detention of minors and amend the Immigration Act to include provisions related to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Protection of foreign women**

19.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migrant women who are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still lack adequate redress, despite the revision of the Immigration Act to include the Special Rule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2014, which improve access to justice and support for these migrant women.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while undocumented migrant women who are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are entitled to an

extension of stay during the judicial procedure, they remain at risk of deportation after their case is closed, which discourages them from reporting abuse (arts. 5 and 6).

2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measures to protect migrant women from gender-based violence and ensure that victims are provided with adequate legal, medical and psychosocial assistance,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and that the perpetrators are held accountable;**

(b) **Grant undocumented migrants who have been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the possibility to reside in the country after their case has been closed;**

(c) **Ensure that migrant women are provided with clear information,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about the services and remedies available to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Marriage 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21.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only available to foreigners who have married a Korean citizen ("marriage migrants") if they are pregnant, raising a child or supporting a family member of their Korean spouse.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in the event of divorce marriage migrants are not allowed to stay in the country unless they perform typically gendered roles, such as raising an underage child or taking care of members of the Korean spouse's family, or it is found that they were not responsible for the termination of marriage.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in cases where marriage migrants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after a divorce with custody of their children of Korean nationality, the State party fails to take adequate measures to guarantee that child support is maintained by the Korean father (art. 5).

22. **In the light of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25 (2000) on gender-related dimensions of discrimin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te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o all marriage migrants without conditions and take measures to ensure equivalent support and benefits to all marriage migrant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w marriage migrants to change their residence status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live in the State party after the marriage is terminated, regardless of the reasons for that termination and whether they are raising a child or taking care of their spouse's family members.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rease its efforts to provide adequat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support to marriage migrants who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with their Korean children in relation to divorce proceedings and child custody.**

23.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defin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only refers to families composed of at least one Korean citizen and thereby excludes a marriage where both partners are foreigners or among ethnic Koreans from another country. It is also concerned that such an exclusion prevents migrant families, including asylum seekers and refugees, from support and a range of benefits that are specifically reserved for multicultural families (arts. 2 and 5).

2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the defin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extend it to all families where at least one member is not a Korean citizen, such as families composed of two foreign partners and families composed of ethnic Koreans from another country, in order to grant the same benefits to all families, without discrimination.**

**Trafficking in persons**

25.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 still lacks a comprehensive law on human trafficking. It is also concerned about reports of the forced sexual exploitation of migrant women who entered the country with an E-6 visa or who are in irregular situation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despite the exemption regime, undocumented migrants, while being particularly vulnerable to human trafficking, remain reluctant to

report out of fear of being expelled. Additionally,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ow percentage of those held accountable for human trafficking (arts. 2, 5 and 6).

2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dopt a comprehensive law on human trafficking, in line with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and conduct awareness-raising campaigns to inform the public about the legislation;**

(b) **Facilitate the lodging of complaints by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with the authorities, provide protection to victims and grant victims a stable residence status and basic livelihood at least until the end of the remedial process;**

(c) **Ensure that investigations of cases of human trafficking are conducted in a professional manner, that those responsible are held accountable and that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have access to adequate redress, including rehabilitation.**

**Birth registration**

27.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children born of parents of foreign origin are not systematically registered, as foreigners must register the birth of their children with the embassies of their countries of origin. It is also concerned that the application procedure for citizenship for a child born out of wedlock to a Korean father and a foreign mother requires the child to have a passport issued by the mother's country of origin. As a consequence, in cases where the issuance of a foreign passport is not feasible, such children remain unregistered, thus having no access to a range of social benefits (arts. 1, 2 and 5).

28. **In the light of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0, the Committee emphasizes that birth registration is a prerequisite for the enjoyment of a wide range of human rights.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all children born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party are registered,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nd residence status.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liminate barriers to Korean citizenship for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to a Korean father and a foreign mother.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atify the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Access to education**

29.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education is compulsory only for Korean nationals. It is also concerned that, while migrant children have the right to enrol in schools, their admission remains at the sole discretion of the school principals, thus resulting in the fact that some migrant children are left out of school, either because the school refused to admit them or because their parents failed to enrol them.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 practice of enrolling migrant children in alternative schools is discriminatory and has a negative impact on their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arts. 1, 2 and 5).

3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men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to extend compulsory education to all children without discrimination.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aise awareness, including among migrant communities and school principals, of the right of children to attend school.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measures to increase the enrolment rate of migrant children in regular schools, with a view to enhancing their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Access to social security**

31.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ower rate of enrolment of migrants in the health insurance scheme, including migrant children. It notes with concern that while the State party plans to increase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migrants, the fees will be higher for migrants than for Korean nationals.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several categories of migrants are excluded from social security schemes and tha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only available to refugees and certain

categories of marriage migrants (those who are pregnant, raising a child or taking care of their spouse's family members), thus leaving the majority of migrants without any basic social security coverage.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according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State party withholds support based on the Emergency Aid and Support System when both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of the crime are migrants (arts. 1, 2 and 5).

3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measures to increase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migrants, ensure that all migrant children ar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including the children of persons not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review the planned amendmen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in order to cover all migrants and at the same fees as Korean nationals;**

(b) **Review its social security policies to ensure that all persons living on its territory,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 origin, receive basic social support;**

(c) **Take measures to ensure equal eligibility conditions for all to the Emergency Aid and Support System without discrimination.**

33.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only nationals of States with a cross-guarantee agreement with the State party benefit from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thus excluding the majority of foreigners from relief, as most foreigners are from countries without such an agreement (arts. 1 and 6).

34. **In the light of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1 (2005) on the preven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administration and functioning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mend its legislation to make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pplicable to all foreigners, including undocumented migrants, wh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crimes,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ever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o an effective remedy.**

## D. Other recommendations

**Ratification of other treaties**

35. **Bearing in mind the indivisibility of all human right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ratifying thos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hat it has not yet ratified, in particular treaties with provisions that have direct relevance to communities that may be subjected to racial discrimination,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atify the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and the Domestic Workers Convention, 2011 (No. 189),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ollow-up to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36. **In the light of its general recommendation No. 33 (2009) on the follow-up to the Durban Review Conferenc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ive effect to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dopted in 2001 at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taking into account the outcome document of the Durban Review Conference, adopted in 2009, and that it include in its next periodic report specific information thereon.**

**International Decade for People of African Descent**

37. **In the light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8/237, the Committee requests that the State party include in its next periodic report precise information on the concrete measures adopted 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Decade for People of African**

**Descent, taking into account the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No. 34 (2011) on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of African descent.**

**Consultations with civil society**

3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tinue consulting and increasing its dialogue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human rights protection, in particular those working to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in connection with the preparation of the next periodic report and in follow-up to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Common core document**

39. **The Committee welcomes the submission of the State party's common core document in 2016, but notes that it does not contain information on the ethnic composition of the pop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harmonized guidelines on reporting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particular for reporting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HRI/GEN/2/Rev.6, chap. I). The Committee invites the State party to update its core document in line with these guidelines. In the light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8/268,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observe the limit of 42,400 words for such documents.**

**Follow-up to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40.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1) of the Convention and rule 65 of its rules of procedure,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provide, within one year of the adoption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information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paragraphs 16 (right of workers to organize) and 28 (birth registration) above.**

**Paragraphs of particular importance**

41. **The Committee wishes to draw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the particular importance of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paragraphs 6 (anti-discrimination law, amendments to the Criminal Code and mechanisms to collect data on racially motivated crimes), 10 (amendments 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12 (discrimination against non-citizens in labour law), 18 (detention of immigrants), 26 (trafficking in persons) and 30 (access to education) above and requests the State party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in its next periodic report on the concrete measures taken to implement those recommendations.**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4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s reports be made readily available to and accessible by the public at the time of their submission and that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with respect to those reports be similarly publicized in the official and other commonly used languages, as appropriate.**

**Preparation of the next periodic report**

4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ubmit its combined twentieth to twenty-second periodic reports, as a single document, by 4 January 2022, taking into account the reporting guidelines adopted by the Committee during its seventy-first session (CERD/C/2007/1) and addressing all the points raised in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In the light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8/268,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observe the limit of 21,200 words for periodic reports.**

유엔(United Nations) CRC/C/KOR/CO/5-6

아동권리협약

배포 : 일반

2019년 10월 24일

영어

**아동권리위원회**

#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1)]

## I. 개요

1. 위원회는 2019년 9월 18일과 9월 19일 열린 제2416차 및 2417차 회의(CRC/C/SR. 2416 및 2417 참조)에서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CRC/C/KOR/5-6)를 심의하였고, 2019년 9월 27일 열린 제2430차 회의에서 본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2. 위원회는 당사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환영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당사국 대표단과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

## II. 당사국이 취한 후속조치 및 성과

3. 위원회는 다음을 환영한다.

(a) 2015년「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비준

(b) 2012년「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가입

1) 제82차 회기(2019년 9월 9일-9월 27일)에서 채택됨.

4. 위원회는 다음의 조치를 감사히 여긴다.

(a)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b)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c) 아동영향평가제도

(d)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e)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지급제도 도입

## III. 주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

5. 위원회는 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의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을 상기하며,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모든 권고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비차별(para. 17),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para. 20), 체벌을 포함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para. 27), 성적 착취 및 학대(para. 29), 교육 및 교육의 목표(para. 42), 그리고 소년사법 운영(para. 47) 등의 분야에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원회의 권고에 당사국이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 A. 일반이행조치 (협약 제4, 42, 44(6)조)

#### 유보

6.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21조 (a)항의 유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하며, 제40조 (2)항 (b)(v)조의 유보철회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 법 제정

7. 낙태 금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선언하며 2020년까지 낙태 관련 법률 검토를 정부에 요청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위원회는 해당 법률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사법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의 협약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그들이 재판절차에 협약

을 인용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8.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채택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이러한 아동 관련 정책 및 전략이 협약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할당을 보장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 조정

9. 위원회는 당사국이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할당, 영구적 사무국 설치 및 아동권리 조정기구로서 위원회의 인지도 증진을 통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조정에 관한 이전 권고(CRC/C/KOR/CO/3-4, para. 13)를 상기하며, 아동권리 사안을 다루는 모든 관계 기관들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 자원의 할당

10. 교육, 영유아기 및 아동복지 사업 영역의 예산 증가와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아동 관련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공공예산 수립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9호(2016)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a)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정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실행할 것;

(b)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c)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할 것;

(d)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 아동참여를 강화할 것;

(e)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부문의 재화 및 용역(상품과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고, 뇌물수수나 특혜, 불규칙한 지급 등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공공조달 절차에서 책무성을 제고할 것.

### 자료 수집

11.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2003)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연령, 성별, 장애(disability status), 지리적 위치, 출신민족 및 출신국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주 배경 등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화된 시스템(centralized system) 구축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 독립 모니터링

12.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 인권 기구의 역할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2002년)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할 것;

(b) 아동권리위원회의 진정 접수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할 것

(c) 정부 당국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할 것;

(d) 정책권고의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

(e)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것.

###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13.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협약에 대한 인식도가 특히 아동들에게 낮다는 점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절한 자원 할당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아동권리교육 및 인권교육을

보장하고,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의무적 훈련을 제공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 국제협력

14. 위원회와 당사국간 대화에서 제공된 정보로서, 당사국이 향후 10년간 공적개발원조(ODA)를 증액할 계획이라는 점을 환영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17.2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한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한 원조가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아동권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당사국 및 해당 개발 협력 상대국에 대한 본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국제개발원조 정책과 사업의 설계,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적절히 통합할 것을 권장한다.

### 아동권리와 기업부문

15. 위원회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국내외 경영활동으로 인해 아동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아동권리에 대한 기업 영역의 영향 관련 국가 의무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6호(2013),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이전의 권고(CRC/C/KOR/CO/3-4, para. 27)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child protection framework)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아동권리 침해를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아동권리 실현과 보호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 B. 일반원칙 (협약 제2, 3, 6, 12조)

### 비차별

16. 위원회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 조치를 환영하나,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안 채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려한다.

(a) 농어촌지역 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장애 아동, 이주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 아동이 출생신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이용, 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복지, 여가 및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 접근에 차별을 경험하는 것;

(b)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이 학교에 만연해 있는 것;

(c) 한부모 가정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

(d)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과 당사국이 성소수자(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persons) 관련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인정한 상황인 것 (CRC/C/KOR/5-6, para. 36).

17.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0.3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이 출신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략을 시행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할 것;

(b)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출생시 등록되고,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그리고 국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학교에서 학업성적에 근거한 차별을 방지하고 근절할 것;

(d) 양육비 접근 등에 있어 모든 가정에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 및 관행을 점검할 것.

### 아동의 최선의 이익

18.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제도 수립을 환영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2013)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관련된 재판 절차, 의사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반영하며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이전의 권고들을 당사국에 상기시킨다. 또한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폭넓은 아동 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적용을 확장할 것;

(b)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고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는 절차 및 기준을 개발할 것.

###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19. 위원회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수립에 주목하는 한편, 대한민국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인 높은 아동 자살률, 특히 가정 문제, 우울증, 학업 부담, 집단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현상 및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예산이 부재하다는 점과 함께,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우려한다.

(a)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한 건강상 피해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b) 학교 및 보육환경(childcare settings)의 미세먼지 및 석면에 대한 불충분한 모니터링;

(c)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수많은 건강 피해 및 피해자들에 대한 불충분한 구제와 배상.

20. 위원회는 앞서 권고했듯, 포괄적 정책,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조치, 아동 및 가족, 나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통해 아동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다음을 권고한다.

(a)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하는 건강상 피해를 조사할 것;

(b) 모든 보육환경(childcare settins) 및 교육환경의 실내 공기 질 및 유해물질 노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

(c)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동에게 충분한 구제와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화학물질 관리 및 유해물질 관련 사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아동의 견해 존중

21. 위원회는 현재 발의된 가사소송법안(2017)이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도 의견진술권을 확대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아동의 참여는 여전히 선택적이고, 특정 주제에 제한되며, 학업 성적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동이 의견을 진술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2호(2009)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견해가 그들과 관련된 가정, 학교, 법원 및 관련 행정 절차와 기타 절차에서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며, 이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학교 내 모든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

(b) 이전에 권고했듯이(CRC/C/KOR/3-4, para. 35(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도록 보장할 것;

(c) 발의된 가사소송법안의 신속한 개정을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

##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제7, 8, 13-17조)

### 출생등록

22. 위원회는 온라인 출생신고 및 통보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출생등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9를 감안하여,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미혼부가 그들의 자녀를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

(c)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 정체성에 대한 권리

23.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24. 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당사국에 재차 권고한다. 또한 아동참여를 증진하고, 현재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 사생활에 대한 권리

25. 위원회는 학교가 학업성적, 징계조치와 같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에 주목한다. 이에 위원회는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실제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 D. 아동에 대한 폭력 (협약 제19, 24(3), 28(2), 34, 37(a), 39조)

### 체벌을 포함한 폭력

26.「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증가, 심리치료사 전문인력 증원은 환영하지만,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한다.

(a) 온라인 폭력 및 학교폭력을 포함한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

(b) 가정 내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부재로 인한 높은 재학대 발생률

(c)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이라는 점;

(d) 아동학대의 과소보고;

(e) 아동학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

(f)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및 전략의 부재;

(g)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심리학자, 변호사의 부족;

(h) 학대 피해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지원 부족

27.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2011), 신체적 체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06),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 종식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16.2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모든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및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사건의 규모, 원인, 특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할 것;

(b)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방지, 근절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 상의 "간접체벌" 및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d)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내 비폭력 의사소통 및 갈등중재를 증진하고,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참여형 아동양육 형태를 촉진할 것; 폭력과 학대신고를 장려할 것;

(e)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관련 전문가를 양성할 것; 신고 지침을 수립할 것;

(f)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보장할 것;

(g)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등을 포함하여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

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h) 앞서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

###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28.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성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조치, 그리고 재범 감소를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a) 성폭력 및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온라인 아동 성매매 및 그루밍과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급증하였다는 점

(b) 만 13세 이상인 아동은 동의능력 있다고 간주되어,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점;

(c)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고려되는 아동("대상아동")이 범죄자로 취급되며, 법적 조력 및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금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성적 착취를 당해도 신고를 단념하게 된다는 점;

(d)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을 포함한 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

(c)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할 것;

(d)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된("대상 아동") 모든 아동, 다시 말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 "보호처분" 폐지,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 제공,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을 포함하여,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e)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및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f)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 유해한 관행

30. 위원회는 이민자 공동체 내에서 아동의 결혼이 부모 동의만으로 승인될 수 있고, 그러한 이주 여아 및 외국인 여아의 결혼사례가 보고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예외 없이 조혼(child marriage)을 금지하고, 출신국과의 협력, 이민자 및 난민을 위한 공적 등록 절차(civil registration procedures) 개설 등 이러한 관행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E.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협약 제5, 9-11, 18(1) 및 18(2), 20-21, 25, 27(4)조)

### 가정환경

31. 위원회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더불어 무상보육, 맞벌이 부모의 유연근무제, 부(父)의 육아휴직 및 한부모가족 지원이 확대된 것을 환영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영유아보육법」개정을 포함하여,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적절한 유연성을 늘리고,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childcare facilities) 및 재정적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부(父)의 육아휴직 접근성 및 이용을 보다 촉진할 것;

(c) "면접교섭센터" 설치 확대 및 기타 대안적인 해결책 마련을 포함하여, 이혼 가정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할 것;

(d) 양육비에 대한 접근 및 양육비 이행을 촉진 및 보장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

(e)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양육비 지원 자격도 그에 따라 개정할 것.

### 가정환경 상실 아동

32. 당사국이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b)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c)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d) 보호자 보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강화할 것.

### 입양

33. 법원허가제 도입을 포함하여 입양을 규제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다시 한 번 당사국에 반복한다:

(a)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모든 연령대에 있는 아동을 위한 입양절차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입양에 있어 미혼모의 자발적인 동의가 의무적일 것;

(b)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입양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할 것;

(c) 절차상 불필요한 지연 방지 및 입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들의 활동이 적절히 규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d) 파양된 사례를 포함하여,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를 강화할 것;

(e) 입양아동이 그들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도록 보장할 것

(f)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고,「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

###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34. 위원회는 "부모책임 및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관할,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 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을 권고한다.

### 수용자 자녀

35. 위원회는 수용자 자녀 및 이들 아동의 접견권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 F.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제6, 18(3), 23, 24, 26, 27(1)-(3), 33조)

### 장애아동

36. 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교육, 훈련영역에서 전문 인력과 예산이 증가하였음에 주목한다.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9호(2006)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장애아동을 포용하도록 보장할 것;

(b)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

(c) 학교 기반시설 및 체육·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공, 통학 지원과 개별 지원

을 위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및 역량 강화 연수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할 것

(d) 장애아동이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

### 건강 및 보건 서비스

37. 위원회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를 환영한다.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5호(2013) 및 재정위험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 등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험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8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보건예산을 늘리고 지역 병원을 강화하라는 이전의 권고를 상기시키며, 다음의 사항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a)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및 이주아동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것;

(b) 이주 아동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개선할 것;

(c) 당뇨 및 비만 아동 등을 위한 어린이집 및 학교의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할 것.

### 정신 건강

38. 당사국이 아동 자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정신 건강과 웰빙(well-being) 증진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4를 감안하여 자살예방과 그것의 근본원인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정신적 웰빙(well-being)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반복하여 권고한다.

### 청소년 보건

39.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2003) 및 청소년기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0호(2016), 모든 형태의 영양결핍 근절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2.2, 마약류와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3.5, 성과 생식보건, 생식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5.6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알코올 광고 규제 강화, 금연 공간 확대, 스포츠 및 신체활동 촉진, 약물 남용 예방에 대한 생활 기술 교육에 아동참여 독려 등 비만, 흡연, 음주 예방과 관련한 이전의 권고들을 상기시킨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 지원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의 역량을 구축하여 문제적이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

(b) 학교 내 성교육, 임신 중 및 출산 지원 서비스, 산후 관리 강화와 육아지원 보장 및 부모의 동등한 육아 촉진을 포함하여, 청소년 임신을 효과적으로 다룰 것.

### 생활수준

40.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을 환영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빈곤층 아동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빈곤층 아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알리고 채택하며 시행할 것;

(c) 아동의 주거 빈곤 및 아동의 시간제 고용률을 사정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것.

## G.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제28, 29, 30, 31조)

### 교육 및 교육의 목표

41. 위원회는 선행학습 관행(예 : 진학을 위해 취학 전에 사교육을 받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약계층 아동의 입학 정원 확대, 자유학기제 도입, 학교 밖 아동 지원을 환영한다. 그러나 당사국 아동 자살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부담, 이로 인한 수면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과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a)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치원에서 시작되는 사교육 의존의 지속적인 증가

(b)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 낮은 수준의 학교통합(school integration), 높은 학교 중퇴율

(c) 한국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반면, 난민아동, 이주아동 및 미등록아동의 학교 입학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등록아동의 제한적인 교육 서비스 접근성;

(d)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지배적인 점을 비롯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기회 및 편의제공 부족과 장애아동이 직면한 사회적 낙인

(e) 학교 밖 아동 및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f) 농촌과 도시 지역 간 교육 격차;

(g) 청소년 임신과 HIV 발생률 증가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의 부족;

(h)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은 불충분한 진로상담으로 중퇴에 대한 취약성 증대;

(i) 널리 퍼져있는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학업성적 등과 관련된 차별;

(j) 학업으로 뛰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함께, 아동의 여가, 놀이 및 운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안전한 무료시설 충분하지 않아 여가 시간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기여한다는 것

42.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서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4.5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진

로상담 강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 완화라는 목표 하에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2001)에 부합하게 공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것; 공립 및 사립학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가할 것;

(b) 모든 아동이 출신, 주거지, 사회경제적 및 이주 지위, 이주민으로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할 것; 부정부패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에 따른 입학 정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 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c)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및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하고,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강화할 것;

(d) 학교를 중퇴하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이러한 현상의 규모를 평가할 것;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고 일반학교(mainstream school)에 머무를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대안교실 및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모든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

(e) 훈련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포함한 교사의 훈련 강화, 학교 기반시설 개선과 예산 증액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

(f) 청소년임신 및 HIV/AIDS 예방에 특별히 유의하고,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 그리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

(g) 특히 학교 밖 아동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진로상담과 자유학기제를 강화 및 다양화하고, 아동의 견해가 진로 선택의 기초가 되도록 보장할 것;

(h)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할 것; 차별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다룰 것;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훈련을 제공할 것;

(i)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여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

화할 것: 예방, 조기 발견 메커니즘, 아동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중재 절차, 사례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통일된 지침;

(j)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이러한 시설은 안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금연구역이며, 연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 H. 특별보호조치 (협약 제22, 30, 32-33, 35-36, 37(b)-(d), 38, 39-40조)

###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

43. 위원회는 2012년「난민법」제정을 환영한다. 국제이주 맥락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공동의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호와 제4호(2017) /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 및 제23호(2017)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출입국관리법」개정 등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할 것; 비구금형 대안을 보장할 것; 난민과 가족 재결합 문제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b) 난민 및 무국적 아동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지위를 규정할 것;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난민신청아동,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

(c) 보호자 미동반 아동 및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 보건의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여가, 학대 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

(d) 보호자 미동반 아동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동권리협약과 부합하는「이주아동권리법」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

(e) 난민신청자 및 난민 중 특히 아동에 대한 혐오발언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것;

(f) 미등록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것;

(g) 난민아동, 난민신청아동 및 이주아동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

###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44. 위원회는 일하는 아동의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 감독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일하는 아동의 수가 여전히 많고, 그들의 노동권 침해 및 언어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 그리고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책무성과 사회복귀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매매, 거래, 약취유인

45.「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비준을 매우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온라인 모집을 통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 인신매매의 발생지이자 경유지 그리고 도착지로 여전히 보고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한 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목표 8.7를 상기시키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법에 맞게 정비하여, 강요, 대가, 피해자의 초국가적 이동 요건을 삭제할 것;

(b) 경찰, 출입국관리, 노동 및 사회복지 공무원의 훈련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계층 피해아동의 식별 및 위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이행할 것

피해자 식별 지침 이행 등을 포함하여, 특히 취약계층 피해아동의 식별과 위탁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할 것

(c) 아동의 인신매매, 불법거래 및 탈취가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량이 부과되도록 하며, 인신매매 방지 전담조직과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를 위한 팀을 구성할 것;

(d) 인신매매 또는 불법거래의 아동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형사적 제재,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삼거나, 폐쇄된 시설에 절대로 구금하지 말 것;

(e) 남자아동, 외국인 아동,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

## 소년사법 운영

46. 위원회는 소년원 송치기간을 최종 결정의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소년법」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다음을 우려한다:

(a) 법에 저촉된 아동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와 처우의 두 가지 병렬 시스템의 존재;

(b)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과 만 10세 이상부터 「소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는 것;

(c)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의 구금을 규정하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d) 조사단계부터 보조인 개입을 보장받지 못 하거나, 자백을 강요당하거나, 증거 및 항소에 대한 접근성이 부재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이 지켜지지 않거나, 재판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법률구조(法律救助)를 조건부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고들;

(e) 성인에 비해 높은 아동 구금율;

(f) 과밀 수용, 불충분한 의료 지원, 교육, 훈련, 여가, 식사 제공, 특히 여아에게 적게 제공되는 식사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구금 환경; 접견, 진정 및 야외활동 제한; 소수자 아동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부재; 구금된 성소수자 아동(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children)에 대한 차별;

(g) 성인과 아동을 혼거수용하는 사례;

(h) 구금된 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DNA 및 HIV 의무검사; HIV 아동 구금자의 격리; 구금된 아동에게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지속적인 위생시설 촬영;

(i) 독방 감금, 가족방문 제한 및 원거리 징계이송과 같은 재량에 따른 징계조치 남용;

(j) 수갑, 포승, 기타 보호장치의 사용 및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것;

(k)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형 조치의 부족.

47.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적절한 자원을 지원받아, 법에 저촉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아동사법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아동 전담 법관 및 법 위반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b)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c) 협약 제40조에 따라 공정한 재판 보장을 준수할 것; 아동 관련 사건의 공판에서 일반 청중을 배제하고, 재판 시작단계부터 아동의 법정 후견인 참여를 보장할 것; 침해(violations)를 보고함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는 경로를 제공·증진하고; 아동 관련 사건을 위한 언론보도 지침을 수립할 것;

(d) 법적·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 구조 제도를 수립할 것;

(e)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폐지할 것;

(f) 다이버전 제도(diversion programmes)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구금형을 촉진할 것;

(g) 「소년법」에 구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할 것; 구금은 중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보호처분" 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최종 형기에 산입되도록 보장할 것; 구금에 항소할 권리 및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배상권을 보장할 것;

(h) 일시구금을 포함하여, 구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개인 공간,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음식, 교육, 신체적·심리적 건강 서비스, 운동, 여가, 가족과의 접견 및 진정 제도 등 제공);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구금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i)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j) 근신실 및 이송을 징계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회복적 조치로 대체하고 촉진할 것;

(k) 아동에 관한 무력 및 보호장비 사용을 규제할 것 및 그러한 사용이 특정한 상황에 제한되고, 비례적(proportional)일 것;

(l) 구금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구금된 아동의 DNA 수집 및 HIV 검사를 금지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할 것; HIV 정보는 비밀을 보장할 것; HIV에 감염

된 아동 구금자를 격리하지 않을 것;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계속적인 위생 시설 촬영을 금지할 것;

(m)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 조치를 강화할 것;

(n)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적,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

###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48. 위원회는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2008년 최종견해(CRC/C/OPSC/KOR/CO/1) 이행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하며 다음을 권고한다:

(a) 여행 및 관광에서의 아동 매매 및 아동 성착취를 포함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모든 행위 및 활동을 국내 형사법 하에서 완전히 포괄할 것;

(b) 선택의정서에 따라 범죄자 인도가 이루어질 경우 쌍방가벌성 및 최소심각성(minimum gravity) 요건이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범죄자 인도의 법적 근거로 간주되어야 할 것;

(c) 유죄를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이 여권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49. 위원회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2008년 최종견해(CRC/C/OPAC/KOR/CO/1) 이행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한다. 이에, 위원회 이전 권고를 상기시키며 특히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만 18세 미만 아동을 군대나 비국가 무력단체에 징집하는 것 및 적대행위에 가담시키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

(b) 분쟁지역 출신 난민신청아동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수집할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지원을 강

화할 것;

(c)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선택의정서 조항을 반영할 것;

### I.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50.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비준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 J. 국제인권규범 비준

51.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고려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 K. 지역 기구와의 협력

52. 위원회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여성 및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 IV. 이행 및 보고

### A. 후속조치 및 보급

53.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들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제5·6차 국가보고서 및 본 최종견해가 당사국의 언어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B. 차기 보고서

54. 위원회는 2024년 12월 19일까지 본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제7차 국가보고서는 2014년 1월 31일 채택된 위원회의 협약별 보고지침(CRC/C/58/Rev.3)을 준수해야 하며, 21,200자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유엔총회 결의안 68/268, para. 16 참조). 보고서가 단어 수 제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당사국은 앞서 언급한 결의안에 따라 보고서 분량 축소를 요청받게 될 것이다. 당사국이 보고서를 재검토하여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조약기구 심의를 위한 번역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55. 위원회는 또한 최신의 핵심문서 제출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공통핵심문서 및 특정 조약 문서에 관한 지침(HRI/GEN/2/Rev.6, chap. I 참조), 유엔총회 결의안 68/268의 제16항을 포함하여, 각종 국제 인권 조약이 규정하는 보고지침에 포함된 공통핵심문서의 요건에 따라 단어 수는 42,400개를 초과할 수 없다.

United Nations CRC/C/KOR/CO/5-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istr.: General
24 October 2019

Original: English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 I. Introduction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KOR/5-6) at its 2416th and 2417th meetings (see CRC/C/SR.2416 and 2417), held on 18 and 19 September 2019, and adopted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at its 2430th meeting, held on 27 September 2019.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submission of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State party. It expresses appreciation for the constructive dialogue held with the multisectoral delegation of the State party.

## II. Follow-up measures taken and progress achieved by the State party

3. The Committee welcomes:

(a) The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2015;

(b) The accession to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in 2012.

4.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a) The adoption, in 2014,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the Regulation of Prior Learning, and the Act on Support for Out-of-School Juveniles;

(b)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centre for the rights of the child;

(c) The Child Impact Assessment System;

(d) The online birth registration system;

(e) The introduction of child benefits for children under 7 years of age.

*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eighty-second session (9–27 September 2019).

## III. Main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5. The Committee reminds the State party of the indivisibility and interdependence of all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ll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The Committee would like to draw the State party's attention to the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following areas, in respect of which urgent measures must be taken: non-discrimination (para. 17),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para. 20), violence against children, including corporal punishment (para. 27),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para. 29), education and the aims of education (para. 42) and the administration of child justice (para. 47).

### A.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arts. 4, 42 and 44 (6))

**Reservations**

6. **The Committee welcomes the withdrawal of the State party's reservation on article 21 (a) of the Convention and encourages it to expedite the withdrawal of its reservation on article 40 (2) (b) (v).**

**Legislation**

7. **While welcoming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11 April 2019 declaring the ban on abortion unconstitutional and requiring the Government to review its legislation on abortion by 2020,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this legislation is aligned with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trengthen the knowledge of the judiciary, prosecutors and lawyers on the Convention and their capacity to invoke and directly apply it in court proceedings.**

**Comprehensive policy and strategy**

8. **While noting the adoption of master plans for child and youth policies and a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its policies and strategies on children encompass all areas of the Convention and that it allocate sufficient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for their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Coordination**

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further strengthen the mandate of the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by allocating to it adequate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establishing a permanent secretariat and raising that Committee's profile as a coordinating body for children's rights. The Committee recall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on coordination (CRC/C/KOR/CO/3-4, para. 13) and reiterates that the functions of all authorities dealing with children's rights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order to avoid overlap and duplication.**

**Allocation of resources**

10. **While welcoming the budgetary increase in the areas of education, early childhood and child welfare projects and the introduction of child and youth participatory budgeting practices, the Committee regrets that the State party's child-related budget has not grown proportionately to its gross domestic product (GDP). With reference to its general comment No. 19 (2016) on public budgeting for the realization of children's right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a) **To allocate adequate financial, human and technical resource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all policies, plans, programmes and legislative measures for children and implement a system to monitor the use of such resources;**

(b) **To increase budget allocations for children and overall social expenditure proportionately to its GDP and reduce disparities between municipalities;**

(c) **To introduce budgetary allocations for children in disadvantaged situations;**

(d) **To enhance child participation in budgeting, including through existing child and youth assemblies and participation committees;**

(e) **In order to ensure the availability, accessibility and quality of goods and services in sectors supporting the realization of children's rights, to strengthen efforts to combat corruption, in particular bribery, favouritism and irregular payments, and enhance accountability in public procurement processes.**

**Data collection**

11.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 No. 5 (2003) on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stablish a centralized system for the collection of data disaggregated by age, sex, disability status, geographic location, ethnic and national origin, socioeconomic and migration backgrounds, on all areas of the Convention.**

**Independent monitoring**

12.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 No. 2 (2002) on the role of independent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stablish the legal status of the Child Rights Committee, including in order to guarantee its independence;**

(b) **Strengthen the mandat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investigate complaints;**

(c) **Raise the profil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ong the authorities;**

(d) **Enhance the capacity of the Commission to coordinate and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recommendations;**

(e) **Equip the Commission with adequate resources.**

**Dissemination, awareness-raising and training**

13. **The Committee welcomes the inclus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While noting that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Convention remains low, particularly among childre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child and human rights education countrywide, including by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its provision and allocating adequate resources thereto, and provide mandatory training to professional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International cooperation**

14. **While welcoming the information provided during the dialogue that the State party plans to increase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during the next decade,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arget 17.2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meet the internationally agreed target of 0.7 per cent of gross national income for ODA and ensure that such assistance is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and its Optional Protocols, to prioritize children's rights and integrate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addressed to both the State party and its development partners as appropriate in the design,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ies and programmes.**

**Children's rights and the business sector**

15.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reports of children's rights violations resulting from business activities by companies of the Republic of Korea operating domestically and abroad. With reference to its general comment No. 16 (2013) on State obligations regarding the impact of the business sector on children's rights,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d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on children's rights and the business sector (CRC/C/KOR/CO/3-4, para. 27),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stablish a child protection framework for companies in the State party operating domestically and abroad. Such a framework should include mechanisms for conducting child rights impact assessments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mechanisms, in order to report and address children's rights violations, and should make it clear that all stakeholders are responsible for fulfilling and protecting children's rights.**

## B. General principles (arts. 2, 3, 6 and 12)

**Non-discrimination**

16. While welcoming the measures taken to support children in disadvantaged situations,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the adoption of a draft anti-discrimination act has been hampered since 2007. It is also concerned that:

(a) Rural children, economically disadvantaged children, children with disabilities, migrant children, multicultural children and refugee children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erience discrimination in getting their birth registered and in accessing childcare facilities, education, health care, welfare, leisure and State protection;

(b) Achievement-based discrimination is widespread in schools;

(c) Single-parent families fac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d) Cases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re persistent, a situation that the State party acknowledged by stating that its policies regarding 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is inadequate (CRC/C/KOR/5-6, para. 36).

17. **Taking note of target 10.3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ensuring equal opportunity and reducing inequalities of outcome, including by eliminating discriminatory laws, policies and practices and promoting appropriate legislation, policies and action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xpeditiously adopt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and ensure that such legislation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origi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and strategy and conduct public campaigns to eliminate and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in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situations;**

(b) **Ensure that all children within its territory are equally able to be registered at birth and have access to childcare facilities, education, health care, welfare, leisure and State support;**

(c) **Prevent and eliminate achievement-based discrimination in schools:**

(d) **Ensure equal treatment for all families, including in accessing child support, and review legislation and practices accordingly.**

**Best interests of the child**

18. **The Committee welcomes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impact assessment system.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 No. 14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 the Committee recalls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to integrate, consistently interpret and apply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s a primary consideration in all relevant proceedings, decisions, policies and programmes. It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a)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child impact assessment system, with the participation of a wide range of children;**

(b) **To develop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every area and for giving that principle due weight as a primary consideration.**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19. While noting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action plan for suicide prevention, the Committee is seriously concerned that the high rates of child suicide, due in particular to problems in the family, depression, academic pressure and bullying, represent a leading cause of death among children. It notes with concern the lack of a systematic approach and a dedicated budget for addressing suicides and their root causes.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 That there is insufficient knowledge about the damage to health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b) That there is insufficient monitoring of fine dust and asbestos in schools and childcare settings;

(c) That humidifier disinfectant is responsible for numerous cases of damage to health and that remedies and reparations for the victims are inadequate.

20.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strengthen its efforts to effectively prevent suicides among children and to address their root causes, as previously recommended, through comprehensive policies, psychological, educational and social measures and therapies for children, families and the public at large.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Investigate possible cases of damage to health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b) **Continue to monitor indoor air quality and exposure to hazardous substances in all childcare and educational settings;**

(c) **Continue its efforts to provide adequate remedies and reparations to child victims of humidifier disinfectant and intensify its efforts to control chemical substances and prevent hazardous incidents.**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21.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draft family litigation act (2017) extends the right to be heard to children under 13 years of age. It regrets, however, that children's participation remains optional, is limited to certain topics and is conditional on academic performance and that children's views are rarely taken into account.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 No. 12 (2009)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children's views are given due consideration in the family, in schools, in the courts and in all relevant administrative and other processes concerning them, including by:**

(a) **Ensuring that all children at school have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views regardless of academic performance;**

(b) **Ensuring that the Child Welfare Act provides for the right of children to express their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as previously recommended (CRC/C/KOR/3-4, para. 35 (a));**

(c) **Abolishing any age limit on the right of children to express their views in all issues concerning them, including by expeditiously enacting the draft family litigation act.**

## C. Civil rights and freedoms (arts. 7, 8 and 13–17)

### Birth registration

22. **The Committee welcomes the establishment of the online birth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systems. Taking note of target 16.9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providing legal identity for all, including birth registration,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a) **To ensure that birth registration, including online, is universal and available to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parents' legal status or origins;**

(b) **To simplify the procedures for single fathers to register their children, in order to ensure that all children are registered at birth;**

(c) **To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identify unregistered births, including by establishing monitoring mechanisms;**

(d) **To conduct awareness-raising campaigns on the importance of birth registration.**

### Right to an identity

23.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hibit the "baby box" initiative, which is operated by religious organizations and which allows for the anonymous abandonment of children, and to consider introducing, as a last resort, the possibility of confidential hospital births.**

###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24. **The Committee reiterates that the State party should revise its legislation and school regulations to enable all children to exercise fully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regardless of their academic achievement and without fear of reprisal. It also recommends promoting child participation and considering lowering the minimum age of voting and membership in political parties, currently set at 19 years.**

### Right to privacy

25. **The Committee notes that schools reportedly disclose students' private information, including on grades and disciplinary measures, inspect their belongings without obtaining their prior consent and impose a dress code.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e protection of children's privacy, including with regard to their smartphones, and personal information in school, in law and in prac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and develop and apply child-friendly procedures for obtaining children's informed consent.**

## D. Violence against children (arts. 19, 24 (3), 28 (2), 34, 37 (a) and 39)

### Violence, including corporal punishment

26. While welcoming the adop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the increase in the child abuse prevention budget, local child protection agencies, shelters and psychotherapists,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a) The high prevalence of child abuse, including through online violence and violence in schools;

(b) The high incidence of repeated child abuse in the family without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reoffending;

(c) The fact that corporal punishment is still legal in certain settings;

(d) The underreporting of child abuse;

(e) The shortage of reliable data on child abuse;

(f)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policy and strategy to address all form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g) The shortage of local child protection agencies, shelters, counsellors, psychologists and lawyers specialized in child abuse;

(h) The shortage of specialized support, including shelters, for migrant childr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victims of abuse.

27. **With reference to its general comments No. 13 (2011)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from all forms of violence and No. 8 (2006)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as well as target 16.2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ending abuse, exploitation, trafficking and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and torture of childre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stablish a national database on all case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all children and undertake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ir extent, causes and nature;**

(b) **Formulate a comprehensive strategy and an action plan for preventing, combating and monitoring all form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including online violence;**

(c) **Explicit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cluding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and "disciplinary punishment", in law and in practice, in all settings and in all areas of the State party;**

(d) **Intensify awareness-raising and education programmes on all forms of violence and abuse; promote non-violent communication and conflict mediation in schools and positive, non-violent and participatory forms of child-rearing; and encourage the reporting of violence and abuse;**

(e) **Train professionals concerned to identify and adequately respond to cases of violence and child abuse, including psychological abuse, taking into account a gender perspective, and establish reporting guidelines;**

(f) **Ensure that cases of violence and child abuse are investigated and appropriately addressed;**

(g) **Ensure the development of programmes and policies for the prevention,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child victims of abuse, including by further increasing the number of local child protection agencies and shelters, counsellors, clinical psychologists and lawyers dealing with child abuse cases, by providing free legal representatives for child victims and by ensuring that migrant childr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shelters;**

(h) **Allocate adequate human,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for implementing the above-mentioned recommendations and reducing regional disparities.**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28. The Committee welcomes the legislative amendments expanding the scope of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the policy measures for preventing and eradicating sexual violence and the decrease in recidivism. However, the Committee remains seriously concerned:

(a) That sexual violence and abuse remain prevalent and that there has been a surge in online child prostitution and grooming and in sexual harassment by teachers;

(b) That children who are 13 years old and over are presumed to be able to consent and are not protected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c) That children who are considered to have entered prostitution voluntarily ("children involved") are treated as offenders, denied legal aid and support services and are subjected to detention-like "protective dispositions", deterring them from reporting sexual exploitation;

(d) That lenient sentences, including probation, are used for adult offenders convicted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29.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a) **To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and respond to all manifestations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including online prostitution and grooming, and sexual harassment by teachers;**

(b) **To define and criminalize online grooming;**

(c) **To increase the minimum age of consent for engaging in sexual activities;**

(d) **To ensure that all children, in other words all persons under the age of 18, who are engaged in prostitution and sexual abuse ("children involved") are not treated as offenders but as victims, including by referring to them as "victims" in the legislation, abolishing the "protective dispositions", providing affected children with support services and legal aid and ensuring their access to justice, including compensation and redress;**

(e) **To strengthen awareness-raising, including in schools, and encourage the reporting of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through accessible, confidential, child-friendly and effective channels;**

(f) **To ensure that sex offenders, including teachers, are prosecuted, regardless of the evidence of coercion, and duly sanctioned, and align the penalties for sexual offenc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Harmful practices**

30.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child marriage within the migrant community may be authorized with parental consent and that cases of marriage involving migrant and foreign girls have been reported.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hibit child marriage without exception and to take all measures, including cooperation with the countries of origin and establishing access to the civil registration procedures for migrants and refugees, to prevent and eradicate this practice.**

## E.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arts. 5, 9–11, 18 (1) and (2), 20, 21, 25 and 27 (4))

**Family environment**

31. **The Committee welcomes the expansion of free childcare,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for working parents, paternal leave and support to single-parent families, as well as the adoption of the Act on Enforcing and Supporting Child Support Payment.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Further increase the capacity and appropriate flexibility of childcare services and ensure that all children, irrespective of nationality, have equal access to childcare facilities and financial support, including by amending the Infant Care Act;**

(b) **Further facilitate access to and use of paternal leave;**

(c) **Ensure visitation rights for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including by expanding the number of "visitation centres" and providing alternative solutions;**

(d) **Promote and ensure access to and the enforcement of child support payments and also ensure that sanctions for non-compliance do not compromis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e)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and eradicate stigma and discrimination against single-parent families and revise child support entitlements accordingly.**

**Children deprived of a family environment**

32. **Drawing the State party's attention to the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4/142, annex),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Support and facilitate family-based care for all children wherever possible, allocate adequate human,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to expand and enhance the quality of foster care for children who cannot stay with their families and phase out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a concrete plan of action;**

(b) **Address the root causes of child abuse within the family, also address the reasons why children run away from home, take targeted, non-punitive measures to prevent and eradicate these phenomena and intensify protection for runaway children;**

(c) **Ensure adequate safeguards and clear criteria, based on children's needs, best interests and views and having due regard for their age and maturity, for determining where and when to place them in alternative care; ensure the periodic review of the quality of alternative care and access to complaints procedures; and intensify reunification support and support for children in care reaching adulthood;**

(d) **Streamline the guardianship procedure and strengthen guardians' protection capacity.**

**Adoption**

33. **While welcoming the measures taken to regulate adoptions, including through court authorizations, the Committee reiterates that the State party should:**

(a) **Ensure that the child's best interests ar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in the adoption procedures for children of all ages and that single mothers' free consent is mandatory for the release of their children for adoption;**

(b) **Conduct large-scale public campaigns to combat prejudice against single mothers and promote a positive image of adoption;**

(c)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avoid unnecessary delays in procedures and to ensure that adoption agencies operate in a transparent manner and that their activities are duly regulated;**

(d) **Strengthen post-adoption monitoring and services, including in cases of dissolved adoptions;**

(e) **Ensure that adopted children are informed of their right to seek and have appropriate access to information on their biological parents;**

(f) **Consider ratifying the Hagu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enact the draft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Illicit transfer and non-return**

3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adopting th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Enforcement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Parental Responsibility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covery of Child Support and Other Forms of Family Maintenance.**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3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 policy to protect the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nd the visitation rights of these children. Children**

**staying in prison with their parents should have their rights, including the rights to education and health, guaranteed and their needs fully covered.**

## F. Disability, basic health and welfare (arts. 6, 18 (3), 23, 24, 26, 27 (1)–(3) and 33)

### Children with disabilities

36. **The Committee notes the adoption of a comprehensive pla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increase in education professionals, in training and in the budget allocated to meeting the need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ith reference to its general comment No. 9 (2006) on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a) **To review legislation and policies to adopt a rights-based approach to disability and ensure the inclusion of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b) **To ensure that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programmes, including rehabilitation treatment, appropriate welfare and medical support, are provided countrywide to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asylum-seeking and migrant children with disabilities;**

(c) **To provide inclusive education for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by ensuring the presence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the school infrastructure, in places for sport and leisure, in school transportation, in training and by assigning specialized teachers and assistants to provide individual support;**

(d) **Undertake awareness-raising campaigns to promote a positive imag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combat stigmatization and prejudice.**

### Health and health-care services

37. **The Committee welcomes the extension of vaccinations to undocumented children.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 No. 15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nd target 3.8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achiev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including financial risk protection, access to quality essential health-care services and access to safe, effective, quality and affordable essential medicines and vaccines for all, the Committee recalls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to increase the health budget and strengthen local hospitals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nsure universal access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especially for 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of children and migrant children;**

(b)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vaccinations for migrant children;**

(c) **Strengthen health-care assistance in nurseries and schools, including for diabetic and obese children.**

### Mental health

38. **While noting the measures taken to counter child suicide,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arget 3.4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promoting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nd reiterates that the State party should continuously strengthen its efforts to improve children's mental well-being, including by focusing on preventing suicides and their root causes.**

### Adolescent health

39.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s No. 4 (2003) on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and No. 20 (201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during adolescence, as well as target 2.2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ending all forms of malnutrition, target 3.5 of the Goals on strengthening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ubstance abuse,**

**including narcotic drug abuse and harmful use of alcohol, and target 5.6 of the Goals on ensuring universal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eproductive rights, the Committee recalls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obesity, smoking and drinking, including by imposing stricter regulations on alcohol advertising, increasing the number of smoke-free spaces, promoting sports and physical activities and encouraging children's participation in life-skills education on preventing substance abuse. Furthermore,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Strengthen its response to the problematic and excessive use of smartphones by targeting groups at risk and building the capacity of the Community Youth Safety Net to provide specific support and recovery services;**

(b) **Effectively addressing adolescent pregnancy, including by strengthening sexuality education at school, support services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postnatal care, ensuring parenting support and promoting equally shared parenting.**

**Standard of living**

40. **While welcoming the introduction of child benefits for children under 7 years of ag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nsure that all children, irrespective of nationality, have access to child benefits;**

(b) **Conduct a study on the status of children living in poverty and collect relevant statistics to inform, adopt and implement its master plan to support children in poverty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standard of living of all children;**

(c) **Assess and effectively address housing poverty among children and the prevalence of part-time employment among children.**

## G.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rts. 28–31)

**Education and the aims of education**

41. The Committee welcomes the adop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Regulation of Prior Learning, which aims to eradicate the practice of prior learning (i.e. the taking of private classes at the preschool level in preparation for school), the extension of the school admission quota for vulnerable groups of children, the introduction of the "free semester system" and the provision of support to out-of-school children. However, it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excessive academic burden, accompanied by sleep deprivation and high levels of stress, which is a leading cause of suicide among children in the State party. It is also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highly competitive education conditions, which virtually deprive children of their childhood, and also about:

(a) The ever-increasing reliance on private tuition, which is conditional on parents' income and starts in preschool;

(b) The limited access to education, the low levels of school integration and the higher school dropout rates for children from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groups;

(c) The fact that the right to compulsory education is guaranteed to childre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le refugee, migrant and undocumented children may not be admitted into school at the discretion of the school principal and about the limited access to school services for undocumented children;

(d) The dominance of special school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dearth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accommodation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strong stigma faced by children with disabilities;

(e) Insufficient support for out-of-school children and children attending alternative schools;

(f) Educational disparitie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g) The lack of adequate and age-appropriate education on sexuality, in the context of adolescent pregnancies and increased HIV prevalence;

(h) The inadequacy of career counselling services, which do not take into account children's views, thereby increasing children's vulnerability to dropping out of school;

(i) The prevalence of bullying and discrimination in schools, including in relation to academic achievement;

(j) The severe lack of time and of free and safe facilities for leisure, play and physical exercise for children, which, coupled with social pressure to excel academically, contributes to smartphone overuse for recreation.

42. **Recalling target 4.5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eliminating gender disparities in education and ensuring equal access to all levels of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for the vulnerable,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s and children in vulnerable situation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reform its public education system in line with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2001) on the aims of education and with a view to reducing competitiveness, including by diversifying the national curriculum, reconsidering its college admissions system and strengthening career counselling. Furthermore, it urges the State party:**

(a) **To reduce the reliance on private education, monitor the compliance of public and private schools with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Regulation of Prior Learning and impose sanctions in case of non-compliance;**

(b) **To review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to ensure compulsory education for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origin, place of residence, socioeconomic and migration status and registration as immigrants; strengthen the monitoring of the quotas issued under the Social Integration Admission System to prevent corruption and abuse; and intensify and promote educational support to children in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situations, including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children, rural children, out-of-school children, children with disabilities, migrant children, undocumented children, multicultural children and refugee children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facilitate and ensure their access to and integration in mainstream schools;**

(c) **To ensure the provision of inclusive education and reasonable accommodations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romote a positive image of such children;**

(d) **To strengthen efforts to identify and effectively address the root causes of children dropping out of school and assess the magnitude of the phenomenon; take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measures to ensure that all children are supported and remain in mainstream schools; and raise awareness about alternative classes and schools and ensure that all alternative schools are accredited and their diplomas are recognized;**

(e)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including by strengthening the training of teaching personnel, including by increasing the availability of such training, improving school infrastructure and increasing dedicated budgets;**

(f) **To provide age-appropriate sexual education, paying special attention to preventing adolescent pregnancies and HIV/AIDS and adequately covering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nd remove discriminatory and gender stereotypical language from the national standard on school sexual education;**

(g) **To strengthen and diversify career counselling and the free semester system,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out-of-school children, and ensure that children's views form the basis for their career choices;**

(h) **To prevent and combat discrimination, including achievement-based discrimination, in schools; effectively investigate and address allegations of discrimination; and provide training on stress reduction and emotional stability;**

(i) **To strengthen measures to combat bullying, including cyberbullying, and ensure that such measures encompass prevention, early detection mechanisms, the empowerment of children and professionals, intervention protocols and harmonized guidelines for the collection of case-related data;**

(j) **To undertake awareness-raising programmes and public campaigns to change the perception of and attitudes towards rest, leisure and play as key factors to children's development and ensure that all children have access to rest and leisure, including sports, as well as sufficient time and facilities to engage in play and recreational activities that are safe, inclusive, smoke-free, age-appropriate and accessible, including by public transport.**

## H. Special protection measures (arts. 22, 30, 32–33, 35–36, 37 (b)–(d) and 38–40)

### Asylum-seeking, refugee and migrant children

43. **The Committee welcomes the adoption of the Refugee Act in 2012. With reference to joint general comments No. 3 and No. 4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No. 22 and No. 23 (2017)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a) **To prohibit the immigration detention of children, including by revising the Immigration Control Act, ensure non-custodial solutions and keep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s a primary consideration in asylum and family reunification matters;**

(b) **To develop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for refugee and stateless children, regulate the status of long-term resident migrant children and strengthen training on the rights of asylum-seeking, refugee and migrant children, including undocumented children;**

(c) **To remove all barriers, both legislative and practical, to ensure that all asylum-seeking, refugee and migrant children, including unaccompanied children and those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birth registration, childcare,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mental and physical health-care services, health insurance, financial and housing support, leisure,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in case of abuse on an equal basis with children who are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d) **To adopt and implement an act on the rights of migrant children that is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need to protect unaccompanied children;**

(e) **To develop campaigns to counter hate speech against asylum seekers and refugees, particularly children;**

(f) **To strengthen the collection of data on migrant children, including undocumented children;**

(g) **To earmark a budget for refugee, asylum-seeking and migrant children.**

### Economic exploitation, including child labour

44. **The Committee welcomes the policy measures taken to improve the labour conditions of working children and business oversight. Considering the persistently high number of working children, the violations of their labour rights and the verbal abuse to which they are subjected, and taking note of target 8.7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 taking immediate and effective measures to eradicate forced**

**labour, end modern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secure the prohibition and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and by 2025 end child labour in all its forms, the Committee reiterates that the State party should strengthen inspections and reporting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measures by establishing mechanisms for accountability and rehabilitation.**

**Sale, trafficking and abduction**

45. **While welcoming the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 party reportedly remains a country of origin, transit and destination for child trafficking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particularly through online recruitment. Again recalling target 8.7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lign the definition of trafficking with international law to remove the requirement of coercion, remuneration and transnational movement of the victim;**

(b) **Improve the identification and referral of child victims, especially among vulnerable populations, including by training police, immigration, labour and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implement the victim identification guidelines;**

(c) **Ensure that cases involving the sale and abduction of and trafficking in children are effectively investigated and that perpetrators are prosecuted and sentenced to penalties commensurate with the gravity of the offences and establish an entity for coordinating anti-trafficking matters and teams charged with investigating cases of trafficking and prosecuting those responsible;**

(d) **Ensure that children who have been sold or trafficked are not treated as offenders or subjected to criminal sanctions and deportation and that they are never held in closed institutions;**

(e) **Strengthen the provision of shelters and integrated services to child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cluding boys, foreign childr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Administration of child justice**

46. The Committee welcomes the amendment to the Juvenile Act making it possible to count the period spent in a juvenile reformatory as part of the final sentence. However, it is concerned about:

(a) The existence of two parallel systems for processing and treating cases of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

(b) Proposals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13 years and that 10-year-old children can be detained under the Juvenile Act;

(c) Article 4 (1) (3) of the Juvenile Act, which provides for the detention of "crime-prone juveniles" in the absence of an actual offence;

(d) Reports of violations of children's fair trial rights, including the non-involvement of guardians from the investigation onwards, the use of forced confessions, the lack of access to evidence and appeal, breaches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right to defend oneself, publicity of the trial and making conditional the right to legal assistance;

(e) Higher detention rates among children compared with adults;

(f) Inappropriate conditions of detention, including overcrowding and insufficient medical assistance, education, training, leisure and food, especially for girls; restrictions on communications, petitions and outdoor exercise; the absence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children with minority backgrounds; and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children in detention;

(g) Cases of children detained together with adults;

(h) Unnecessary and compulsory DNA and HIV testing for child detainees; the isolation of child detainees with HIV; the imposition of compulsory body checks and haircuts on child detainees; and the continuous filming of sanitary facilities;

(i) The overuse of discretionary disciplinary measures, such as solitary confinement, restrictions on family visits and remote disciplinary transfers;

(j) Use of handcuffs, ropes and other devices, and the use of electric shocks, despite such use being prohibited by law;

(k) The lack of non-custodial measures to prevent reoffending.

47.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a) **Establish a system, with adequate resources, of specialized child justice courts for all cases involving children in contact with the law and ensure that specialized judges for children and professionals working with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 receive appropriate education and continuous training on the rights of the child;**

(b) **Maintain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t 14 years and ensure that children below that age are not treated as offenders and are never placed in detention;**

(c) **Ensure that fair trial guarantees are respe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of the Convention, also ensure that the public is excluded from hearings for cases involving children and that children's legal guardians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from the very beginning, provide and promote confidential channels for reporting violations and establish guidelines for media outlets reporting on cases involving children;**

(d) **Ensure, in law and in practice, the provision of qualified legal assistance to all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 from the investigation onwards and establish a system of legal aid;**

(e) **Repeal article 4 (1) (3) of the Juvenile Act on "crime-prone juveniles";**

(f) **Establish a legal basis for diversion programmes and promote non-custodial sentences;**

(g) **Establish clear grounds for detention in the Juvenile Act, use detention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period of time, ensure that detention is reviewed on a regular basis with a view to its withdrawal, ensure that the period under the "protective disposition" and the period of "entrustment to the juvenile classification" are counted towards the final sentence, and establish and ensure the right to appeal an order of detention and the right to compensation for unlawful detention;**

(h) **Ensure that detention conditions, including for temporary detentions,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with regard to personal space, equally for boys and girls, access to food, educati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services, exercise, leisure, communication with the family and complaints mechanisms; that children deprived of their liberty are held in facilities close to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that detention facilities, including child welfare institutions, undergo continuous monitoring;**

(i) **Revise its legislation and take all effective measures to eliminate any possibility that a child is detained with adults;**

(j) **Abolish the use of confinement and transfers as disciplinary measures and promote restorative measures instead;**

(k) **Regulate the use of force and protective devices in relation to children and ensure that such use is limited to specific circumstances and that it is necessary and proportional;**

(l) **Ensure that the privacy of children in detention is respected, prohibit DNA collection and HIV testing for child detainees and clear any records thereof, handle HIV-related information with confidentiality, end the isolation of child detainees with HIV and prohibit compulsory body checks and haircuts, as well as continuous filming in sanitary areas;**

(m) **Strengthen non-custodial measures to prevent reoffending;**

(n) **Ensure that all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 are treated equal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disability status,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and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whenever appropriate.**

**Follow-up to the Committee'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48. **The Committee regrets the in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f 2008 (CRC/C/OPSC/KOR/CO/1) on the State party's initial report under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t therefor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and recommends that:**

(a) **All acts and activities listed in the Optional Protocol, including the sal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travel and tourism, be fully covered under domestic criminal law;**

(b) **The requirements of double criminality and minimum gravity be removed in cases of extradition for violat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which should be considered as a legal basis for extradition;**

(c) **International travel restrictions for convicted child sex offenders under the Passport Act be applied systematically.**

**Follow-up to the Committee's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Optional Protocol on children in armed conflict**

49. **The Committee regrets the in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its concluding observations of 2008 (CRC/C/OPAC/KOR/CO/1) on the State party's initial report under the Optional Protocol on children in armed conflict. It therefore recalls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and recommends, in particular, that the State party:**

(a) **Criminalize the recruitment in the armed forces or non-State armed groups and the involvement in hostilities of children under 18 years of age;**

(b) **Establish mechanisms for the early identification of asylum-seeking children from conflict areas, collect disaggregated data on such children and strengthen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vided to them;**

(c) **Promote and raise awareness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ensure that its provisions are included in the curricula of military schools.**

## I.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5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order to further strengthen the fulfilment of children's rights,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 J.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5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order to further strengthen the fulfilment of children's rights,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K. Cooperation with regional bodies

5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operate with, among others,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 IV. Implementation and reporting

### A. Follow-up and dissemination

5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are fully implemented.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fifth and sixth combined periodic reports and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be made widely available in the languages of the country.**

### B. Next report

54. **The Committee invites the State party to submit its seventh periodic report by 19 December 2024 and to include therein information on the follow-up to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The report should be in compliance with the Committee's harmonized treaty-specific reporting guidelines adopted on 31 January 2014 (CRC/C/58/Rev.3) and should not exceed 21,200 word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8/268, para. 16). In the event that a report exceeding the established word limit is submitted, the State party will be asked to shorten the report in accordance with the above-mentioned resolution. If the State party is not in a position to review and resubmit the report, translation thereof for the purposes of consideration by the treaty body cannot be guaranteed.**

55. **The Committee also invites the State party to submit an updated core document, not exceeding 42,400 word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for the common core document contained in the harmonized guidelines on reporting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guidelines on a common core document and treaty-specific documents (see HRI/GEN/2/Rev.6, chap. I) and paragraph 16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8/268.**

유엔 CRPD/C/KOR/CO/2-3

장애인권리협약

배포: 일반

2022년 9월 9일

**ADVANCE UNEDITED VERSION**

원문 언어: 영어

**장애인권리위원회**

#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1)*

## I. 서론

1.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2년 8월 24일과 25일 개최된 제598차 및 제599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였고, 2022년 9월 5일에 개최된 제614차 회의에서 본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2. 위원회의 보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된 대한민국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환영하며, 위원회가 작성한 쟁점목록에 대해 서면답변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당사국에 감사를 표한다.

3. 위원회는 다양한 관계부처의 대표로 구성된 당사국 대표단과의 유익하고 진실된 대화에 대해 감사한다.

## II.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특히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다음의 입법적 조치를 환영한다.

(a) 2021년 12월, 2008년 협약 비준 시 제25조(e)항에 대한 유보 조치에 대한 철회

(b) 2016년, 한국수어를 당사국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인정한 「한국수화언어법」 채택

(c) 2017년, 점자를 한글과 함께 당사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자 한글과 동일한 지위임을 규정한 「점자법」 채택

(d) 2018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채택

(e)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채택

* 위원회의 27차 회기(2022년 8월 15일 – 2022년 9월 9일)에서 채택함.

# III. 주요 우려 및 권고 사항

## A. 일반 원칙 및 의무(제1조~제4조)

5.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복지법」 상 수정된 장애 정의 등 장애 관련 법과 정책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시청각장애인과 HIV/AIDS가 있는 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의 특정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b) 최근 장애등급제가 6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내에서 장애등급제를 포함하여 여전히 장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c) 협약이 인정하는 권리에 대해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의사, 보건 및 기타 장애인 관련 전문 업무 종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함.

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기존의 장애인 관련 국내법과 정책들을 검토하여 이를 협약의 조항과 부합하도록 하고, 모든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HIV/AIDS가 있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장애의 개념을 채택하여, 이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장애의 의학적 모델의 요소를 장애의 인권적 모델의 원칙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환경적 장벽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완전한 사회 포용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장애판정제도의 방향을 재설정할 것;**

**(c)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의사, 보건 및 기타 장애인 관련 전문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국의 협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7.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선택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9. 위원회는 장애 관련 법,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가 부족함을 우려한다.

10. **위원회는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해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일반논평 제7호(2018)를 상기하며, 당사국이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해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이행하며, 장애아동, 지적 및/또는 심리사회적 장애인, 간성(intersex) 장애인, 여성장애인, 이주 장애인 및 난민, 자폐성장애인, 장애가 있는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성별이 다양한 사람, 높은 수준의 지원을**

**요하는 장애인 등 모든 유형의 장애인단체와 의미 있는 협의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B. 구체적 권리(제5조~제30조)

### 평등 및 비차별(제5조)

11.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특히 장애여성, 이주 장애인, 성소수자 그리고 HIV가 있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의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인지하지 않고 있음;

(b)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보편적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부터 배제하고 있다는 것;

(c)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형태라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

(d)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 부담으로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

12.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6호(2018)와 지속가능발전목표 10.2 및 10.3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현존의 차별금지 법령,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하고, 장애에 기반한 여러 가지의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과 그것이 연령, 성별, 인종, 민족, 성정체성, 성적지향 또는 어떠한 다른 지위에 기반한 차별과 교차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의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b)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협약에 부합하도록 검토하여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보편적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

**(c)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은 상대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면제시키고, 추가적 비용 또는 행정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가능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보장할 것;**

**(d) 합리적 편의 제공 거부를 장애에 기반한 차별로 인식하고, 그러한 차별에 대한 보고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보장할 것.**

### 장애여성(제6조)

13.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여성 및 여아의 차별, 소외, 배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장애 관련 법 및 정책에 관하여 젠더 관점의 부재와 젠더 관련 법 및 정책에 관한 장애 관점의 부재;

(b) 장애인 권리에 관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성 인지적 예산 편성의 부재;

(c) 국내 법률 체계에서는 장애여성 및 여아에 대한 교차적 차별을 명백히 다루지 않으며, 장애여성 및 여아가 직면한 여러 가지의 교차적인 차별에 대한 데이터와 연구가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고안하는 관점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음;

(d) 고용, 공적·정치적 생활, 의사결정 그리고 사법적 영역에 있어 장애여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부재.

14. **위원회는 장애여성 및 여아에 대한 일반논평 제3호(2016)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5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모든 젠더 관련법에 장애여성 및 여아의 권리를 주류화하고, 특히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8)과 장애 관련 의제를 비롯한 장애인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주류화함과 동시에, 젠더 및 장애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와 이행에 있어 장애여성 및 여아와 협의하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일반적 장애 문제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이 성 평등 관점에 기반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c) 장애여성 및 여아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입법 과정에서 인식하고, 젠더 관점과 교차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입법과 전략을 도입할 것;**

**(d) 모든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여성과 여아의 참여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들의 역량강화 및 완전한 포용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당사국은 정부기관과 사법부를 포함하여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정치적 영역에서 장애여성이 대표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

**장애아동(제7조)**

15.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아동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장애아동과 협의하고 이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의 부재;

(b) 장애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부족;

(c) 놀이터의 0.03%만이 접근 가능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놀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점.

16. **아동권리위원회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장애아동 권리에 관한 공동성명(2022)을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구성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동의 발달 능력을 존중하며, 이러한 견해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히 고려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

**(b)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생활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아동을 포용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

**(c) 놀이터가 모든 장애아동에게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검토할 것.**

**인식 제고(제8조)**

17.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사회와 미디어에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및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며,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동반한 장기적인 전략 부재;

(b) 정치권과 소셜미디어에서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 부정적 고정관념, 편견 및 널리 퍼져있는 증오와 비하 표현의 지속.

1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편견에 맞서는 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이 결과를 모니터링 할 것;**

**(b)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능력 및 기여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정책입안자, 사법부, 법집행관, 언론인, 정치인, 교육자, 장애인과 함께 혹은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 그리고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과 인식제고 모듈을 모든 교육 수준에서 모든 접근 가능한 형식과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입할 것.**

**접근성(제9조)**

19.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물의 규모 및 건축 연도와 관련한 일부 면제 조항이 있어 공공건물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저해되고 있음;

(b) 정보통신기술 및 시스템의 부족을 비롯하여, 협약에 따른 모든 범위의 접근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부족;

(c) 2022년 1월 특별교통수단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가 제외되었다는 점과 버스 번호 및 노선, 탑승안내 등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여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버스 이용을 저해함;

(d)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가로막는 디지털 업무 환경의 장벽.

20. **접근성에 관한 일반논평 제2호(2014)와 지속가능발전목표 9 및 세부목표 11.2와 11.7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건물의 규모, 수용가능 범위 및 건축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무 규정을 포함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할 것;**

**(b) 협약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접근성을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c)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특히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광역버스와 관련하여,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버스의 수량을 늘리고, 버스 번호와 경로, 탑승안내 등의 정보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될 것을 보장한다. 환경과 공공장소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d) 공공·민간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모든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이 교육시설과 가정 양쪽에서 디지털 기술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생명권(제10조)**

21.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매우 우려한다.

(a) 자폐성장애인과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높은 자살률 및 실종률과, 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례;

(b) 거주시설에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의 장애인들의 사망.

22.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 자살 및 실종 방지를 위한 국가적 전략을 자폐성장애인과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채택하고 시행하며, 장애인 대표 단체들을 통해 장애인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b) 지역사회 내 안전한 자립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의 긴급 탈시설화를 개시하는 조치를 장애인단체 및 독립적 모니터링 기구와 협의하여 개발할 것.**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상황(제11조)**

23.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2018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장애인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재난위험감소 계획과 정책 및 절차규정이 부족함;

(b)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의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Make the Right Real) 인천전략 목표 7의 국가적 차원의 이행과 보고 과정에 있어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의 참여가 저조함.

24.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모든 장애인, 특히 아동, 여성, 심리사회적 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감각 장애인에게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재난위험감소 계획을 채택하는 것을 가속화할 것;**

**(b)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11 및 13에 따라, 국가 및 지역수준의 모든 재난 위험 경감과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설계하고 이행할 때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단체를 통해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할 것.**

25.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장애인이, 특히 아직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아 왔으며, 비상상황 정보 및 기기에 접근하는 데 장애인이 장벽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26. **위원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장애포괄적 대응에 관한 지침과 정책 브리핑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백신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 계획과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기타 경제적·사회적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주류화할 것;**

**(b) 장애인의 비상 시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내 생활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할 것;**

**(c)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과 그 대표 단체들을 참여시킬 것;**

**(d) 위기 및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에서 모든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접근 가능한 방식과 적절한 기기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법 앞의 동등한 인정(제12조)

27. 위원회는,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 손상을 근거로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제도와 대체 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해 가는 데 있어 진전이 부족하고, 이 제도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일정계획이 부족함을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접근 가능한 형식의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이전 권고사항(CRPD/C/KOR/CO/1, para. 22)을 재강조하며 법 앞의 동등한 인정에 대한 일반논평 제1호(2014)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후견제와 피후견제를 포함한 대체 의사결정제도를, 개별화된 지원 제공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율성,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 제도로 대체할 것;**

**(b)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인식 및 의사결정지원 제도에 관한 개혁 과정 및 관계자 훈련에서 장애인이 그 대표 단체들을 통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c)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정보를 점자, 수어, 알기 쉬운 버전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배포할 것.**

### 사법에 대한 접근(제13조)

29. 위원회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온전히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약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30. **위원회는 이전 권고사항(CRPD/C/KOR/CO/1, para. 24)과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이 2020년에 발표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국제원칙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16.3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을 위한 사법 접근에 관한 행동계획과 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막는 모든 제약을 철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및 사법적 조치를 협약에 부합되게 채택할 것;**

**(b) 장애인이 법적 절차의 다양한 측면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지원 제공 등 절차적인 조정을 취할 것;**

**(c)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점자, 수어, 알기 쉬운 버전, 음성 및 화면해설과 같은 정보 및 의사소통의 보완 대체 수단을 개발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적용하고, 모든 사법 시설에 대해 접근 가능한 교통 수단 등 물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할 것;**

**(d) 법관과 법 집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협약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e)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개별화된 지원을 보장할 것.**

### 신체의 자유 및 안전(제14조)

31. 위원회는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장애인이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는 법의 적용을 받으며, 감금을 포함한 임의적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한다.

32. **위원회는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인지된 자타해위험과 손상을 근거로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한민국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과 조항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 조항들을 폐지하고, 손상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시설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예를 들어 심문 및 구금할 때를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절차적 조정과 같은 비차별을 보장하는 법률을 도입하며,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회복시킬 것;**

**(b)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장애인이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치료, 특히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제15조)

33. 위원회는 가정 환경, 정신 병원, 병원, 교도소 및 교육 서비스에서 특히 지적 장애인과 심리 사회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격리, 정신적, 화학적, 기계적 구속 및 기타 형태의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34. **위원회는 당사국에 향정신성 약물, 신체적 구속의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a) 사법, 교육, 보건, 심리사회적 시설 및 노인 요양 시설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 모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것. 또한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b) 아직 시설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진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가해자를 조사하고 제재하여 행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할 것.**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제16조)**

35.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일반 대중과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모든 형태의 장애인 착취, 가족, 학교 및 직장을 비롯한 모든 상황에서 폭력 및 학대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이 부족한 점;

(b)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은 점과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정보 및 통계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점;

(c)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포함하여,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여아를 위한 접근 가능한 보호시설의 부족;

(d)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 인식을 위한 종사자, 돌봄제공자, 장애인 가족, 간병인 및 사법종사자 대상 훈련의 부족.

3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장애인과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하며, 장애인이 학대를 피하고 인식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갖도록 보장할 것과 착취, 폭력 및 학대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진정 절차에 접근할 수 있고 재활을 포함하여 보상 및 충분한 배상과 같은 적절한 구제방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효과적 이행 및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내외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근절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개발 및 실행할 것;**

**(c) 지원센터와 긴급 쉼터를 포함하여,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인 장애여성과 여아를 위한 서비스가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제공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것;**

**(d) 장애인 가족과 돌봄제공자, 간병인 및 사법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인식하고, 폭력의 피해자인 장애인과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인의 완전함 보호(제17조)**

37. 위원회는 장애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당사국이 실시한 조사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여성과 여아,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과 여아의 강제 불임과 동의 없는 임신 중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이 명시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례를 파악, 조사 및 후속 조치하고 해당 사례에 대해 완전한 시정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강제 불임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 및 국적의 자유(제18조)**

39. 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이주 장애인의 기본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40. **위원회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이주 장애인이 기본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권고한다.**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제19조)**

41.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한 예산 및 다른 조치를 포함한 노력의 부족,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부족, 그리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권리와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 및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 거주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와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

(b) 기존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여성 및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화 전략의 미진한 실행과, 장애인, 특히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지적 및/또는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재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함.

42. **위원회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동참에 관한 일반논평 제5호(2017)와 위원회의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검토하고 충분한 예산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할 뿐 아니라, 생활 환경에 관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특정 생활 환경에서 살 의무가 없는 권리,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포용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해당 로드맵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할 것;**

**(b)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있는 성인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탈시설화를 위한 탈시설화 전략의 실행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제21조)**

43.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공공 및 민간 매체 모두, 특히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 및 알기 쉬운 버전, 평이한 언어, 자막, 수어, 점자, 음성해설,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제공이 불충분하며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함;

(b)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기타 접근 형식, 방법 및 통신 수단을 통해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못함.

44.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점자, 시청각장애인 통역, 수어, 알기 쉬운 버전, 평이한 언어, 음성해설, 자막과 같은 접근 가능한 의사 소통 형식에 대한 개발, 홍보, 사용을 위한 적절한 자금을 할당하여 모든 장애인이 텔레비전 및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것;**

**(b)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기타 접근 형식, 방법, 통신 수단을 통해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할 것.**

**사생활의 존중(제22조)**

45. 위원회는 실종예방 목적의 GPS추적장치가 자폐성장애인, 지적 및/또는 심리사회적 장애인에게 안내된 동의와 자유 없이 발부되며, 그 결과 이들의 사생활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4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 특히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신경 다발성 장애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동의에 따라 GPS 추적 장치가 발급되도록 조치할 것;**

**(b) 협약 및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부합하는 실종 방지 정책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제23조)**

47.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후견제도 하에 있는 지적장애인의 가족, 부모, 관계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 내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음;

(b) 장애아동과 그 가족 및 장애인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지원이 부족함.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여성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의 책임을 수행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

**(b) 장애인 가족이 가정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및 정책적 조치를 도입할 것.**

**교육(제24조)**

49.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당사국은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지하고 있고, 특수학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여전히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 중복 장애를 포함한 장애아동의 수가 많음;

(b) 점자, 수어 및 접근 가능한 교수법으로 훈련된 교사와 지원인력의 수가 부족하고 통합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에 대한 교사 훈련 수준이 불충분함;

(c)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교육부 지원을 받지 못함.

50. **위원회는 포용적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4호(2016)와 지속가능발전목표 4.5를 상기하고, 이전 권고안(CRPD/C/KOR/CO/1, para. 46)을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a) 교육 시 필요 사항 및 필요한 편의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 교육의 포용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포괄적인 통합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통합교육에 대해 교사 및 비교육 인력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

**(b) 장애학생에게 포용적 디지털 접근과 같은 대안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의 보조기구 및 학습자료, 그리고 알기 쉬운 자료, 의사소통 보조장치, 보완적 정보 통신기술을 포함한 의사소통 방식과 수단을 제공할 것;**

**(c) 보건복지부 산하 분리적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으로 편입되도록 보장할 것.**

**건강(제25조)**

51. 위원회는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는 「상법」 제732조의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계약을 인정하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의 건강권은 임신, 분만, 출산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52. **위원회는 협약 제25조와 지속가능발전목표 3.7과 3.8의 관계를 고려하고, 이전 권고사항(CRPD/C/KOR/CO/1, para. 47)을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상법」 732조를 폐지하고 성·재생산 건강 및 서비스,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여성 건강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구체적 사업을 개발 및 실행할 것;**

**(b) 기술, 지원 조치, 정보통신수단 및 방법을 포함하여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개발하고 장애인, 특히 지적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장애여성 및 여아를 위해 점자, 수어 및 알기 쉬운 버전을 포함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

**가활 및 재활(제26조)**

53. 위원회는,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지원이 당사국 국민 외에 장기 거주자 및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만 가능하며, 장애인은 등록이 필요하여 외국인 장애인은 의료 및 재활치료, 직업훈련 및 활동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활 및 재활 시스템을 확장하고 국적과 체류 상태에 관계없이 장애인이 각자 필요 사항에 따라 가활 및 재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근로 및 고용(제27조)**

55.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노동 시장에서 지적 및/또는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률이 존재함;

(b) 「최저임금법」은 장애인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많은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음;

(c)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지속적인 분리 및 이러한 작업장에서 개방된 노동 시장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점진적으로 이동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함.

56. **위원회는 장애인의 근로 및 고용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22)를 상기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8.5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개방된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차별적 법률을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특히 광고, 채용 절차, 합리적 배려, 재교육, 승진 등 업무 및 고용과 관련된 기타 권리에 관련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

**(b) 「최저임금법」을 검토하여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하고,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것;**

**(c) 탈시설화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개방된 노동 시장에서의 노동과 고용에 대한 접근성과 포용적 작업 환경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d) 장애인이 보호 고용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개방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의 참여 증대를 위한 할당제를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특정적으로 고안된 적극적 우대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보장할 것.**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제28호)**

57.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 소득 및 사회보장 정책 하에 당사국에서 높은 생계비용을 보전할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액수가 불충분함;

(b)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에도 일부 장애인은 여전히 연금제도에서 제외됨;

(c) 이주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을 마친 후에도 장애인 연금 등 필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음.

58. **위원회는 협약 제28조와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역량강화와 경제적 포용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0.2의 관계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및 빈곤감소 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장애수당 금액을 검토할 것;**

**(b)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여 장애인 연금 제도의 자격을 확대할 것;**

**(c) 이주 장애인 및 난민이 기초 생활 보장 또는 장애인 혜택과 같은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제29조)**

59.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치료과정 중에 있는 장애인 및 구금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선거과정에서 제외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조항;

(b) 과소 대표되는 청각장애인, 지적 및/또는 심리사회적 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부족함;

(c) 장애인의 효과적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공개 선거 토론, 선거 프로그램, 온라인 또는 인쇄된 선거 자료를 포함한 선거 정보뿐만 아니라 투표소, 투표 절차, 시설 및 자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

60.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모든 차별 조항을 폐지하고 선거 과정과 정치 및 공적 생활에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할 것;**

**(b) 대표로 선출되었을 경우를 포함해, 농인, 지적 및/또는 심리사회적 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여성장애인 등 소외된 장애인 집단의 평등과 참여를 보장하고, 입후보한 장애인 후보자, 특히 소수정당에 입후보한 장애인 후보자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할 것;**

**(c) 선거 및 투표 절차, 투표시설, 온라인 또는 인쇄된 선거 자료를 평이한 언어와 알기 쉬운 버전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여 모든 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제30조)**

61. 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부족과 특히 장애아동을 비롯한 장애인의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체육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62.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 대표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라케시 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C. 구체적 의무(제31–33조)

**통계와 자료 수집(제31조)**

63. 위원회는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할 때 직면하는 장벽에 대한 분리된 데이터의 수집 및 공개적인 보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일관된 조치가 부족함에 대해 우려한다.

64. **위원회는 장애에 관한 워싱턴 그룹 간이질문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의 장애인 포용 및 역량강화에 관한 정책마커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연령, 성별, 성적지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주 상태, 교육수준, 고용 상황, 거주지별로 분리된 장애인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것. 시스템과 절차는 기밀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b) 장애인의 권리 이행에 대한 장벽 파악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산을 할당할 것. 당사국은 장애인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구축해야 할 것;**

**(c)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된 장애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알리기 위해 양적 및 질적 방법을 아우르는 독립적이고 참여적인 연구를 지원할 것.**

**국제협력(제32조)**

65. 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개발협력 노력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특히 여성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의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에 우려한다.

66.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다루는 지역단위의 프레임워크로서 인천전략을 비롯한 국제협력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개발과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이들 단체가 참여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국내적 이행 및 감독(제33조)**

67.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1년에 불과 0회에서 3회 소집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함;

(b)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가 2021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재승인 시 권고한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와 재정적 자율성 보장에 대한 이행 진전이 부족함.

6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개최 주기를 보다 짧게 하여,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할 것;**

**(b) 국가인권위원회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의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 및 재정적 자율성 보장에 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인적자원을 강화할 것.**

# IV. 후속 조치

**정보의 배포**

69.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모든 권고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긴급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6조와 제19조의 권고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70.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당사국은 정부와 국회의원, 관계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자, 의료 종사자, 법조인, 언론인 등 관련 직군 구성원에게 본 최종견해를 숙고하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현대의 사회적 의사소통 전략을 활용하여, 배포할 것을 권고한다.**

71.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기보고서 준비에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킬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72.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최종견해를 비정부기구 및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 수어를 포함한 자국어와 소수자 언어 및 알기 쉬운 버전 등 접근 가능한 형태로 널리 배포하고, 이를 인권 관련 정부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다음 정기 보고**

73. **당사국은 정기보고와 관련하여 간소화된 보고 절차를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보고 전에 쟁점목록을 작성하고, 당사국이 쟁점목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당사국은 2031년 1월 11일까지 답변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4~6차 병합 정기보고서가 될 것이다.**

United Nations CRPD/C/KOR/CO/2-3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tr.: General
6 October 2022

Original: English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 I. Introduction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1] at its 598th and 599th meetings,[2] held on 24 and 25 August 2022. It adopted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at its 614th meeting, held on 5 September 2022.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er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Committee's reporting guidelines and in response to its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3]

3. The Committee appreciates the fruitful and sincere dialogue held with the State party's delegation, which was diverse and multisectoral and included representatives of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 II. Positive aspects

4. The Committee welcomes the legislative measures taken to promot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the following:

(a)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article 25 (e) of the Convention, entered in 2008 at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in December 2021;

(b) The adoption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in which Korean Sign Language is recognized as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in the State party, in 2016;

(c) The adoption of the Braille Act, in which it is stipulated that Braille is a set of letters used in the State party along with Hangul and has the same status, in 2017;

(d) The adoption of the Act of Guarantee of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18;

(e) The adoption of the Road Map to Support Independent Living of Deinstitutionalized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21.

*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twenty-seventh session (15 August–9 September 2022).

[1] CRPD/C/KOR/2-3.

[2] See CRPD/C/SR.598 and CRPD/C/SR.599.

[3] CRPD/C/KOR/QPR/2-3.

GE.22-16051(E)

Please recycle

# III.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 A. General principles and obligations (arts. 1–4)

5.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 Disability-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including the revised definitions of disability in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not yet been brought fully into line with the Convention, and fail to identify the specific needs of som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deafblind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HIV/AIDS;

(b) The medical model of disability is still prevalent in the State party, including within the disability classification system, despite the recent revision of the disability grading system and the reduction from six to two grades, which has a negative impact by preventing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ciety and limiting their access to appropriate services and support;

(c) The lack of awareness among policymakers, judges, prosecutors, teachers and medical, health and other professionals working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about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Convention.

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eview the existing national disability-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to align them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adopt a concept of disability that covers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persons who are deafblind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HIV/AIDS, and ensure that their characteristics and needs are recognized;**

(b) **Reorient its disability assessment systems by replacing elements of the medical model of disability with principles of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and by establishing systems aimed at the assessment of legal and environmental barrier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rovision of the necessary support and assistance to promote the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ull social inclusion;**

(c) **With the close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vide capacity-building programmes for public policymakers, judges, prosecutors, teachers and medical, health and other professionals working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obligations of the State party under the Convention.**

7.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 party has not yet ratifie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8.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9.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divers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concerning laws, policies and programmes that affect them.

10. **The Committee recalls its general comment No. 7 (2018)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strengthen and implement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ensure that meaningful consultations are held with the whole range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intersex persons with disabilities, women with disabilities, refugees and migrants with disabilities, autistic persons,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gender-divers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requiring higher levels of support.**

## B. Specific rights (arts. 5–30)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rt. 5)**

11. The Committee observes with concern:

(a) That the multiple and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fac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women with disabilities, migrants with disabilities, LGBTQI+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HIV, are not recognized in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b) The fact that the amended article 15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cludes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from the univers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c) The lack of recognition of the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s a form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ll areas of life;

(d)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including attorneys' fees, which limits access to justic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12. **The Committee recalls its general comment No. 6 (2018) and targets 10.2 and 10.3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eview the existing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and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o recognize multiple and intersectional forms of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and its intersection with other grounds, such as age, sex, race, ethnicity,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or any other status, and adopt strategies to eliminate multiple and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b) **Review article 15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include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in the univers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in line with the Convention;**

(c) **Exempt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lose a case abou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being burdened with the opposing party's legal fees and ensure accessible and fair reimbursement schemes in order to prevent any additional costs or administrative burde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 **Recognize the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s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and ensure effective investigation of reports of such discrimination.**

**Women with disabilities (art. 6)**

13.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e lack of inclusion of a gender perspective in disability-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as well as the lack of a disability perspective in gender-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which leads to further discrimination against and marginalization and exclusion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b) The lack of gender-sensitive budgeting based on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activitie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c) That the national legislative framework does not explicitly address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the absence of data and research carried out on multiple and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faced by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with a view to designing suitable policy responses;

(d) The lack of empowerment programm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n employment, in public and political life, in decision-making and in the judiciary.

14. **The Committee recalls its general comment No. 3 (2016)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5,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Mainstream the rights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to all gender legislation and mainstream a gender perspective into disability policies and programmes, in particular the third gender equality master plan (2023–2028) and disability agenda, while ensuring consultation with and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gender- and disability-related policies and programmes;**

(b)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any programmes and activities related to general disability issues are planned and budgeted on the basis of a gender equality perspective;**

(c) **Recognize in its legislation multiple and intersectiona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adopt specific legislation and strategies that reflect a gender perspective and intersectionality;**

(d) **Adopt measures aimed at achieving the empowerment and full inclusion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 all spheres of life, as well as their involvement in all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State party should implement measures to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are represented in political life in decision-making roles, including in government bodies and the judiciary.**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t. 7)**

15. The Committee observes with concern:

(a) The absence of mechanisms to consult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enable them to express their views in all matters concerning them;

(b) The lack of access to general community-based servi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c) That only 0.03 per cent of playgrounds are inclusive, which results in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prevents them from enjoying their right to pla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16. **With reference to its joint statement, with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202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stablish a mechanism that respects the evolving capacit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ensure that they can form their views and express them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and that these views are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child's age and maturity;**

(b) **Implement a policy on inclus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all areas of life, including family life and community life, by developing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m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c) **Review the Children's Play Facility Safety Management Act to ensure that playgrounds are inclusive and accessible for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Awareness-raising (art. 8)**

17.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a) The lack of awareness-raising campaigns about the dignity, abilities and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ciety and in the media and the absence of a long-term strategy for raising awareness abou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 The persistence of discriminatory attitudes, negative stereotypes, prejudices, widespread hate and demeaning expressions towards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autistic persons,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political discourse and on social media.

1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dopt a national strategy, in close consultation with and with the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raise awareness of and combat prejudic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onitor its impact;**

(b) **Introduce regular training and awareness-raising modules abou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all levels of education, for policymakers, the judiciary,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media, politicians, educators, professionals working with an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general public, in all accessible formats and with the active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foster respect for the dignity, abilities and contributions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essibility (art. 9)**

19.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at, despite the recent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Disability Convenience Act, there are still some exemptions related to the size of buildings and year of construction, which continue to prevent the full accessibility of public buildings;

(b) The lack of comprehensive and effective measures to implement the full range of accessibility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lack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ystems;

(c) That the amendment to the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to improve special needs of transportation in January 2022 excludes inter-city buses, express buses and wide-area buses and the insufficient provision of information, including bus number and route, as well as on-board guidance, impeding the use of buses by persons with visual and hearing disabilities;

(d) The barriers in the digital work environment that prevent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s the obligation to guarantee accessibility is limited to national and public institutions.

20. **With reference to its general comment No. 2 (2014) and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9 and targets 11.2 and 11.7 of the Goal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mend national legislation to include mandatory rules on ensuring accessibility of all buildings and structures, regardless of their size, capacity and date of construction;**

(b) **Adopt a national accessibility strategy that includes all areas described in the Convention, and strengthen its mechanisms for monitoring accessibility at the municipal level, including by establishing a system of sanctions for non-compliance;**

(c) **Increase the number of wheelchair-accessible buses in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in particular for inter-city buses, express buses and wide-area buses, and ensure that information, including bus numbers and routes, as well as on-board guidance, are in accessible formats, and improve the environment and public space to make them safe and accessible for persons with different disabilities;**

(d) **Ensure universal access to digital technology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for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both in educational facilities and at home, on public and private websites and mobile applications.**

**Right to life (art. 10)**

21. The Committee is deeply concerned about:

(a) The high rate of suicide and disappearances among autistic persons and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s well as cases of parents with disabilities killing their children before committing suicide;

(b) The death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institutional settings, in particular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2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dopt and implement a national suicide and disappearance prevention strateg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specific measures to target autistic persons,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 families, ensuring close consultation with and active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b) **Develop measures, in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ndependent monitoring mechanisms to initiate the emergency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sure safe and independent living in the community and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in critical health situations.**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art. 11)**

23. The Committee is concerned:

(a) That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of 2018 lacks disaster risk reduction plans, policies and protocols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risk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 At the low level of involv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goal 7 of the Incheon Strategy to "Make the Right Rea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and the Pacific at the national level and in its reporting process.

2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ccelerate the adoption of disaster risk reduction plans that are inclusive of and accessible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children, women,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sensory impairments;**

(b) **Closely consul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l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and at all stages of the process, and adopt a comprehensive strategy, in accordance with the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1 and 13.**

25.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those who are still in institutions, have been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is also concerned at the barriers fac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gaining access to emergency information and devices.

2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guided by the policy brief on a disability-inclusive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 **Mainstream disability into its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plans, including in respect of ensuring equal access to vaccines, and other economic and social programmes to tackle the negative impact of the pandemic;**

(b) **Adopt measures to deinstitutionaliz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imes of emergency and provide them with appropriate support to live in the community;**

(c) **Involv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at all stages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plans;**

(d) **Ensure that, in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receive the necessary information in accessible formats and on the appropriate devices.**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art. 12)**

27. The Committee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lack of progress made to abolish the guardianship and substituted decision-making regime, which limits the active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basis of psychosocial and/or intellectual impairment, and at the lack of a time frame to completely replace this regime with a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bout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supported decision-making available in accessible formats to increase understand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28.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4] and recommends that, in line with its general comment No. 1 (2014), the State party:**

(a) **Replace substitute decision-making systems, including guardianships and wardships, with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s that ensure the provision of individualized support and respect the autonomy, will and preferenc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 **Ensure the effective, independent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reform process and in the training of relevant personnel on the recognition of the legal capac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n the mechanisms of supported decision-making;**

(c) **Organize and fu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bout supported decision-making, in accessible formats such as Braille, sign language and Easy Read, and disseminate it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ccess to justice (art. 13)**

29.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continued existence of restrictions that interfere with the full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footing with others.

30. **The Committee refers to its previous recommendation,[5] recalls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Access to Just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pared in 2020 and target 16.3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dop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 action plan on access to just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he necessary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measures to eliminate all restrictions on the effectiv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stages of the judicial process;**

(b) **Make procedural adjustments, including the provision of individualized assistance,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participate effectively in the various aspects of legal proceedings;**

(c) **Develop alternative and augmentative mean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uch as with Braille, sign language, Easy Read and audio and video transcription, for use throughout legal proceedings, apply the principle of universal design and adopt an action plan to ensure physical access to all justice facilities, including through accessible transportation;**

(d) **Intensify efforts to provide training on the Convention to judicial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e)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may enter the legal profession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ensure individualized support for that purpose.**

[4] CRPD/C/KOR/CO/1, para. 22.

[5] Ibid., para. 24.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art. 14)**

31.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still subjected to laws that deprive them of their liberty on the basis of impairment, and that there is a lack of information on the measures taken to ensure that those persons are not subjected to arbitrary treatment, including confinement.

32. **The Committee recalls its guideline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epeal all relevant legislative provisions, including the Civil Law on Adult Guardianship and the Mental Health Law provisions allowing for the involuntary deprivation of liberty on the grounds of impairment and perceived dangerousness to themselves or others, introduce legislation that ensures non-discrimination through, for example, procedural accommod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during interrogation and detention, explicitly prohibit the forced 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ground of impairment and restore the rights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b) **Establish a monitoring mechanism to ensure that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not subjected to arbitrary and forced treatment, in particular treatment that results in confinement.**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 15)**

33.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the ongoing occurrence of seclusion, physical, chemical and mechanical restraints and other forms of ill-treatment in family settings, psychiatric institutions, hospitals, prisons and educational services, in particular for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34.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ut an end immediately to the use of psychotropic medications and physical restraints and:**

(a) **Adopt the necessar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all settings, including in justice, education, health, psychosocial and aged care facilities, and recommends that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effectively consulted and involved in this process;**

(b) **Ensure that the complaint procedure is accessible to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still in institutions, and investigate and sanction perpetrators of practices that may amount to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mposing sanctions proportional to the conduct.**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rt. 16)**

35.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e lack of awarenes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and in particular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bout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nd the lack of a comprehensive strategy to combat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settings, including in the family, at school and in the workplace;

(b)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exposed to higher rates of violence than other children and about the limite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and statistical data regar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related complaints;

(c) The lack of accessible shelters for women and girls who are victims of violence, including women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d) The inadequate training of the staff, caregivers and famil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alth personnel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on recognizing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3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all necessary steps to raise awareness about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dopt a comprehensive strategy to prevent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targe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those who are institutionalized, and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information about how to avoid, recognize and report cases an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victims of exploitation, violence or abuse have access to independent complaint mechanisms and appropriate remedies, such as redress and adequate compensation, including rehabilitation;**

(b) **Develop and implement a plan of action to eliminate all form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within and outside of institutions and collect disaggregated data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c) **Ensure that services for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who are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such as support centres and emergency shelters, are accessible and that the required support is provided;**

(d) **Provide ongoing training for the famil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for their caregivers, health professionals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to enable them to recognize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nd to better communicate and work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victims of violence.**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person (art. 17)**

37.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despite legal provisions prohibiting the forced sterilization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the practice still persists. It is also concerned about the absence of information on investigations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on this matter.

38.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measures to eradicate the practice of forced sterilization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those living in institutions, and the non-consensual interruption of pregnancies.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stablish a mechanism for identifying, investigating and following up on any cases that, despite an explicit prohibition, continue to arise and for providing full redress in those instances, and take measures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forced sterilization.**

**Liberty of movement and nationality (art. 18)**

39.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t the lack of efforts made to repeal provisions of article 1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deprives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of the right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basis of their disability, and of article 32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restricts access to basic disability services for migrants with disabilities.

4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urgent steps to repeal discriminatory provisions in order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deprived of the right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to allow migrants with disabilities access to basic disability services.**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art. 19)**

41. The Committee observes with concern:

(a) The ongoing 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lack of efforts, including budgetary and other measures, made towards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mmunity and the provision of all necessary support services, including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as well as the lack of awareness in society and among public authorities of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the right to choose where and with whom to live and the right not to be obliged to live in a particular living arrangement;

(b) The weak implementation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placed in existing residential institutions, and the lack of programmes for resettl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cannot afford housing.

42. **The Committee recalls its general comment No. 5 (2017) and its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6]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eview the Road Map for Independent Living Support, in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ring it into line with the Convention and ensure that it includes sufficient budgetary and other measures, as well as awareness-raising activities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choice and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cerning their living arrangements, the right not to be obliged to live in a particular living arrangement and the value of inclusion in, as opposed to segregation from, the community;**

(b)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y for the process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those adult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still in a residential setting and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community-based services aimed at enabling persons to live independently and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art. 21)**

43. The Committee is concerned:

(a) About the insufficient provision of information in accessible formats an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uch as Easy Read, plain language, captioning, sign language, Braille, audio description and tactile,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eans of communication, in both public and private media outlets, and in particular on the websites that provide public information, and the lack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b) That the Guidelines on the Provision of Broadcast Programs Accessible for the Disabled fail to include a requirement for the provision of adequately accessible information in Easy Read and through other access formats and mod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4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nsure that all public information, including television and media services, is made available in accessible communication formats such as Braille, deafblind interpretation, sign language, Easy Read, plain language, audio description, captioning and subtitles by allocating adequate funding for its development, promotion and use, and ensure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ppropriate for the divers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 **Review the Guidelines on the Provision of Broadcast Programs Accessible for the Disabled to include standards on providing adequately accessible information in Easy Read and through other access formats and mod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Respect for privacy (art. 22)**

45. The Committee observes with concern that, in order to prevent disappearances, tracking devices are being issued to autistic persons and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without their free and informed consent, violating their right to privacy.

4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measures to respect the privac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autistic persons,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6] CRPD/C/27/3.

**disabilities and neurodivergent persons, and to ensure that tracking devices are issued with their consent;**

(b) **Take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policies to prevent disappearances, that are in line with the Convention and the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Respect for home and the family (art. 23)**

47.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a) The lack of express recognition in the State party's legislation of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women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placed under guardianship, with respect to family, parenthood and relationships;

(b) The lack of sufficient support provided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nd to parents with disabilities to carry out their parental responsibilities.

4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mend its legislation to explicitly recogniz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women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marry, found a family and exercise parental responsi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b) **Adopt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to ensure effective support for famil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raise their children in a family setting.**

**Education (art. 24)**

49. The Committee is concerned:

(a) That the State party maintains special education on the basis of a medical impairment-based approach and regularly increases the number of special schools, which results in a high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autistic children and children with intellectual, psychosocial or multiple disabilities, receiving segregated special education;

(b) About the insufficient number of teaching and support staff trained in Braille, sign language and accessible modes of teaching and the level of training for teachers on the skills and competencies required to promote inclusive education;

(c)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ttend day-care centres other than kindergarten do not receive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50.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 No. 4 (2016) and target 4.5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7] and urges the State party to:**

(a) **Formulate a comprehensive inclusive education policy with strategies to promote a culture of inclusion in mainstream education at all educational levels, including individualized human rights-based assessments of educational requirements and necessary accommodation, and provide appropriate training for teachers and non-teaching education personnel on inclusive education;**

(b) **Provide students with disabilities with assistive compensatory aids and learning materials in alternative and accessible formats, such as inclusive digital access, and mod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including Easy Read, communication aids and assistive and information technology;**

(c) **Ensure that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attending segregated day-care centres operated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re transferred to mainstream kindergartens operated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7] CRPD/C/KOR/CO/1, para. 46.

**Health (art. 25)**

51.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recognizes life insurance contrac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ly if the person "possesses mental capacity", which constitutes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also concerned that, under the Act on the Right to Health of the Disabled, women's right to health is limi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maternity.

52. **Taking into account the links between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and targets 3.7 and 3.8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8]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epeal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and develop and implement specific programmes on different aspects of women's right to health, including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care services and mental health services;**

(b) **Develop training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on their skills, support measures and communication means and methods, and provide information in accessible formats, including Braille, sign language and Easy Rea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art. 26)**

53.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upport are available, in addition to the State party's citizens, only to long-term residents and non-nationals married to Korean citizens, and require registration as a person with a disability, which excludes non-national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accessing medical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vocational training and personal assistance.

5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pand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systems and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irrespective of their citizenship or residency status, have access to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on the basis of their individual requirements.**

**Work and employment (art. 27)**

55.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Discriminatory legislation that excludes or limits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labour market;

(b) That the Minimum Wage Act excludes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benefiting from the minimum wage, which has resulted in many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work receiving compensation below the minimum wage;

(c) The ongoing segreg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heltered workshops and the lack of concrete plans to gradually move workers with disabilities from these workshops to the open labour market.

5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line with target 8.5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Repeal all discriminatory legislation that excludes or limits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open labour market and adopt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e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work, as well as measures to combat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advertisements, recruitment processes, reasonable accommodation, retraining, promotion and other rights related to work and employment;**

[8] Ibid., para. 48.

(b) **Review the Minimum Wage Act to ensure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and provide compensation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excluded from the benefit of the Act;**

(c) **Strengthen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aking part in de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persons with hearing impairments and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have access to work and employment in the open labour market and to inclusive work environments;**

(d) **Implement measures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transition from sheltered employment into open, inclusive and accessible employment and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pecific affirmative action measures designed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quotas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open labour market.**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art. 28)**

57.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e inadequacy of the amount provided as the disability allowance and disability pension to cover the high cost of living in the State party under the disability income and social security policy;

(b) That some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till excluded from the pension system even after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c) The non-eligibility of migrants with disabilities to receive essential support, such as the disability pension, even after completing disability registration.

58. **Recalling the links between article 28 of the Convention and target 10.2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hich seek to empower and to promote the economic inclusion of all persons, irrespective of disability statu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Strengthen the social protection and poverty-reduction sche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view the amount of the disability allowance, in consultation with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 **Expand the eligibility for the disability pension system, in particular by completely abolishing the obligatory provider requirements, to ensure that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benefit from the disability pension;**

(c) **Take immediate steps to ensure that migrants and refugees living with disabilities can benefit from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upport, such as basic living security and disability benefits.**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art. 29)**

59.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e discriminatory provisions of the Act 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which exclude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undergoing medical treatment or are in detention facilities from the election process;

(b) The lack of measures taken to ensure the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deaf persons,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deafblind persons and women with disabilities, who are underrepresented;

(c) The lack of accessibility to polling stations, voting procedures, facilities and materials, as well as to information about elections, including public electoral debates, electoral programmes and online or printed election materials, all of which limit the effe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6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epeal all discriminatory provisions deny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nsure their full participation in the electoral process and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b) **Introduce specific measures to ensure equality of participation of underrepresented group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deaf persons,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or intellectual disabilities, deafblind persons and wom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as elected representatives, and to support candidates with disabilities to stand for elections, in particular for minority political parties;**

(c) **Guarantee that electoral and voting procedures, facilities and online or printed election materials are accessible in plain language and Easy Read, thereby facilitating their use by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 (art. 30)**

61.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specific measures put in place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Disabled and the insufficient measures taken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6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Marrakesh Treaty through close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rease its effort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children with disabilities, enjoy their right to participate in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 C. Specific obligations (arts. 31–33)

**Statistics and data collection (art. 31)**

63.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consistent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collection and public reporting of disaggregated data on the barriers fac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xercising their rights.

64. **The Committee recalls the Washington Group short set of questions and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olicy marker on the inclusion and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xpeditiously develop a system and procedures for collecting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aggregated by age, sex,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race, ethnicity, income, migration status, level of education, employment situation and place of residence. The system and procedures should ensure confidentiality and respect the privac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 **Allocate funds to undertake periodic research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the aim of identifying barriers to their implementation. The State party should build the capacity of municipal authorities to conduct periodic research on barriers to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 **Support independent and participatory research,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o inform the disability-related policies developed and measures taken for ensur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rt. 32)**

65.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lack of appropriate mechanisms to measure the impact of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effective involvement of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organization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s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s.

6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e effectively consulted and involved at all stages of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s, programmes and projects, including the Incheon Strategy as the regional framework address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National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art. 33)**

67.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a) That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ts Subcommittee meet only up to three times a year, which is not sufficient to ensure the effective coordination of disability policies;

(b) The lack of progress made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the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made in 2021, during the reaccredit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stablish a single independent selection committee and to ensure its financial autonomy.

6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Intensify the meeting cycle of the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ts Subcommittee to ensure the effective coordination of disability policies;**

(b)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the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o establish a single independent selection committee, ensure its financial autonomy and strengthen its human resource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functions effectively and independently and discharges its mandate in full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aris Principles).**

## IV. Follow-up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69. **The Committe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ll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With regard to urgent measures that must be taken, the Committee would like to draw the State party's attention to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paragraph 14, on women with disabilities, and paragraph 42, on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70.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ransmit the concluding observations for consideration and action to members of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officials in relevant ministries, local authorities and members of relevant professional groups, such as education, medical and legal professionals, as well as to the media, using modern social communication strategies.**

71. **The Committee strongly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invol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particular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reparation of its periodic report.**

72.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disseminate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widely, including t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mselve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 national and minority languages, including sign language, and in accessible formats, including Easy Read, and to make them available on the government website on human rights.**

**Next periodic report**

73. **The State party has opted to report under the 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 The Committee will prepare a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and request the State party to submit its replies within one year of receipt of the list of issues. The replies of the State party, expected by 11 January 2031, will constitute its combined fourth to sixth periodic reports.**

인권이사회
제53차 회기
2023년 6월 19일 – 7월 14일
의제6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최종보고서

## 대한민국

## 서론

1.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5/1에 따라 설립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은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제42차 회기를 진행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는 2023년 1월 26일 제8차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맡았다. 실무그룹은 2023년 2월 1일 개최된 제15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 2023년 1월 1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코트디부아르, 프랑스, 아랍에미리트를 간사국(Troika)으로 선정하였다.
3. 인권이사회 결의 5/1에 따른 부속서 제15항 및 결의 16/21에 따른 부속서 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의 문서들이 작성되었다.
    (a) 15(a)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 국가보고서;[1]
    (b) 15(b)항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작성한 유엔 권고사항 요약보고;[2]
    (c) 15(c)항에 따라 준비된 이해관계자 보고서 요약본.[3]
4. 벨기에, 캐나다, 독일,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이행·보고·후속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에 대해 우호국 그룹을 대표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미국, 우루과이는 간사국을 통해 사전 질의서를 대한민국에 제출하였다. 사전 질의서는 UPR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 I. 심의과정 진행 개요

### A. 수검국 발표

5.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하고자 하는 새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6. 제4차 UPR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정부부처와 기관,

1) A/HRC/WG.6/42/KOR/1
2) A/HRC/WG.6/42/KOR/2
3) A/HRC/WG.6/42/KOR/3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와 협의했으며, 제네바의 "UPR 프리세션"에 참여하였다.

7. 제3차 UPR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및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다. 또한 세 가지 ILO 핵심협약인 제29호, 제87호, 제98호를 비준하였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를 철회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타 조약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 가입한 조약을 이행할 것이다.
8. 대한민국은 여러 유엔 특별절차의 국가방문에 협력하였고, 2016-2018년 및 2020-2022년 임기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9. 2018년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과 인권" 장이 추가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채택하였다. 제4차 계획 수립 시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10. 정부의 조치는 경찰의 평화적 집회 조력을 위한 "한국형 대화 경찰제도", 경찰관의 인권교육 및 관련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11.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인신매매방지 종합계획을 포괄하고 있다.
12.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13.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여 교도소의 개보수를 통해 추가적인 수용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4.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수급 자격을 확대하고 아동수당, 노인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을 확대하였다. "의료급여" 제도와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15.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78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2020년에는 온라인 학습을 시행하였다.
16. 노동권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들의 사건 조사 의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17.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에 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

18.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부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본계획을 도입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벌금 및 위반 행위를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였다.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양성평등지원제도를 감독하였다.
19.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신설되었고,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고, 보호기관과 쉼터를 추가 개소하였다.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다. 정부는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의 소외를 방지하고자 한다.
20. 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규칙 조항을 신설하고, 각 군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증원하였다.
21.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22. 장애인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에 따라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연금액을 인상하고, 개별적 복지서비스를 약속하였다.
23. 노인과 관련하여, 치매 환자 돌봄, "학대피해 노인 쉼터",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충하였다.
24.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추진하였으며,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사업장을 점검하였다. 개선된 고용허가제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권고 퇴직시에는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인권보호관이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심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
25. 대한민국 정부는 개발협력시 인권 기반 접근법을 반영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2020년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을 출범하였고, 사업 관리에 인권을 내재화하였다.

## B. 상호 대화 및 수검국 답변

26. 총 95개 대표단이 상호 대화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호 대화 중 제시된 권고사항은 이 보고서 제II부에 수록되어 있다.
27. 이란은 불평등,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28. 이라크는 주거권 존중 보장, 사회적 보호 강화, 인신매매 방지 등을 포함한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체계를 환영하였다.
29. 아일랜드는 임신중절의 비범죄화와 가정폭력범죄의 정의 확대를 환영하였으나, 이전 권고에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성과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30. 이스라엘은 비정규직, 장애인의 권리 및 여성 폭력 퇴치에 대한 성과를 칭찬하였으나, 군 내 성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31. 이탈리아는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성평등 증진, 공공 부문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강화, 특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노력을 칭찬하였다.
32. 일본은 무엇보다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33. 요르단은 인권 관련 성과를 반영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인신매매와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법률 마련을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34. 카자흐스탄은 사회 정책, 취약계층 지원, 군대 내 인권 개선 및 학교 내 인권교육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35. 쿠웨이트는 국가보고서 작성과 이전 UPR 권고 이행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36. 라오스는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여와 취약계층 권리 보호 진전을 환영하였다.
37. 레바논은 2018-2022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과 새로운 계획 준비 및 「인신매매등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을 환영하였다.
38. 리비아는 UPR 절차에 대한 대한민국의 긍정적 협력과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을 칭찬하였다.
39. 리투아니아는 인권을 국정과제의 최전선에 두기 위한 지속적인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40. 룩셈부르크는 이전 UPR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의 통과를 환영하였다.
41. 말라위는 이전 권고 이후 인권 증진 성과에 감사를 표하며,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의 통과를 주목하였다.
42. 말레이시아는 인권 보호 정책의 강화된 결합력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불평등, 저렴한 교육 및 기본 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장려하였다.
43. 몰디브는 국가보고서에 대한 협력적 접근과 아동정책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을 환영하였다.
44. 마셜 제도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과 사형제도의 공식적 폐지를 향한 움직임을 환영하였다.
45. 모리셔스는 인권이사회 업무에 최저개도국(LDC) 및 군소도서국(SIDS)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기술지원 신탁기금(Voluntary Technical Assistance Trust Fund)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교육 접근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칭찬하였다.
46. 멕시코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1930년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1948년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9년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칭찬하였다.
47. 몽골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강화된 노동권, 개선된 업무 환경 및 모든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대표성을 환영하였다.
48. 몬테네그로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 철회를 환영하였고 사형선고를 받은 모든 수감자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것을 촉구하였다.
49. 나미비아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약속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학교의 인권교육 도입을 칭찬하였다.
50. 네팔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노인 빈곤 감소 노력을 환영하였다.
51. 네덜란드는 인권 제도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나 온라인을 포함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52. 뉴질랜드는 여성 권리 인정의 주요 단계로서 임신중절의 비범죄화를 환영하였고,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53. 노르웨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강화된 집행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행을 환영하였다.
54. 파키스탄은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대한민국의 협력과 인신매매, 인권 및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도입된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환영하였다.

55. 파나마는 권고사항을 제출하였다.
56. 파라과이는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을 환영하였고 이주정책에 포함된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을 환영하였다.
57. 페루는 2018-2022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주목하였다.
58. 필리핀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전략계획과 ILO 협약에 대한 공약, 외국인 및 이주민 차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칭찬하였다.
59. 폴란드는 대체복무제도와 학교 내 인권교육 도입을 환영하였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장려하였다.
60. 포르투갈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 철회를 칭찬하였다.
61. 카타르는 제3차 UPR에서 수용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의 여러 정책적·입법적 조치 도입을 환영하였다.
62. 러시아는 제3차 UPR 권고사항 중 아직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점을 우려하였다.
63. 세네갈은 제3차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다양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환영하였다.
64. 세르비아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환영하였다.
65. 싱가포르는 장애인의 의료 및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서비스 확대를 통한 노인복지를 환영하였다.
66. 슬로바키아는 추가적인 조약 가입을 장려하였고, 사형이 최근까지 집행되지 않았음을 환영하였으며, 대체복무제의 조건이 적절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하였다.
67. 슬로베니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환영하였고, 노인의 권리 인정을 위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68. 스페인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과를 환영하였다.
69. 스리랑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조치와 특별절차와의 상호작용을 환영하였다.
70. 수단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신매매방지 및 여성폭력 관련 법률 및 국가아동통합정책을 환영하였다.

71. 스위스는 사형제에 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과 관련 결의안 지지를 환영하였고, 성평등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장려하였다.
72. 시리아는 여성 폭력이 지속되는 것과 정보기술 확산이 증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73. 태국은 기업과 인권,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관련 성과, 개선된 고용허가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과 관련된 노력을 인정하였다.
74. 동티모르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임에 주목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비범죄화와 개선된 고용제도를 환영하였다.
75. 토고는 이주민, 난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환영하였다.
76. 튀르키예는 제3차 UPR 권고사항 이행과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평등 및 비차별 관련된 법률의 도입을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다.
77. 투르크메니스탄은 2018-2022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주목하였고, 개발협력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적용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78.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의 인권 증진 및 보호 의지와 국제 조약에 따른 의무 수행 및 인권 메커니즘 협력 노력을 환영하였다.
79. 영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조치를 환영하며, 평등과 비차별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장려하고, 사형제도의 모라토리엄을 촉구하였다.
80. 미국은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인권 증진한 것을 칭찬하였으나, 낮은 난민 지위 인정률을 우려하였다.
81. 우루과이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공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82. 우즈베키스탄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을 칭찬하며 1998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83. 바누아투는 대한민국 대표단을 환영하며 발표에 감사를 표하였다.
84. 베네수엘라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의심, 혐오 표현 증가, 고문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85. 베트남은 여성의 대표성 향상, 문화 다양성 존중,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칭찬하였다.
86. 잠비아는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인권 메커니즘을 준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87. 알제리는 한국국제협력단이 2021-2025년 전략에 따라 수행한

국제협력사업과 차별,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는 조치를 환영하였다.

88. 아르헨티나는 대한민국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환영하였다.
89. 호주는 인권 증진을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와 사형제 모라토리엄에 대한 유엔 결의안 77/222에 대한 지원을 환영하였다.
90. 아제르바이잔은 인권 메커니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주목하였고, 인권에 대한 고려를 명시한 국제개발협력 전략계획을 강조하였다.
91. 방글라데시는 인신매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과 사회안전망 및 주거 확장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환영하였다.
92. 벨라루스는 대한민국 대표단을 환영하며 보고서 제출에 감사를 표하였다.
93. 벨기에는 대한민국의 2021년 임신중절 비범죄화를 환영하였으나, 성 불평등 및 차별금지와 관련된 진전이 더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94. 부탄은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입법적 조치와 주거권 증진을 위한 조치, 아동 인권을 위한 노력을 칭찬하였다.
95. 브라질은 학교 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시행과 교사 역량강화에 대한 투자 및 1930년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1948년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9년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장려하였다.
96. 브루나이는 다양한 제도를 통한 장애인 지원과 직장 내 성평등 증진,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선을 높이 평가하였다.
97. 불가리아는 학교 내 인권교육과 교사 역량강화의 선례를 지속할 것을 장려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강조하였다.
98. 캐나다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대외 정책의 일환으로 인권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대한민국의 의지에 주목하였다.
99. 칠레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을 환영하였다.
100. 중국은 대한민국이 이룬 진전에 주목하였으나 이주민과 소수 민족 차별, 여성 대상 성희롱, 효과적이지 못한 취약계층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101. 콜롬비아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계획 및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향상 계획을 환영하였다.

102. 코스타리카는 대한민국이 국가보고서를 발표한 데에 감사를 표하며 관련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103. 코트디부아르는 대한민국이 이전 UPR 이후로 인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반기며, 지속적인 노력을 장려하였다.
104. 크로아티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양심적 병역거부의 비범죄화 결정을 환영하였으나,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권리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105. 사이프러스는 장애인 차별 근절을 위한 강화된 법률과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이행을 환영하였다.
1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내 체계적이고 만연한 인권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107. 덴마크는 성소수자들이 법적, 사회적, 경제적 장벽에 직면해 있음에 우려를 표하였고, 고문방지이니셔티브의 지원이 완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108. 이집트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 철회를 비롯하여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칭찬하였다.
109. 엘살바도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 철회와 인신매매를 방지를 위한 법을 환영하였다.
110. 에스토니아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학교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포함, 성평등을 향한 진전에 감사를 표하였다.
111. 핀란드는 이전 UPR 이후 대한민국이 이룬 진전을 환영하였다.
112. 프랑스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환영하였다.
113. 감비아는 지방자치단체에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202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환영하였다.
114. 조지아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 주거권의 점진적 해소 및 여성의 권리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15. 독일은 대한민국이 역내에서 고무적인 사례임을 표명했으며, 병역에서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주목하였다.
116. 가나는 학교 내 인권교육 포함, 양성평등기본계획 도입, 군 내 인권 조치를 칭찬하였다.
117. 그리스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 철회와 인신매매 방지 및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법을 환영하였다.

118. 아이슬란드는 대한민국 대표단과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를 환영하였다.

119. 인도는 임신중절의 비범죄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 및 계획,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감사히 주목하였다.

120. 인도네시아는 병역 관련 문제를 비롯하여 인권 증진 및 보호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한 여성의 권리 신장에서의 진전을 인정하였다.

121. 키르기스스탄은 특히 취약계층에 중점을 둔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입법적·정책적 메커니즘 강화를 위한 유의미한 조치를 환영하였다.

122. 대한민국 대표단은 사전질의에 답하며, 정부가 사형 집행의 점진적 감소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123.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하였다.

124.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보호를 위해 최소한으로 적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또한 일반 국민과 같은 동등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사법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125.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절차를 마련하였다. 동성혼 인정 관련 제도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126.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경찰은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니며, 검사는 접근금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강간은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온라인 아동폭력 근절과 관련하여, 정부는 높은 위기에 처한 아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긍정 양육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127. 정부는 경력단절을 성별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육아휴직 확대, 육아 단축근무, 직업훈련을 확대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이행을 계획하였다.

128.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들은 노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29. 난민지위심사 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송환 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였다.

130. 대한민국 정부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131. 「신문법」과 「방송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유일한 예외사항은 공공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132. 권고사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기여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이행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133.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가 공식 합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1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노동 식별을 위해 사업장들은 매년 점검을 받고 있다.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대표단은 조기 피해자 식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식별지표를 활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135.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하여 형사책임 연령을 13세로 낮추고, 구금을 최소화하였다.
136. 대한민국 정부는 임신중절의 요건을 명시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137.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4차 UPR이 일회적인 절차가 아니며 지속적인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시된 질의 및 권고사항은 정책 수행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 II. 결론 및 권고

138. 상호 대화에서 도출된 아래 권고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검토 후 수용의사를 밝혔다:

138.1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것(덴마크);

138.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나미비아);

138.3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우크라이나);

138.4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인권을 더욱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조치 이행을 지속할 것(일본);

138.5 인권기반 접근법을 토대로 국제협력 전략을 지속할 것(엘살바도르);

138.6 정부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인권분야 중기전략,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을 전면 이행할 것(키르기스스탄);

138.7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청소년, 공무원, 교육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할 것(베트남);

138.8 인종주의,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에 대한 근절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알제리);

138.9 혐오표현 및 인종차별적 혐오 선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벨라루스);

138.10 인종차별 및 혐오표현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중국);

138.11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근절할 것(이집트);

138.12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할 것(잠비아);

138.13 수형자 처우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리비아);

138.14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 근절을 목표로 노력할 것(레바논);

138.15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수단);

138.16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 차별을 근절할 것(베트남);

138.17 국가연금제도 강화 및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확대를 지속할 것(포르투갈);

138.18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취약계층 대상 사회보장 확대를 지속함으로써 포용적 복지 국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투르크메니스탄);

138.19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파키스탄);

138.20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아제르바이잔);

138.21 적정주거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우선과제로 삼는 법령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할 것(카자흐스탄);

138.22 누구나 주거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적정주거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조치를 강화할 것(아제르바이잔);

138.23 주거권 및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부탄);

138.24 적절한 사회보장 및 의료 접근 확보 및 차별 및 폭력 예방을 통해 빈곤, 특히 노인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브라질);

138.25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기 위한 「형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및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비롯한 여성의 안전한 재생산 보건 서비스 접근 확보를 고려할 것(인도);

138.26 보건서비스 접근, 특히 빈곤 및 취약계층의 보건 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조지아);

138.27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이 보편적으로 가능하도록 「형법」 및 기타 법령을 개정할 것(에스토니아);

138.28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임신중절을 규정하는 법을 도입할 것(스페인);

138.29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할 것(뉴질랜드);

138.30 신속히 「형법」을 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이 보편적으로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아이슬란드);

138.31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에 대해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형법」을 개정할 것(벨기에);

138.32 모든 사람에게 무상 공공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학교 등록과 관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할 것(방글라데시);

138.33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에 관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몰디브);

138.34 학교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교원을 증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교육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모리셔스);

138.35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국제적 달성 목표인 국민총소득(GNI)의 0.7% 수준까지 확대할 것(방글라데시);

138.36 여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비롯하여 특히 고용 부문에서 젠더 기반 범죄와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인도네시아);

138.37 여성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속, 강화할 것(엘살바도르);

138.3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낙인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크로아티아);

138.39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칠레);

138.40 과학·기술, 연구·혁신 분야를 비롯한 공공·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높이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불가리아);

138.41 여성의 경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강화를 지속할 것(브루나이);

138.42 여성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의 이행을 지속할 것(베트남);

138.43 여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제도를 강화할 것(튀르키예);

138.44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경우,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지 또는 오히려 강화할 것(스위스);

138.45 유해한 성 고정관념과 같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동인을 제거하고 이들에게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적 기관 간 연계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성평등을 증진할 것(네덜란드);

138.46 여성차별 동인을 제거하고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여성 참여를 높임으로써 성평등을 증진할 것(말레이시아);

138.47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리투아니아);

138.48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크);

138.49 가정폭력을 비롯한 젠더 기반 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카자흐스탄);

138.5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며,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절차 및 법령의 시행을 지속할 것(쿠웨이트);

138.51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공을 보장할 것(레바논);

138.52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잠비아);

138.53 부부강간을 범죄화하도록 필요한 법률개정을 위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따른 성정체성을 인정할 것(아르헨티나);

138.54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는 등 젠더 기반 폭력 및 성 불평등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브라질);

138.55 성평등을 증진하고, 장애가 있는 여성 및 여아를 비롯하여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대중인식 개선 운동을 추진할 것(에스토니아);

138.56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시리아);

138.57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이행을 강화할 것(라오스);

138.58 여성에 대한 모든 성폭력을 근절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할 것(영국);

138.59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기타 형태의 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에게 사법 접근성을 보장할 것(러시아);

138.60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여 부모를 지원할 것(말레이시아);

138.61 부적절한 미성년자 구금환경을 방지하여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것(감비아);

138.62 「소년법」상 구금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아동을 성인 수감자와 함께 구금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화할 것(감비아);

138.63 소년사법제도 관련 법령 및 미성년자 구금에 관한 조치를 재검토할 것(부탄);

138.64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추진할 것(에스토니아);

138.6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국내 법제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이행할 것(사이프러스);

138.66 아동폭력 및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강화할 것(벨라루스);

138.67 국가 영토 내 모든 아동의 아동보육시설, 교육, 보건의료, 여가, 국가지원제도 접근을 보장할 것(잠비아);

138.68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이행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투르크메니스탄);

138.69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여 아동 권리를 보호·증진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둘 것(스리랑카);

138.70 교정시설의 여건, 특히 미성년자 구금시설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페루);

138.71 출산 및 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각지대 없는 견고한 아동양육 제도를 마련하며,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아동을 존중하는 포용적 가정 문화를 조성하며, 젊은 세대가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국제인구개발회의 25주년 기념 정상회의(ICPD25)에서 채택된 부모 지원에 관한 합의를 이행할 것(파나마);

138.72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및 학대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네팔);

138.73 노인 복지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라오스);

138.74 노인의 안전, 안녕, 사회적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이행을 지속할 것(싱가포르);

138.75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 폭력 및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종합적 전략을 수립할 것(슬로베니아);

138.76 노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알제리);

138.77 장애인,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란);

138.78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입법 조치와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스라엘);

138.79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과 사회 구성원 간 평등을 추구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력을 증진할 것(쿠웨이트);

138.80 장애인의 공공서비스 접근 및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싱가포르);

138.81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튀르키예);

138.82 노인,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 이행을 지속할 것(벨라루스);

138.83 장애인의 동등한 건강권 향유 보장을 위한 노력을 우선할 것(브루나이);

138.84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 환경 및 동일임금 등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완전한 사회적 통합 과정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불가리아);

138.85 장애가 있는 여성 및 여아를 비롯한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속할 것(인도);

138.86 성적 지향 및/또는 성정체성을 사유로 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할 것 (칠레);

138.87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이행을 지속할 것(파키스탄);

138.88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보호 확대 보장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파라과이);

138.89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고용 선택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특히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와 사유에 제한을 두는 관련 규제를 개정할 것(필리핀);

138.90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노동권 및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관련 조치를 더욱 개선할 것(태국);

138.91 특히 사용자 및 채용기관과 관련하여 노동 관련 법률 집행의 효과성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처우를 강화할 것(태국);

138.92 외국인 보호시설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고,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자들의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등 이주민 권리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튀르키예);

138.93 특히 여성·아동 이주민의 구금과 관련하여, 인권을 기반으로 한 이민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우루과이);

138.94 이주민 및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우즈베키스탄);

138.95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허위정보·낙인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베네수엘라);

138.96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가나);

138.97 외국인 이주민와 난민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고려할 것(인도).

139.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제53회 인권이사회 전까지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139.1 「아동권리협약 개인진정 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프랑스);

139.2 「아동권리협약 개인진정 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슬로바키아);

139.3 자발적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프랑스);

139.4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코트디부아르);

139.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몽골, 몬테네그로);

139.6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과「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할 것(멕시코);

139.7 유네스코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을 고려할 것(모리셔스);

139.8 사형제를 폐지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호주);

139.9 법률상 사형제 폐지를 검토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프랑스);

139.10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할 것(파나마);

139.11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포르투갈);

139.12 사형제 폐지에 관한 모라토리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지속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형제를 폐지하는 입법 조치를 승인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스페인);

139.13 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유보조항 없이 비준할

것(아이슬란드);

139.14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우루과이);

139.15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코트디부아르);

139.16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기존에 선고된 모든 사형을 감형할 것(멕시코);

139.17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리투아니아, 스위스, 영국);

139.18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룩셈부르크);

139.19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칠레);

139.20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 가능성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국내 심의 절차를 추진할 것(인도네시아);

139.2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주자와 그 가족의 결합을 위한 국내 정책을 강화할 것(이집트);

139.2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콜롬비아);

139.23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알제리, 방글라데시, 필리핀, 토고);

139.24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리비아, 세네갈);

139.2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파라과이);

139.26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 및 이를 비준할 것(덴마크);

139.2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몽골);

139.2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이탈리아);

139.29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핀란드);

139.30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를 강화할 것(가나);

139.31 주요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을 검토할 것(말라위);

139.32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지체없이 도입할 것(아일랜드);

139.33 노동 관련 법령이 모든 유형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개정할 것(폴란드);

139.34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재검토를 고려하고 인권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개선할 것(동티모르);

139.35 모든 유형의 노동자가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 확장을 고려하고 모든 경제 영역에 노동 기준을 확대할 것(동티모르);

139.36 「국가보안법」 및 기타 국제인권법과 상충하는 모든 악법, 도발적인 소위 「북한인권법」을 폐지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9.3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고려할 것(이집트);

139.38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인권 현안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투르크메니스탄);

139.39 기후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적 대응 시스템 및 이행계획 수립을 고려할 것(부탄);

139.40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하여 이행, 보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국내 상설 메커니즘을 신설할 것(파라과이);

139.41 형사 범죄의 양형에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하도록 「형법」 개정을 검토할 것(요르단);

139.42 국제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거나 위법적인 일방적·강제적 조치의 시행을 종결하기 위해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139.43 국제법 및 유엔헌장에 반하며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방적·강제적 조치를 방지 및 폐기할 것(벨라루스);

139.44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평등법 제정을 위한 정부 전략을 발전시키고, 포괄적 평등법을 통과시킬 것(네덜란드);

139.45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도입하고, 법령에 인종차별의 개념을 규정하며, 인종적 사유로 인종 혐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러시아);

139.46 성, 종교, 사회적 조건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장애, 인종, 성적 지향, 성별 등을 사유로 한 차별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시행을 고려할 것(페루);

139.47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 법률 기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우크라이나);

139.48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합리적·객관적 기준에서 현역 복무와 비교할 때 복무 특성, 비용 및 기간이 비징벌적·비차별적이며, 온전히 민간 성격을 지닌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도록 관련 법률 및 관행을 검토할 것(코스타리카);

139.49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크로아티아);

139.50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포함하도록 고려할 것(그리스);

139.51 「평등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그리스);

139.52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체형벌의 도입을 고려할 것(카자흐스탄);

139.53.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마셜 제도);

139.54 한국 국내법에서 사형제 관련 규정을 영구히 삭제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하는 등 사형제의 공식적 폐지를 통해 사형 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움을 확고히 할 것(뉴질랜드);

139.55 장기간 지속된 사형제 모라토리움에 기초하여, 사형제의 공식적 폐지를 추진할 것(노르웨이);

139.56 사형제의 법률적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에 선고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것(슬로바키아);

139.57 사형제의 법률적 폐지를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정책 검토를 지속할 것(동티모르);

139.58 사형제의 법률상 폐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우즈베키스탄);

139.59 25년간 사실상 모라토리움 상태에 있는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캐나다);

139.60 사형제를 폐지할 것(코스타리카);

139.61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기존에 선고된 사형을 감형 또는 사면할 것(사이프러스);

139.62 사형 집행에 대한 법적 모라토리움 도입을 고려할 것(이탈리아);

139.63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 관행을 근절할 것(베네수엘라);

139.6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국가예방메커니즘(NPM)의 설립을 검토하는 등 고문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우루과이);

139.65 군 내 성폭력 관련 보호 및 방지 제도를 검토하고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사법권과 권리구제를 보장할

것(이란);

139.66 군 내 성폭력 관련 방지 및 보호 제도를 검토할 것(이스라엘);

139.67 군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할 것(엘살바도르);

139.68 사상, 신념,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말라위);

139.69 「국가보안법」, 특히 동법 제7조가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도록 이를 검토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정확한 사항을 개정할 것(멕시코);

139.70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파라과이);

139.71 1948년 「국가보안법」 및 대한민국 「형법」의 조항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할 것(러시아);

139.72 「국가보안법」이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특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할 것(스위스);

139.73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민사법률로 대체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미국);

139.74 모든 사람이 결사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의 제한 및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규칙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베네수엘라);

139.75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정하고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억압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기능을 임의로 방해하는 행위,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무력 사용을 중단할 것(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9.76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체복무하도록 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각자의 재능과 기술의 범위를 고려하여 다양한 대체복무 선택지를 제공할 것(캐나다);

139.77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구금되거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온전히 민간 성격을 지닌 비징벌적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스페인);

139.78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국제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할 것(슬로바키아);

139.79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온전히 민간 성격을 지닌 적절한 비징벌적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복무기간의 연장 없이, 현역 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할 것(파나마);

139.80 「국가보안법」, 특히 동법 제7조가 자의적으로 활용되거나 표현 및 의견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를 개정하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든 사람들을 석방할 것(독일);

139.81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하고, 이들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아르헨티나);

139.8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사이프러스);

139.83 구금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하고, 이들의 범죄 기록을 폐기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것(룩셈부르크);

139.8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을 종료하고,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비징벌적·비차별적이며, 민간의 주도로 운영되도록 할 것(우루과이);

139.85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할 것(에스토니아);

139.86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며, 이때 대체복무는 민간이 주도하고 현역 군 복무 기간에 상응하며, 비징벌적인 민간 성격을 지니도록 하고, 대체복무제도가 불합리하게 지연되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호주);

139.87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을 줄이고 대체복무가 가능한 영역(장소)를 확대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민간 성격의, 비징벌적 대체복무를 차별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크로아티아);

139.88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비징벌적인 민간 성격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폴란드);

139.89 보안감시 시스템 등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시스템이 사생활권을 비롯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코스타리카);

139.90 인신매매의 위협을 퇴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더욱 강화할 것(파키스탄);

139.91 비정규적 이민 상황에 놓인 성매매 종사자 및 이주자 등 여성의 성착취에 대한 진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인신매매 근절에 관한 일반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것(페루);

139.92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접근법을 채택하는 등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카타르);

139.93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을 보장할 것(스리랑카);

139.94 인신매매 범죄, 특히 현대적 형식의 노예 상태와 연관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근절할 것(시리아);

139.95 성적 착취 및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아동 범죄율 증가와 같은 모든 사회악적 관행을 근절할 것(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9.96 인신매매 근절을 향한 노력을 지속할 것(키르기스스탄);

139.97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조지아);

139.98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인도네시아);

139.99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및 기타 분야에 관한 권리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것(중국);

139.100 HIV 보균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강화를 지속할 것(세네갈);

139.101 연령에 맞는 성교육, 특히 10대의 임신과 HIV/AIDS를 예방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성교육을 제공할 것(룩셈부르크);

139.102 분쟁상황에서 학교 보호를 위한 「안전한 학교 선언」을 지지할 것(스페인);

139.103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과 도시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카타르);

139.104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인권 의무에 부합하도록 상향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위협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할 것(말레이시아);

139.105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할 것(마셜 제도);

139.106 비정부기구 및 선주민이 미래의 기후변화 관련 협상에 평등하고 완전하게 참여할(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바누아투);

139.107 모든 화석 연료의 사용을 근절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바누아투);

139.108 젠더기반 차별, 폭력, 학대를 영속화하는 구조나 규범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인적, 재정적 자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등 관련 법률과 계획의 이행을 더욱 강화할 것(필리핀);

139.109 성에 대한 권리 및 여성의 권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를 강화할 것(콜롬비아);

139.110 사법부, 법집행기관, 정치 및 공공 부문, 민간 부문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성 불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우크라이나);

139.111 SNS 등에서 여성이나 여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의 확산을 근절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며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시리아);

139.11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제1항제(g)호 유보 철회 가능성을 고려할 것(파라과이);

139.113 차별 방지 및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통해 직장과 정치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노르웨이);

139.114 정치 및 공공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네팔);

139.11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제1항제(g)호 유보를 철회할 것(나미비아);

139.116 국회, 도의회, 지방의회에서의 비례적 대표성을 비롯하여 공공 및 정치 부문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 및 구조적 개혁을 구상하고 이행할 것(마셜 제도);

139.117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젠더 및 여성인권 관련 임무를 강화할 것(몰디브);

139.118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예방,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탈리아);

139.119 정치 부문에서의 여성 차별을 해소할 것(이란);

139.120 국내외 민간기업들이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상의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할 것(아일랜드);

139.121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과 젠더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사이프러스);

139.122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차별, 혐오표현을 근절하고 젠더기반 고정관념을 타파하며, 건강한 성관계, 동의,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한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코스타리카);

139.123 여성, 여아를 모든 형태의 폭력, 괴롭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수단);

139.124 여성, 여아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폭력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중국);

139.125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스리랑카);

139.126 온라인 폭력 등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감시, 예방, 근절 노력을 지속할 것(리투아니아);

139.127 강요된 자백의 사용 금지 및 법정후견인의 재판 참여 보장을 통해 아동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감비아);

139.128 국내에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할 것(아제르바이잔);

139.129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응하고,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 방지 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전략을 도입할 것(세르비아);

139.13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형사 책임연령 하향 계획을 재고할 것(필리핀);

139.131 온라인 폭력을 비롯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 근절, 감시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몬테네그로);

139.132 「아동권리협약 개인진정 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고려할 것(몽골);

139.133 부모의 법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수립할 것(리투아니아);

139.134 부모의 법적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크);

139.135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위해 이들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한 주거 정책을 도입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공식 주거지나 주택의 수를

줄일 것(슬로베니아);

139.136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OECD 평균으로 높이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면서,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동등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입할 것(슬로베니아);

139.137 선거절차와 공공 정치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개선할 것(요르단);

139.138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돌봄 시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뉴질랜드);

139.139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을 중단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제도를 마련할 것(코스타리카);

139.140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할 것(카타르);

139.141「군형법」제92조의6을 폐지하여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제재를 없앨 것(아일랜드);

139.142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스라엘);

139.143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군형법」제92조의6을 폐지할 것(멕시코);

139.144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가 이성부부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고 인정받는 것을 보장할 것(뉴질랜드);

139.145 성소수자와 그 밖의 소외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노르웨이)

139.146 모든 영역(노동, 교육, 공공서비스의 이용 등)에서 성별, 성적 지향, 인종, 국적에 따른 모든 차별에 대응하는 포괄적 법률을 도입할 것(스페인);

139.147 성 소수자 집단 전체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영국);

139.148 성 소수자 등 소외집단의 구성원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미국);

139.149 군대 내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폐지할 것(미국);

139.150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성별정정을 전제조건 없이 허용할 것(호주);

139.151 인종,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 특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시행 가능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벨기에);

139.152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에 따른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캐나다);

139.153 「군형법」의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콜롬비아);

139.154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기준을 도입하고 연구계획 수정 등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코스타리카);

139.155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보장할 것(덴마크);

139.156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 강화를 지속할 것(프랑스);

139.157 모든 차별, 특히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시행할 것 (독일);

139.158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독일);

139.159 합의에 의한 성인 간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동성부부의 입양을 합법화할 것(아이슬란드);

139.160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여 군대 내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제재를 폐지할 것(아이슬란드);

139.161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의 조건으로 정신과 진단, 의료적 조치, 결혼 및 출산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개인의 자발적 선언(self-declaration)을 성별정정의 기반으로 하는 투명한 행정적 절차를 도입할 것(아이슬란드);

139.162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강화할 것(콜롬비아);

139.163 전환 치료를 금지할 것(아이슬란드);

139.164 이주아동의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주아동 등록제도를 개선할 것(폴란드);

139.16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고려를 지속할 것(키르기스스탄).

140. 상호 대화에서 도출된 아래 권고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검토 후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140.1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자행한 성노예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 중심 접근방식과 피해자 요구에 기반한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lasting) 해결책을 보장할 것(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41.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결론 및 권고사항은 제안국 또는 수검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써, 실무그룹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United Nations A/HRC/53/11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23 March 2023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uncil**
**Fifty-third session**
19 June–14 July 2023
Agenda item 6
**Universal periodic review**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Republic of Korea

* The annex is being circulated without formal editing, in the language of submission only.

GE.23-03422 (E) 230323 230323

Please recycle

## Introduction

1.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held its forty-second session from 23 January to 3 February 2023.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held at the 8th meeting, on 26 January 2023.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headed by the Vice-Minister of Justice, Noh Kong Lee. At its 15th meeting, held on 1 February 2023, the Working Group adopted the report on the Republic of Korea.

2. On 11 January 2023, the Human Rights Council selected the following group of rapporteurs (troika) to facilitate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Côte d'Ivoire, France and United Arab Emirates.

3.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and paragraph 5 of the annex to Council resolution 16/21, the following documents were issued for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a) A national report submitted/written present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a);[1]

(b) A compilation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b);[2]

(c) A summary prepared by OHCH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c).[3]

4. A list of questions prepared in advance by Belgium, Canada, Germany, Liechtenstein, Panama, Portugal, on behalf of Group of Friends on national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 Slovenia, Spai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ruguay was transmitt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troika. The questions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I. Summary of the proceedings of the review process

### A. Presentation by the State under review

5. The delegation stated that, in May 2022, a new Government had assumed office, and it sought to participate in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to fulfil its role as a "global pivotal State".

6. In preparing for the fourth cycl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e Government had consulted ministries and agenci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civil society and had attended the pre-session briefing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held in Geneva.

7. Responding to third cycle recommendations, the Government had acceded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It had ratified three fundament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namely,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and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and had withdrawn its 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Government was considering accession to other treaties and would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ies it had already signed.

[1] A/HRC/WG.6/42/KOR/1.
[2] A/HRC/WG.6/42/KOR/2.
[3] A/HRC/WG.6/42/KOR/3.

8. The Republic of Korea had cooperated in country visits by several special procedure mandate holders and had served as a membe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 the periods 2016–2018 and 2020–2022.

9. In 2018, the Government had adopted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with a new chapter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preparing the fourth plan, it planned to include policies regarding the digital transition.

10. Government measures ensured freedom of assembly, including through use of the "Korean model of police dialogue system" on police facilitation of peaceful assemblies, the provision of human rights training for police officers and the conduct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for related police activities.

11. The Government was enforcing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encompassing a response plan for combating human trafficking.

12.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for conscientious objectors had been established. Pursuant to new legislation, conscientious objectors performed their duti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13. To address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efforts had continued to secure additional space through the renov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14. Regarding social security, the Government had expanded the eligibility of recipients, as well as the child allowance, the basic pension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ility pension. The medical allowance programme and the personal contribution cap system had alleviated medical expenses for low-income groups.

15. In the context of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the Government had made effort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vulnerable groups. Addressing the female employment crisis, it had created approximately 780,000 new jobs and had strengthened support and childcare services. In 2020, online learning had been implemented.

16. With respect to labour rights, provisions in the Labor Standards Act protected workers from harassment and obliged employers to investigate cases. The scope of employment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had also been expanded.

17. The Republic of Korea enjoyed a 99 per cent high school enrolment rate. The Government extended free education to high school and provided education allowances to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18. The Government had established the gender equality basic plan in 2018 and had introduced the Framework Act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a corresponding basic plan. Th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Centre had been created, and laws had been amended to increase penalties and offences. New laws had established the legal grounds for the punishment and prevention of the crime of stalking and support for victims. To addres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labour inspectors supervised the gender equality support system.

19. Under the amended Child Welfare Act,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basic children policy plan had been established.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combating child abuse had been installed in local governments, and the number of protection agencies and shelters had been increased. The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in the Civil Act had been removed. The Government had amended laws to exclude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children. Through the youth policy implementation plan, the Government sought to prevent the marginalization of youth.

20. To eradicate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the Government had introduced provisions in rules to separate perpetrators and victims, had established a dedicated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and had increased the number of counsellors specialized in complaints of sexual offences.

21. An officer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had been established with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2. Regar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upported health management projects, while measures to strengthen lifetime care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ovided for 24-hour care. The Government had increased the amount of the disability pension and had ensured individualized welfare services.

23. For older persons, there was strengthened care for dementia patients, shelters for elderly victims of abuse, personalized care services and expanded employment opportunities.

24.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ers, the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had been advanced, and 20 May had been designated as Together Day. The Government supervised businesses to prevent violations of migrant workers' rights. Under an improved employment permit system, foreign workers were allowed unlimited workplace changes if they were not responsible for their employment termination. The Foreigner Detention Regulation designated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s. The Government had adde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officers and had issued guidelines on appeal procedures. The Government had guaranteed the right of all children to receive free compulsory education, regardless of residence status.

25. The Government had incorporated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ad launched the human rights-based development cooperation implementation plan, in 2020, to promote the rights of vulnerable groups and had integrated human rights into project management.

## B. Interactive dialogue and responses by the State under review

26. During the interactive dialogue, 95 delegations made statements. Recommendations made during the dialogue are to be found in section II of the present report.

27.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expressed concern about inequalitie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and the rise of hate speech against migrants and refugees.

28. Iraq commended th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omote human rights, including to guarantee respect for the right to housing, strengthen social protection and combat human trafficking.

29. Ireland welcomed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and the expanded definitions of domestic violence crimes, but noted a lack of progress made on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hich was recommended previously.

30. Israel praised progress made on non-regular workers,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but expressed concern about sexual violence in the armed forces.

31. Italy lauded the efforts made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nhance female representation in the public sector, notably the gender equality basic plan.

32. Japan expressed appreciation for efforts to increase female representation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o address social inequality, among other things.

33. Jordan commended the efforts made in preparing the national report, reflecting human rights achievements, and the laws addressing human trafficking and domestic violence.

34. Kazakhstan welcomed advances in social policy, support for persons in vulnerable situations,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35. Kuwait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efforts made in preparing the national report and in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from the previous universal periodic review cycle.

36.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and the progress made in protecting the rights of vulnerable groups.

37. Lebanon hailed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2018–2022, the preparations for the new plan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human trafficking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38. Libya praised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positive cooperation with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process and the efforts made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39. Lithuania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continued efforts to place human rights at the forefront of its national agenda.

40. Luxembourg welcomed the efforts made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from the previous universal periodic review cycle and the passage of the law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41. Malawi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progress made i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since the previous review and noted the passage of legislation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42. Malaysia highlighted the strengthened cohesiveness of policie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encouraged continued measures towards social equality, affordable education and basic medical services.

43. Maldives commended the consultative approach to the national repor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entre for the Rights of the Child for policies on children.

44. The Marshall Islands welcomed efforts to protect the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and the move towards the form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45. Mauritius praised the financial support provided to the Voluntary Technical Assistance Trust Fund to Support the Participation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subsidy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o facilitate access to schooling.

46. Mexico lauded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and ratification of the ILO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and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47. Mongolia hailed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strengthened labour rights, improved work environments and the increase in female representation at all levels.

48. Montenegro welcomed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alled for commuting all death sentences to life imprisonment.

49. Namibia applauded the country's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its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50. Nepal welcomed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rights and the poverty reduction efforts for older persons.

51.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valued efforts to uphold human rights instruments, but expressed concern abou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cluding online and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intersex and other persons.

52. New Zealand commended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as an important step in recognizing the rights of women, and the legislative work to protect those with disabilities.

53. Norway welcomed the improved enforcement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54. Pakistan commended the country's cooperation with human rights mechanisms and the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adopted on human trafficking, human rights and domestic violence.

55. Panama made recommendations.

56. Paraguay welcomed the bill on the birth registration of foreign children and the preventative approach towards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included in migration policies.

57. Peru no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the period 2018–2022.

58. The Philippines lauded the third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commitment to ILO conventions and the efforts to combat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nd migrants.

59. Poland commended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and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and encouraged efforts towards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human trafficking victims.

60. Portugal praised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article 25 (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61. Qatar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for adopting several policy and legislative measures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it had accepted during the previous universal periodic review cycle.

62. The Russian Federation expressed regret that recommendations made during the third universal periodic review cycle had not been sufficiently implemented.

63. Senegal hailed the sustained efforts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received during the third universal periodic review cycle and the national action plans to address various human rights challenges.

64. Serbia welcomed efforts to improve social equality by expanding the social safety net for vulnerable groups and the frameworks to address various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65. Singapore welcomed the efforts to improve accessibility to health care and public trans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through expanded services.

66. Slovakia encouraged further accessions to treaties, was pleased that capital punishment had not been implemented recently and regretted that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conditions were not proportionate.

67. Slovenia expressed appreciation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strategies to realize the rights of older persons.

68. Spain hailed the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nd the approval of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69. Sri Lanka welcomed action taken to comply wi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interaction with special procedure mandate holders.

70. The Sudan commended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the legislation on the prevention of trafficking and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national inclusive children policy.

71. Switzerland welcomed the de facto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and the sup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related resolutions. It encouraged continued efforts to promote gender equality.

72. The Syrian Arab Republic noted with concern the continu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impact of the spread of information technologies on rising levels of violence against women.

73. Thailand acknowledged the efforts regard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progress made on the labour rights of foreign workers, the improved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legislation to combat human trafficking.

74. Timor-Leste not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was a de facto abolitionist State and welcomed the decriminaliza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improved employment system.

75. Togo welcomed measures aimed at eliminating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against migrants, refugees and foreigner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76. Türkiye noted appreciatively the efforts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from the previous cycle and towards the adoption of laws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that would strengthen the legal framework.

77. Turkmenistan no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2018–2022, and assessed positively the efforts to apply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78. Ukraine commended the country's commitment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efforts to fulfi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operate with human rights mechanisms.

79. The United Kingdom welcomed the steps taken to tackle human trafficking, encouraged prioritizing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nd urged it to place a moratorium on executions.

80. The United States applauded the Republic of Korea for promoting human rights globally, but was concerned by the low rates of approval of refugee status.

81. Uruguay welcomed efforts made by the country, including the promulgation of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82. Uzbekistan praised legislation against human trafficking and assessed positively the fact that the application of death sentences had not been carried out since 1998.

83. Vanuatu welcomed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nked it for its presentation.

84.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expressed concern about the suspicion of migrants and refugees, the rise of hate speech and allegation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85. Viet Nam applauded the eff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creasing female representation, respecting cultural diversity and supporting the marriage of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86. Zambia commended the Government's efforts to fulfil its obligations under the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o comply with the human rights mechanisms.

87. Algeria laude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under its strategy for 2021–2025 and the steps taken against discrimination,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88. Argentina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89. Australia welcomed the country's commitment in its Indo-Pacific strategy to promote human rights and its support for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7/222 on a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90. Azerbaijan noted positively the efforts to comply with human rights mechanism recommendations and highlighted the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ipulating human rights considerations.

91. Bangladesh appreciated the legislation addressing human trafficking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efforts to address social inequality through expansion of the social safety net and housing.

92. Belarus extended a welcome to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nked it for submitting its report.

93. Belgium congratulate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in 2021, but noted that more progress could be achieved regarding gender in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94. Bhutan lauded the legislative measures against human trafficking and domestic violence, the measures to promote the right to housing and the efforts on the rights of the child.

95. Brazil encouraged the continued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mes in schools, investment in capacity-building for teacher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ILO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and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96. Brunei Darussalam valued the support provid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various schemes and the improvements in promoting gender equality at work, in particular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97. Bulgaria encouraged continuing the good practice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and capacity-building for teachers and highlighted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98. Canada took note of the commit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dvancing human rights internationally as part of its "global pivotal State" foreign policy.

99. Chile commended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basic plan for policies for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00. China noted progress achieved, but was concerned about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and ethnic minorities, sexual harassment against women and the rights of vulnerable groups being ineffectively protected.

101. Colombia welcomed the law against human trafficking, the plan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plan on improved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public sector.

102. Costa Rica thanke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resentation of its national report and made recommendations.

103. Côte d'Ivoire congratulate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measures taken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since the previous review and encouraged continued efforts.

104. Croatia welcomed the Framework Act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decision to decriminalize conscientious objection, but expressed concern about the rights of people performing alternative service.

105. Cyprus hailed the strengthened legislation to combat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ic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106.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ressed deep concern about systematic and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107. Denmark expressed concern tha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faced legal, social and economic barriers and highlighted that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Initiative stood ready to assist.

108. Egypt praised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including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article 25 (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09. El Salvador welcomed the legislation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and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10. Estonia noted appreciatively the implementation of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the inclus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and the progress made towards gender equality.

111. Finland welcomed the progress made by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previous universal periodic review cycle.

112. France welcomed the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113. The Gambia commended the amendment to the Child Welfare Act of 2020, including making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abuse in local governments and conducting on-site investigations.

114. Georgia positively evaluated the measures to address the social inequality of vulnerable groups, progressively realize the right to housing and promote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115. Germany assert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was an inspiring example for its region and noted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to military conscription.

116. Ghana lauded the inclus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the adoption of the gender equality basic plan and the human rights measures in the military service.

117. Greece commended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legislation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and punish domestic violence.

118. Iceland welcomed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national report.

119. India noted with appreciation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the legislation and plan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National Centre for the Rights of the Child.

120. Indonesia acknowledged the progress made in human rights promotion and protection, including regarding military service, and women's empowerment through the gender equality basic plan.

121. Kyrgyzstan welcomed the significant steps taken to strengthen legislative and policy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with a focus on vulnerable groups.

122. In addressing advance questions, the delegation noted that the Government was participating in the ongoing discuss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gradual reduction of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123. The Government had integrated recommendations by United Nations human rights bodies into the national action plan and had evaluated the implementation status thr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Council.

124. The National Security Act was needed for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as applied minimally to protect freedoms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Defecto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re guaranteed the same freedom of expression as the general public and were provided with legal aid.

125. On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proposals for related bills were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 complaint procedure had been established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olicies recognizing same-sex marriage required social consensus.

126. Regarding domestic violence, the police were obliged to take emergency measures, while prosecutors could request restraining orders. Marital rape could be punished under existing law. Countering online violence against children, the Government used big data to monitor children at high risk and conducted positive parenting campaigns.

127. Identifying career interruptions as a major driver of the gender pay gap, the Government was expanding childcare leave allowances, the application of reduced working hours for childcare needs and vocational training. It had implemented the plan for enhanced gender representa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Government planned to integrat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ensure more effective programme implementation.

128. Education on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was compulsory for those operating related facilities. Mental health welfare service centres provided community access to mental health services.

129. Those not recognized as refugees following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were granted humanitarian stay permits, if there would be a risk of threats to their life and person upon repatriation.

130. The Government was not considering repealing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131.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and the Broadcasting Act guaranteed freedom of the press. The only exceptions to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were instances posing a direct danger to public safety.

132. Responding to recommendations made, the Government stated that it would continue to implemen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o contribute 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33.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the Government maintained its agreement with Japan of 2015 on comfort women victims and would continue to make efforts to restore honour and dignity and to heal the psychological wounds of the victims.

134.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allowed workers to freely organize or join trade unions. Workplaces were inspected annually to identify forced labour. Regarding human trafficking, the delegation highlighted enhancing awareness and using indicators for early victim identification.

135.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birth of foreign children was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was revising the Juvenile Act and the Criminal Act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13 years of age, while deprioritizing detention.

136. The Government had submitted a proposed amendment to the Criminal Act, stipulating requirements for abortion, and it was currently before the legislature.

137. In its concluding remarks, the delegation stated that the Government was aware that the fourth cycl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was not a one-off procedure, but part of an ongoing process of continuous progress. The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provided would serve as valuable resources in implementing policies. The Republic of Korea strove to ensure that its human right policies would not only meet global standards, but would become best practic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II.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138. **The recommendations formulated during the interactive dialogue/listed below have been examin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enjoy the sup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138.1 **Ratify th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Denmark);**

138.2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amibia);**

138.3 **Take further steps to complete the procedure of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Ukraine);**

138.4 **Continue to implement measures to protect vulnerable groups and further defend and promote human rights (Japan);**

138.5 **Continue its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y based on a human rights approach (El Salvador);**

138.6 **Implement in full the Government's third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mid-term strategy for human rights**

and the human rights-based development cooperation implementation plan (Kyrgyzstan);

138.7 Conduct mor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for youth, public officials and educators to prevent so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spect cultural diversity (Viet Nam);

138.8 Continue efforts to strengthen the fight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Algeria);

138.9 Increase efforts to combat hate speech and incitement to racial hatred (Belarus);

138.10 Take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China);

138.11 Combat hate speech against foreigners and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Egypt);

138.12 Reduce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Zambia);

138.13 Work to reduce overcrowding in priso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Libya);

138.14 Pursue efforts aimed at fighting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Lebanon);

138.15 Continue its efforts to protect employees from abuses at workplaces (Sudan);

138.16 Better protect the labour rights of foreign workers and combat discrimination between national and foreign workers (Viet Nam);

138.17 Continue to reinforce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nd to expand social benefits for older persons (Portugal);

138.18 Continue its ongoing efforts to address social inequality and lay a foundation for an inclusive welfare State by continuing to expand social security for vulnerable groups (Turkmenistan);

138.19 Enhance measures to strengthen mechanisms guaranteeing bette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vulnerable groups, by expanding the social safety net (Pakistan);

138.20 Continue efforts to address social inequality and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for vulnerable groups (Azerbaijan);

138.21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on on guaranteeing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nd prioritizing housing for persons in a disadvantaged position (Kazakhstan);

138.22 Enhance policy measures aiming at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while ensuring that guidance on the housing welfare system is accessible for all (Azerbaijan);

138.23 Continue its efforts in promoting the right to housing and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Bhutan);

138.24 Intensify its efforts to reduce poverty, especially among older persons, by guaranteeing their access to adequate social security and medical care and by preventing discrimination and abuse (Brazil);

138.25 Consider expediting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Act to decriminalize abortion and ensuring access to safe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for women, including safe and legal abortion (India);

138.26 Proceed with measures to improve access to health care, especially for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groups (Georgia);

138.27 Reform the Criminal Code and other legislation to ensure universal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Estonia);

138.28 Adopt a law that regulates abor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f April 2019 (Spain);

138.29 Enact legislation which would provide the legal basis to enshrine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New Zealand);

138.30 Guarantee universal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y swiftly reforming the Criminal Act (Iceland);

138.31 Reform the Criminal Act to ensure universal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elgium);

138.32 Strengthen the means to ensure free public education for all and eradicate any form of discrimination in enrolment to schools (Bangladesh);

138.33 Conduct appropriate training for teachers and non-teaching education personnel on inclusive education (Maldives);

138.34 Implement measures to reduce disparities in access to education in rural areas, by strengthening school infrastructure and increasing teaching personnel (Mauritius);

138.35 Increase the level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fulfil its international commitment of 0.7 per cent of gross national income (Bangladesh);

138.36 Continue efforts to address gender-based crim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articularly in the employment sector, including by creating conducive working environments for women (Indonesia);

138.37 Continue and strengthen its national plan for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El Salvador);

138.38 Introduce measures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and combat social controversies and stigma attached to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oatia);

138.39 Continue efforts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reduce the gender pay gap (Chile);

138.40 Ensure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s empowerment in increasing access to leadership positions in the public sphere and in private businesses, including in the areas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nd innovation (Bulgaria);

138.41 Continue enhancing programmes on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women (Brunei Darussalam);

138.42 Continue implementing policies and measures for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Viet Nam);

138.43 Implement more effective policies and strengthen institutions in order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ürkiye);

138.44 Maintain, even strengthen, the service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en they are handed over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witzerland);

138.45 Promote gender equality by eliminating the driver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such as harmful gender stereotypes, and by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inter-agency mechanism to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m to access justice (Kingdom of the Netherlands);

138.46 Promote gender equality by eliminating the driver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Malaysia);

138.47 Take measures to increase women's representation in public sector decision-making positions and seek to lower the gender pay gap (Lithuania);

138.48 Continue efforts to eliminate the pay gap between women and men (Iraq);

138.49 Strengthen efforts to address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domestic violence (Kazakhstan);

138.50 Continue with procedures and legislation aimed at eliminat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der equality, protecting women from gender-based violence and support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Kuwait);

138.51 Pursue efforts in combating gender-based violence and ensure that victims are provided with adequate assistance (Lebanon);

138.52 Strengthen efforts to combat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Zambia);

138.53 Significantly increase efforts to combat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in all its forms in order to m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amendments to criminalize marital rape, as well as to recognize gender identity, in accordance with personal autonomy and human dignity (Argentina);

138.54 Adopt further concrete measures to combat gender-based violence and gender inequality, including by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Brazil);

138.55 Organize public awareness-raising campaigns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counter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ing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Estonia);

138.56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mbat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targeting women and girls (Syrian Arab Republic);

138.57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lans for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38.58 Introduce a taskforce to tackle all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bringing in tougher penalties for perpetrators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38.59 Ensure that foreign women who a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or human trafficking or other forms of violence are guaranteed access to justice (Russian Federation);

138.60 Support parents by reducing the burden of childbirth and childcare expenses (Malaysia);

138.61 Ensur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preventing inappropriate conditions of detention for minors (Gambia);

138.62 Put in place clear grounds for detention in the Juvenile Act and strengthen all measures to prevent the detention of children with adults (Gambia);

138.63 Review legislation related to juvenile justice and consider further measures related to the detention of juveniles (Bhutan);

138.64 Work on a policy strategy to prevent and monitor all form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Estonia);

138.65 Implement necessary legislative measures to incorporate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to national legislation (Cyprus);

138.66 Strengthen State policies aimed at eliminating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Belarus);

138.67 **Ensure that all children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have access to childcare facilities, education, health care, leisure activities and State support (Zambia);**

138.68 **Take effective measures to implement the second basic children policy plan to ensure the rights of children and expand State responsibility for children (Turkmenistan);**

138.69 **Continue the priority afforde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by expanding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children (Sri Lanka);**

138.70 **Strengthen measures to ensure that prison condition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minors,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Peru);**

138.71 **Implement the commitment made at the twenty-fifth anniversary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to support parents, by reducing the burden of childbirth and childcare expenses, establishing a secure childcare system with no blind spots, creating conditions for the 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and an inclusive family culture that respects all children and laying the foundations for a stable life for the younger generation (Panama);**

138.72 **Continue its efforts to address sexual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Nepal);**

138.73 **Continue efforts towards improving welfare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38.74 **Continue to implement measures to address the safety, well-being and participation of older persons (Singapore);**

138.75 **Devise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the protection of older persons from violence and all forms of abuse,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and address elder abuse (Slovenia);**

138.76 **Continue efforts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older persons (Algeria);**

138.77 **Provide more support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and their families (Islamic Republic of Iran);**

138.78 **Strengthen legislative measures and financial support to enhance the acc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public facilities (Israel);**

138.79 **Increase efforts aimed at promoting equality between members of society and vulnerable groups,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older persons and children, and guaranteeing their rights (Kuwait);**

138.80 **Continue to enhance the access to, and expand the delivery of, public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gapore);**

138.81 **Strengthen the legislative framework and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facilities (Türkiye);**

138.82 **Continue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aimed at social support for older person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ther vulnerable groups (Belarus);**

138.83 **Prioritize effort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afforded the same right to health as all (Brunei Darussalam);**

138.84 **Continue efforts to improve the process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ull social inclusion through an accessible environment and equal payment (Bulgaria);**

138.85 Continue with the initiative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dia);

138.86 Adopt a legislative framework that prohibits discriminatory practices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or gender identity and that prohibits discriminatory practices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Chile);

138.87 Continue taking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Pakistan);

138.88 Redouble efforts to guarantee greater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foreigners (Paraguay);

138.89 Amend the relevant regulation that adversely impacts migrant workers' right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particularly the limit on the number of times and reasons a migrant worker can change workplaces (Philippines);

138.90 Further enhance measure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investigate cases of both labour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resulting from business activities (Thailand);

138.91 Improve effectiveness in the enforcement of labour-related law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employers and recruitment agencies, as well as enhance understanding and appropriate treatment for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ailand);

138.92 Take additional steps for the rights of migrant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ppeal and remedial procedures for those with rejected refugee status (Türkiye);

138.93 Adopt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apply a human rights-based migration policy,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detention of migrant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Uruguay);

138.94 Take further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s and vulnerable groups (Uzbekistan);

138.95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radicate hate speech and adopt a strategy to combat prejudice, misinformation and stigmatization against migrants and refugees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138.96 Continue effort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promotion of the welfare of migrant workers (Ghana);

138.97 Consider further measures for address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migrants and refugees (India).

139.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ill be examined by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ill provide responses in due time, but no later than the fifty-third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39.1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France);

139.2 Consider the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Slovakia);

139.3 Continue to strengthen access to the voluntary termination of pregnancy and consider ratifying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France);

139.4 Accede to the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Côte d'Ivoire);

139.5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Mongolia) (Montenegro);

139.6 Accede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exico);

139.7 Consider ratifying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Mauritius);

139.8 Abolish the death penalty and accede to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ustralia);

139.9 Consider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in law and ratify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France);

139.10 Ratify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and the 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Panama);

139.11 Consider the ratification of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Portugal);

139.12 Approve a legislative initiative that eliminates the death penalty and ratify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ince, despite the moratorium, the courts continue to hand down death sentences (Spain);

139.13 Abolish the death penalty and ratify without reservation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celand);

139.14 Consider ratifying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Uruguay);

139.15 Accede to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its implementation (Côte d'Ivoire);

139.16 Ratify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commute all existing death sentences (Mexico);

139.17 Ratify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elgium) (Chile) (Estonia) (Finland) (Germany) (Lithuania) (Switzerl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39.18 Accede to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s well as accede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Luxembourg);

139.19 Move towards the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hile);

139.20 Carry out national deliberation among relevant institutions and stakeholders on the possibility of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donesia);

139.21 Accede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strengthen national policies on migrants and family reunification (Egypt);

139.22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Colombia);

139.23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lgeria) (Bangladesh) (Philippines) (Togo);

139.24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Libya) (Senegal);

139.25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Paraguay);

139.26 Sign and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Denmark);

139.27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ongolia);

139.28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taly);

139.29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Finland);

139.30 Intensify ongoing processes leading up to the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Ghana);

139.31 Consider ratification of major outstan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Malawi);

139.32 Adop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ithout delay (Ireland);

139.33 Update the relevant labour legislation so that it covers all categories of workers (Poland);

139.34 Consider reviewing its legislation to address concerns on conscientious objection and alternative services and further bring it into full compliance with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Timor-Leste);

139.35 Consider including all categories of workers in the labour legislation and expand the coverage of the legislation and labour standards to all sectors of the economy (Timor-Leste);

139.36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other evil laws which are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s well as the provocative so-calle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39.37 Consider the ratification of the Act on Birth Registration of Foreign Children (Egypt);

139.38 Enhance its efforts to establish a fourth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new demands for human rights issue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will ensure the participation of the various stakeholders (Turkmenistan);

139.39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response system and action plan to protect the rights of vulnerable persons from climate risks (Bhutan);

139.40 Establish a permanent national mechanism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 (Paraguay);

139.41 Consider amending the Criminal Code to consider racist motives as an aggravating circumstance when sentencing for criminal offences (Jordan);

139.42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d the compliance with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that are illegal and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139.43 Refrain from and repeal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already taken that are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that prejudice the social and economic rights of various categories of the population (Belarus);

139.44 Develop the government strategy for enacting the equality act and pass the comprehensive equality act, to establish polici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nd social prejudices against sexual minorities (Kingdom of the Netherlands);

139.45 Adopt legislation to prohibi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enshrine the concept of racial discrimination in legislation, as well as introduce criminal sanctions for the incitement to ethnic hatred and acts of a violent nature based on racial grounds (Russian Federation);

139.46 Consider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law against discrimination that includes, in addition to sex, religion and social conditi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rac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among other factors (Peru);

139.47 Strengthen efforts to comb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by adopting a comprehensive legislative framework (Ukraine);

139.48 Review legislation and practice to ensure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that is genuinely civilian, accessible to all conscientious objectors without discrimination, non-punitive and non-discriminatory in nature and cost and of a duration comparable to military service with any additional duration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 (Costa Rica);

139.49 Continue the ongoing efforts to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hat prohibits all forms of discrimination (Croatia);

139.50 Consider the adoption of further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ithin its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Greece);

139.51 Continue existing efforts to develop a government strategy for the enaction of an equality act (Greece);

139.52 Consider abolishing the capital punishment and introducing alternatives to death penalty (Kazakhstan);

139.53 Take concrete steps towards the form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Marshall Islands);

139.54 Entrench its moratorium on executions through the form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cluding by taking legislative action to permanently remove the death penalty from Korean law (New Zealand);

139.55 Take steps towards the form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ased on the longstanding moratorium (Norway);

139.56 Take steps towards the leg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while commuting the existing sentences to life imprisonment (Slovakia);

139.57 Continue its review of its legislation and policy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de jure (Timor-Leste);

139.58 Continue efforts on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at the legislative level (Uzbekistan);

139.59 Fully abolish the death penalty, which has been under a de facto moratorium for 25 years (Canada);

139.60 Abolish the death penalty (Costa Rica);

139.61 Formally abolish the death penalty and commute death sentences to lesser punishment or full pardons (Cyprus);

139.62 Consider adopting a de jure moratorium on capital executions (Italy);

139.63 Put an end to torture and ill-treatment practices in detention centres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139.64 Increase measures against torture and ill-treatment, including by considering accession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Uruguay);

139.65 Review the protection and prevention mechanisms on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prevent retaliation against those who reported sexual violence and ensure the rights to justice and remedies for victims (Islamic Republic of Iran);

139.66 Review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mechanisms on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Israel);

139.67 Continue and strengthen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El Salvador);

139.68 Take steps on alternative service to ensure the observance of the rights to freedom of thought, belief, conscience and religion (Malawi);

139.69 Review the National Security Act, in particular article 7, to make it complia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amend the inaccuracies that could restric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exico);

139.70 Implement adequate measures to ensure freedom of the press and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Paraguay);

139.71 Take measures to bring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of 1948 and the Criminal Cod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Russian Federation);

139.72 Repeal, revise or amend the National Security Law so that it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guarantee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Switzerland);

139.73 Replace criminal defamation and libel laws with civil laws and reform national security laws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United States of America);

139.74 Guarantee that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is exercised by all persons and that its limitation and the rules on the use of public force ar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139.75 Stop the suppression of all persons from freely forming trade unions and lawfully exercising their rights, the arbitrary interference in the functioning of trade unions and the disproportionate use of force on all persons enjoying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39.76 Allow conscientious objectors to serve for a length comparable to that of military service and with a variety of options to serve, taking into account the range of talent and skills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can contribute to the nation (Canada);

139.77 Ensure that no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is imprisoned or deprived of their liberty and that objectors are offered a genuinely civilian and non-punitive alternative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Spain);

139.78 Take steps to implement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lovakia);

139.79 Adopt provis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carry out an appropriate alternative and non-punitive service of a genuinely civilian character and of a comparable length to military service, with any additional extension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 (Panama);

139.80 Amend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particular article 7, to ensure that it is not used arbitrarily or to restrict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opinion and association and release all individuals unjustly charged and sentenced to prison terms solely for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Germany);

139.81 Provide for the release of all imprisoned conscientious objectors, expunge the criminal record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provide them with adequate reparation (Argentina);

139.82 Allow conscientious objectors to carry out an appropriate alternative service of a genuinely civilian character (Cyprus);

139.83 Release all conscientious objectors in detention, expunge their criminal records and grant them appropriate reparation (Luxembourg);

139.84 End the deten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nd ensure that civilian alternatives to military service are not punitive or discriminatory and remain under civilian control (Uruguay);

139.85 Improve civilian alternatives to the military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Estonia);

139.86 Provide alternative service op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by introducing an alternative non-punitive service of genuine civilian character, under civilian control and of a length comparable to military service and ensure that alternative service is offered without unreasonable delay (Australia);

139.87 Ensure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can carry out genuinely civilian and non-punitive alternative service without discrimination, by reducing the length of alternative service and expanding the places of possible service (Croatia);

139.88 Continue efforts towards mak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of a non-punitive and civilian character (Poland);

139.89 Take measures to prevent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based on big data, including surveillance systems, from violating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Costa Rica);

139.90 Further reinforc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tackle the menace of human trafficking (Pakistan);

139.91 Consider adopting a general law to combat human trafficking, with a focus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address complaints of the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including sex workers and migrants in an irregular situation (Peru);

139.92 Continue efforts to eradicate human trafficking, including through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and by adopting a victim-protective approach (Qatar);

139.93 Ensure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plan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and to protect trafficking victims (Sri Lanka);

139.94 Fight impunity for human trafficking crime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Syrian Arab Republic);

139.95 Eliminate all practice of social evil, such as trafficking in persons for sexual exploitation and forced labour and the increasingly higher rate of child crim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39.96 Continue efforts towards combating human trafficking (Kyrgyzstan);

139.97 Take further measures to tackle human trafficking, particularly of women and children, and to provide effective protection to victims (Georgia);

139.98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ffectively ensure labour protection for all workers (Indonesia);

139.99 Ensure effective protection of the rights to housing, education, medical care, employment and other fields for persons in vulnerable situations (China);

139.100 Continue strengthening measures to guarantee better care for people living with HIV (Senegal);

139.101 Provide age-appropriate sex education classe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revention of teenage pregnancy and HIV/AIDS and adequately addressing issue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Luxembourg);

139.102 Endorse the Safe Schools Declaration for the protection of schools in conflict areas (Spain);

139.103 Increase efforts to ensure that all children have access to quality education without discrimination and reduce educational disparitie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Qatar);

139.104 Implement the necessary reform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o mitigate threats against human rights resulting from climate change, including by raising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target consistent with human rights obligations (Malaysia);

139.105 Align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with the Paris Agreement goal of limiting global warming to 1.5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Marshall Islands);

139.106 Ensure tha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digenous Peoples are equally and fully represented in futur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Vanuatu);

139.107 Take swift action to eliminate all fossil fuels and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Vanuatu);

139.108 Further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and plans aimed at eliminating structures and norms that perpetuate gender-based discrimination, violence and abuse, by allocating more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Philippines);

139.109 Strengthen the mandat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n gender and women's rights (Colombia);

139.110 Take further steps towards reducing gender inequality, including by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judiciary and law enforcement,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and in the private sector (Ukraine);

139.111 Combat the spread of cybercrime targeting women and girls, including through social media platforms, to ensure effective means of prevention and

protection for victims and the legal prosecution of perpetrators (Syrian Arab Republic);

139.112 Consider the possibility of lifting the reservation to article 16 (1) (g)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araguay);

139.113 Implement measures to ensure women's equal participation in work life and politics, by preventing discrimination and reducing the gender pay gap (Norway);

139.114 Continue measures to enhance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political and public life (Nepal);

139.115 Withdraw the reservation to article 16 (1) (g)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amibia);

139.116 Devise and implement strategies and structural reforms towards ensuring the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in public and political life, including thei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 councils (Marshall Islands);

139.117 Reinforce the gender and women's rights mandat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aldives);

139.118 Intensify efforts to promote women's rights and to prevent and comb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them, both online and offline (Italy);

139.119 Address th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political domains (Islamic Republic of Iran);

139.120 Encourag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vate sector companies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all forms of onlin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cluding online gender-based violence and digital sex crimes (Ireland);

139.121 Strengthen efforts to combat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gender-based violence (Cyprus);

139.122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liminate violence,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against women and girls, as well as to eradicate gender-based stereotypes and promote education on healthy sexual relationships, consent and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online sex crimes (Costa Rica);

139.123 Continue its efforts in ensuring protection for women and girls against all kind of violence, harassment and abuses (Sudan);

139.124 Combat effectively, online and offline,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China);

139.125 Continue the commitment towards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and strengthening support service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Sri Lanka);

139.126 Continue efforts for monitoring, preventing and combating all form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women and children, including online violence (Lithuania);

139.127 Ensure children's fair trial rights by preventing the use of forced confessions and including legal guardians in the child's trial proceedings (Gambia);

139.128 Introduce a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the country (Azerbaijan);

139.129 Introduce comprehensive policies and strategies to address all form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including online violence, as well as to ensure the prevention of all forms of abuse of older persons (Serbia);

139.130 Reconsider the plan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pursuant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hilippines);

139.131 Develop a comprehensive strategy and an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fight and monitoring of all form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including online violence (Montenegro);

139.132 Consider joining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Mongolia);

139.133 Establish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that allows for the registration of births of all children born in the Republic of Korea, regardless of their parents' legal or social status (Lithuania);

139.134 Continue efforts to ensure birth registration, making it available to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 legal status of the parents or their origins (Iraq);

139.135 Adopt a housing polic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pecial needs of older persons to enable them to live independently, while reducing informal settlements and households that do not reach minimum housing standards (Slovenia);

139.136 Devote sufficient funding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ensure equal access to services and prevent poverty in old ag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by raising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to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verage (Slovenia);

139.137 Improve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electoral process and public political life (Jordan);

139.138 Take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care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New Zealand);

139.139 Eliminate the forced hospitalization of peopl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 establish a community-based care system that promotes their full autonomy (Costa Rica);

139.140 Enhance the social integ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building their capacities and ensuring their fair access to employment opportunities (Qatar);

139.141 Repeal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to end restrictions on consensual same sex relations (Ireland);

139.142 Continue to take measures to tackl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srael);

139.143 Repeal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criminalizes consensual sexual relations between people of the same sex (Mexico);

139.144 Legalize same-sex marriage and ensure that same-sex couples are recognized as having the sam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opposite-sex couples in de facto relationships (New Zealand);

139.145 Adop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and intersex persons and other marginalized groups (Norway);

139.146 Adopt a generic law that addresses all cases of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sexual orientation, race or nationality, in all areas, including labour, education and access to public services (Spain);

139.147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prohibits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protection for all those in the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other community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39.148 Pass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protecting members of marginalized communities, includi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intersex and other persons, and provide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 (United States of America);

139.149 Repeal the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criminalizing same-sex conduct in the military (United States of America);

139.150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cluding protec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and ensure access to legal gender recognition without prerequisites (Australia);

139.151 Enact comprehensive and enforceabl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prohibiting discrimination based on, among other things, race,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sex characteristics (Belgium);

139.152 Adopt an anti-discrimination law prohibit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nd abolish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criminalizes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Canada);

139.153 Eliminate the 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in the Military Criminal Code Act (Colombia);

139.154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rough the adoption of standards and the revision of study plans that promote the inclusion of all people (Costa Rica);

139.155 Ensure further efforts for the adopt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prohibiting discrimination based on, among other thing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Denmark);

139.156 Continue to strengthen the figh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those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France);

139.157 Adopt and implemen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hich prohibits any discrimination, notably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Germany);

139.158 Repeal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that punishes sexual activity between same-sex military personnel with sentences of up to two years in prison (Germany);

139.159 Legalize same-sex marriage between consenting adults and legalize adoption by same-sex couples (Iceland);

139.160 Repeal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to end restrictions on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in the military (Iceland);

139.161 Stop conditioning legal gender recognition for transgender persons upon psychiatric diagnosis, medical treatment and the prohibition to marry or have children and introduce instead a transparent administrative process based on individual self-declaration (Iceland);

139.162 Strengthen the legal framework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lesbian, gay, transgender, bisexual, intersex, queer and other persons (Colombia);

139.163 Ban conversion therapies (Iceland);

139.164 Further improve the registration of migrant children, with a view to the full realization of their right to compulsory education (Poland);

139.165 Continue consideration of the accession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of their Families (Kyrgyzstan).

140. **The recommendation formulated during the interactive dialogue/listed below has been examin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been noted by the Republic of Korea:**

140.1 **Ensure a lasting solution to unresolved cases of sexual slavery and forced labour committed by Japan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imed at fulfilling the victims' right to truth, justice and reparation on the basis of a victim-centred approach and victims' demand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41. **All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report reflect the position of the submitting State(s) and/or the State under review. They should not be construed as endorsed by the Working Group as a whole.**

# Annex

## Composition of the delegation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headed by Vice Minister of Justice, Ms. Lee, Noh Kong, and composed of the following members:

- H.E. Mr. Yun, Seong-deok (Alternate Head of Delegatio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Permanent Representativ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 Ms. Yoon, Seong-mee, Ambassador,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 Ms. Yu, Jeong A, Counsellor,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 Mr. Park, Jinyoul, Counsellor,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 Ms. Yoo, Yena, First Secretary,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 Ms. Yong, Gyoung Min, Second Secretary,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 Ms. Nam, Yu Jin, Political Affairs Advisor,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 Ms. Lee, Yoo Sun, Director, Human Rights Support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r. Kim, Tae Hun, Director, Unification Leg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s. Choi, Ji Ye, Prosecutor,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s. Yeo, Hyejin, Deputy Director,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s. Lee, Sung Ho, Deputy Director, Investigation & Enforcement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r. Ji, Wongeun, Deputy Director, Crime Prevention Planning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r. Kwak, Eun Sang, Assistant Deputy Director, Refugee Appeal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r. Kang, Ji Yoon, Human Rights Specialist,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s. Jun, Hyun Shin, Deputy Director,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r. Kim, Hae Bal Eun, Prosecutor, Department of National Security, Election and Labor (Labor Division), Supreme Prosecutors' Office;
- Ms. Hwang, Hyuni, Director,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s. Kim, Siyoon, Second Secretary,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r. Kim, Sangmin, Second Secretary,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r. Ahn, Sungmin, Director, Military Human Rights Divisio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Ms. Kim, Aeryeong, Judge Advocate, Military Human Rights Divisio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Mr. Hur, Kwon, Deputy Director, Popular Culture industry Divis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r. Lee, Seung Yeop, Deputy Director, Division of Rights Promo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r. Kim, Yeong Seo, Assistant Director,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r. Ryu, Hyosang,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Mr. Lim, Jongpil, Senior Deputy Director, Planning and Finance Divis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Mr. Park, In Jae, Superintendent, Human Rights Protection Division,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Mr. Song, Seon Jong, Senior Inspector, Human Rights Protection Division,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Mr. Sung, Jaesik, Deputy Director, Internet Consumer Policy Divisi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Mr. Ki, Dong Min (Advisor), Member of Parliament, National Assembly;
- Mr. Jang, Dong Hyeok (Advisor), Member of Parliament, National Assembly;
- Ms. Han, Myoungae (Advisor), Director, Division of Child Right Advocacy,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 Ms. Kim, Eun Young, Interpreter;
- Ms. Lee, Lami, Interpreter.

# 부록 2

# 정책과제별 소관부처

## Ⅰ.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

| | | |
|---|---|---|
| 1. 생명권 | ① 사형제도 개폐 검토 | 법무부 |
| | ② 자살 예방 체계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교육부<br>보건복지부 |
| 2. 신체의 자유 | ① 인신구속제도 개선 | 법무부 |
| | ②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 법무부 |
| | ③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권리 확대 및 강화 | 법무부 |
| | ④ 형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 경찰청 |
| | ⑤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 | 법무부<br>경찰청 |
| | ⑥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안전 강화 | 법무부<br>경찰청 |
| | ⑦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경찰청<br>국민권익위원회 |
| | ⑧ 구금·보호시설 과밀수용 해소 | 법무부 |
| | ⑨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 | 법무부 |
| | ⑩ 보호·위탁소년 인권 및 처우 개선 | 법무부 |
| | ⑪ 성충동 약물치료 처우 개선 | 법무부 |
| | ⑫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정 등 인권 보호 강화 | 법무부 |
| | ⑬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 및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법무부 |
| | ⑭ 인신보호법제 활성화 | 법무부 |
| 3. 안전권 | ① 시설·서비스 소비자 안전 확보 | 행안부<br>문체부 |
| | ② 재해에 강한 국토 기반 조성 | 국토부 |
| | ③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생활문제(치안, 안전) 해결 추진 | 과기부 |
| | ④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행안부 |
| | ⑤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 행안부<br>여가부 |

| | | |
|---|---|---|
| 4. 사상 ·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① 「국가보안법」의 남용방지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 | 법무부 |
| 5. 표현의 자유 | ① 소외계층 방송 향유권 보장 | 방송통신위원회 |
| | ②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 방송통신위원회 |
| 6. 결사 · 집회의 자유 | ① 아동 · 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 여성가족부 |
| | ②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집회 · 시위 기준 마련 | 질병관리청 |
| | ③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 | 경찰청 |
| 7. 사생활의 자유 | ① 보안관찰제도 운용 합리화 | 법무부 |
| | ② 수사 과정에서 통신비밀침해 방지 | 법무부 |
| | ③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 법무부 |
| | ④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 명확화 | 법무부<br>경찰청 |
| | 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보인권 보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8. 거주 · 이전의 자유 | ①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 국토부 |
| | ② 도서주민의 이동권 증진 | 해양수산부 |
| 9. 인격권 | ① 전자감독제도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 법무부 |
| 10. 권익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 ①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조사 · 구제 | 법무부 |
| | ② 군 장병 인권 보호 | 국방부<br>여성가족부 |
| | ③ 집단민원의 효과적 조정 및 민원처리 역량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
| | ④ 회복적 경찰활동 | 경찰청 |
| | ⑤ 군 내 성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보강 | 국방부 |
| | ⑥ 진실 · 정의 · 배상 · 재발방지의 원칙에 의한 과거사 청산, 전환기적 정의의 구현 | 행정안전부 |
| | ⑦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

| | | |
|---|---|---|
| 11. 참정권 | ① 공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 | 인사혁신처 |
| | ②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인사혁신처 |
| | ③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인사혁신처 |
| | ④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 인사혁신처 |
| **I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 | |
| 1. 노동권 | ①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 고용노동부 |
| | ②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 |
| | ③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 고용노동부<br>여성가족부 |
| | ④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⑤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근절 | 교육부<br>법무부<br>문화체육관광부<br>보건복지부<br>여성가족부<br>인사혁신처<br>경찰청 |
| | ⑥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지도·감독 및 개선 | 고용노동부 |
| | ⑦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 | 고용노동부 |
| | ⑧ 사내하도급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 고용노동부 |
| | ⑨ 산업안전보건 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 |
| | ⑩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 강화 | 고용노동부 |
| | ⑪ 평생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 | 고용노동부 |
| | ⑫ 신중년 근로자 등 장기근속 및 전직 지원 | 고용노동부 |
| | 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강화 | 교육부<br>고용노동부<br>여성가족부 |

| | | |
|---|---|---|
| | ⑭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문화 구축 | 고용노동부 |
| | ⑮ 근로자 이해 대변 기구 제도 개선 및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 |
| | ⑯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노동자 보호 | 고용노동부 |
| | ⑰ 공정임금 체계 확립 | 고용노동부 |
| | ⑱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고용노동부 |
| | ⑲ 장시간 근로 개선 | 고용노동부 |
| 2. 적절한 생활 수준에 관한 권리 | ①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주 사회보험 지원 | 보건복지부<br>고용노동부 |
| | ②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고용노동부 |
| | ③ 수돗물 수질기준 관리 및 개선 | 환경부 |
| | ④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 | 환경부 |
| | ⑤ 물환경 위해관리체계 강화 | 환경부 |
| | ⑥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br>식품의약품안전처 |
| | ⑦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 |
| | ⑧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해양수산부<br>식품의약품안전처 |
| | ⑨ 급식관리 공공성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⑩ 주거권에 대한 인식 및 국가 역할 정립을 위한 노력 지속 | 국토부 |
| | ⑪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 국토부 |
| | ⑫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지속적 추진 | 국토부 |
| | ⑬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 국토부 |
| | ⑭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확대 | 국토부 |
| | ⑮ 안전과 편리성을 갖춘 노인주거 여건 마련 | 국토부 |
| | ⑯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 국토부 |
| | ⑰ 상병제도 도입 및 운용 | 보건복지부 |
| | ⑱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 |

| | | |
|---|---|---|
| 3. 건강권 및 보건 환경에 대한 권리 | 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 보건복지부 |
| | ② 치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
| | ③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 보건복지부 |
| | ④ 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특례 공급 지속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⑤ 군 장병 의료 접근권 향상 | 국방부 |
| | ⑥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 교육부 |
| | ⑦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 교육부 |
| | ⑧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오남용 예방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⑨ 환경보건 기반 구축 지원 | 환경부 |
| | ⑩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 환경부 |
| | ⑪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개선 | 환경부 |
| | ⑫ 인체위해물질 및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안전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⑬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 강화 | 환경부 |
| | ⑭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환경부 |
| | ⑮ 생활소음 대책 마련 | 환경부 |
| | ⑯ 국토 및 환경계획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보 | 환경부 |
| | ⑰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 보건복지부 |
| | ⑱ 의료 서비스 이용 차별 개선 | 질병관리청 |
| | ⑲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 공개 | 환경부 |
| | ⑳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 법무부 |
| | 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 |
| | ㉒ 지역 돌봄 실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 | 보건복지부 |
| | ㉓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 |
| | 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 국방부 |

| | | |
|---|---|---|
| 4. 교육을 받을 권리 | ① 무상교육의 점진적 확대 | 보건복지부 |
| | ②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 교육부 |
| | ③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 교육부 |
| | ④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 여성가족부 |
| 5. 문화·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 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 |
| | ② 청소년 주도 문화 활동 확대 | 여성가족부 |
| | ③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
| | ④ 노인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
| | ⑤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br>문화체육관광부 |
| | ⑥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 | ⑦ 문화다양성 존중정책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 |
| | ⑧ 예술인 창작 기반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
| | ⑨ 콘텐츠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 |
| | 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 특허청 |
| | ⑪ 불법복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
| | ⑫ 국민 스포츠 향유환경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 |
| 6. 가족 생활에 관한 권리 | 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 |
| | ② 보육취약지역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보건복지부 |
| | ③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 보건복지부<br>여성가족부 |
| | ④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 여성가족부 |
| | ⑤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 및 생활 안정 지원 | 여성가족부 |
| | ⑥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 보건복지부 |
| | ⑦ 이혼가정아동의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 이행 촉진 | 여성가족부 |

| Ⅲ.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 | | |
|---|---|---|
| 1. 평등 증진 | 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 관련 법제 정비 | 법무부 |
| | ②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 여성가족부 |
| | ③ 성별 임금차별 해소 | 고용노동부 |
| | ④ 성별 대표성 제고 | 여성가족부 |
| | ⑤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 교육부<br>여성가족부 |
| | ⑥ 차별·비하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br>방송통신위원회 |
| | ⑦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 개선 지원 | 여성가족부 |
| 2. 여성 | ① 여성폭력 대응 강화 및 예방환경 조성 | 여성가족부<br>경찰청 |
| | ②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 농림축산식품부<br>해양수산부 |
| | ③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 |
| | ④ 모·부성권 강화 | 고용노동부 |
| | ⑤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 여가부 |
| | ⑥ 여성 건강증진 강화 | 보건복지부<br>여성가족부<br>법무부<br>식품의약품안전처 |
| 3. 아동·청소년 | ①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 여성가족부 |
| | 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개선 | 여성가족부 |
| | ③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 교육부 |

| | | |
|---|---|---|
| | ④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 교육부 |
| | 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
| | ⑥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 문화체육관광부 |
| | ⑦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 문화체육관광부 |
| | ⑧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 |
| | ⑨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여성가족부 |
| | ⑩ 가정 밖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여성가족부 |
| | ⑪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교육부 |
| | ⑫ 아동유기, 불법입양 대책 강화 | 법무부<br>통계청 |
| | ⑬ 아동 양육 및 보호의 국가 책임 강화 | 보건복지부 |
| | ⑭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 법무부 |
| | ⑮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 | 법무부<br>경찰청 |
| | ⑯ 보호아동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 보건복지부 |
| | ⑰ 청소년 성교육 ·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 보장 | 보건복지부<br>여성가족부 |
| | ⑱ 아동참여와 아동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절차 및 기준 개발 | 보건복지부 |
| | ⑲ 공적개발원조 확대 및 국제개발원조 정책에 아동권리 등 인권 우선순위 반영 | 외교부 |
| 4. 장애인 | ①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 보호 | 보건복지부 |
| | ②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
| | ③ 장애아동 복지지원 서비스 개선 | 보건복지부 |
| | ④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
| | ⑤ 장애인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사법접근성 보장 | 법무부<br>보건복지부<br>국토부 |
| | ⑥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 보건복지부 |

| | | |
|---|---|---|
| | ⑦ 장애인 건강권 보장 | 보건복지부 |
| | ⑧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 | 보건복지부 |
| | ⑨ 장애인 학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 보건복지부 |
| | ⑩ 장애인 고용 개선 | 고용노동부 |
| | ⑪ 변호사 시험 장애인 시험장 확대 운영 | 법무부 |
| | ⑫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 보건복지부 |
| | ⑬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 고용노동부<br>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5. 노인 | ① 폭력 · 학대 등으로부터 노인 인권 보호 | 보건복지부 |
| | ②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 보건복지부 |
| | ③ 노인 건강권 보장 | 보건복지부 |
| | ④ 단체 · 문화 활동, 사회활동 참여 강화 | 보건복지부 |
| | ⑤ 노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 | 고용노동부 |
| | ⑥ 노인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보건복지부 |
| | ⑦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적 필수서비스 강화 | 보건복지부 |
| | ⑧ 농지연금 활성화 | 농림축산식품부 |
| 6. 외국인과 재외동포 | ① 방문취업 동포 지원 | 고용노동부 |
| | ② 중국 및 구소련 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법무부 |
| | ③ 재외동포 사회통합 지원 | 법무부 |
| | ④ 국외입양인 인권 개선과 지원 | 보건복지부 |
| | ⑤ 이주민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안정적 정착 | 법무부 |
| | ⑥ 이주민 사회통합 지원 제도 활성화 | 법무부 |
| | ⑦ 외국인 ·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 법무부 |
| | ⑧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 보장 | 고용노동부 |

| | | |
|---|---|---|
| | 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 체계 강화 | 고용노동부 |
| | ⑩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제도 개선 | 여성가족부 |
| | ⑪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 | ⑫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 |
| | ⑬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 여성가족부 |
| | ⑭ 이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 | 교육부 |
| | ⑮ 외국인 입국 규제제도의 합리적 운영 | 법무부 |
| | ⑯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구제 | 법무부<br>해양수산부<br>경찰청<br>해양경찰청 |
| | ⑰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 교육부 |
| | ⑱ 외국인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개정 | 법무부 |
| | ⑲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 여성가족부 |
| | ⑳ 난민심사 제도 기반 개선 | 법무부 |
| | ㉑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 법무부 |
| **7. 북한 이탈주민** |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법제 개선 | 통일부 |
| | ②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 자활 지원 강화 | 통일부 |
| | ③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 통일부 |
| | ④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 | 국가정보원 |
| | 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 통일부<br>교육부 |

| Ⅳ.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 |
|---|---|---|
| 1. 디지털 환경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 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br>방송통신위원회 |
| | ②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③ 성숙한 디지털 이용 문화 조성 | 방송통신위원회 |
| | ④ 인공지능 윤리 · 제도 정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br>경찰청<br>방송통신위원회 |
| | ⑤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 · 확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br>방송통신위원회<br>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⑥ 자유롭고 공정한 플랫폼 환경 조성 | 방송통신위원회 |
| | ⑦ 국제사회 규범 형성 기여 | 외교부 |
| 2.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 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활용권 보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br>문화체육관광부<br>해양수산부 |
| | ② 디지털 교육 강화 | 교육부<br>과학기술정보통신부<br>고용노동부 |
| | ③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 격차 해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④ 디지털 스마트 복지 구현 | 보건복지부 |
| 3. 디지털 정보 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 | 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br>행정안전부<br>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② 보안 취약계층 역량 지원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③ 인터넷 개인식별 연계정보 통제방안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
| |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자율규율 체계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 4.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 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강화 | 법무부<br>여성가족부<br>경찰청<br>방송통신위원회 |
| | ②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 마련 및 강화 | 법무부<br>경찰청 |
| | ③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난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 문화체육관광부<br>방송통신위원회 |
| | ④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br>방송통신위원회 |
| | ⑤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료 · 재활 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
| **V.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 | | |
| 1. 기업과 인권 | **〈인권경영의 제도화〉** | |
| | ①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확보 | 외교부<br>법무부<br>고용노동부 |
| | ②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
| | ③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 조달청 |
| | ④ 생활제품 소비자 안전 확보 | 산업통상자원부 |
| | ⑤ 기업의 아동권리 영향평가 등 아동보호프레임 체계 수립 등 | 보건복지부<br>고용노동부 |
| | ⑥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인권 보호 | 외교부<br>법무부<br>고용노동부 |
| | ⑦ 해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 고용노동부 |
| | **〈고충처리 · 구제 절차 실효성 제고〉** | |
| | 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 환경부 |
| | ②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용 | 산업통상자원부<br>국토부 |
| | ③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 산업통상자원부 |
| | ④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

| Ⅵ.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 | |
|---|---|---|
|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 〈국제인권조약 비준 · 이행〉 | |
| | ①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 비준 | 교육부<br>법무부 |
| | ②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 법무부<br>여성가족부 |
| | ③ 국제인권기구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대응 개선 | 외교부<br>법무부<br>보건복지부<br>여성가족부 |
| | ④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 강화 | 교육부 |
| | ⑤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조치 | 법무부 |
| |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 |
| | ① 국제사회 인권 협력 및 역할 강화 | 외교부 |
| | ② 국제인권기구와 교류 협력 강화 | 외교부 |
| | ③ 인권 기반 공적개발협력 추진 | 외교부 |
| | ④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 행정안전부 |
| | ⑤ 인권시민단체 및 사업 지원 | 행정안전부 |
| | 〈북한인권 증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
| | ① 북한인권 증진 방안 추진 | 외교부<br>통일부<br>법무부 |
| | ②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 외교부<br>통일부<br>보건복지부<br>농림축산식품부 |
| | ③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 통일부<br>법무부 |
| | ④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 통일부 |

| | | |
|---|---|---|
| 2.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 **〈국민 일반 대상 교육〉** | |
| | ① 인권교육 진흥 추진 | 법무부 |
| | ②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 통일부<br>법무부 |
| | **〈학교 교육〉** | |
| | ①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 교육부 |
| | ②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 교육부 |
| | ③ 일반학교의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 | 교육부 |
| | ④ 인권친화적 대학 · 학교문화 조성 | 교육부 |
| |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 교육〉** | |
| | ①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 인사혁신처<br>법원행정처 |
| | ② 법 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 통일부<br>법무부<br>경찰청 |
| | ③ 군 장병 인권교육 | 국방부 |
| | ④ 변호사 인권교육 | 법무부 |
| | 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 보건복지부 |
| | ⑥ 사회적 약자 및 보호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 보건복지부<br>여성가족부 |
| | **〈사회적 약자 · 소수자 대상 교육〉** | |
| |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 통일부<br>보건복지부<br>고용노동부<br>여성가족부 |
| | **〈인식 개선〉** | |
| | ①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 여성가족부 |
| | ② 생활 속 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 |
| | ③ 평등한 가족문화 등 조성 | 여성가족부 |
| | ④ 지역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법무부 |